法務手鑑

2017. 1. 1. ~ 12. 31.

法務部

국 가 비 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정 목 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법무행정비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 기 (旗)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간부 일동

법무부

사진으로 보는
2017년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2017. 1. 2. 2017년 법무부 시무식

2017. 1. 23. 전통시장 방문

2017. 1. 24.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2017. 2. 9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2017. 2. 10.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2017. 2. 14. 대구·경북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2017. 2. 15.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촉식

2017. 2. 20. 법무부·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식

2017. 2. 2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기총회

2017. 2. 22. 신임검사 임관식

2017. 3. 8.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2017. 3. 22.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업무협약식

2017. 3. 23. 아산희망센터 개관식

2017. 3. 24. 대전솔로몬파크 방문

2017. 3. 27.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2017. 3. 31. 2016년 정책성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자체평가위원회

2017. 4. 3. 신임검사 임관식

2017. 4. 4.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

2017. 4. 13. 신생 벤처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책자 발간식 및 기업인 간담회

2017. 4. 20.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2017. 4. 25. 제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2017. 4. 26. 여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17. 4. 27. 법교육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2017. 4. 27. 세계헌법학회 수석부회장 접견

2017. 5. 17. U-20 월드컵 개막, 대테러 대응 태세 점검 인천국제공항 방문

2017. 5. 22.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식

2017. 5. 22. 이금로 법무부 차관 취임식

2017. 6. 14. 제10회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2017. 7. 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2017. 7. 19. 제65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식

2017. 7. 19. 제65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식

2017. 7. 24. 공익법무관 임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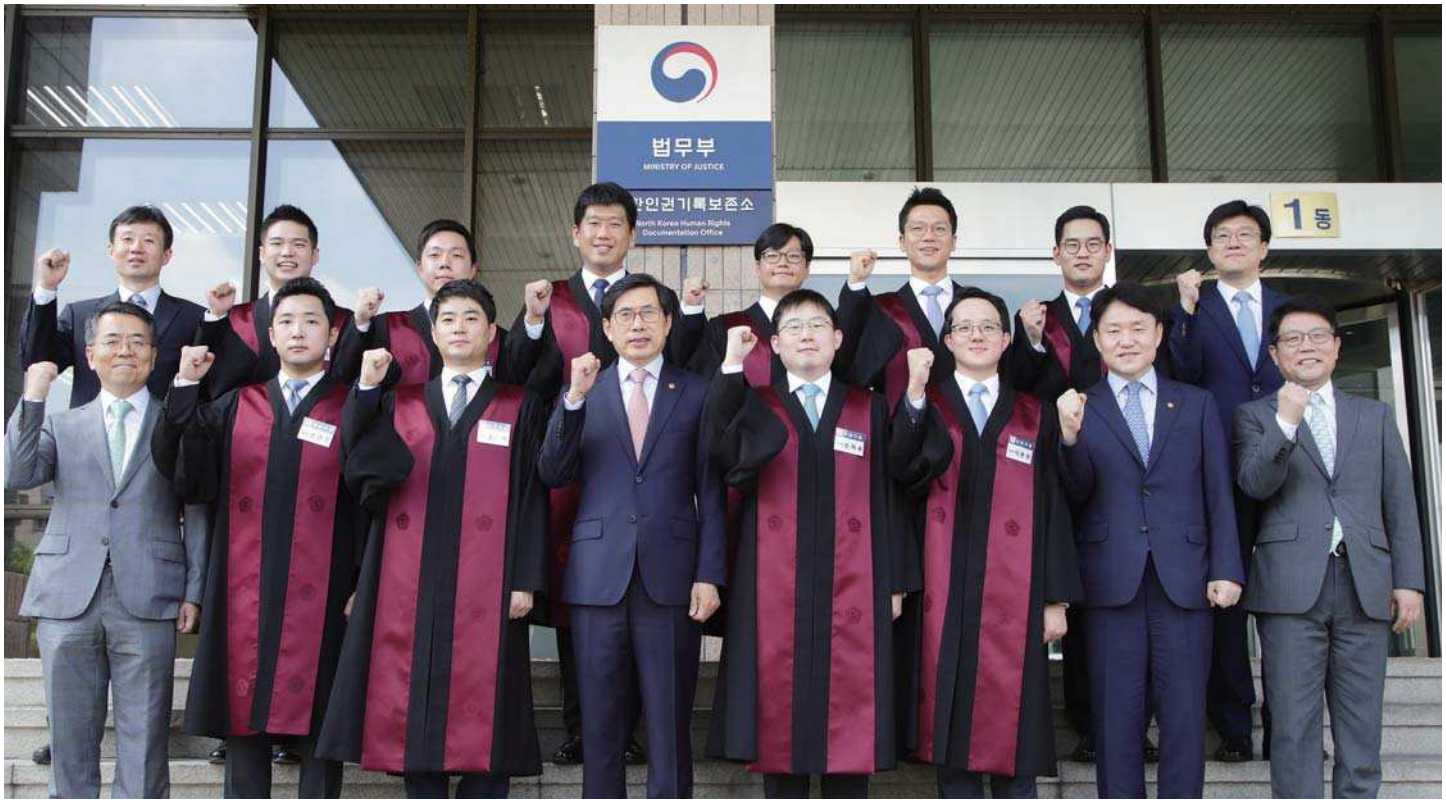

2017. 8. 1. 신임검사 임관식

2017. 8. 9.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2017. 8. 11. 독립 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2017. 8. 23. 대한변협회장 접견

2017. 8. 28. 2017년 법무부 핵심정책토의

2017. 8. 3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2017. 9. 1.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7. 9. 7. 대한공증인협회장 접견

2017. 9. 8. 의정부스마일센터 개소식

2017. 9. 15.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2017. 9. 18. 수원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2017. 9. 18.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17. 9. 20.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간담회

2017. 9. 22. 신임검사 강화

2017. 9. 22.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2017. 9. 25. 세계헌법학회 회장 접견

2017. 9. 26. 성폭력 근절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2017. 9. 28. 안양 박달시장 방문

2017. 9. 29. 소년원 야구 재능기부 감사패 수여식

2017. 10. 11.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튠업음악교실

2017. 10. 12.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임원진 접견

2017. 10. 14. 제4회 다링안심캠페인

2017. 10. 20. 법사랑타운 준공식

2017. 10. 24.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

2017. 10. 25.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2017. 10. 27. 제72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2017. 11.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2017. 11.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2017. 11. 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2017. 11. 2.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 개최

2017. 11. 15.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17. 11. 15.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2017. 11. 16. 허그 후원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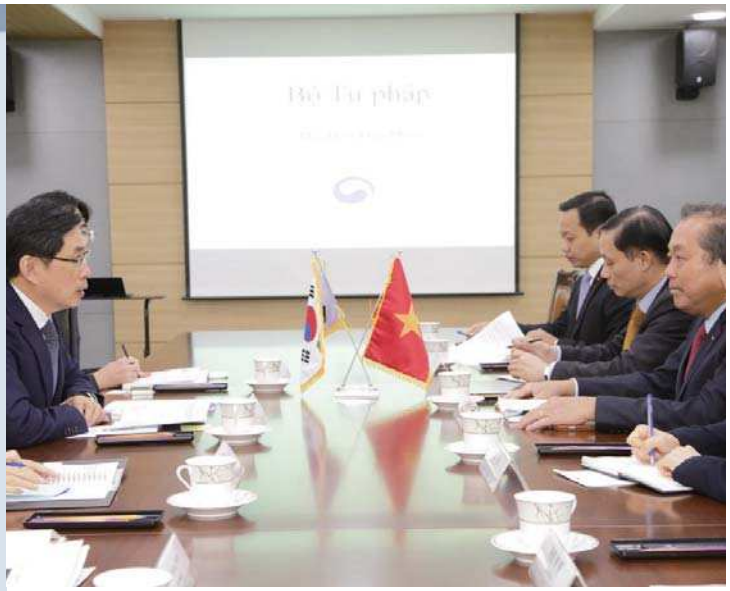

2017. 11. 20. 베트남 수석부총리 접견

2017. 11. 21.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접견

2017. 11. 22. 부산구치소 방문

2017. 11. 22.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2017. 11. 29. 국민타자 이승엽 감사패 증정식

2017. 11. 2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접견

2017. 12. 7. 2017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2017. 12. 8. 2017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2017. 12. 8.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회의

2017. 12. 11.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심포지엄

2017. 12. 12.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촉식

2017. 12. 13.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2017. 12. 14. 제30기계화보병사단 위문방문

2017. 12. 15. 올해의 보호관찰상·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2017. 12. 27. 검찰업무수행 유공자 포상식

2017. 12. 27.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해단식·위촉식

2017. 12. 28. '1987' 영화관람

2017. 12. 28.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식

2017. 12. 28. 일본 법무성 부대신 접견

2017. 12. 29. 2018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법무행정 일지

1 January

1. 2. 법무부 시무식
1. 4.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예방
1. 5.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예방
대한상사중재원장 예방
1. 6. 이민정책연구원장 예방
1. 9.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1. 11. 연두 업무보고
KBS <4시 뉴스집중> 출연 -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1. 12. 법사랑전국연합 임원단 예방
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예방
중앙일보 인터뷰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1. 14. 사법연수원 수료식
1. 18.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식
1. 23. 방호원, 미화원 간담회
설 맞이 전통시장(박달시장) 및 보육시설(안양의 집) 방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1. 24.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소년범죄예방팀 개소식
1. 2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1. 26. 1월 정기 가석방 실시

2 February

2. 6.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간담회
2. 9.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2017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2. 10.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2. 15.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촉식
2. 16.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예방
2. 20. 법무부·기업은행 MOU 체결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및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2. 21.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기총회
2. 22. 신임검사 임관식
2. 23. 제1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2. 24.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집행부 예방

3 March

3. 2.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참석
3. 6. 의료분쟁중재원장 예방
3. 7 ~ 12.14. 법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 평등교육 실시
3. 8. 제3기 O.K. 아카데미 개소식
3. 8. 대한변협 신임회장 예방
3. 9. FIU(금융정보분석원)원장 예방
3. 9 ~ 3.31.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생활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3. 1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시행
3. 15. 법무부 정책위원회
3. 22. 『법무부-행정자치부』 한국 자원봉사센터협회 보호관찰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식
3. 23. 아산희망센터 개관식
3. 24. 모두의 변호사 출범식
정책현장(대전솔로몬로파크) 방문
3. 27. 공익법무관 임용식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3. 31.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4 April

4. 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4. 4. 신임검사 임관식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4. 8.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4. 10. 제1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 13. 창업기업 법률지원 관련 책자 발간식
4. 14.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4. 16. 국민안전다짐대회
4. 17. 『법무부-행정자치부』, 5·9 대선 대국민담화문 발표
4. 20. 북한인권법률자문단 위촉식
4. 24. 대한공증인협회장 등 임원진 예방
치료감호심의위원 감사패 전달
4. 25. 제54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4. 26. 정책현장(여주교도소) 방문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4. 27. 신임검사 임관식
세계헌법학회 수석부회장 등 예방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촉식

법무행정 일지

5 May

5. 2~3. UN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5. 8. 정책현장(강릉교도소)방문
5. 17. 정책현장(인천공항)방문
2017 푸르미 한마음 체육대회
5. 19.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5. 22. 제59대 이창재 법무부차관 이임식
제60대 이금로 법무부차관 취임식
5.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6 June

6. 2.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예방
6. 9. 배상심의회 위원 위촉식
6. 14.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
6. 15. 차관, 세계변호사협회(IBA) 경쟁법 컨퍼런스 오찬 연설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임원진 예방
6. 19. 가석방심사위원회 감사패 증정
6. 23. 일본 법무협력관 예방
6. 28 ~ 30. 제3회 국제인권심포지엄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 개최
6. 30.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
6. 30. 2017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등 포상식

7 July

7. 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컨퍼런스 참석
7. 5. 제3기 O.K. 아카데미 수료식
7. 19.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식
가석방심사위원 위촉식
재외동포 대상 「국적법」 설명회 개최
7. 20.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면담
7. 24. 제29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치료감호심의위원 감사패 전달식

8 June

8. 1. 신임검사 임관식
8. 3.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예방
8. 7.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8. 9.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8. 11.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 21. 법무부 을지연습(8.21~24) 실시
8. 23.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임원진 예방
법무실장 임명장 전수식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8. 28. 대통령 업무보고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
8. 29. 국제 법유전 총회 개회식
8. 30.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8. 3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행정 일지

9 September

9. 1.	법률구조공단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참석
9. 1.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9. 4.	출입국본부장 임명장 전수식
9. 4 ~ 9.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
9. 7.	대한공증인협회장 등 임원진 예방
9. 8.	의정부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
	정책현장(의정부교도소) 방문
9. 12.	전국 고검장 간담회 개최
	출입국심사시스템 '국제정보화상 대상' 수상
9. 15.	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축사
	일본 법무협력관 예방
9. 18.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전수식
	정책현장(안양교도소 및 수원지방검찰청)방문
9. 20.	한국법학원장 예방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간담회
	UN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9. 22.	제52회 교도관 무도대회
	신임검사 강화
9. 20 ~ 21.	재경 및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기념식
9. 25.	감찰위원회 위원장 예방 및 위원 위촉식
	세계헌법학회 회장 예방
9. 26.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9. 27.	서울동부구치소 · 보호관찰소 이전 기념식
	차관, 전통시장(산본시장) 및 사회복지시설(평화의집) 방문
9. 28.	장관, 전통시장(박달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안양의집) 방문
9. 29.	소년원 재능기부자 이만수 · 박정태 감사패 증정식
	인권국장 임명장 전수식
	난민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10 October

10.11. 소년원 밴드부 공연 관람
10.1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10.12.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임원진 예방
10.14. 제4회 다링행사(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위한 걷기 대회)
10.16. 법무부 국정감사
10.17. 교정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방송녹화
10.18.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모바일서비스 개시
싱가포르 공공후견인 관청 청장 방문
10.19.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10.20. 법사랑타운 준공식
10.23. 제11차 교정정책자문단 위촉식
10.24. 제6기 통일과 법률아카데미 개설
10.25.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10.26. 국적증서 수여식 영상메세지 촬영
베트남 중앙사법개혁지도위원회 사무국장 등 예방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10.27.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0.29. 제7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10.31. 법무부 종합감사

법무행정 일지

11 November

11.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진대피훈련 실시
법무부 매일경제 · 선플재단 MOU 체결
11. 2.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촬영
11. 3. 정책현장(광주교도소)방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11. 7.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강평
11. 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제6회 아시아 태평양ADR(대체적분쟁해결수단) 컨퍼런스 참석
11. 9. 제3차 UN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석
11.14.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 참석
11. 14 ~ 18. 한일교도관 친선 무도대회
11.15.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제8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제14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1.16. 부산보호관찰심사위 상임위원 임명장 전수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 후원의 날 행사 참석
11.17. 대한변협회장 오찬간담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참석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사회통합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 대회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1.20. 베트남 수석부총리 예방
당 · 정협의회 실시
성 평등 홍보영상 촬영
11.21. UNHCR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예방
11.22. 부산서부지청 개청식
정책현장(부산구치소, 부산고·지검) 방문
제2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3.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법무부 MOU 체결식
11.24. 전국 지검장 간담회 개최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11 November

11.27. 법무협력관 귀국보고 회의 및 오찬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 2017 발간
교정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용역 발표회 참석
11.29.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예방
범죄피해자 지원 유공자 감사패 증정식
11.30. EU 인권특별대표 예방

12 December

12. 1. 난민위원회
거창군 의회 의장 등 면담
12. 4. 출입국 고위공무원 임명장 전수식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12. 7.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참석
본부배상심의회
2017 개정「민사소송법」해설서 발간·배포
12. 8.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017 우수인권 공무원 포상식
법무부 · 통일부 · 법제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12.12.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 위촉식
12.13. 선진법제포럼 참석
재능나눔프로젝트 공익광고 촬영
12.14. 국군장병 위문 행사
12.15. 올해의 교사상 및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12.19.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
12.20. 법무부 정책위원회
12.21. 정책현장(인천공항)방문
12.2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참석
12.26. 국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12.27. 검찰업무 유공 포상식
블로그 기자단 포상 및 위촉식
12.28. 우수 · 모범공무원 포상식
일본 법무성 부대신 접견
2017 요약 국적판례집 발간·배포
12.29. 2018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발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매년 법무행정의 발자취와 성과를 기록해 온 법무연감이 발간된 지 올해로 서른 해가 되었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은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해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염원을 담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촛불혁명을 촉발시켰던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였고, 중대 부패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불공정행위와 같이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상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년원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무료방문진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처우를 개선하였고, 국민들이 보호관찰과 소년원생 교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심리치료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넓혀 서민과 농어촌·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용자들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벨트형 포승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출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교육과 법률 상담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법무연감이 법무직원들에게는 지난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조금 미흡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법무정책에 관한 이해와 정보공유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법무부장관 박상기

목 차

◆ 법무부 전경
◆ 법무부 기(旗)
◆ 법무부장관 근영
◆ 법무부 간부 일동
◆ 사진으로 보는 2017년 법무부
◆ 법무행정 일지
◆ 발간사

제 1 장 총 설 / 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3
제1항 국정 방향 3
1.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2. 국정목표 :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3. 국정목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4. 국정목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
5. 국정목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
제2항 법무행정의 지표 5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6
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7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 7
4.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9
5.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 11

제2절 기구 · 인원 14
제1항 본 부 14
1. 기 구 14
2. 인 원 17
제2항 소속기관 18
1. 검찰청 18
2. 보호기관 21
3. 교정기관 24
4. 출입국관리기관 26
5. 법무연수원 27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8

제3절 예산과 시설 29
제1항 예 산 29
1. 개 요 29
2. 일반회계 30
3. 교도작업특별회계 34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5
제2항 시 설 36
1. 개 요 36
2. 국민 편의를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36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36

제 2 장 업무실적 / 39

제1절 기획조정업무 41
제1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41
제2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42
1.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42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43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44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44
제3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45
1. 정부업무평가 45
2. BSC 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48
제4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49
1. 개 요 49
2. 완료 지시사항(1건) 49
3. 정상추진 지시사항(7건) 49
제5항 비상대비업무 49
1. 을지 연습 49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49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안전대진단 50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0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50
제6항 정보화업무 50
1.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개선 50
2. 고객중심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50
3.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50
4.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 51
5. 사이버안전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52
6. 고품질 지식 공유·확산으로 법무지식 행정 활성화 52
7. 정보기술 아키텍처(EA)활용 확산 53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정보 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53
제7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55
1. 개 요 55
2. 교육훈련 56
3. 연구활동의 활성화 64
4. 국제교류의 활성화 64
제8항 홍보업무 66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66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66
3. 기관장의 대국민 소통 활동 강화 67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67

제2절 법무업무 69
제1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69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69
2.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69
3.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70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70
5. 국제법무 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70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71
7.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71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72
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도모 73

제2항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74
1. 개 요 74
2. 주요 법령 정비 74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75
제3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76
1. 개 요 76
2.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76
3. 주요 법률문제 검토 76
4. 법무자료 발간 77
제4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78
1. 개 요 78
2. 깨끗한 법률시장 조성 79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79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80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81
제5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82
1. 국제법무교류 지원 82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87
제6항 송무수행의 능율성 향상 89
1. 개 요 89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89
3. 송무업무 실적 91
제7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91
1. 개 요 91
2. 헌법재판 수행 92
3. 위헌법률심판 92
4. 헌법소원심판 92
제8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93
1. 개 요 93
2. 주요 업무 93
3. 소송수행 실적 93
제9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94
1. 개 요 94
2. 주요 내용 94
3. 기대효과 94
제10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전 소송수행청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94
1. 개 요 94
2. 추진 내용 95
3. 기대효과 95
제11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96
1. 개 요 96
2.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96
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96
4. 통일법제 심화 연구 97
제12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97
1. 개 요 97
2.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98
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98
4.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99
5.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100
6.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100
7.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01

8. 법정 최고금리 인하 102
9.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102
10. 선진 상사법제 관련 연구 102
제13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104
1. 제59회 사법시험 실시 104
2.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104

제3절 검찰업무 105
제1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05
1. 국가·사회기강 확립 105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106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107
제2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09
1. 개 요 109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110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110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111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111
제3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12
1. 개 요 112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14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17
4. 국제형사협력 강화 123
5. 형집행 지휘·감독 126
제4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27
1. 개 요 127
2. 형사절차법 정비 추진 128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129
제5항 검찰역량의 강화 130
1. 직제 개편 및 검찰인력의 변동 130
2.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132
3.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134
4.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135
5.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135
6. 검찰시설의 개선 137
제6항 국민의 권익 보호 137
1. 개 요 137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137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138
제7항 미래형 선진 수사시스템 구축 139
1. 기본방향 139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139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142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144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145
6.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45
7. 검찰업무 정보화 147
8.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154
9.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155

제4절 범죄예방업무 158
제1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158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158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59
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160
4. 감호제도의 개선 160
5.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61
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62
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163

제2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164
1. 개 요 164
2.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165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165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166
5.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167
6.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167
제3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67
1. 개 요 167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168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168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170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73
6.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 177
7.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177
8. 민간 법교육 지원 178
9. 법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설립·운영 179
제4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 운동 179
1.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179
2.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181
3. 온라인 '법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182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182
제5항 감호제도의 개선 184
1. 개 요 184
2. 감호의 엄정 집행 185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187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188
제6항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90
1. 개 요 190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190
3.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192
4.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195
5.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196
6.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199
7.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201
8.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203
9.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문화 확산 205
제7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206
1. 개 요 206
2.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206
3. 갱생보호사업 현황 208
4.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211
제8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212
1. 개 요 212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214
3. 개방적 인성교육 217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219
5. 주요 교육성과 221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223

제5절 감찰·감사업무 229
제1항 감찰업무 229
1. 개 요 229
2. 추진상황 229
제2항 감사업무 230
1. 개 요 230
2. 주요 감사실적 230

제6절 인권업무 232
제1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232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232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32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33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233
5.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233
제2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234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34
2. 국제인권활동 강화 234
3. 법의 날 유공 정부초상 전수식 개최 235
제3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35
1. 개 요 235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3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239
제4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42
1. 개 요 242
2.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242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243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44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244
제5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245
1. 개 요 245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245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247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247
제6항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247
1. 개 요 247
2.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 체계화 247
3.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248

제7절 교정업무 249
제1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49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250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50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251
제2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251
1.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251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252
제3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253
1. 수용자 처우 향상 253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259
제4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261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261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62
3.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263

제5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264
1. 개 요 264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264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267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269
제6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271
1. 개 요 271
2. 교도작업 운영실적 272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273
4. 작업장려금 및 조위금·위로금 273
5. 자립형 교도작업 274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275
7.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 275
제7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277
1. 개 요 277
2. 추진배경 278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278
4. 구축 효과 279
제8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279
1. 개 요 279
2. 추진배경 279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280
4. 구축 효과 280
제9항 심리치료센터 운영 281
1. 개 요 281
2. 심리치료센터 현황 281
3. 심리치료 프로그램 현황 281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283
제1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283
제2항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 284
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활성화 284
2.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285
3.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285
4. 안전한 국경관리 286
5. 출입국자 현황 288
제3항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289
1. 외국인 일반연수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289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290
3. 투자이민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290
4. 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 291
5. 체류민원 혼잡 해소를 위한 사전 방문 예약제 확대 및 민원편의 제고 292
6. 농·어·산업분야 인력난 해소 지원 292
7. 외국인 조세체납 징수율 제고 293
8.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293
9.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및 국제대회 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294
제4항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294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294
2. 불법고용 방지 홍보활동 강화 295
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295
4.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295
5.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297
6.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97
제5항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298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확대 298
2.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 등 적응지원 강화 300

3.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301
4.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303
제6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303
1.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303
2. 국적업무 제도개선 304
3. 국적업무 처리현황 305
제7항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307
1.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307
2.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 308
3. 재정착난민의 수용 309
4. 난민업무 처리 현황 310
제8항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310
1.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10
2. 국제협력 강화 312

제9절 법무 · 검찰개혁업무 315
제1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315
1. 개 요 315
2. 진행 상황 315
제2항 검찰과거사위원회 315
1. 개 요 315
2. 진행 상황 316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 317

제1절 개 관 319

제2절 법 률 320
제1항 개정 법률 320
1. 범죄피해자 보호법 320
2. 출입국관리법 320
3. 등기특별회계법 320
4~5. 민법, 가사소송법 321
6. 국가배상법 321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22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22
9. 인신보호법 322
10. 공증인법 323
11. 변호사법 324
12. 한국법학원육성법 324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25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25
15. 변호사시험법 326
16. 출입국관리법 326
17. 형법 327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7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28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29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29
22. 국적법 330
23. 형사소송법 330

제3절 대통령령 332
제1항 제정령 332
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32
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2
제2항 개정령 333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3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4
3. 검사정원법 시행령 334
4. 한국법학원육성법 시행령 334
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5
6. 가석방자관리규정 335
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35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336
9.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336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36
1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7
1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337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38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8
15. 국적법 시행령 338
16. 변호사법 시행령 339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0
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40
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34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1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343
제1항 제정 규칙 34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43
제2항 개정 규칙 343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3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4
3.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344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4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345
6. 검찰사건사무규칙 345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346
8.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46
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46
1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7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7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7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7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48
15. 검찰보존사무규칙 349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49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9
18. 국적법 시행규칙 350
1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1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1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2
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2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2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3

제 4 장 국회업무 / 355

제 5 장 통 계 / 363

제1절 법무업무 통계 365
1. 법무업무 365
2. 국제법무활동 367
3. 변호사·공증 368
4. 국가소송 369
5. 행정소송 371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372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374
8. 헌법재판 현황 375
9. 제59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376
10. 제6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379

제2절 검찰업무 통계 381
1. 검사 수사 사건 381
2. 구속영장 발부 등 390
3. 구속적부심사 391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91
5. 형의 집행 393
6. 사 면 394
7. 형사보상금 지급 396
8. 마약보상금 지급 396
9. 해외연수 396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398
1. 비행소년 선도 398
2. 감호처분 400
3. 보호관찰 410
4. 갱생보호 423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424

제4절 인권업무 통계 435

제5절 교정업무 통계 437
1. 수용자 수용 현황 437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449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453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457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457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458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460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462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464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465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466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67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468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469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470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471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471

자 료 / 473

Ⅰ. 직 제 477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16
Ⅲ. 장관 연설문 533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626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640
Ⅵ. 인 사 687
Ⅶ. 국외훈련·출장 688
Ⅷ. 국제교류 현황 689
Ⅸ. 상 훈 699
Ⅹ. 위원회 현황 711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717

부 록 / 719

◈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제 1 장

총 설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 2 절 기 구 · 인 원
제 3 절 예 산 과 시 설

제 1 장 총 설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 1 항 국정 방향

문재인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불평등과 차별 해소 및 분권과 균형발전을, 대외적으로는 당당한 협력외교 체제 강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엄중한 환경과 동시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 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에 조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여 2017. 5. 10. 국회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공식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하는 등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로 세분류하여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하였다.

그 중 우리 부에서 주관 및 협업과제로 추진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주관)
   - 1-1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1-2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주관)

2-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2-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2-5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협조)
4-3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개선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주관)
6-1 국민 인권 보호 강화
6-2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6-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6-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주관)
13-1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13-2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협조)
14-8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강화

2. 국정목표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협조)
21-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협조)
23-4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협조)
24-1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협조)
25-1 전속고발제 등 법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25-4 집단소송제 등 도입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협조)
28-3 상점가 육성 및 보호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협조)
29-6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확산

3. 국정목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협조)
66-5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4. 국정목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국정목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2. 북한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협조)

92-1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제 2 항 법무행정의 지표

법무부는 국정목표를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을 기본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5대 전략목표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별없이 추진한다' 등 14개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 2017년도 법무부 임무, 비전과 5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7년도 법무부 임무, 비전과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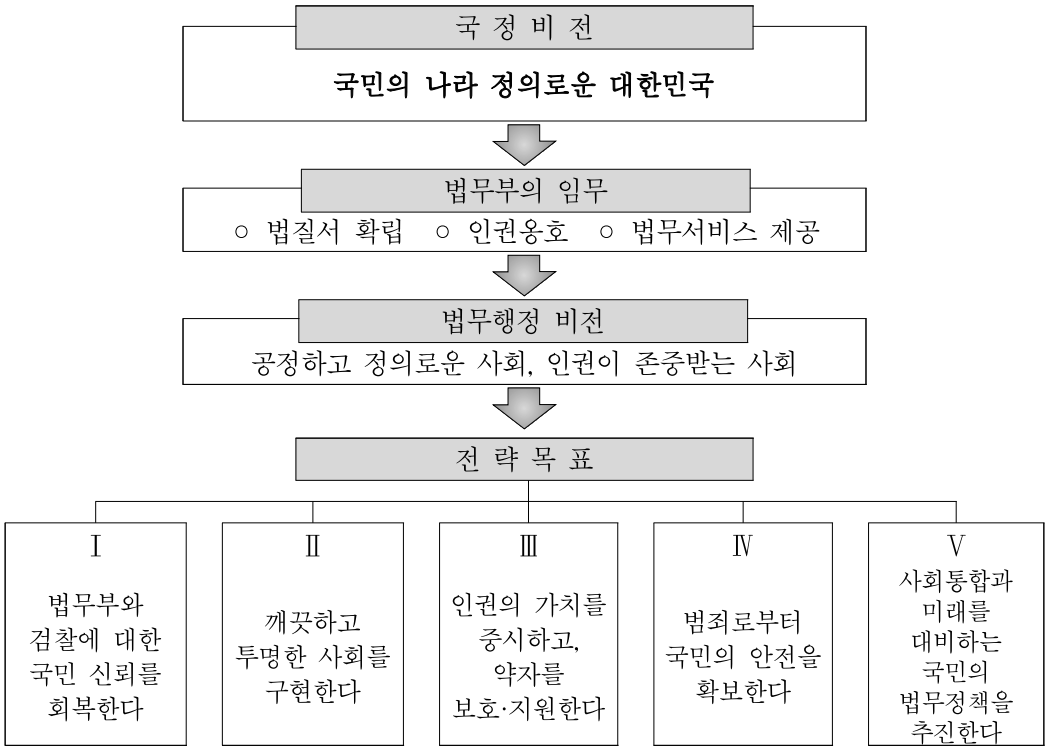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 추진

1)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 등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로 국민 신뢰 회복
2)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및 환원으로 사회 정의 실현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방안 구축 등 검찰기능의 조정·통제 기능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인권 옹호 및 국민 신뢰 회복
4)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검찰청법」개정, 검사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검사징계법」개정,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로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 회복

1)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지위, 권력, 재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권력형 이권개입, 조세포탈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법집행 및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
2)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선거사범의 체계적 단속시스템 확립,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선거 관련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3) 합법·평화 집회 보장, 불법·폭력 집회에는 원칙 대응, 노조의 불법파업·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는 일관된 법집행,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4) 국가송무 피드백 시스템 구축, 검사·공익법무관 국가소송 직접수행 확대, 지속적인 교육·워크숍으로 국가송무역량 강화, 국가송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망 활성화 등으로 국가패소를 방지하여 국가재정지출 절감 및 공정한 법치 실현
5) 사회지도층 범죄인, 중요부패·강력사범 등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소재확인,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요청, 범죄인인도 청구 등으로 국내 송환 추진, 국제공조체제 강화로 국민의 법감정 기대 부응 및 실질적 재외국민 보호
6) 감찰·감사 강화,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찰 강화, 반부패·청렴정책 지속추진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사회 실현

1)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중점 단속 및 구형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
2) 공기업·공무원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적폐 척결
3) 법조브로커, 사이비 언론사범, 교육비리 등 전문직역에 대한 전면적·상시적 단속으로 법률시장의 투명성 및 언론환경 건전성 제고
4) 법조비리 제재강화 및 변호사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법조신뢰성 제고 및 법률비용 절감
5) 비영리·공익법인의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분석, 정기적 회계감사, 공익성 준수 여부 감독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6)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7)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적극적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 근절

나. 경제질서 저해사범 단속

1)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비롯한 금융·증권 비리를 집중 단속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엄단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2)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범죄 집중 단속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조성 및 조세 정의 기여
3)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단속활동, 범죄수익금의 몰수·추징 강화로 피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과 국내 기술산업 보호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

가. 인권 보호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1) UN 조약감시기구 심의 및 UN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 등 국제인권활동 강화, 인권 관계 법령 제·개정,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에 관한 법안 제·개정 지원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2)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인권침해 사건 직접조사 확대 및 신속 구제 기능 강화, 인권침해사건 분석 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심사분석 실시로 법무행정 수행과정의 인권보호 증진
3) 선진 법제와 사회적 공감대에 발맞춘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 정비로 통신수사 남용 방지와 국민 인권보장 강화
4)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실태 파악 및 불법사찰 관련 법령·지침 제·개정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5) 국선변호 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 전담조직 설치로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
6)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축, 수용동 증축 등을 통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며 수용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자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여성·아동 인권 강화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강력 범죄 피해 아동 돌봄비용 신설 및 스마일 센터 확대 설치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피해회복 지원 강화
2) 아동학대 종사자 법교육 강화, 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실시,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젠더폭력 취약 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배치 확대 등으로 성폭력·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권익 보호

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복지 강화

1)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등 사회취약계층에 맞춤형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법률홈닥터 대폭 증원 및 전국 10개 권역별 지원 체계 구축, 대형 재난·사고 시 공동 법률지원단 구성·지원, 이민자가정 대상 상담 및 명절 전 체불임금 집중 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 및 사법서비스 접근권 보장
2) 마을변호사 배정 확대, 찾아가는 현장 상담 강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를 연계한 대형 재난 대비 법률지원단 구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 강화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
3)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4)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자 진술 원칙적 청취,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으로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

5)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정비,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해결 시스템 보완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집합건물 관련 분쟁 감소
6) 스타트업 특화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법률 자문단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 및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4.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엄단

1) 테러 대비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간첩 등 국내외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 군사기밀·전략물자 유출 행위 등 신종 안보위해사범 지속 단속,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제고 등으로 국민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 전담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 강화, 성폭력 관련 지침 개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매뉴얼 정비, 검사의 일선학교 법교육 강연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노력 지속 추진으로 젠더 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우려를 불식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3) 국제공조 및 검찰·세관 합동 수사반을 통해 마약류 판매사범 및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적극 차단, 인터넷·SNS 이용 마약범죄 적극 대응, 청소년 및 단순 투약자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살인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 처벌 등으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4)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등에 대한 특별 단속,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 구속 수사 등 형사 처벌기준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나.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1) 전자감독 대상자 특이정보 공유 확대,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FTX) 등 경찰과 공조강화, 경보대응 시스템 개선 등 신속대응팀 현장대응력 제고, 일체형 전자발찌 소형화 등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 집중면담제 실시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 및 국민 안전 보호
2) 불법체류자 단속 및 자진출국 계도 연중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계기관과 합동 순찰·단속 실시,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에 대한 기획조사, 특별단속 지역 집중단속으로 국민 불안 요인 해소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다양화,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신설, 청소년쉼터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교육 지원 활성화,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이 상습 비행자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로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4)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교·자원봉사자·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범죄 예방 환경 개선
5) 농어촌 어린이, 도서벽지 주민, 학교·지역사회 청소년 등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준법교육, 법질서 캠페인 실시 등 지역맞춤형 정책 실시,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시행으로 준법 문화 확산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
6) 클린스포츠 문화 확산을 통한 범국민 '법질서 실천운동' 추진, 대중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승부조작 방지 등 법교육 실시, 스포츠 스타와 함께 하는 법질서 캠페인 실시, 법사랑 서포터스 운영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로 준법문화 확산 및 법질서 확립 도모

다.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1) 인문학교육, 헌법가치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종교교육, 직업훈련 체험 등 참여형 집중인성교육과 귀휴,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유지프로그램 확대, 중간처우 운영 내실화로 원활한 사회복귀 및 출소 후 안정적 가족관계 유지 도모
2) 취업 유망 종목의 직업훈련 신설, 교육과정 개편,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등 직업훈련과정의 내실화와 작업장 신축,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 활동 강화로 수형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기여
3) 면접조사, 정밀 분류심사, 개별 심층상담 및 심리분석, 위험관리수준(RM)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작업·직업훈련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시, 출소 전 위험관리수준 평가로 재범위험성 완화
4) 성폭력·중독범죄, 아동학대 범죄 및 정신질환자 범죄 수용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한국형 재범성 억제 평가(심리처우 효과성 평가) 도구 개발, 심리치료 효과 미흡자 대상 재교육, 상담 등 사후관리로 강력범죄 재범률 감소 및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유도
5) 의료보조인력 확보, 교정기관 방역,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국가지급 의약품 및 자비구매의약품 공개경쟁 입찰로 의약품 공급의 적정성 도모, 교정

기관 응급처치 관심도 제고 등으로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 보장 및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6) 소년원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와 체계적인 교화교육,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 주거·취업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으로 출원 후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7) 의사 채용방법 다양화 및 의료 인력 확보, 병동시설 현대화·소규모화로 과밀수용 해소,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으로 치료감호소 치료프로그램 내실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8) 범죄유형, 가정환경, 대인관계 등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활용한 맞춤형 처우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실시, 전문 직업훈련교육, 정신질환 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기능 강화로 안전한 사회 구현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9) 기업주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소자 고용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에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실질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한 주거·원호지원,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연계서비스 강화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양질의 전문기능인 양성

5.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주친

가. 사회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대 증설, 환승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요건 완화 등으로 출입국 승객편의 개선 및 관광객 유치 지원

2) 단체관광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 복수비자 발급 확대 및 국제행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뿌리산업체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 외국인 점수제 도입, 해외 우수인재 및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 편의 제공 등 비자제도 및 이민행정서비스 개선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관광산업 고용창출 지원

3)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으로 우범 승객 항공기 탑승 원천 차단,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승객·항공기의 안전 확보 및 국민·외국인의 안전 보장 강화

4) 중도입국자녀 공교육진입 지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실화, 세계인의 날 등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 지원

5) 우수 외국인 유치·활용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연구, 외국인정책 추진 시 정책

수요자, 관계부처, 정책자문가 등 다양한 계층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외국인정책위원회·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이견조정,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제도 정비로 국가성장동력 확충 및 체계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6) 귀화자의 국민 정체성 함양, 귀화 필기 및 면접시험을 사회통합교육으로 일원화,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공로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 및 처우개선으로 국적 취득자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 및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함양

7) 난민 심사절차 개선, 담당자 전문성 및 난민전문통역인 역량 강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으로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등에 대한 권리·처우 개선

나. 미래지향적 법무정책 추진

1) 국제거래규범 성안과정 적극 참여,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등 국제분쟁 대응·예방 및 법적 지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 및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응,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법률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2) 북한의 체제전환 대비 해외사례 심층 연구,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으로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통합단계에서의 법적 혼란 예방

3) 탈북민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법률교육, 하나센터와 공동으로 탈북민 법률지원 실태 점검 및 개선으로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법률지원과 성공적 정착 지원

4)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벌금 집행 제도 개선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형사실체법 정비, 수사환경 개선 및 영상녹화물의 본증화 추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학계 등과 소통 및 협력 강화로 형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도모

5) 화상공증제도 도입, 화상공증시스템 개발과 전자공증시스템 호환성 확보 등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공증 서류의 전자보관 제도 도입으로 촉탁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공증활성화로 국민 편익 증진

6) 시험문제 신뢰도 확보, 공정한 시험 관리,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으로 양질의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다.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

1)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충실성 제고,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정보공개 제도운영 자체평가를 통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절차 적용으로 법무행정 투명성 및 국민 신뢰 제고

2)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온라인을

활용한 법무정책 홍보, 방송뉴스 및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소통,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쌍방향 홍보 네트워크 구축

3)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간 공동 활용 정보 및 정보연계 기관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형사사법포탈 서비스 기능 개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및 형사사법 절차 투명성 확보
4) 스마트접견 관련 단말기 증설 및 프로그램 개선, 스마트접견 대상 확대로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 증대 및 비용절감
5) 민원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교정민원콜센터 구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매체, 간행물 등을 활용한 소통 채널 다양화, 정책고객 맞춤형 정책현장투어 실시로 교정행정 신뢰도 제고
6) 보도자료, 인터뷰, 기고, 정책메일,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정책 홍보 및 홍보 접근성 강화, 정책고객에 대한 출입국기관 현장투어 실시 등으로 정책 신뢰도 향상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 동력확보

라. 법무행정의 지원역량 강화

1) 법무부 홈페이지 메뉴 재배치 등 이용 편의성 증대 및 기능 개선, 외부전문가 · 국민 의견을 정보화 관련 정책 반영,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법무행정 효율성 제고
2)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지진 발생 등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한 예방·개선으로 국민 안전 확보
3) 노후·협소한 법무시설 신·증축 계획·설계 단계부터 국민,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성 제고, 공사 공정률 관리 및 예산 집행률 점검으로 사업 차질을 예방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용자 인권 개선

제 2 절 기 구·인 원

제 1 항 본 부

1. 기 구

본부 기구는 2017.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47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관장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 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 보호법제과, 보호관찰과, 소년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행정과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비행예방교육과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며,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업무와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에는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본 부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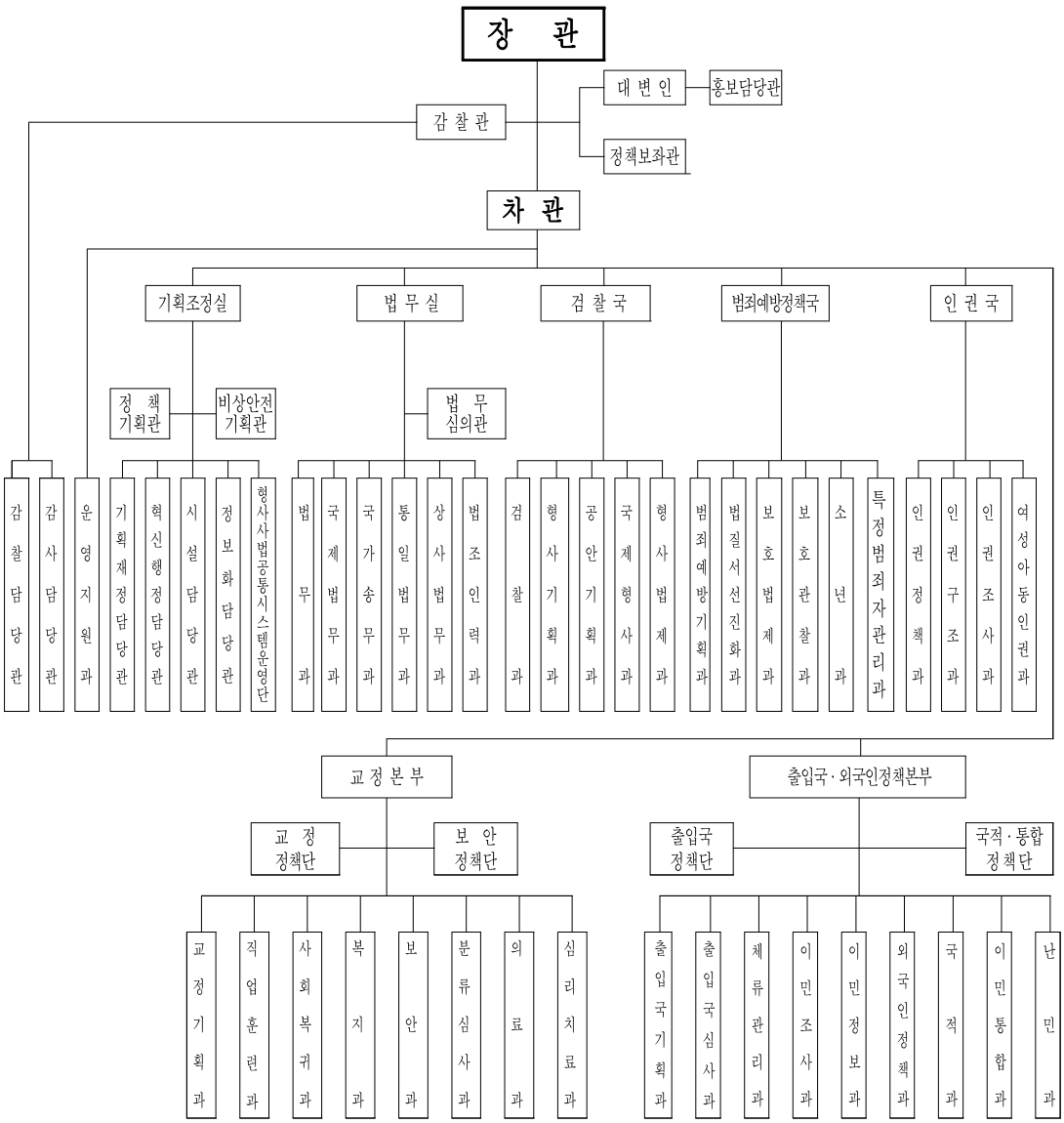

2. 인 원

법무관련 민원·정책 현장점검 등 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2017. 12. 31. 현재 본부 정원 668명 및 현원 662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2>와 같다.

〈표 2〉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668	2	72	590	4
현원	662	2	68	590	2

제 2 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가. 기 구

검찰기구는 2017.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청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 검 찰 청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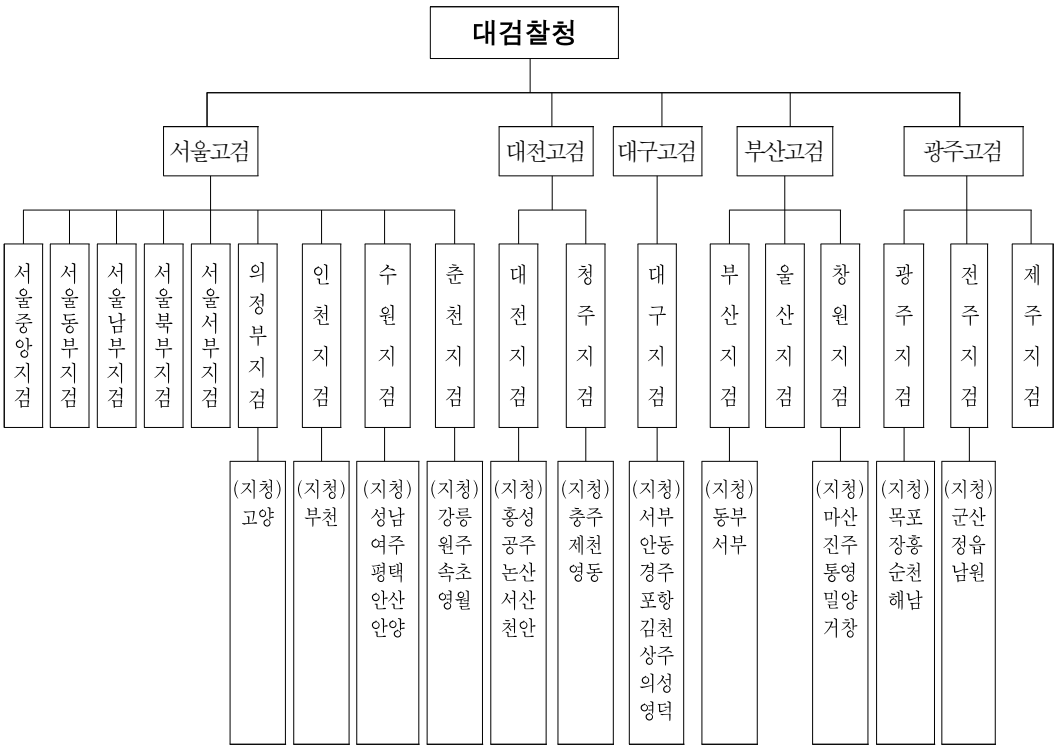

2016. 1. 21. 개정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방위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였다.

2016. 2. 29. 개정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청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5급 1명을 4·5급 1명으로, 연구사 3명을 연구관 3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고등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5급 1명을 4·5급 1명으로, 6급 12명을 5급 12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2016. 5. 10. 개정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및 사이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형사조정과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기법을 활용한 압수 및 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3명, 7급 9명, 8급 7명, 기록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 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8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검찰청 인력 1명(5급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재배정하였다. 또한,「검사정원법」의 시행에 따라 2016년도에 증원된 검사 80명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76명(6급 22명, 7급 26명, 8급 15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 인력을 대검찰청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 감축하였다.

2017. 12. 31. 현재 검찰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별정직
인 원	10,519	2,182	8,336	1

〈표 5〉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182	1,989
검 찰 총 장	1	1
고 등 검 사 장 급	6	6
대 검 검 사 급	31	28
검 사	2,144	1,954

〈표 6〉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337	8,248
고 위 공 무 원 단	25	23
검 찰 부 이 사 관	15	14
검 찰 수 사 서 기 관	181	162
임 기 제 서 기 관	1	1
검 찰 사 무 관 · 수 사 사 무 관	457	405
검 찰 사 무 관 · 마 약 수 사 사 무 관	22	17
검 찰 주 사	1,426	1,412
검 찰 주 사 보	1,815	1,786
검 찰 주 사 보 (속 기 사)	28	27
검 찰 서 기	1,073	1,058
검 찰 서 기 보	830	832
마 약 수 사 직	266	254
통 계 직	1	1
전 산 직	229	221
시 설 · 공 업 직	82	82
사 서 직	4	4
임 업 직	2	2
운 전 직	273	268
방 호 직	157	155
위 생 직	1	2
관 리 운 영 직	1,383	1,463
연 구 직	61	56
전 문 경 력 관	4	3
별 정 직	1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7.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8> 내지 <표 10>과 같다.

〈표 7〉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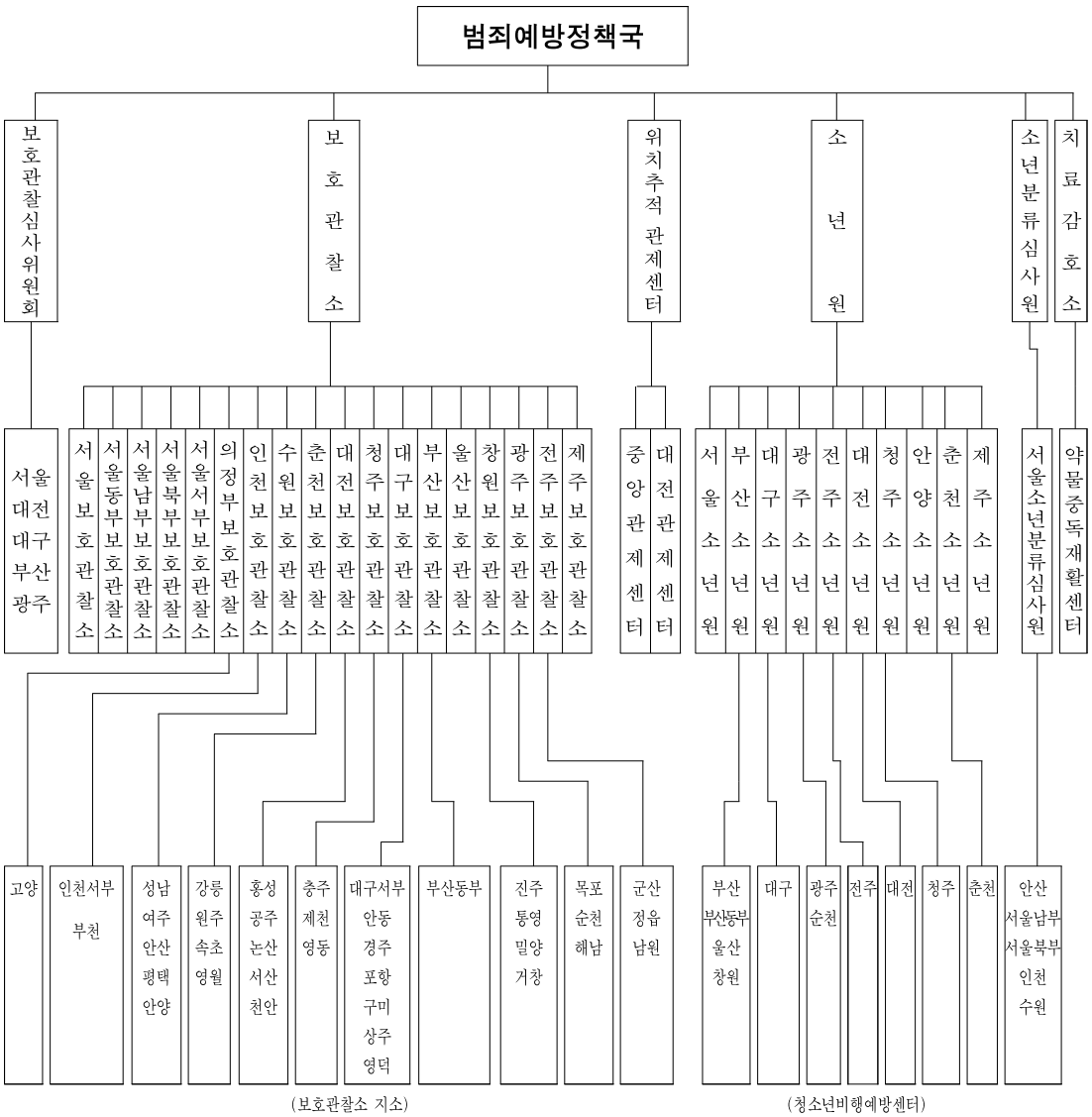

〈표 8〉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574	1,56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3
서기관	28	25
서기관(임기제)	3	3
서기관또는보호사무관	6	5
보호사무관	189	188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258	258
전산주사	2	3
보호주사보	350	344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4	3
보호서기	339	340
공업서기	4	5
보호서기보	300	283
공업서기보	1	2
운전서기보	63	63
방호서기보	15	17
관리운영직	4	15

〈표 9〉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22	799
고위공무원단	2	1
서기관	16	15
기술서기관	9	7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8
보호사무관	45	44
의무사무관	6	6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	0
보호주사	87	86
공업주사	3	3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3	9
보호주사보	157	155
공업주사보	3	6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2	6
보호서기	157	153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4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4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보호서기보	143	141
공업서기보	8	8
식품위생서기보	4	4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0
운전서기보	23	22
조리서기보	54	50
방호서기보	21	23
관리운영직군	16	18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0	19

〈표 10〉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379	363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3	13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1
의무사무관	2	1
약무사무관	1	0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3	3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5
약무주사	2	1
간호주사	22	36
간호조무주사	2	2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5
의료기술주사	1	3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4
간호주사보	51	43
간호조무주사보	6	4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1
의료기술주사보	2	1
시설주사보	1	0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1	2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보호서기	6	5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1
간호서기	53	42
의료기술서기	3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2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0
간호조무서기	15	11
공업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3	3
간호조무서기보	124	126
조리서기보	17	16

3. 교정기관

2017.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속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5,871명이며, 2017. 12. 31. 현재 15,819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산하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1〉 교정기관 조직도

〈표 12〉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5,871	15,819
고 위 공 무 원	19	19
부 이 사 관(교정)	7	7
서 기 관(교정)	97	97
교 정 관	340	340
교 감	1,412	1,405
교 위	1,739	1,618
교 사	5,365	5,234
교 도	5,819	6,055
의 료 직	260	242
식 품 위 생 직	57	56
기 술 직 · 기 타	267	252
운 전 직	261	260
전 문 경 력 관	119	119
관 리 운 영 직	105	112
기 록 연 구 사	4	3

4. 출입국관리기관

2017.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기관은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197명이며, 현원은 2,007명이고, 세부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출입국관리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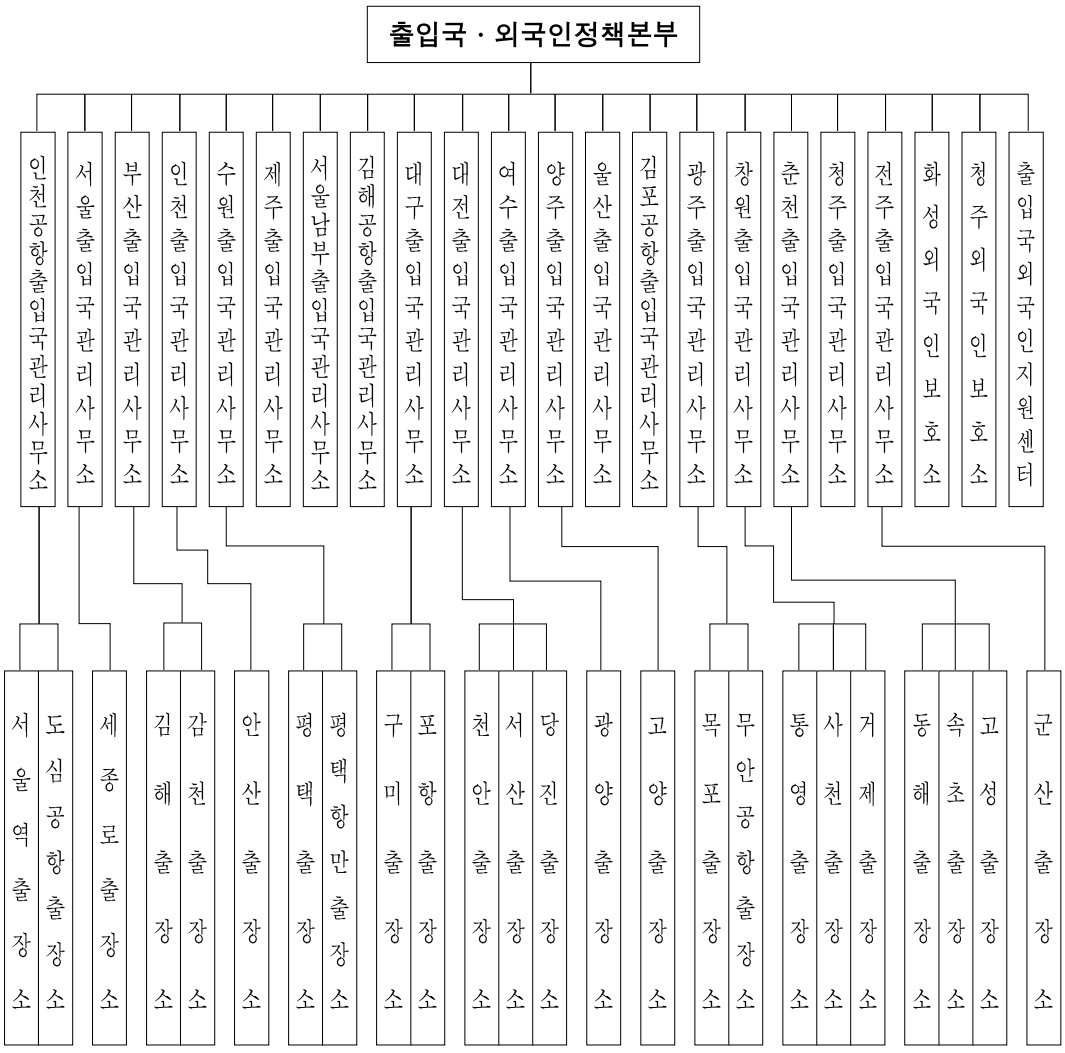

(19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센터, 24개 출장소)

〈표 14〉 출입국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197	2,007
고위공무원	3	3
부이사관	3	1
서기관	26	22
출입국관리사무관	104	96
출입국관리주사	350	326
출입국관리주사보	572	514
출입국관리서기	594	513
출입국관리서기보	428	430
전산직	44	32
의무직	3	3
간호직	3	3
관리운영직군 등	67	64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법무연수원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0	157
검사	14	21
고위공무원	6	2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7	6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19	24
행정주사·교감 등	26	29
행정주사보·교위 등	22	38
검찰서기·교사 등	26	32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10	5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2016. 9. 4.), 그 후속조치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6. 10. 11.)됨에 따라 인권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으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2017. 12. 31.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현원은 <표 16>과 같다.

〈표 1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2	10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2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 3 절 예산과 시설

제 1 항 예 산

1. 개 요

2017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인 교정시설 출소자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와 고효율 에너지 기구 사용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6% 감액된 1조 8,590억 7,100만 원, 세출이 8.0% 증액된 3조 3,853억 5,2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1,011억 8,6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예산	세 입	1,888,761	1,859,071	1,859,071	△29,690	△1.6
	세 출	3,133,579	3,337,774	3,385,352	251,773	8.0
기금	수 입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지 출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세 입	1,801,455	1,756,682	1,756,682	△44,773	△2.5
세 출	3,046,273	3,235,561	3,283,139	236,866	7.8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세 입	87,306	102,213	102,213	14,907	17.1
세 출	87,306	102,213	102,213	14,907	17.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세 입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세 출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2. 일반회계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2.5% 감액된 1조 7,567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7.8% 증액된 3조 2,831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284조 9,450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6%, 세출이 1.2%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2,831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 지원이 68.4%인 2조 2,457억 원, 검찰 활동이 8.6%인 2,808억 원, 교정활동이 9.3%인 3,057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법무시설조성 등 8개 프로그램이 13.7%인 4,509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내역은 <표 2> 내지 <표 4>와 같다.

〈표 2〉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계	3,046,273	3,235,561	3,283,139	236,866	7.8
인 건 비	1,976,343	2,064,045	2,064,045	87,702	4.4
기 본 경 비	137,692	142,636	142,636	4,944	3.6
사 업 비	837,382	948,770	996,348	158,966	19.0
기금전출금	94,856	80,110	80,110	△14,746	△15.5

〈표 3〉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 (B-A)	%
계	837,382	948,770	996,348	158,966	19.0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4,723	4,060	4,060	△663	△14.0
○ 국가배상금지급	55,000	100,000	100,000	45,000	81.8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382	1,244	1,244	△138	△10.0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171	162	162	△9	△5.3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3,438	1,814	1,814	△1,624	△47.2
○ 기업환경지수개선	331	331	331	-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339	1,290	1,290	△49	△3.7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3,095	2,423	2,423	△672	△21.7
○ 변호사시험및사법시험관리	4,221	3,738	3,738	△483	△11.4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486	462	462	△24	△4.9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398	2,001	2,001	1,603	402.8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1,381	1,085	1,085	△296	△21.4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444	564	564	120	27.0
○ 법률구조	45,565	47,742	47,742	2,177	4.8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	2,449	4,235	4,235	1,786	72.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2,494	2,494	2,494	순증
○ 인권교육	219	219	219	-	-
○ 법무검찰조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135	150	150	15	11.1
○ 아동인권증진	180	180	180	-	-
○ 국제인권역량강화및국제인권DB구축	-	91	91	91	순증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1,843	1,843	1,843	순증
○ 이민정책개발지원	317	278	278	△39	△12.3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1,301	1,298	1,298	△3	△0.2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24,917	35,312	35,540	10,623	42.6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3,841	3,815	3,815	△26	△0.7
○ 외국인보호관리	10,502	10,597	10,597	95	0.9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 (B-A)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6,692	10,961	10,961	4,269	63.8
○ 외국인체류질서확립	7,953	7,753	7,753	△200	△2.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3,600	-	-	△3,600	순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5,958	6,532	6,532	574	9.6
○ 검찰청사설운영	36,591	51,467	57,266	20,675	56.5
○ 검찰국외훈련및국제형사협력지원	5,666	5,900	5,900	234	4.1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7,200	10,632	10,632	3,432	47.7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782	782	782	-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9,809	34,292	34,292	4,483	15.0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3,649	13,413	13,413	△236	△1.7
○ 검찰수사지원	10,691	20,027	20,027	9,336	87.3
○ 수사일반	66,428	67,588	67,588	1,160	1.7
○ 공안수사	5,418	6,100	6,100	682	12.6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633	14,287	14,287	654	4.8
○ 마약수사	3,598	5,374	5,374	1,776	49.4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5,133	5,339	5,339	206	4.0
○ 안전비리등민관유착비리사범단속	8,642	9,217	9,217	575	6.7
○ 공소유지	4,673	1,153	1,153	△3,520	△75.3
○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1,568	1,485	1,485	△10,083	△87.2
○ 형사보상	25,000	27,500	27,500	2,500	10.0
○ 형사법정비	472	439	439	△33	△7.0
○ 교도소행정지원	19,424	21,382	21,382	1,958	10.1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45,296	48,631	87,543	42,247	93.3
○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169,229	189,240	189,240	20,011	11.8
○ 교정교화	8,165	7,512	7,512	△653	△8.0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7,185	6,033	7,385	200	2.8
○ 소년원생수용	15,661	16,983	16,983	1,322	8.4
○ 청소년비행예방	4,984	5,058	5,058	74	1.5
○ 갱생보호활동	24,831	27,218	28,183	3,352	13.5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6,964	7,552	7,552	588	8.4
○ 보호관찰활동	9,034	10,150	10,150	1,116	12.4
○ 특정범죄관리	13,657	14,845	14,845	1,188	8.7
○ 법질서준수및법교육활동	5,231	4,829	4,829	△402	△7.7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 (B-A)	%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14,922	13,392	13,392	△1,530	△10.3
○ 법무시설및장비관리	8,542	-	-	△8,542	순감
○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3,280	4,046	4,368	1,088	33.2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488	1,364	1,364	△124	△8.3
○ 법무연수원수입대체경비	549	512	512	△37	△6.7
○ 로스쿨출신신임검사교육및로스쿨지원	962	887	887	△75	△7.8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717	717	717	-	-
○ 국민불편해소를위한민원정책피드백	135	135	135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2,849	2,849	2,849	순증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6	46	△2	△4.2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27,960	27,472	27,472	△488	△1.7
○ 서민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889	887	887	△2	△0.2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7,987	8,148	8,148	161	2.0
○ 특별감찰활동	1,250	1,213	1,213	△37	△3.0

〈표 4〉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계	3,046,273	3,235,561	3,283,139	236,866	7.8
○ 법무활동	76,409	119,174	119,174	42,765	56.0
○ 인권활동	48,548	56,954	56,954	8,406	17.3
○ 출입국관리	65,081	76,546	76,774	11,693	18.0
○ 검찰활동	248,954	274,995	280,794	31,840	12.8
○ 교정활동	242,114	266,765	305,677	63,563	26.3
○ 범죄예방활동	87,547	92,668	94,985	7,438	8.5
○ 법무시설조성	23,464	13,392	13,392	△10,072	△42.9
○ 특별감찰관활동	2,405	2,408	2,408	3	0.1
○ 법무교육훈련	6,279	6,809	7,131	852	13.6
○ 행정지원	2,150,616	2,245,740	2,245,740	95,124	4.4
○ 기금전출금	94,856	80,110	80,110	△14,746	△15.5

3. 교도작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022억 1,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718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1억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3억 2,8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12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9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9,600만 원, 교도작업 496억 1,000만 원, 직업훈련 56억 7,500만 원, 시설보완 22억 1,500만 원, 예비비 4억 7,500만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436억 4,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계	87,306	102,213	102,213	14,907	17.1
교도작업수입	59,601	71,883	71,883	12,282	20.6
전년도이월금	17,077	17,100	17,100	23	0.1
잡 수 입	318	328	328	10	3.1
기금예탁원금회수	9,770	12,000	12,000	2,230	22.8
기금예탁이자수입	540	902	902	362	67.0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		2016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B)	증△감 (B-A)	%		
계	87,306	102,213	102,213	14,907	17.1		
기본경비	590	596	596	6	1.0	· 운영비 등	596
교도작업	45,693	49,610	49,610	3,917	8.6	· 작업재료비 · 보 상 금 · 일반수용비 등	22,051 20,646 6,913
직업훈련	3,453	5,675	5,675	2,222	64.3	· 훈련재료비 · 훈련강사료 · 일반수용비 등	1,921 3,007 747
시설보완	2,215	2,215	2,215	-	-	· 공장 개·보수 등 · 작업장비구입비	1,115 1,100
예 비 비	500	475	475	△25	△5.0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금	34,855	43,642	43,642	8,787	25.2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18억 6,900만 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7억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01억 1,0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10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370억 2,6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289억 7,2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82억 9,700만 원, 운영비 5,400만 원, 여유자금 175억 2,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 기금 (A)	2017 기금		2016 대비	
		본예산	추경(B)	증△감(B-A)	%
계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변 상 금	223	724	724	501	224.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2,701	21,035	21,035	8,334	65.6
전 입 금	94,856	80,110	80,110	△14,746	△15.5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6 기금 (A)	2017 기금		2016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B)	증△감 (B-A)	%	
계	107,780	101,869	101,869	△5,911	△5.5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	36,514	37,026	37,026	512	1.4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 활성화, 범죄피해구조금 등 6개 사업
여가부범죄피해자보호	34,554	28,972	28,972	△5,582	△16.2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5,628	18,297	18,297	2,669	17.1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운 영 비	49	54	54	5	10.2	
여 유 자 금	21,035	17,520	17,520	△3,515	△16.7	

제 2 항 시 설

1. 개 요

법무부는 검찰·보호·교정·출입시설 등 각 시설별 사무환경의 특성에 맞는 '고객 중심의 맞춤형 법무시설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 재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협소시설 개선 및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법무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롭게 조성한 청사 등 법무시설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업무수행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친화를 위한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법무시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국민 편의를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청사 전면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건물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그린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준공사업의 경우 중앙지검 구치감 증축,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의정부지검 제2신관 증축, 천안지청 신축, 검찰특수기록관 신축,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영덕준법지원센터 신축,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소 신축, 군산교도소 비상대기소를 증축 하였고, 서울시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 내에 서울동부 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구치소, 비상대기숙소, 어린이집 등 5개 시설을 서울시 SH공사에서 조성하여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14년부터 추진하여 '17. 3. 준공하는 등 10개 사업을 연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신규사업은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평택지청 증축, 부천지청 별관 증축, 남원보호관찰소 신축,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신축, 대전고검 어린이집 신축으로 총 6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전주지검 신축, 대구교도소 신축, 거창구치소 신축, 속초교도소 신축, 전주소년원 신축,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수원고·지검 신축으로 총 7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356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668억 원(49.3%), 보호시설에 217억 원(16.0%), 교정시설에 298억 원(22.0%), 출입국관리시설에 159억 원(11.6%), 법무연수원 등에 14억 원(1.1%)을 집행하였다.

2017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2017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공 사 명	규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사기간
		부지	건물		
준공 (10)	중앙지검 구치감 증축	60,727	998	22	'17.04.~'17.12.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18,182	21,847	654	'15.10.~'17.09.
	의정부지검 제2신관 증축	17,530	422	9	'16.12.~'17.06.
	천안지청 신축	23,140	16,506	710	'14.12.~'17.10.
	검찰특수기록관 신축	6,610	9,323	392	'14.12.~'17.09.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33,800	5,706	97	'15.10.~'17.06.
	영덕준법지원센터 신축	1,617	1,296	23	'16.07.~'17.07.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소 신축	12,350	4,251	75	'15.12.~'17.07.
	군산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182,890	998.8	26	'16.12.~'19.10.
	문정 법무시설 신축*	68,336	132,433	2,007	'14.08.~'17.04.
신규 (6)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13,818	8,342	174	'17.08.~'19.08.
	평택지청 증축	7,630	1,317	31	'17.12.~'18.11.
	부천지청 별관 증축	20,000	6,303	150	'17.12.~'19.12.
	남원보호관찰소 신축	1,534	1,230	26	'17.05.~'18.04.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신축	11,570	9,917	204	'17.12.~'19.12.
	대전고검 어린이집 신축	32,055	990	23	'17.12.~'18.12.
계속 (7)	전주지검 신축	33,235	26,216	734	'16.12.~'19.10.
	대구교도소 신축	280,572	60,760	1,746	'16.11.~'19.10.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835	'15.12.~'18.10.
	속초교도소 신축	140,965	19,465	647	'16.07.~'19.06.
	전주소년원 신축	34,756	9,013	272	'16.12.~'19.02.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22,507	2,056	63	'16.12.~'18.06.
	수원고·지검 신축**	33,924	68,962	2,133	'16.11.~'19.01.

* 서울 SH공사 교환사업 :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구치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사업 : 수원고·지검

제 2 장

업 무 실 적

제 1 절 기 획 조 정 업 무
제 2 절 법 무 업 무
제 3 절 검 찰 업 무
제 4 절 범 죄 예 방 업 무
제 5 절 감 찰·감 사 업 무
제 6 절 인 권 업 무
제 7 절 교 정 업 무
제 8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 2 장 업 무 실 적

제 1 절 기획조정업무

제 1 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법무부는 정부의 2017년도 규제개혁 기조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원칙에 따라 경제 활성화 지원과 국민 불편 개선 규제정비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에 노력하여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상가 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더 많은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요건인 정신질환 입원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도 현행 장해 10등급까지에서 14등급까지로 확대하였다. 「민법」을 개정하여 친생자 추정제도를 개선하였는데,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과 같이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혈액형 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등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저촉·중복법령을 일괄정비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결의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의사록의 인증을 면제하는 경미한 등기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참석인증과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인법」 제16조에 따른 직무집행 구역 제한 예외에 해당함을 규정하여

법인의사록 인증과 유언공증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으로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활동(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숙련기능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단체 환승관광 관련 법무부에 제출하는 단체여행객 명단 제출기한을 입국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개선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집중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제 2 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과제의 연중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역량, 소통공감능력, 변화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소통·조화·배려를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1.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사랑 타운 사업 시범 운영' 등 국민체감형 중·장기 행정제도 개선과제 5개를 발굴하여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7년 868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지침」 개정',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 개선' 등 130건을 채택하였으며, 채택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소속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표창 등 동기부여 방안을 다양화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 유도를 통한 행정개선 제도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 외국인 관리를 통한 조세 징수율 제고',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전면 시행' 등 자체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에 대하여 포상하고, 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13개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2,227명의 직원을 교육하였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변화를 선도할 상상력 있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감수성·공감·소통 강화, 문제해결능력 강화 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구성하였다.

금년도에 기관방문, 예술로 소통하는 '비전 스케치 교육과정'을 신규로 편성하여 조직 내 화합, 비전수립, 이해와 배려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공감능력을 강화하였고 15개 소속기관이 참여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법무부에 기여한 바가 큰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충전 감성여행'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 및 제2막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스트레스 노출이 많은 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힐링캠프'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80명이 참여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스트레스 치유와 감성회복 등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가족과 함께하는 '법무가족 행복캠프' 교육과정을 운영, 가족 간 정서적 힐링과 감성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구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행정개선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고, 그밖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직무전문성 향상, 협업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조직문화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으로 바뀌기 어려운 오랜 관행과 조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 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와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근무여건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 '배려와 격려로 자긍심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성공의 핵심인 만큼 조직 구성원들의 동참을 위해 기관장, 부서장 등 간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으로 적극적인 조직문화개선을 추진하였다.

조직문화개선은 단기적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 중 호응도가 높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계속하여 조직문화개선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장관이 쏜다'를 연 2회 실시하여 소속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전 직원에게 간식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본부와의 일체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감을 한층 고취시켰다.

또한 미담·칭찬 게시판을 내부망 이외에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칭찬합시다' 코너를 신규 개설하여 국민들이 직접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직원을 칭찬해줌으로써 국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국민과 양방향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힐링 프라이데이 지정',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기', '지역축제 참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호회', '사랑의 손잡기',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장터 가는 날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직문화개선 활동은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 재능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람 있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제도 운영

법무부는 중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47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중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중 일정 요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문관에게는 수당 및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법무시설 조성 총괄, 재난관리 담당 등 6개 전문직위를 신설하였고, 2017.12.31. 현재 32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였다.

나. 직원 교육훈련 강화

공직가치 교육으로 직원의 공직관을 함양시키고 청렴, 양성평등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밖에 직렬별 맞춤형 직장 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높은 교육 참여 열기로 2017년도 상시학습 기준시간(일반직 1인당 90시간)을 초과한 이수자 비율은 97%였고,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교육은 기준시간(4급 이하 1인당 7시간)보다 10시간을 초과하였다.

다. 적재적소 인사운영 구현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경쟁채용(변호사 8명, 의사 10명, 약사 3명 등)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제 3 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 정부업무평가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그 성과가 점검·평가되고 있다. 2017년도 법무부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특정평가는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부문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자체평가 부문

1) 주요정책 평가

우리 부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개 전략목표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14개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5개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75개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매우우수 3개(4%), 우수 18개(25%), 다소우수 9개(12%), 보통 22개(30%), 다소미흡 12개(15%), 미흡 7개(9%), 부진 4개(5%)로 평가 받았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검찰·경찰 협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한 전자불기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17. 8.), 형사사법포털 웹에서 지원하는 경찰·검찰 사건번호 찾기 편의 기능을 모바일 앱에도 적용하는 등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였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하고, 여수수산시장·대구서문시장 화재,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 시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13세 미만 강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신설, 간병비·요양치료비 지원 한도액 상향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각 검찰청별 심리지원단 구성·운영,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으로 실시하였다.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 재배치정원제 시행, 행정지식 공유, 국민제안 채택·실시 등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소통·협업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국정과제교육 및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 등 능력개발,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 분야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추진실적은 공안직 비율이 높은 법무부 특성상 다소 미흡하였다.

정보화관리 부문에서는 'EA 성숙도 모델'을 활용한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영상회의 활성화, 국가정보화시스템 구축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특정평가 부문

1) 국정과제

2017년도 우리 부 평가대상 국정과제는 1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6번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3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며, 우리 부 평가결과는 '보통'을 받았다.

1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과제는 수사검사로 구성된 특별공판팀 운영, 특검에 검사 파견 등 국정농단 연루자의 공소유지 및 책임 규명에 만전을 기하여 국정농단 등 적폐로 인해 훼손된 공적가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재산 추징보전(77억여 원) 및 국외재산 환수를 위해 독일 당국과 실무회의 개최 등 사법 공조 추진,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및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등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번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과제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과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입법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지속적·집중적 단속 실시로 부정부패를 척결, 사면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뇌물·횡령·배임 등 공직자·경제인 부패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특별사면('17.12.30.)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6번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과제는 법무행정 쇄신방향(10월),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법무·검찰개혁위, 12월) 등 새로운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12월)으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 등 자성적 노력을 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권·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13세 미만 범죄피해아동 돌봄비용 신설 및 간병비·요양치료비 지원한도액 상향(9월), 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마련(12월),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의정부, 9월), 각 검찰청별 '심리지원단' 구성·운영(2월~) 등 심리지원 체계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법률홈닥터 증원(40→60명)으로 전국 60개 지역에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17. 10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시, 이전 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분석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다각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3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과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법 권고안 발표(9.18.)에 따른 법무부안 마련(10.15.)과,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9월)하고, 국장급 이하 검사 단수 직위(총 58개 중 39개)에 비(非)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10월)하는 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청 단위 특수 전담부서 폐지 등 형사부를 강화하는 검찰조직 개편으로 민생사건 수사 역량의 강화 및 인권감독관 신설, 변론기일제 시범실시 등으로 인권옹호 기능과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고, 고검 복심화, 판결확정 전 평정 제도 도입으로 사건처리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검찰 내부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기관공통사항

기관공통사항 평가 중 특정시책 분야는 '우수'로, 현안관리·갈등관리·인권개선분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현안관리 분야에서는 총 8개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접수하여 1개를 완료하고 7개를 추진 중으로, 집행이행도, 시스템 활용도는 우수, 추진계획 충실도는 미흡으로 향후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갈등과제 관리는 양호했으나, 갈등관리 제도운영과 성과의 미흡으로 '보통' 평가되었고, 향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성과 부분 등 저조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권개선 분야에서는 권고 회신 의무기간 준수 및 수용 권고에 대한 이행실적('17. 12. 기준, 권고 사항 6건 모두 의무기간 내 회신 및 수용)은 우수하나, 권고 전 자체 인권이슈 발굴·개선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정시책 분야는 장애인 고용률 5.2%(의무 3.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31%(의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81.8%(의무50%),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29.5%(의무 10%) 등 법정 의무비율을 초과달성하여 4개 부분이 전년보다 모두 0.1점씩 상승하였다.

다.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은 국무조정실에서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환류의 적절성' 및 '제도 운영의 충실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2017년 평가에서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제도 운영의 충실성'은 평가 대상 전체평균 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환류의 적절성'에서 타 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2. BSC 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가. BSC 제도 운영

법무부는 매년 BSC제도 운영 세부사항과 연간 일정을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해왔다. BSC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충실한 집행으로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성과급·교육훈련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법무부는 조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예산 등에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BSC성과관리시스템에서 액티브-X를 완전배제하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에 따른 표준화 시스템 구축, e-사람·법무부통합계정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연계,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뉴 재배치 등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재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부 및 소속기관

내 860여 개 부서, 2만여 명에 대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사용자의 오류가 70% 이상 줄었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증진되었다.

제 4 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1.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이다.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 추진계획 수립, 효율적인 이행 및 실적 등록 등 체계적인 지시사항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 정부 출범이후 2017. 12. 31. 까지 총 8건의 지시사항이 시달되어, 1건을 완료하였고 7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2. 완료 지시사항(1건)

○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3. 정상추진 지시사항(7건)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
○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
○ 국적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

제 5 항 비상대비업무

1. 을지 연습

2017년도 을지연습(8. 21.~24.)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를 대비한 국가총력전 연습을 실시하였고, 훈련 중 장관 주재 하에 '전시 북한지역 인권침해 조사 및 지원대책(중통단 토의과제)' 등 6개 실·국·본부의 전시 주요 안에 대한 토의와 방호훈련 등의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2. 비상대비계획 수립·실시

전시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법무집행계획'과 '자체충무계획'을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을지연습 20문답' 및 '2017년 비상대비 업무추진 백서'를 발간하여 비상대비업무 숙달에 기여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 후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에 의한 연간 비상대비 정책발전 유공에서 장관표창

(개인표창)을 수상하였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분야에서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3. 법무시설 방호 실태·재난관리 실태 점검, 안전대진단

3개 교정시설의 방호 실태와 32개 소속기관에 대한 재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방호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용시설의 재난 발생 원인 제거 및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하였다. 그리고 1,525개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통해 민관합동점검의 필요성과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 30.~11. 3.)은 '풍·수해 대응 훈련', '화재 대응 훈련', '지진·해일 대응 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 본부 및 전 기관이 참가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기관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다. 또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예비군·민방위대의 제대 편성과 동원 훈련, 향방 훈련 기본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제 6 항 정보화업무

1.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개선

2017년 모든 정보화사업의 기획(예산) 단계에서부터 중복·연계성 및 보안성, 관련 법규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 계획 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정보화 관리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역량을 향상시켰다.

2. 고객중심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대민서비스 주요정책을 실·국·본부별로 메인화면에 노출시켜 우리 부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의 정책이행 참여 활약상을 소개하는 코너 신설 등 고객 위주의 정보접근성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요소를 파악·조치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지정 인증마크 획득)하여 제약 없이 양질의 대국민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다.

3.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년 7월)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향상 되었으나, 자료유출 사건 등의 사이버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부는 민감한 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므로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조사, 법무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확대적용, 용역자료 중앙관리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유해트래픽 차단·분석시스템 적용,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소속기관 망분리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전사적 통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태점검,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반 직원, 담당자, 취급자,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보안소식지 발송, 사이버진단의 날 운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인식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94.01점(중앙행정기관 평균 : 88.86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우리 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의무사항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근절되도록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4.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

지난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3년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테러, 2015년 한수원 자료유출 사건 등 매년 사이버 정보보안 사고의 증가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확보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특히,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미분리, 매체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악성코드 유입,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가 상용메일과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해 외부로 무단 유출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가상화 방식 으로 분리하여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유통을 차단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한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업무자료 유통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등 법무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에 노력하였다. 우리 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방지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업무용-인터넷용 PC의 망분리 및 휴대용저장매체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5. 사이버안전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2017년도는 전 세계 랜섬웨어의 확산, 변종 출현 및 대선 전후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국면,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한 해였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부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22개)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악성코드·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취약점을 진단·조치하였으며, 법무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5~6월)을 실시해 직원들의 메일해킹과 게시판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이버 공격 방지 및 중요자료 유출 예방에 노력하였다.

또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직원의 보안인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소식지 발간(월 1회)', '정보보안교육 실시(연 3회)', '정보 보안 워크숍 실시(5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사이버안전체계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로그분석 시스템, 유해트래픽 차단 솔루션 도입 및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대응 업무(535건), 모니터링 업무(73건) 등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관제 강화 및 탐지패턴 자체 개발(35건)을 시행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6. 고품질 지식 공유·확산을 통한 법무 지식 행정 활성화

2017년에도 업무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의 법무 지식등록 및 지식 공유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어, 업무 개선사례, 업무 노하우, 연구결과 등 품질 높은 지식등록을 권장하고, 우수 지식인 선정도 BestPractice, 창작·개선지식 등 고품질 지식등록자 위주로 하였다. 또한 지식활동에 대한 동기 유발 및 숨겨진 우수지식 발굴을 위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법무지식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지식 및 기존 등록 지식을 보완·재구성한 지식 등 총 82건을 응모 받아 우수지식에 대해 포상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다. 성과 중심의 우수학습동아리 양성을 위해 연구성과가 업무정책에 반영된 '바른급식사랑방' 등 학습동아리(6개 동아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연구비 지원에도 응모하여 지원비를 수령하는 등 (1개 동아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수지식인에 대한 포상으로 지식활동이 뛰어난 우수지식인(20명)을 분기마다 선정, 포상하고 연말 올해의 지식인으로 선정된 직원(4명)에 대해 인사 가점을 부여

하는 등 지식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보상이 뒤따르게 하였다. 또한 우수지식인, 지식검증자, 마일리지 우수자 및 학습동아리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행정 리더역량 강화 교육(4월)을 실시하여 지식우수사례 공유, 지식행정 발전방향 논의 등 소통을 통한 법무 지식행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7.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활용 확산

정보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자정부법」 제4조에 의거,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부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안 요구에서부터 사업계획까지 체계적인 법무행정 정보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업무 역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보화사업 계획 및 진행·완료 시에 EA 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 활용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담당자와 일반 업무담당자에 대한 EA 교육 및 홍보를 통해 EA 활동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전문역량을 제고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EA담당자와 정보화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EA개념 및 활용, 성숙도평가에 따른 EA정보등록 및 현행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정보자원의 최신 자료 유지를 위하여 기존의 연2회 등록방식을 상시 등록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기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 측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보화예산의 중복투자를 지양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모색하였다. 또한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시행 시 정보화사업계획서, 발주정보, 계약 정보, 사업완료 시점의 산출물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정보들을 EA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정보자원이 지속적으로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수준이 최적화 단계에 도달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부문에서 96.4점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평균 74.13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정보 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개방과 공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구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은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상등록정보 등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17. 8.에는 법무부·검찰·경찰 협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불기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작성서류가 간소화 되어 문서 비용 절감 등 검·경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 되었고 당사자의 수사기관 출석 최소화로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시스템을 오픈한 이래 400여 종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 등 약 70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일 230만 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4,850만 건, 사건정보 등 누적 유통건수 약 44억 건, 전자약식 누적 처리건수 667,079건, 전자불기소 누적 처리건수 9,659건,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 접속 월평균 2,461,425건, 사건진행 조회 월평균 695,027건, 벌과금 조회 월평균 151,143건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정보공동활용 관련 '출국규제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 및 '경찰 고도화 사업 위한 149종 연계 변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및 IOS(아이폰)에도 제공하여 모든 휴대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면 실시하는 한편, 형사사법포털 웹에서 지원하는 경찰/검찰 사건번호 찾기 편의 기능을 모바일 앱에도 적용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에게 홍보용 물품과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엄격한 KICS 서비스수준관리(SLA)와 기존 운영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사업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나. 전세계 유례가 없는 독보적 IT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수출 기반 마련과 법무한류 실현

전국 단위의 5개 형사사법기관이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형사사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스템으로 이란, 카자흐스탄, 페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도미니카공화국, 오스트리아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17. 4. 미국, '17. 11.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 방문 시 KICS를 소개하였고 '17. 6. 29. 이란 대법원 전자사법서비스센터 책임자 방문, '17. 9. 4. 카자흐스탄 법무부 공무원 방문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KICS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법무 한류를 실현하고 있다.

다. 법무부, 검·경간 범죄통계의 표준화 및 통합화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은 형사사법 기관 간 통계 수치의 불일치, 통계산출의 복잡·불편성, 기관 간 통계정보 공유 기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BPR(업무 및 프로세스재설계)/ISP(정보전략계획) 사업, 2015~2017년에 걸쳐 형사 사법 통계시스템 구축(1·2·3단계)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경 간에 범죄분류체계 및 산정방식을 표준화 하였으며, 법무부 통계시스템(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소)과 형사사법 공통/기관 통계시스템 및 내부 포털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또한 범죄분류체계 표준화를 기반으로 표준화 통계, 공공데이터 기반 통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비정형 통계 등 통계 제공을 다양화하고 통계산출 기반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 통계 표준체계 수립, 통계산출의 신속성, 형사사법 기관 간 범죄통계 공유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범죄분석, 범죄예측, 범죄예방 등 형사사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7 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1. 개 요

법무연수원은 사명감과 열정, 전문성과 공직윤리를 겸비한 법무·검찰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검사교육과정을 신임검사·경력검사·부장·지청장·차장검사·검사장 등으로 단계화하여 체계적인 직무·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신임검사 교육에서는 조사·신문기법 향상을 위해 실제 사례중심의 실습형 과정(Role Play)을 강화하고,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의 경우도 기록연습(조서 및 결정문 작성)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였다. 전문과정의 경우 교육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복 과정을 통폐합하고, 저호봉검사의 조사신문 능력 향상을 위해 조사신문 기법 과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검사교육과정에 검찰제도의 역사, '인권·정의·공정 등 헌법의 기본가치', '법무·검찰의 근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운영하는 등 인권과 헌법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7.10.~12.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시행될 검사교육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사시 출신 신임검사,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등에 대한 '신임검사 통합교육', 경력검사과정과 리더십과정을 단기·분산방식에서 장기·집중 방식으로 개편하는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전문분야

교육을 '목표중심(Target형) 단기교육(1~3일)'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반직 교육과정은 신규자교육과 승진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세분화된 직무별 교육인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신규자과정은 비직무과목 선택 합격자 증가에 따라 법률교육 등 직무교육을 중점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직무이해도 증진에 노력하였다.

한편,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법무·검찰 공무원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통합입교식'을 실시하고, 인문·소양 위주로 여러 직렬의 교육생이 강의를 듣는 '통합강의'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용인분원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6기 신임검사, 제3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신임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 신임검사 총 50명을 대상으로 원내 교육과 일선청 실무실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의 검찰일반실무실습, 검찰심화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사경수사실무과정, 국가송무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법조인 등 초청 연수 과정을 10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 교육훈련

가. 기본방향

2017년 교육의 목표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 법무·검찰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사명감과 열정을 갖춘 인재', '전문성과 공직윤리를 겸비한 신뢰받는 인재', '미래를 이끌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나. 교육인원

2017년에는 <표 1>과 같이 총 853개 과정, 7,206회, 173,158명(집합교육 186개 과정, 289회, 10,917명, 사이버교육 667개 과정, 6,917회, 162,2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세부 추진실적

일선기관 의견수렴,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대검 등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5년간의 교과목 편성자료 검토, 세부교육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과목을 시의성 있게 개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검사는 2017년에 25개 과정, 45회, 1,033명을 교육하였다. 과정별 주요과목 중심으로 '생각의 화두'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검찰제도의 취지와 배경, 헌법상 역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근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12개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 검사를 핵심강사로 선정, 보직에 무관하게 장기 출강토록 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정에 5주(주2회, 총10회)의 입교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4쿼터별(10개월)로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 방법 개선을 위해 진술 위주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사안과 객관적 물증확보 방법을 교육하는 등 핵심 직무능력 배양과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일반직(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은 85개 과정, 96회, 2,802명을 교육하였다. '검찰인사실무', '보호직 9급 경채신규자', '출입국 직무스트레스과정' 등 11개 과정을 신설하고, '호송・인치교육', '보호관찰지도감독', '출입국사범실무' 등 32개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교육설문 및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6개 과정을 폐지하였다.

교정직은 55개 과정, 90회, 4,429명을 교육하였다. '외국교정제도의 비교연구', '외국인 수용자관리' 등 9개 과정을 신설하고, '교정인권감수성', '분류심사실무' 등 172개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8개 과정을 폐지하였다.

법무·검찰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과정을 통해 법무・검찰의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리더십 함양에 노력하였다. 검사장·차장 등 간부급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직 5급 이상 간부 등 법무・검찰의 중견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총 16개 과정, 23회, 394명을 교육하였다.

강의를 전담하는 검사 교수 10명(파견 3명), 일반직렬(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직) 교수 14명(파견 4명)을 보임하여 실무 경력과 각 직종별 전문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교수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별로 1~2개의 전문분야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직렬별 각 기관의 설립목적・역사 등 법무・검찰의 근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직렬별 법무연수원 역사교재를 편찬하였다. 한편, 로스쿨 검사교수 8명을 25개 로스쿨에 파견해 검찰실무 강의를 실시하였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하여 쌍방향 동영상 콘텐츠 등 총 25과목 169차시를 개발하였고 162,241명이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의 일환으로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용인・고성・진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법교실'을 2회(98명) 운영하였고, 진천 및 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직업체험'을 4회(81명) 실시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로교육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충북 진천・음성 지역 등 중소기업인 및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혁신기업법무리더과정'을 1회(32명) 실시하였다.

〈표 1〉 2017년도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총 계 (853개 과정)					173,158
집합교육 합계 (186개 과정)					10,917
기본교육	합 계 (16개 과정)				2,296
	승진자교육		소 계 (6개 과정)		1,174
			과장(4급) 후보자 역량 개발		32
			검찰 5급 승진자		74
			검찰 7급 승진 후보자 (B/L)		77
			교정 7급 승진자 (근속)		238
			교정 7급 승진자 (일반)		88
			교정 6급 승진자		665
	신규자교육		소 계 (10개 과정)		1,122
			검찰 신규자 (B/L)		366
			보호직 9급 신규자 (B/L)		79
			보호직 경력채용 신규자		28
			출입국 9급 신규자 (B/L)		157
			출입국 9급 신규자 (B/L) (경채)		43
			신규교정직 7급 (B/L)		35
			신규교정직 9급 (B/L)		370
			신규 6급 경채		5
			신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30
			신규 의무관 직무교육		9
전문교육	합 계 (25개 과정)				1,033
	검사교육	소 계 (12개 과정)			543
		필수교육	신임검사	오리엔테이션	57
				전반기	57
				후반기	57
				로스쿨 신임검사	50
			디지털 과학 수사		76
			계좌추적·회계분석		40
			조사 신문기법		33
			검사 리더십		95
			신임 지청장 리더십		21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37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전문교육	사교육		차장검사리더십	11
			검사장리더십	9
		소 계 (10개 과정)		215
		전문가교육	특별수사전문가	21
			금융수사전문가	24
			강력수사전문가	23
			첨단범죄수사전문가	21
			보건·환경수사전문가	22
			마약조직범죄수사전문가	20
			지식재산권수사전문가	17
			여성아동발달장애인수사전문가	22
			공정거래수사전문가	24
			조세·관세	21
		소 계 (3개 과정)		275
		기타	국가송무(검사)	22
			검사맞춤형인권교육	172
			국외훈련검사사전교육	81
	합 계 (124개 과정)			4,935
	검찰직교육	소 계 (27개 과정)		658
			검사직무대리	49
			국가송무(검찰직)	15
			호송·인치교육	56
			청렴업무담당자전문	43
			검찰사무운영직역량강화	18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관 전문화(B/L)	25
			검찰인권감수성	20
			사이버범죄수사역량향상(B/L)	27
			공안범죄수사관전문화	23
			재산형집행실무	27
			선진심리분석수사관전문화(B/L)	25
			공판업무담당수사관전문화(B/L)	24
			지식재산권범죄수사관전문화(B/L)	24
			민사법실무	30
			재산범죄수사관전문화(B/L)	33
			수사과장직무리더십	12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전문교육	검찰직교육	환경보건사범수사관전문화(B/L)	21
		사무집행과장직무리더십	10
		금융·조세범죄수사관전문화	30
		정보통신업무담당수사관전문화	16
		집행관실무	35
		사무국장리더십	12
		선진마약범죄수사관전문화	19
		정보통신전문화교육	10
		검찰인사실무	15
		검찰압수실무	25
		검찰영장실무	14
	보호직(보호관찰)교육	소 계 (16개 과정)	555
		특정사범사범별지도감독	29
		사회봉사·수강집행실무	20
		전자감독지도감독실무	28
		보호관찰조사실무(B/L)	29
		성폭력·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강사양성(B/L)	29
		심리검사(B/L)	31
		소년수강명령강사양성(B/L)	29
		보호직직무스트레스관리	30
		보호직관리자리더십향상	20
		보호관찰지도감독	30
		제재업무실무	30
		범죄심리사(초급)	56
		범죄심리사(중급)	57
		보호직고위관리자리더십	11
		중독심리사	50
		법교육실무	76
	보호직(소년보호)교육	소 계 (13개 과정)	306
		보호직인권감수성	21
		치료감호실무	30
		인문학교육역량강화	23
		생활지도실무(B/L)	20
		보호직계호실무	32
		상담심리(심화)	34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전문교육	보호직(소년보호)교육	청소년비행예방교육(B/L)	20
		담임역량개발강화(B/L)	18
		분류심사(B/L)	18
		사회정착지원	20
		보호직관리자리더십향상	22
		심리치료	20
		보호직직무스트레스관리	28
	출입국직교육	소 계 (20개 과정)	402
		외국인체류관리실무(B/L)	20
		외국인동향조사실무	19
		이민정책이해	46
		난민심사실무(B/L)	20
		이민통합실무	19
		출입국고위관리자리더십	14
		출입국사범실무(B/L)	18
		한·홍콩출입국관리행정세미나	14
		직무중국어(B/L)	16
		문서감식전문	20
		출입국인권감수성	19
		출입국중견자역량강화	20
		국적심사실무(B/L)	20
		출입국소송수행실무	19
		출입국관리자리더십	20
		출입국심사실무(B/L)	19
		출입국계호실무	20
		바이오정보분석	19
		이민정보이해	20
		출입국직무스트레스관리	20
	교정직교육	소 계 (33개 과정)	2,989
		가석방심사실무	109
		교도작업운영실무	52
		교정관리자리더십(역량)	41
		교정급식관리	48
		교정기관장후보자	10
		교정민원센터상담스킬향상	14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전문교육	교정직교육	교정민원실무	49
		기동순찰반심화(R&D과정)	82
		도서관리운영실무	31
		범죄심리사양성	82
		보안실무전문화	336
		분류심사실무	60
		사회복귀실무	41
		수용기록실무	47
		재난및안전관리	51
		외국교정제도의비교연구(R&D과정)	34
		외국인수용자관리	33
		응급구조실무	54
		의료실무	48
		재범위험성평가	40
		전문직렬향상	87
		조사실무	34
		중간관리자전문화	83
		중독심리사양성	131
		직업훈련전문화	39
		집단상담실무	34
		집중인성교육강사양성(R&D과정)	56
		심리치료실무	114
		심리치료전문강사양성(고급)	59
		심리치료전문강사양성(기초)	113
		예산관리실무	33
		교정위원전문화	40
		인권청원실무	57
		취업창업전문화	40
		검도지도자	23
		내부강사전문화	47
		교정인권감수성	94
		유도지도자	15
		전산실무(엑셀)	40
		전산실무(파워포인트)	38
		직무스트레스	252

구 분		과정(과목)명	실적
전문교육	교정직교육	태권도지도자	20
		퇴직예정자	58
		강의스킬향상	50
		교정기관장세미나	58
		언론홍보	57
		교육담당자	55
	소 계 (1개 과정)		25
	공통	교수요원역량개발	25
기타교육	합 계 (21개 과정)		2,653
	특별교육	공익법무관(사연출신)	14
		공익법무관(로스쿨출신)	164
		국가송무(소송수행자)	636
		특사경수사실무(일반)	658
		특사경수사실무(단기)	239
		군검사	16
	민간인	검찰일반실무실습	307
		검찰심화실무실습	234
		혁신기업법무리더	32
		중학생직업체험	81
		어린이법교실	98
	외국인	필리핀검찰과학수사역량강화	20
		라오스출입국관리행정역량강화	15
		CIS과학수사역량강화	10
		베트남최고인민검찰원역량강화	20
		페루범죄방지및첨단기술활용수사기술강화	18
		몽골법무부역량강화	15
		범죄방지및형사사법	22
		몽골법률집행대학교도관역량강화	20
		부패방지역량강화	19
		CIS출입국관리행정역량강화	15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합계 (667개 과정)		162,241
	검사	디지털포렌식개론등160개과정	442
	일반직	형법총론등419개과정	70,721
	교정직	교정과인권등74개과정	60,458
	기 타	특사경e러닝·국가송무등14개과정	30,620

3. 연구활동의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부분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용역과제는 '로스쿨 실무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외국 검찰의 조서 작성기법 연구' 등 법무·검찰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 8건을 엄선하여 추진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물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2017년 12월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소년범죄와 소년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형사사법분야 연구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졌다.

법무연수원은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범죄방지에 기여하고자 1984년 이래 해마다 범죄의 발생에서부터 범죄자의 처리 및 관리에 이르는 범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범죄백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범죄백서(제34호)는 각종 범죄의 발생 및 처리 등 범죄동향, 수형자의 처우 등 교정 현황, 보호관찰 실시 등 보호관찰 현황, 재범 현황, 소년범죄의 발생과 처리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형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국외훈련검사에게 배정할 연구과제를 법무부·대검·검찰전문지식연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12건을 발굴, 국외훈련검사에게 94건을 배정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당해 연구과제에 적합한 지도관, 분임지도관,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고 국외훈련검사의 연구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32집) 900질(2,400부)을 발간·배포하였다.

한편,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0명의 미국 및 해외 전·현직 검사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미국 뉴욕시 특별마약검찰청의 에릭강 검사가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단계에서의 다양한 진술확보 방안 및 그 증거의 법정현출 방안(실무례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4. 국제교류의 활성화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후의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험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을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7년 현재까지 104개 과정, 89개국, 1,619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페루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현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내실을 강화하였다.

외국 법무연수기관과 교류 협력에도 노력하여 2017년 2~3월에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판사 1명을 대상으로 2주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5월 몽골 대검찰청 국제협력 담당 검사 2명을, 2017년 10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서 연수 중인 중국 공안 금융범죄국 수사관 2명을 국제연수과정에 특별초빙하였다.

2017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연수과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7년도 국제연수과정 현황

(단위 : 명)

순번	과 정 명	기 간	대 상
1	필리핀 검찰 과학수사 역량강화	3. 5.~3. 18.	필리핀 검사 및 국가수사국 수사관 등 20명
2	몽골 법무부 역량강화	3. 26.~4. 8.	몽골 법무부 교정공무원 등 15명
3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역량강화	4. 16.~4. 29.	베트남 검찰 검사 20명
4	CIS 과학수사 역량강화	5. 14.~6. 3.	CIS 검사, 수사관 및 경찰 등 10명
5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역량강화	6. 11.~6. 24.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직원 등 20명
6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7. 2.~7. 22.	콜롬비아 검사 및 경찰 등 21명
7	반부패수사 역량강화	8. 20.~9. 9.	인도네시아 등 검사, 경찰 등 21명
8	라오스 출입국 관리행정 역량강화	9. 17.~9. 30.	라오스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15명
9	페루 범죄방지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기술 강화	10. 15.~10. 28.	페루 경찰 및 국정원 직원 등 18명
10	중동 CIS 출입국 관리행정 역량강화	11. 9.~11. 29.	CIS, 이라크 출입국 및 외교부 공무원 등 15명

제 8 항 홍보업무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다. 뉴미디어 매체는 실시간을 기반으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여론형성·확산이 용이하여 갈수록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개인형·맞춤형 서비스라는 강점과 함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와 차별성을 가진다.

법무부는 이러한 홍보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책홍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참여 콘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가. 언론 대응 시스템 정립

수동적 취재 협조보다 기자단과의 상시 접촉을 통해 관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법률제도, 절차, 연혁 등에 관한 취재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적시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보 및 왜곡보도 방지, 업무 효율 제고, 법무부 이미지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오보 및 비판 보도 발생 즉시 해당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부서와 대변인실 간의 협의를 통해 대응 수위 및 방식을 결정한 후 해명자료를 배포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토론방, SNS 등 온라인 상의 검색어 순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 이를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조기 대응하도록 하였다.

나. 콘텐츠 강화

언론사별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미담, 정책성과 및 실적 등의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법무정책을 심도 있게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과 관련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감성 자극 홍보를 강화하였다.

장·차관 및 대변인이 주재하는 법조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정책 설명회, 현장 체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언론이 법무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변인실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7년 브리핑 3회, 장·차관 방송 출연 및

인터뷰 4회, 보도자료 배포 225회, 홍보메일 발송 450회, 기자 간담회 133회(장·차관 주재 13회)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 외신 홍보 확대

법무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여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보 및 왜곡보도를 막고 정책홍보를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외신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영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에 직접 반론 내용을 전달하여 결국 법무부의 입장이 반영 보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11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에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신을 특정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에 개최되는 세미나에 초청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외신 홍보를 진행하였다.

3. 기관장의 대국민 소통 활동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장관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설명한다는 '국민과의 소통 3원칙(PRO-JUSTICE)'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소통 3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사연을 신청한 국민들에게 장관이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장관을 빌려드립니다' 이벤트를 개최, 장관이 '17. 10. 12. CJ 아지트를 방문하여 위기청소년들의 밴드부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받고 해당 질문에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법무부장관님 질문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과 맞춤형 소통을 지속하였다.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가.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홍보환경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게 정책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SNS 채널인 페이스북 팬 수는 2017년 12월 30일 기준 97,522명으로 한 해 동안 1,990명이 증가하였다. 국민 소통에 대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아 '2017년 블로그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정책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법무정책 현장의 한계를 고려한 정책소통 방안으로 법무부는 2009년부터 정책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 중, 고,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55명의 정책 블로그 기자단은 행사 및 기획취재,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과 웹툰 제작 등 483건에 이르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법무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타 부처 블로그기자단에게 법무정책 현장을 공개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팸투어'를 총2회(인천공항 CIQ,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 실시하여 다수의 블로그에 법무정책 현장을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콘텐츠 제작

법무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웹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동영상과 같은 비주얼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였다. 특히, 카드뉴스와 두 컷 만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정책 시행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또한 2회째를 맞는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과 다양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급훈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 홍보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법무정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제 2 절 법 무 업 무

제 1 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2017년 법무부는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민주화, 복지확대 등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조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법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로스쿨생 및 대학생 상대로 모의법령을 공모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아이템을 발굴하는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한편 법률시장 개방 및 변호사 급증에 따라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법무 및 통일 대비 법무 업무의 전문화, 실질화를 도모하고,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선진 상사법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고,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등기사무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등기에 관한 특별회계를 10년 더 유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하였다.('17. 9. 19. 일부개정 및 시행)

2.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과징금 분납 등 과징금 납부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각 '17. 1. 6. 일부개정, '17. 1. 7.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과태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저촉되는 내용의 개별 법령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 적용의 혼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17. 5. 3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행정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편람'을 발간, 배포하는 등 법령자문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법률시장 개방으로 거대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로 신규 법조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임경쟁 과열 등 법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법조윤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법률시장 근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왜곡된 수임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 근절 T/F('15.~'16.)'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 목적 선임서 미제출 변론 형사 처벌',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권 부여' 등 내용의 「변호사법」('17. 3. 14. 공포)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위 현장조사권 관련 절차를 신설한 「변호사법 시행령」('17. 9. 15. 공포)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는 등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입법적·비입법적 조치를 마련·추진하였다.

5. 국제법무 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세계 각 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민·상사규범의 통일화 작업에 기하여, 법무부는 국제법무 업무의 효율적 대응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규제권한 확보를 위하여 양자 간 투자협정(BIT)과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국제협약, 조약, 기타 통상 관련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국제통상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공기업 등을 상대로 현장순회 법률자문 및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확대·개편하여('17. 12. 현재 총 219명)우리 기업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완료('16. 7. 1.)하였으며 EU('16. 7. 1.), 미국('17. 3. 15.) 순으로 순차적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선진 법무기반을 조성하고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정비 등 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프로젝트(O.K.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를 시행하여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을 45.5%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전문가인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요 패소사례 분석 및 소송수행방안 매뉴얼, 주요 행정소송 사례집 등 송무 전문자료를 발간함으로써 국가송무수행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여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상소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서울고검 등 6개 고·지검에 대한 송무지도점검과 소송총괄관 회의,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등을 통해 송무 업무 담당자들이 변화하는 송무환경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하여 행정기관(수행청) 송무업무의 통합관리와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7.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변호사,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북한 전문가·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통일부·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통일법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적된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개정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10가지' 리플렛을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매월 검사가 직접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정착지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례 위주의 알기 쉬운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탈북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민 맞춤형 법률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북한의 법체계, 주요 법령, 남북관계, 교류협력법제를 분석한 '통일법무 기본자료'를 발간하였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를 연구하는 한편, 통일합의서의 기본방향과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등 '통일합의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동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8호로 공포되어 2017. 6. 28. 시행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해 기존 실물을 전제로 한 회사 법률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1. 4. 개정 「상법」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을 통한 전자증권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6.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주식·사채 등의 전자증권 전환 및 전자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4년이 되는 '20. 3. 22.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만기를 장기로 하여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한 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 5. 22. 국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16. 5.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 29. 공포되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는 현행 1년에서 공포 후 2년째인 '18. 5. 30.부터는 6개월로 하여 단축될 예정이고, 이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최종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용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17. 11. 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13호)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420호)을 동시에 개정하여 2018. 2. 8.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모두 연 24%로 인하하였다.

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2017. 1. 10.부터 1. 14.까지 제6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출원하여 3,110명이 응시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일구어 낸 이전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6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17. 1. 20.부터 1. 24.까지 시행된 채점기준표 작성회의에서는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위원별 채점편차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4분할 채점제를 채택하여 채점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점수조정을 통해 채점위원 간 편차를 줄여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법무부는 2017. 4. 1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3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6년도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시험장에서 '1분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로 합격 결정하였다.

여섯 차례의 변호사시험 실시를 통해 응시자 및 합격자 분포 등 시험 관련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향후 변호사시험 운영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법조인 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요청도 법조윤리시험에 고려되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업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서는 2,007명의 응시자 중 1,192명이 합격하였다.

사법시험의 경우 2017. 11. 7.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을 선발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7. 12. 31.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다.

그 외에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여 복수정답 인정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사법시험의 합격자 통계 등을 공개하는 등 시험행정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다.

제 2 항 국민행복 증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1. 개 요

법무부는 변화된 경제 · 사회적 여건에 부응하여 국민 편익 증진 및 서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2017년도에 「민법」 등 총 72건의 법령을 제 · 개정하는 등 주요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더 나은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진하여 2017년도에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 주요 법령 정비

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정비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여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혼인 종료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3헌마623)의 취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위 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수행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2015. 10. 8. 법률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는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민법을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6. 5. 29.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위 개정안이 폐기되어, 기존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2017. 1.부터 12.까지 2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서식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광역등기소 설치 등 등기사무의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2017년에 만료할

예정이었던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하였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시행)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과태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 적용의 혼란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별 법령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였다.

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완화, 관리단 집회의 결의요건 완화, 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 완화, 부당 관리비 해소, 리모델링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의 개선 내용이 포함된 집합건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가.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모의 법령안의 작성·발표를 통해 각종 분야의 법령에 관한 전문적·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령정비와 법무정책 수립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소에 관심 있던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제출된 모의 법령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 하였다.

제 3 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1. 개 요

법무부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절차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문제가 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 국민실생활의 편의와 직결되는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와 연관된 법률관계를 해설한 '2017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책자를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법인 관리·감독 주무관청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상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수행지원 제도 등에 관한 '2017 개정 민사소송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5,089건의 법령자문 및 188건의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 문제에 대하여 각종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정부의 법령 제정·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2.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2017년도에 수행한 법령자문과 유권해석의 실적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법령자문 질의 내용은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국토교통, 금융 등 관계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 연도별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015	2,831	3,532	3,368	4,083	3,754	5,106	4,626	4,996	5,277	6,210
법령자문	2,012	2,825	3,530	3,365	4,072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유권해석	3	6	2	3	11	14	10	168	185	188	171

3. 주요 법률문제 검토

전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국내외 주요사건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능력 장애 상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 대리권 제도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개별 법령에 산재하여 있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비추어 체계적 혹은 내용적으로 적절한지,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민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의 민법 제개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7. 6. 2. 공포된 개정 일본 민법의 번역 및 해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주택 및 상가임대차 법제를 연구하여 소개하고, 그러한 법제를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연구하여, 우리나라 임대차 법제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통합 필요성 등 효율적인 규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법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4. 법무자료 발간

매년 법무실은 외국법제 및 전문학술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법무자료집으로 발간,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각급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발간된 법률자료 중 '통상법률'은 국제공법 성격의 국제통상법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법이나 국제투자법 등 국제사법 분야를 망라한 연구논문과 각 부처 장관 등 저명인사의 시론 등 특별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격월간 전문 학술지이며,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는 법무부 정책 및 사업, 한국의 최신법령, 판례와 더불어 한국 문화 및 생활 소개, 법조계·경제계 유명인사의 인터뷰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계간 간행물이다.

이밖에, 2010년 창간한 '통일과 법률'은 각 호마다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률문제와 정책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기고한 연구논문 4~5편과 저명인사의 특별기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이다.

마지막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는 상사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를 다루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 법학 학술지로서, 논단, 실무논단, 입법자료, 판례평석, 특별기고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2017년 발간 법무자료 목록

자 료 명	발간일	비고
통상법률(통권 제133호)	2017. 2.	국제법무과
통상법률(통권 제134호)	2017. 4.	
통상법률(통권 제135호)	2017. 6.	
통상법률(통권 제136호)	2017. 8.	
통상법률(통권 제137호)	2017. 10.	
통상법률(통권 제138호)	2017. 12.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5호)	2017. 1.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6호)	2017. 4.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7호)	2017. 7.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8호)	2017. 11.	
통일과 법률(통권 제29호)	2017. 2.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통권 제30호)	2017. 5.	
통일과 법률(통권 제31호)	2017. 8.	
통일과 법률(통권 제32호)	2017. 11.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7호)	2017. 1.	상사법무과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8호)	2017. 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9호)	2017. 7.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80호)	2017. 10.	

제 4 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1. 개 요

법조계의 대표적 비정상 사례인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브로커 근절 T/F('15.~'16.)'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 목적 선임서 미제출 변론 형사 처벌,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권 부여 등 내용의 「변호사법」('17. 3. 14. 공포)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현장조사권 관련 절차 등을 신설한 「변호사법 시행령」('17. 9. 15. 공포)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여러 법조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세미나 참석을 통해 변호사 제도 개선을 꾸준히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증인과 보조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부실공증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공증인법」에 공증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공증접근성을 증대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로스쿨 수료자 신규 배출로 공익법무관 임용대상 자원이 급증함에 따라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 수요를 충족하는 공익법무관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무가 가능하게 하였다.

2. 깨끗한 법률시장 조성

국내 등록된 변호사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치열한 사건 수임 경쟁 속에 법조브로커의 활동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근절 T/F('15.~'16.)'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변호사법」 개정에 반영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 목적 선임서 미제출 변론 형사처벌,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권 부여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17. 3. 14. 공포). 이에 따라 위 현장조사권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변호사법 시행령」('17. 9. 15. 공포)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2017. 12. 31. 현재 등록 변호사는 24,015명이고, 그중 개업 변호사는 20,182명으로 개업 변호사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1,333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법무법인의 증가 현상도 뚜렷하여 2017. 12. 31. 현재 전국의 법무법인 숫자는 1,050개에 이르렀고, 구성원 가입·탈퇴 등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등 관련 업무도 증가되었다.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소속 변호사 217명(법무법인 포함)에 대하여 징계 등 결정을 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징계 등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63건을 처리하였다.

〈표 3〉 지역별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인원 현황

2017. 12. 31. 현재(단위 : 명)

구분 \ 변호사회	계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록	24,015	17,689	401	635	1,124	194	208	586	677	910	212	369	566	316	128
개 업	20,182	14,791	350	569	906	162	173	497	606	776	191	321	469	268	103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2017. 12. 31. 현재 전국에 349개소(공증사무 대행청 13개소 포함)의 공증사무소가 있으며, 공증사건수는 3,374,216건에 달하였다.

법무부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173개 공증사무소 및 13개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공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또한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된 공증인에 대한 엄격한 징계로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7. 1. 31. 국회 제출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17. 11. 24. 국회에서 의결되어 '17. 12. 12. 법률 제15150호로 공포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공증 현황

공증사무소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증사무소가 없는 13개 지역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증 처리 실적은 총 3,374,216건이며, 내용별로 보면 공정증서 작성 270,872건, 정관 인증 2,433건, 법인의사록 인증 331,446건, 사서증서 인증 740,618건, 확정일자 부여 1,937,764건, 기타 91,083건으로 전국 349개 공증사무소의 연평균 처리건수는 9,668건이었다.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나. 공증사무 지도 감독

국내 공증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2017. 1. 3.부터 12. 22.까지 직원 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전국 173개 공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외공관 공증업무 처리실태를 파악·지도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서 주 일본대사관 등 13개 재외공관에 출장하여 공증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공증인(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75명에 대하여 징계(정직 6명, 과태료 54명, 견책 15명)를 하는 한편, 경미한 과오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였다.

〈표 4〉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

2017. 12. 31. 현재

구분 / 지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대행청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계	
계	86	75	190	239	23	262	13
서 울	25	23	103	118	8	126	-
의 정 부	3	3	6	11	-	11	-
인 천	6	6	9	15	1	16	-
수 원	10	10	17	27	-	27	-
춘 천	3	3	2	2	1	3	2
대 전	5	5	8	8	-	8	1
청 주	3	2	3	6	-	6	1
대 구	7	6	9	14	5	19	3
부 산	7	4	11	10	3	13	1
울 산	3	2	2	6	-	6	-
경 남	4	4	5	8	-	8	2
광 주	6	4	9	10	2	12	2
전 주	3	2	4	3	2	5	1
제 주	1	1	2	1	1	2	-

다. 재외공관 공증 업무 지원

해외유학 및 국제거래의 증가로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 7. 법무부 홈페이지에 '재외공관 공증마당'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공증 관련 질의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하고 있고, 2013년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의 업무지침서인 '재외공관 공증업무 편람' 개정판을 발행하여 전 세계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통일적인 공증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대사관), 타이베이(대표부),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독일(함부르크 총영사관, 본 분관), 폴란드(대사관), UAE(대사관, 두바이 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헝가리(대사관), 오스트리아(대사관) 소재의 대사관 및 영사관 등 13개소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공증업무를 지도·감독하였다.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2017년에는 22·23기 공익법무관 217명이

전역하는 대신 28·29기 공익법무관 178명이 임용되어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은 전년대비 39명이 감소한 583명이 되었다. 이들 공익법무관 중 328명은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는 송무 및 자문업무에 배치되고 255명은 법률구조 업무에 배치되었다.

〈표 5〉 연도별 공익법무관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3 (20기)	2013 (21기)	2014 (22기)	2014 (23기)	2015 (24기)	2015 (25기)	2016 (26기)	2016 (27기)	2017 (28기)	2017 (29기)
임 용	104	62	119	98	53	147	40	165	14	164
총 원	325	387	434	530	499	581	518	622	517	583

제 5 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1. 국제법무교류 지원

가. 국제회의 및 협상 참가

법무부는 국제법 및 국제통상 분야의 최신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각종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FTA와 BIT 협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 총 29회 참가하였다.(세부내역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나. 타부처 법률지원 수행

법무부는 국제조약 협상 및 체결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타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바, 2016년도에는 <표 6>에서 보듯 총 14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표 6〉 2017년도 법률자문 현황(9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검사
1	4. 16.	한중 FTA WTO CRTA 사실관계 보고서 회원국 서면질의 검토의견 회신	산업통상자원부	신동환 검사
2	6. 20.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관련 검토의견	외교부	김지언 검사
3	6. 2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제사법 저촉여부 검토 및 회신(공문)	국회(보건복지위)	신동환 검사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검사
4	8. 25.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검토의견 회신	산업통상자원부	신동환 검사
5	9. 29.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세르비아측 수정안 검토의견	외교부	김지언 검사
6	10. 31.	한-우즈베키스탄 기 체결 문서의 법적 지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7	11. 3.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8	11. 9.	HccH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협약 사전 검토 의견	외교부	신동환 검사
9	12. 6.	투자보장협정 투명성 규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 회신	외교부	김지언 검사

다. 국제교류의 증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무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무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법조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예방차원은 물론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 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교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법무부를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의 현황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2017년 11월 23일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직후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우즈베키스탄 압둘 아이즈 카밀로프 외교부 장관은 양국 법무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무협력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발전된 선진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2017년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공동으로, 증권거래소를 새로 개장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정비 지원 작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라오스와 벨라루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의 경우 위 자문내용이 반영된 증권법이 새롭게 마련

되어 2012. 12. 라오스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 법은 2013. 1. 17. 공포되어 2013. 3. 17.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국에 선진화된 법률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또한 법무부는 UNCITRAL 아태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협업하여 2012년부터 중재법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미얀마 중재법 개정을 지원하여 동 개정안이 2015년 미얀마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몽골, 2016년부터 5년 기한으로는 라오스의 중재법 개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는 2016. 9.에는 서울에서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을 위한 라오스 전문가 초청 실무회의를, 2016. 12. 및 2017. 12.에는 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에서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최근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파라과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수행하여 온 '외국인 투자유치 진흥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라과이 투자법제 개선지원 사업'을 2016. 8. 완료하였고, 2015. 9. 및 2016. 9. UNCITRAL 아태사무소와 공동으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모델 중재법 등 UNCITRAL 모델규범의 전파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7. 9.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출입국관리법제 현대화 지원 사업을, 2017. 10.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공단 제도 현대화 지원 사업을 각 시행한 바 있는 등 여러 법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마.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대응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에 발효된 87개 투자보장협정(86개 BIT 및 1개 TIT), 한-미 FTA 협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효과적인 ISD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 12.부터 7개 정부 관련 부처와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ISD 관련 국제세미나를 열어 각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자 유치로 인한 국제투자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업·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변호사, 교수 등 총 207명의 자문위원들이 국제투자분쟁은 물론 국제지식재산권분쟁 사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변호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 국제법 전문연구위원을 선발하여 세계 각국의 ISD 대응체제 분석, 주요 분쟁 사례 연구, 세계 주요 중재인의 정보수집 및 국제중재전문가 양성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를 제기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론스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2012. 5. 구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2012. 6.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바.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론스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ISD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처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 대응방안 교육, ISD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였고, 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2009. 10.부터 2016. 12.까지 총 87여 회에 걸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사 등을 대상으로 ISD 순회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9. 12.부터 2016. 12.까지 영국 런던, 터키 이스탄불 등 7개 도시에서 총 41회 ISD 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64건, '14년 133건, '15년 231건에 이어 '17년 216건에 이르렀다.

또한 법무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및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 2. 20.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11. 23.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주요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문단 소속 검사, 변호사 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교육하였다. 또한 KOTRA, 특허청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 국제투자규범과 현지 법령정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를 개최('17년 국내 21회, 해외 5회) 하였다.

'17년 하반기에는 KOTRA 수출첫걸음 지원단과 협력하여 3개월여 동안 총 10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약 200여 명의 수출전문 위원을 대상으로 법률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약 30건의 국제 상사 관련 계약서 검토를 지원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1,922종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7년에는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가이드' 3종을 발간하였다.

아.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 제도 구축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2015. 3. 11. ~ 3. 23.), 입법예고(2015. 3. 27. ~ 5. 7.),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4. 10.), 부패영향평가(2015. 4. 21.), 법제처 심사(2015. 7. 16.),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5. 8. 4.)되었고, 법사위(2016. 2. 1.), 본회의(2016. 2. 4.)를 통과하여 공포(2016. 3. 2.)된 이후 EU(2016. 7. 1.)를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 3. 15.부터는 미국을 대상으로도 3단계 개방이 이루어졌다.

2017. 12. 현재 자격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171명이고, 외국로펌은 36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150명(미국법자문사 114명, 영국법자문사 24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8명, 중국법자문사 1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7개(미국로펌 22개, 영국 로펌 5개)이다.

한편, 2014년 12월부터는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모두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자.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과 2015. 4.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과 2014. 4.에는 홍콩에서, 2016. 5.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4. 9.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우수 청년법조인들을 2015년부터 하반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국제기구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인 단기(2~4주) 인턴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경제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등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소관 공익법인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개관하였고 '서울국제중재센터'에는 2016. 12. 기준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 중재센터(HKIAC) 등 4개의 국제중재기구가 입주하고 있다.

차. 통상전문 학술지 '통상법률' 발간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격월로 발간해오고 있는 바,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1호부터 2011년 100호까지 게재되었던 논문의 총목록을 정리한 통권 100호를 거쳐 2017. 12. 현재 138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상사중재 및 각국의 통상·환율 정책, 국제 환경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룸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상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카.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문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2017. 12. 현재 총 8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가. 국제회의 참석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규범의 적시 가입이 필요하고, 국내법제 선진화를 위해서도 국제통일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안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2017년도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10회 참가하였다.

나.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및 활동 강화 방안 시행

법무부는 2002. 2. 로펌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0. 4.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정부대표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단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와의 협업

2011. 7. 7.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 1. 10. 인천 송도에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가 개소되었고,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 개소는 법무부, 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로써 국제 법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민·상사법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 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7. 11. 6. ~ 11.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개최하였는 바, 위 회의에는 도널드 프랜시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회장, 매튜 리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2017. 11. 10. 개최한 SAF 국제투자분쟁 워크숍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UNCITRAL의 주요책임자인 곤잘레스 플로레즈 사무차장 등 핵심 연사가 참여하여,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 (2012. 2.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선임하고, 그 밖에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이행법률은 2011. 12. 30.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 후 재추진된 법안으로, 관계부처 협의(2012. 7. 13.~7. 23.), 입법예고 (2012. 8. 2.~8. 13.),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8. 10.~8. 13.), 부패영향평가(2012. 7. 25.~8. 24.), 법제처 심사(2012. 9. 12.~9. 17.),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2. 10. 24.) 되었으며, 20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 부칙 제1조는 협약 가입일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2. 12. 외교통상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2013. 3. 1.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17. 12. 현재 기존 가입국 96개국 중 52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입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7년에는 6건의 탈취아동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2013년부터 누적 지원 신청 접수 건수 : 총 37건).

한편, 우리나라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CCH) 가입 20주년을 맞아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외교부 등과 함께 2017. 7. 3.~ 7. 6.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HCCH Asia Pacific Week 2017'를 성황리에 주최하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의 이행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제 6 항 송무수행의 능률성 향상

1. 개 요

2017년 국가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3.9% 감소, 패소율은 1.4%P 증가하였고,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0.5% 증가, 패소율은 1.4%P 감소하였다.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가.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확대

국가의 중요 정책·재정과 직결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고액화·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 시행 등을 통해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을 '16년 42.0%에서 '17년 45.5%로 끌어 올렸고 부당한 국가패소 방지에 기여하였다.

나. 송무 전문자료 발간

기존에 매년 발간하는 송무현황자료 · 중요 행정소송사례집 · 헌법재판 의견서 모음집 등에 더하여, '주요 패소사례 분석 및 소송수행방안 매뉴얼' 및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등 각종 송무 전문자료를 발간함으로써, 국가송무 수행체제를 보다 전문적 · 체계적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다.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국가나 행정청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상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법무부 훈령을 제정('17. 10. 23. 법무부 훈령 1121호)하여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사건을 정비하고 소송수행계획서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심 소송수행역량을 강화했으며, 과거사 위자료 기준 정비·「상소권의 적정 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상소기준을 정비하였다.

라. 송무지도점검의 내실화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춘천지검 (4월), 수원지검(4월), 광주고검(9월), 전주지검(9월), 제주지검(11월), 서울고검(11월) 6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 행정소송 · 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효율적 · 체계적 송무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된 양식에 따라 수검청이 자체점검결과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지도점검 역량 집중이 필요한 분야를 특정하여 선택적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마.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17. 11. 24. 전국 검찰청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 · 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의 국가 · 행정 · 헌법소송의 직접 소송수행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하여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및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국가송무 전반에 걸친 송무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그밖에 법무부와 일선 송무수행청 간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등을 논의함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64명, 관리업무 유공자 37명 등 총 101명에 대하여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사.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 행정 · 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17년 수임사건은 1,831건으로 전년대비 9.4%가 감소하였고, 평균 승소율은 74.6%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단의 전문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3. 송무업무 실적

가. 국가소송

국가소송사건은 총 접수건수(구수+신수)가 2008년까지 장기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과 2010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다시 감소하다가 2017년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9,982건이 접수되었다.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1%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2>와 같다.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은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36,969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나, 2017년 패소율은 2016년 대비 1.4% 감소한 9.6%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6>과 같다.

다.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국가배상법」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4,558건을 접수하여 그 중 801건을 인용하고, 2,008건을 기각하는 등 총 2,921건을 처리하였다.

라. 행정심판

2017년에 358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접수하여 283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인용 12건, 기각 90건, 각하 133건, 취하 17건, 이송 31건이었다.

제 7 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1. 개 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 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헌법재판 수행

법무부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2017헌바88)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체의견 제출은 총 91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17년에는 총 11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10건, 위헌 1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자동차 절취자의 필요적 면허취소) 위헌제청
(2017. 5. 25. 2016헌가6) : 위헌

나.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국가의 인지첩부의무 면제) 위헌제청
(2017. 6. 29. 2017헌가14) : 합헌

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2017. 8. 31. 2015헌가30) : 합헌

라. 의료법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제한) 위헌제청
(2017. 12. 28. 2017헌가15) : 합헌

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에는 총 2,411건이 처리

되어 그 중 합헌 등 283건, 각하 2,087건, 위헌 등 41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조항) 위헌확인
(2017. 5. 25. 2014헌마844) : 기각

나.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조항의 적용범위) 위헌소원
(2017. 10. 26. 2015헌바239등) : 위헌, 합헌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 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위헌소원
(2017. 11. 30. 2016헌바157) : 합헌

라.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피신 참여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 11. 30. 2016헌마503) : 인용(위헌확인), 각하

제 8 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1. 개 요

2006. 7. 13.부터 2010. 7. 12.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및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였다. 2010.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소송업무를 법무부에서 승계하면서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송무팀이 신설되었다. 친일재산송무팀은 2012. 12. 31. 활동기간 종료로 해산되었고, 잔여 소송업무는 법무부 국가송무과가 수행중이다.

2. 주요 업무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친일재산송무팀의 잔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각종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여론조사 업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관련 소송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3. 소송수행 실적

친일재산송무팀이 위원회의 소송을 승계한 2010. 7. 13. 이후 총 97건의 소송(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7건, 헌법소송 9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96건이 종결되었는데(2017. 12. 기준), 국가소송과 헌법소송은 100%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은 95% 승소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다.

가. 전체소송 현황

2010. 7.~2017. 12.(진행건수/종결건수)

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7(1/96)	71(0/71)	17(1/16)	9(0/9)

나. 승소 현황

2010. 7.~2017. 12.(승소건수/패소건수)

종결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6(93/3)	71(68/3)	16(16/0)	9(9/0)

제 9 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1. 개 요

기존에는 환수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5. 9. 22. 출범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주요 내용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상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의결서 및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7년 입찰담합 3건, 부패·비리 102건 등에 대해 소관행정청과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송 2건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하였다.

3. 기대효과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 10 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전 소송수행청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1. 개 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같이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고, 2013. 1.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구축 및 전 소송수행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수작업 업무 폐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주요내용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사건관리, 지정서 출력 등 송무수행을 전자적으로 처리 ○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로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제공

2. 추진 내용

2011년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 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고, 2012년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전면 시행하였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 강화로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였고, 특히 2016년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12. 16.)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3. 기대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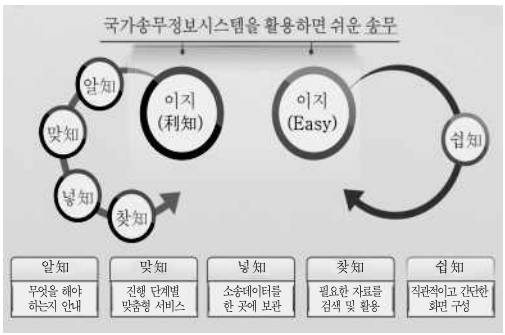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으로 사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대국민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제 11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1. 개 요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 있는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며 통일준비를 더욱 내실화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변호사,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북한 전문가·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통일부·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탈북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개정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10가지' 리플렛을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매월 검사가 직접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정착지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탈북민 맞춤형 법률교육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다.

통일법무 업무에 필요한 남북한 법령, 남북관계 일지 등을 집대성한 '통일법무 기본자료'를 발간하였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 및 '통일합의서'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연구를 지속해 나갔다.

2.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통일 과정의 법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에 수반되는 법적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통일법 전문가의 양성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법무부는 2017. 10. ~ 12.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률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백규 김·장 변호사,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전문가 10인이 '통일 이후의 한국정치',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통합' 등을 주제로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노동당 38호실, 조선 만화제작소 등 북한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법무부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의 틀을 넓히고 통일법무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법률지원 업무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탈북민들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2017. 10. 스마트폰을 통해 질문을 직접 입력하고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탈북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 12.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상담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10가지' 리플렛을 제작하여 하나원과 전국 23개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검사가 매월 직접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사례 위주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 7. 법률용어를 어려워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에 의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는 드라마 형식"의 '탈북민 맞춤형 법률교육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4. 통일법제 심화 연구

최신 북한법제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7. 4. 연변대학 법학원·동북아연구원 등 연변조선족 자치주 법률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정례화를 추진하였고, 2017. 12.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통일방안의 변천과정, 교류협력법제를 분석·정리한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 및 북한 민사법, 형사법, 국적법 등 주요 법령과 사법 체계를 분석·정리한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7. 3.~12.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2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와 '통일합의서'를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한편, 2017. 12. '북한법제의 최근동향과 통일정책의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통일부·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헌법의 발전과 변화', '통일정책의 법제화 방안', '북한 입법체계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정부부처 실무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 12 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1. 개 요

법무부는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선진 상사법제를 마련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법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만들고 신속한 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7. 6. 28. 시행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매년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의뢰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8호로 공포되어 2017. 6. 28.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중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제적 수준의 종합중재시설인 '국제중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현재는 검사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09. 3. 12.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현 154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처리(자문단에 49건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702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하고 62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시작하여 2010년에는 18회, 2011년에는 49회, 2012년에는 68회, 2013년에는 71회, 2014년에는 77회, 2015년에는 80회, 2016년에는 71회, 2017년에는 72회의 현장강연을 실시하였다.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15. 4.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파견하여 현장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15. 8.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위 법률지원단에는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6년에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대상 기업이 275개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자문변호사 52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늘어나는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혁 및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 개선 연구 결과를 모아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발간하였다.

4.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 3. 25.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10. 7. 6.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1. 10. 27. 차관회의 및 '11. 11. 1.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12. 7. 24.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4. 2. 29. 통과되어 법률 제12420호로 공포되었으며, '15. 3. 19.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어 법무부는 '15. 7. 23. 제1호 공익신탁 인가, '15. 9. 17. 공익

신탁 자문위원회 출범, '15. 12. 2. 공익신탁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17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익신탁 홍보영상을 종합편성채널 등에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7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24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었다.

5.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 지급불능 해소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6. 10. 25.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10개 평가 분야 중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 분쟁 해결절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 12. 6.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마리아 퀘사다(Maria Quesada)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 3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비롯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6.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기존 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 발행·유통되는 관계로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비용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05.

1월부터 시행하였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어음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14. 4. 개정 법률을 통해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어음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종이어음의 사회적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어음으로의 대체를 추구한다는 제도의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09. 5. 법률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고, '14. 4.부터는 그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종이어음에 대비한 전자어음 특유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무발행제를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 노력에 따라 전자어음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발행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지급제시건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05. 1. 첫 도입 이래 10년 만인 '15년 한 해 동안 전자어음은 금액 기준으로 538조여 원이 발행되었고 발행건수 기준으로는 197만여 건이 발행되었는데, 같은 기간 종이어음은 53만여 건(지급제시건수) 및 797조여 원 발행되었는바, 발행건수 기준으로는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 발행건수 대비 78.6%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어음을 완전히 추월하였다. 이에 '17년도에는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금액기준으로도 완전히 추월하여 완연한 대체의 결과를 보였다. '17년도 한해 전자어음은 666.3조 원, 종이어음은 593.6조 원이 발행되었고, 발행건수로는 전자어음 183만 건, 종이어음 36.7만 건이 발행되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 12. 이래 2년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6. 11.에는 제6회 정기검사를 통해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요건 유지 여부, 전자어음 관리안전성, 전자어음 이용상 장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만기를 장기로 하여 발생되는 어음으로 인한 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 5. 22. 국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16. 5.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 29. 공포되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는 현행 1년에서 공포 후 2년째인 '18. 5. 30.부터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고, 이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최종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법무부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해 기존 실물을 전제로 한 거래 현상 및 회사 법률관계 형성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1. 4. 개정 「상법」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을 통한 전자증권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6. 3.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 주식·사채 등의 전자증권 전환 및 전자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지정 및 감독을 수행하며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운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4년이 되는 '20. 3. 22.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7. 2.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7. 3.~4.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행령 규정 사항을 논의하였다.

8.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무부는 신용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대부업자·금융기관에 차등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에 '17. 11. 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 (기존 연 25%) 및 대부업자·금융회사 (기존 연 27.9%)에 대한 최고금리를 모두 연 24%로 인하하였고, '18. 2. 8.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경제사정의 변동 및 서민금융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를 지켜보아 관계부처와 함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9.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05년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수행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바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는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액·다수 피해 구제 도모를 위해 소비자·금융 분야 등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7. 10월부터 12월까지 '집단소송제 등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선진 상사법제 관련 연구

가.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해 UN이 2011년 지도원칙을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기업들에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법제 개선을 위하여 상사법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 12. 13. '기업인권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의미'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국제 인권 분야의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한석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윤세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은 부회장(한국사내변호사회)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 알리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나.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 4, 7, 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1월에 발간한 통권 제77호는 '주주총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을 구성하여 김순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등 논문 5편과 논단 7편,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2016년 회사법 관련 판례의 동향' 논문을 포함한 신년기획, 특별기고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78호에는 '최근 기업경영권 관련 법률적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정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외 5편의 특별기획논문과 판례평석을 수록하였다. 제79호(7월 발간)는 이상복(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논문을 비롯한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문3편, 논단 2편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제80호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하여 함영주(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상사 사건의 소송 대체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 논문 4편과 논단, 판례평석, 실무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상사법률연구는 각 대학도서관, 법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 여 부를 배포하여 지속적인 상사법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 13 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1. 제59회 사법시험 실시

가. 시험개요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고, 제2차시험은 6. 21.~24. 서울시내 1개 시험장(연세대)에서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3차시험은 11. 1.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다.

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지속적 시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제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사항의 도입보다는 이미 도입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였다.

제1차시험은 실시하지 않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문제, 실력 검정과 무관한 문제 출제 등을 지양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 사례에 대한 적응 능력 검정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3차시험(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성적 등을 제공하지 않고 면접결과로만 탈락자를 선정(블라인드면접)하는 방법으로 일반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에 회부된 응시자 없이 전원이 합격하였다.

2.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6. 12. 28.부터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나. 시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제6회 변호사시험은 2017. 1. 10.부터 1. 14.까지 시행되었다. 시험에는 3,306명이 출원하고 3,110명이 응시하였다.

그 후 이어진 채점절차에서는 채점위원들의 채점역량 강화, 4분할 채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7. 4. 14. 합격자 1,593명 및 추가합격자 7명을 발표하였다.

다. 법조윤리시험 전국 6대권역 실시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2017. 8. 5. 전국 6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총 2,047명이 출원하여 그 중 2,007명이 응시(응시율 98.0%)한 결과, 1,192명(합격률 59.4%)이 합격하였다.

※ 2016년 제7회 법조윤리시험 : 2,188명 응시, 2,149명 합격(합격률 98.2%)

제 3 절 검 찰 업 무

제 1 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 국가·사회기강 확립

2017년 법무·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처하여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공작 및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 이적활동 등은 여전히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북한 보위성의 탈북민 재입북 유인공작에 협조한 사범 2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총 4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적활동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한편,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한 12건 30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위헌선언으로 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반 사건 156건 173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7. 5. 9. 제19대 대선이 실시되었고, 전국 검찰청에서 입건자 878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16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시효 만기인 2017. 11. 9.까지 총 512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2차례 걸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2017. 4. 12. 실시된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입건자 56명을 수사하여 39명을 기소하였고, 제19대 대선과 같은 날 실시된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입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관할 검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불법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여 선거 과열 분위기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를 존중하면서 합법적 쟁의행위는 충분히 보장하고, 폭력·

시설점거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폭력적 행위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였다.

2017년 말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단체들의 집회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합법·평화 집회로 종결되었다.

이는 법무·검찰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되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반대 단체의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9명을 구속하여 엄정 대응하기도 하였다.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7. 8.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입법화하였고, 2007. 6.에는 '성·가정·아동폭력 연구검사'를 지정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 9. 서울중앙지검, 2016. 1. 대구·광주지검, 2017. 2. 대전·부산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 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하여 2008. 10.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8. 6. 부산고검, 2009. 9. 대구고검, 2010. 4. 광주고검, 2010. 12. 대전고검, 2011. 5. 인천지검,

2012. 6. 수원지검, 2014. 11.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7. 12.까지 전국 64개 청 총 838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 등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 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규정한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을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6.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4.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1.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3. 5. 그동안 일선 청 차원에서 운영되던 검찰시민모니터제를 전국 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포함한 검찰 운영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등 5개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의사, 비법학교수, 변리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간부 등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항고심사회 운영에 활용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 또는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사전에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2010. 8. 전국 41개 검찰청에 구성한 이후 2012. 2.까지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으며, 2013. 5. 전국 5대 고등검찰청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 현재 전국 64개 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 2 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 개 요

2017년도에도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인터넷 등을 통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의 확산을 시도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은 다량의 북한 선전물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보관하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종북 성향의 신문 '자주신보' 기자와 재미 친북활동가로부터 이적표현물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국내에 유포한 반국가활동 찬양 사범을 구속기소하고, 탈북민을 이용한 북한의 공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세계 주요 도시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불법체류자,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내·외국인이 확인되는 등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테러대응 수사실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테러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정치·사회적 필요성 및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존중하면서 노측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폭력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였다.

노측의 불법행위와 아울러 사측 불법행위, 즉,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노·사 구별 없이 균형 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하여는 2017. 3.부터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총 28명을 구속하여 2010년 이후 최다 구속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 1〉과 같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법무·검찰은 국내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적극적 수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3대 세습,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찬양하여 온 이적표현물 사범 3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 재입북 유인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북한의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재입북 유인 공작에 협조한 탈북민 2명을 적발하여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인터넷·SNS 이용 사이버 이적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이적표현물, 이적사이트를 삭제·차단하는 등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선은 탄핵정국 하에 다자간 구도로 진행되면서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상당했고, 실제 고소·고발이 점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검찰은 전국청에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중점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검찰역량을 집중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입건인원은 18.8% 증가(제18대 739명→제19대 878명)하였고, 기소인원도 19.6% 증가(제18대 428명→제19대 512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거사범 증가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사범 비율이 155%로 크게 증가(제18대 107명→제19대 273명)한 것과,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도 16.6% 증가(제18대 368명→제19대 429명)한데

기인한 것이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28.7% 감소(제18대 230명→제19대 164명)하였는데, 이는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 12. 및 5. 9.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등 총 34곳에서 실시되었다. 지역 소규모 선거구 위주로 실시되어 다수의 금품선거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검찰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단속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2017년도에도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최대한 존중하되, 노사 간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노조의 불법파업 및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한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크레인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 11.에 발생한 민중총궐기 불법폭력 집회와 관련하여 2017년 말까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동자 27명을 구속하는 등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특히 2017년 말에는 민중총궐기 폭력 집회와 관련하여 지난 2년 간 수배 중이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하였다.

또한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지브크레인 붕괴 사고, 남양주시·의정부시·용인시·평택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노조 집회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검찰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압수수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동자 5명을 구속 기소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아르바이트생·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 구공판 확대 등 조치를 새로 실시하고, 노동법 아카데미·노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노동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도록 일관되게 법집행을 하였다.

2015. 3.부터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실시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고, '채증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자료' 일선 검찰청 배포 등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집회관리 주체인 경찰과 협의하여 마련한 집회시위 사건 채증 매뉴얼인 「디지털 증거자료 지침」 및 복면 착용자에 대하여 2016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하도록 한 양형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1〉 2017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 요 사 건	비 고
대공사범	○ 북한 보위성 탈북민 유인공작 협조 사건	수원지검
	○ 자주시보 기자 이적표현물 반포 사건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 강남구청장 허위사실공표 사건	서울중앙지검
	○ 제보자료 조작 허위사실공표 사건	서울남부지검
	○ 우석대 교수 제3자 기부행위 사건	전주지검
	○ 경남도청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창원지검
	○ 정당 부대변인 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 등 사건	군산지청
노동사범	○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서부지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전국 청
	○ 크레인 붕괴 사건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통영지청 등

제 3 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 개 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 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하여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조직폭력사범, 사회취약계층 상대 생계 침해형 부조리 사범, 재개발·재건축비리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2004. 8. 대검찰청에 설치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본부'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설치·운영하면서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전개하였고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6. 5. 이후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조직화되어가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9. 7. 금융위원회 등과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고, 2010. 11. 「의료법」 등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맞추어 2011. 4. 보건복지부 등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출범시켰다. 2011. 9. 전국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부실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고 2012. 4.에는 불법사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 11. 범정부적인 수사기구인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국방부·감사원·관세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막대한 국고손실·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1부 및 제2부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자본시장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3부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변경하여 공정거래 사건 수사의 전문화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016. 1.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 한시적 협업체인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적 수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 사건을 집중 수사하였다.

2016. 1.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부정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여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개하였다.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가.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6년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9위로서 2013년 수준(22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효율성 부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2008년 이후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2016년에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부정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형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여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엄단하였고,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적폐수사 등을 비롯하여 공직사회 투명화를 위해 공직자비리 단속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 내지 〈표 4〉와 같다.

〈표 2〉 2017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 유 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 사	32(6)	16(4)
건 축	35(6)	11(3)
토 지	2(0)	0(0)
공 사	105(41)	38(17)
보건·환경	59(1)	7(0)
교 통	1(0)	1(0)
소 방	0(0)	0(0)
노 동	0(0)	0(0)
수 사	20(8)	12(7)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세무	100(8)	30(4)
교육	38(17)	14(8)
병무	8(1)	4(1)
금융	509(6)	119(5)
법조주변	269(27)	83(20)
납품	68(19)	19(1)
사이비언론	13(2)	4(1)
기타	496(88)	103(31)
합계	1,755(230)	461(102)

( )는 공무원

〈표 3〉 2017년 선출직공무원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단속인원
선출직공무원	35(0)
광역의회의원	3(0)
기초의회의원	25(0)
합계	63(0)

( )는 구속인원

〈표 4〉 2017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11(6)	3(0)	1(0)	5(0)	20(6)
4급 이하	139(46)	137(4)	68(4)	598(15)	942(69)
합 계	150(52)	140(4)	69(4)	603(15)	962(75)

( ) 구속인원

나.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19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1/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7. 3.) 건의 실적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CCTV 설치 및 정보열람 관련 제도 개선(교육부) ○ 유해액체물질 관련「해양환경관리법」하위법령 개선(해양수산부) ○ 이륜자동차 배기량 등 허위신고 처벌규정 개선(국토교통부) ○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방안(도로교통안전공단) □ 2/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7. 6.) 건의 실적 ○「재난안전법」양벌규정 개정(국민안전처) ○ 자동차등록번호판 차폐행위 과태료규정 개정(국토교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 처벌규정 개정(미래창조과학부) ○ LH 공공임대주택 양도승인제도 개선(LH공사) ○ 외상매출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금융감독원, 국세청, 기업은행) □ 3/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7. 9.) 건의 실적 ○「청소년성보호법」'청구 前 조사' 규정 제도개선(여성가족부)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처벌규정 보완(식약처) ○ 의약품 보관상태 점검·확인 규정 개선(식약처) ○ 대포통장 유통 범죄 법정형 상향(금융위원회) ○ 범죄목적 계좌번호 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금융위원회) ○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조작)행위 처벌규정 개정(국토교통부) □ 4/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7. 12.) 건의 실적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제·개정 관련 제도개선(산업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계약수주 관련 제도 개선(한국가스공사) ○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관련 양벌규정 개선(국토교통부) ○ 3D프린터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국가기술표준원) [2017. 12. 31. 기준 19건]

다. 불법수익 환수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2006. 5. 11.에는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2010. 7.에 '범죄수익환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여,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과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한 환수노력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법 적용건수 2,514건,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 금액 5,491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또한 2013. 5. 28. 법 개정에서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일반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해외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해외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13. 8.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미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2015. 3.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등을 몰수해 2015. 11. 약 12억 3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환수한바 있고, 2016. 7. 미국에서 발생한 후 국내로 유입된 부패범죄 수익 1억 3천만 원 상당을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반환하는 등, 전 세계의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대검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부수사국(HSI) 등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2. 12. 몽골 검찰과 공조하여 몽골로 유출된 3억 6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환수하여 해외범죄수익 환수를 최초로 성공하였고, 2017. 국제공조를 통하여 폴란드로부터 합계 149억 원 상당의 해외유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관여하였다.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가. 5대 폭력 특별단속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2006. 5.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에 2007. 12.까지 설치된 '5대 폭력 및 부조리 대책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직폭력의 기업화·합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3. '조직범죄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직폭력 사범의 폭력단체 등 구성·활동, 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업을 중점 단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 폭력서클의 배후에 성인 폭력조직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2012. 3. '성인 폭력조직과 학교 폭력서클의 연계차단을 위한 단속 지시'를 통해 이들 간 연계를

차단, 학생들을 폭력조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에는 유례없는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단속하였다. 2017.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2017년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구 분 / 사범별	단속인원	구속인원
계	107,228	2,424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3,600	712
취업 사기 사범	1,067	28
기업형 조직폭력사범	55,592	1,361
유통질서 교란사범	3,243	65
사행성 도박사범	3,286	166
교육 관련 불법행위 사범	551	1
국민건강 위해사범	15,321	85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4,568	6

다.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 단속

2005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해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 양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2005. 10.부터 2007. 4.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 수사에 적극 매진하여 2,039명을 단속하여 66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등 9,814대를 압수하고, 187건 2,081억 9,362만 원을 추징보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이 휴·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09년부터 '불법게임·도박물 근절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12. 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간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확대하여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한편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사범은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 민생침해수사본부와 강력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2015. 7. 조폭과 연계된 기업가의 해외 고액 원정도박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계된 각종 프로운동 및 게임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및 도박사건 발생, 인터넷 이용 사행행위 등 각종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단속 강화 지시' 및 '인터넷 이용 불법도박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일선 청에 알리는 등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더불어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범죄수익 철저 환수로 도박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도박금액이 크지 않고 형법상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도를 도입·실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전과자 양산방지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였다. 또한 불법 사행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박탈 관련 '조세포탈 혐의자료 국세청 통보' 제도 시행과 함께 주요포털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한 도박범죄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노력하였다.

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 ·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 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 ·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 · 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 · 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 ·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발달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6〉과 같다.

한편,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선진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 · 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홍보하였고, 미국 및 EU 무역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와 다자 간 지식재산권 보호협약인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2009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시킨 이래로 9년 연속 제외되었다.

2008. 12. 19.에는 저작권법상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 가장 ·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표 6〉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 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0	8,192 (192)	29,644 (12)	123 (0)	41,655 (1,242)	2,240 (0)	81,854 (1,446)
2011	6,293 (188)	37,082 (8)	38 (0)	38,106 (1,137)	1,447 (1)	82,966 (1,334)
2012	6,003 (106)	46,707 (1)	15 (0)	29,550 (845)	1,726 (1)	84,001 (953)
2013	6,316 (106)	37,182 (4)	3 (0)	25,068 (641)	1,827 (0)	70,396 (751)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 )은 구속

마. 인신매매 사범 단속

1) 개 요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2013. 4. 법무부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4. 10.「검찰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등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조사,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하였고, 2016. 10.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인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포하여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당국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실무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미국이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1등급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인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걸맞는 인권개선 상황에 관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강력한 수사 활동

2004. 10.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등 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 여성의 국외 송출 또는 국내 수입 조직 등 국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를 엄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검찰청에 피해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형사소송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1. 인신매매범죄 처벌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한 구체적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014. 10.부터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기준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2006. 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 1. 대검찰청에 피해자 인권과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010. 10.부터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현지 문화, 관습 및 결혼 사증 발급절차 등을 안내·지원하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신매매 관련사범에 대한 기소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인신매매 관련 사범 기소현황

(단위 : 명)

유형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8(44)	59(38)	66(34)	73(46)	41(30)	72(39)	59(30)	37(20)	50(29)
영리약취・유인	78(44)	59(38)	63(34)	73(46)	35(26)	55(31)	30(14)	19(10)	36(22)
부녀매매	-	-	3(0)	-	-	3(2)	13(6)	8(5)	3(2)
국외이송・약취	-	-	-	-	1(1)	-	3(0)	0(0)	0(0)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2013. 6. 19.「형법」 개정으로 변경·신설				3(3)	10(3)	12(10)	10(5)	11(5)
인신매매					2(0)	4(3)	1(0)	0(0)	0(0)

※ 산출죄명 : 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영리약취, 영리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위반

※ ( )는 구속기소

3) 해외 아동 성매매 방지 및 법 집행 노력 강화

우리 정부는 해외 파견 법무협력관, 영사를 통한 정보 수집, 아세안 국가와의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 5. 라오스에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아세안+3(한・중・일) 고위급 회의(SOMTC)'에 참가하여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하여 협력수준의 제고 및 효율적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2016. 2. 및 2017. 2. 외교부에서 '인신매매 근절 협력을 위한 한-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한-미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2016. 12.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 10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인터폴, UNODC의 국제형사공조 담당자 42명을 초청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형사협력과 관련된 실무와 현안을 논의하였고, 실무자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4. 국제형사협력 강화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 이송 관련 국제형사협력 강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 12. 29. 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위 협약에 가입하였던바, 그 결과 우리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 즉 49개국과 일거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1991년 최초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고 1993년 최초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2배에 이르는 국가들과 일거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형사협력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평의회 협약 가입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12. 31. 현재 우리나라는 78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그 중 76개국과 발효된 상태이며,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73개국이 발효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을 송환하였다.

범죄인 송환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수	26명	24명	41명	45명	48명	55명	74명

국제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중 외국에 총 24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16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또한 2005. 11.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 4. 제14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대상자 17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4명, 국외이송 신청자 6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2	15명	1명
2013	5명	4명
2014	12명	5명
2015	11명	1명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나.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 입법 및 비준 추진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 9.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다. 2014. 7.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 절차를 구체화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엄정처리

1) SOFA 협상 및 개정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 체결되어 1967. 2.부터 시행되어 왔는바, 1991. 2. 합의 양해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 이후, 2000. 8. 서울에서 SOFA 재개정 협상을 시작하고, 2000. 12. 28.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개정된 협정은 2001. 2. 28. 국회 동의를 거쳐 2001. 4. 2.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주요 개정 내용은 강간, 살인범에 대한 현행범이나,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군인, 군속의 대물교통사고 대부분을 형사 불입건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2) SOFA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1년 7.8%, 2002년 6.9%, 2003년 30.9%, 2004년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2%, 2009년 49.3%, 2010년 61.8%, 2011년 65.9%, 2012년 76.2%, 2013년 69.5%, 2014년 75.6%, 2015년 70.9%, 2016년 91.9%, 2017년 74.4%로 꾸준한 재판권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사건이 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사건 처리현황은 검찰업무 통계 〈제6장 통계 : 표 2-13〉과 같다.

5. 형집행 지휘·감독

가. 벌과금 집행

1) 집행실적

2017년 세입예산액은 1조 6,945억 1백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84.98%인 1조 4,400억 1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동일한 달성도를 유지하였다. 한편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26조 9,709억 31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1.34% 증가되었다.

2017년 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2-20〉과 같다.

2)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17.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2017년도 집행유공 표창기관 현황

○ 그룹별 기관표창 대상기관

순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주지청	영월지청	공주지청

나. 사형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394명 중 85명에 대하여 잔형 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60명 중 697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2,362명 중 164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하였다.

제 4 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 개 요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85. 6. 14.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법 개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2007. 6.에는 형법 전면 개정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2011. 3.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9. 3.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2011. 7. 선진형사사법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 형사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2. 형사절차법 정비 추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9. 5. 6. 인권신장,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었고, 동 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종전의 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1999. 12.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대통령께 최종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 1. 17. 법제처에 송부하였고, 2003. 10.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제도개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4. 12. 15.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정신청 전면확대, 국선변호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송부한 결과, 양 개정안이 통합(총 182개 조문)되어 2005. 12. 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사법개혁 법안 중 국선변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06.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 7. 19. 공포되어 2006. 8. 20.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히,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 재정신청 전면 확대, 재판기록 공개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법개혁법안도 2007.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도들은 5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2013. 3.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2014. 6. 12.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2009. 3. 발족한 '형사소송법개정특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2. 9. 26. 국회에 제출하여 2015. 07. 24.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 5.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재심무죄 판결문 공고 제도 역시 개선하여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부패범죄 등 내부 신고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특정범죄 신고자등보호법」을 2016.12. 개정하여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내부 신고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철저한 제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7. 12.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더불어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미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수단 등을 보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회에 제출('16. 12. 20.)하는 등 선진형사법제의 도입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형사절차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한편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 6.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전반적인 형법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2008. 8. 6.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각 2008. 12. 26.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중 설치근거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민영화되거나 명칭 등이 변경된 기업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2008. 7. 9.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법무부 주도하에 360여 개에 이르는 형사법상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200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산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석 등 18명 위원 명의로 양벌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통일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세계주의 규정 신설, 정상감경 사유 구체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몰수·추징 시효 확대, 형의 종류 축소 등 정비, 보안처분제도 형법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0. 8. 25. 공청회, 각 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형법총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11. 3. 25.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12. 8. 13.에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정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3. 3. 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1995. 12. 「형법」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신설 이후 17여 년 만에 신종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인신매매죄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12. 10.~12.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대안을 마련하여 2012. 12.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 대응 요구에 부응하는 형사법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되거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2015. 12.에 개정되었으며, 2016. 5.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형법」 제357조가 개정되었다. 2016. 12.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2017. 12.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제78조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개정되었다.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스토킹처벌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형사실체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 5 항 검찰역량의 강화

1. 직제 개편 및 검찰인력의 변동

가. 검사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7574호, 2016. 11. 8. 공포, 2017. 3. 1. 시행)되고, 「검사정원법」의 개정

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검사 70명이 증원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 정원 30명 중 14명(부장검사 3명, 검사 11명)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에서 재배정하고, 16명(지청장 1명, 차장검사 1명 및 검사 14명)은 증원되는 검사 정원에서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증원되는 검사 54명 중 2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로, 나머지 52명은 검사로 각각 배정하였다.

나. 검사 외의 검찰청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7. 2. 24. 개정, 대통령령 27867호)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사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에 증원되는 검사 70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66명(6급 19명, 7급 23명, 8급 13명, 9급 11명)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2명을 운전주사보 정원 2명으로, 방호서기보 정원 2명을 방호주사 정원 1명 및 방호서기 정원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10명을 운전주사보 정원 3명 및 운전서기 정원 7명으로, 방호서기보 정원 5명을 방호주사보 정원 3명 및 방호서기 정원 2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신설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하부조직 일부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재편성하며,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민생치안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6부를,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5부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부를, 제주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부를 각각 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검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다.

또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7. 6. 20. 개정, 대통령령 28122호)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8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23명(6급 5명, 7급 9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 마약거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무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4명),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멀티미디어 파일 분석·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3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였다.

2.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가. 검찰인사

2017년도 검사 인사는 검사장, 고검검사 및 평검사의 승진·전보, 법무관 전역자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의 신규임용 등 차원에서 총 7회에 걸쳐 1,317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여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고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여,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개정하였고, 승진 및 전보 인사 시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

서울고검에는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을 발굴·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하고, 송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우수 자원을 배치하였고, 여성 검사들이 일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중점 분야 근무 검사에 대해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줌으로써, 중점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하여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에 보임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지청장에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보임하였다.

특히 전국 15곳에 달하는 부치지청의 장에는 종전보다 기수를 낮추어, 초임 차장 및 최고참 부장급 중 최우수자원을 배치하여 해당청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2017. 8. 7.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 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 제한',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1/3 미만일 경우 부장 승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일선 형사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부서와 인지부서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 능력과 관리자 자질을 인정받은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였고, 특히 하반기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 하였다.

또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1, 2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치하였고,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나.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 8명의 외부위원과 평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한 3명의 내부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어 신규임용, 전보 등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결정된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였다. 2017년도 검찰인사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2017년 검사 인사내역

(단위 : 명)

구분 / 직위	계	신규임용	승 진	전 보	퇴 직
계	1,412	114	61	1,142	95
검 찰 총 장	2	-	1	-	1
고 등 검 사 장	12	-	-	6	6
검 사 장	46	1	-	37	8
고 검 검 사 급	644	2	60	531	51
일 반 검 사	708	111	-	568	29

〈표 10〉 2017년 검찰사무직 (5급 이상) 인사내역

(단위 : 명)

구분 / 직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퇴 직
계	523(11)	140(1)	321(9)	3	59(1)
고위공무원단	34	9	18		7
3 급	22	12	6		4
4 급	206	45	121		40
5 급	261(11)	74(1)	176(9)	3	8(1)

( )은 마약직

다. 검사적격심사제도 운영

2017년 검사 적격심사 대상은 재직연수 7년, 14년, 21년, 28년인 검사 총 242명이었다.

3.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가. 국내 교육제도 혁신

2017년도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검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검사 교육과정은 검사 전문연수과정인 '특별수사전문가', '첨단범죄수사전문가', '금융수사전문가 등 집합교육 25개 과정, 45회, 1,033명, 사이버교육 160개 과정, 44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검찰직 교육과정은 '검찰인사실무' 등 집합교육 29개 과정, 37회, 1,143명, 사이버교육 179개 과정, 1,957회, 31,76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국외훈련 기회·대상 국가 확대

1) 검 사

검사의 국외훈련은 초기의 미국 위주에서 탈피하여 연수 대상국을 영국·독일·일본·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네덜란드·중국·캐나다·호주·스웨덴·아랍에미레이트·스위스·벨기에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연수기관을 정부기관, 일반대학, 국립전문교육기관, 연구소 및 기타 형사사법 관련 기관으로 다양화하였다.

한편, 6월 미만의 단기연수과정도 꾸준히 확대하여 2017년까지 검사의 장·단기 국외훈련 인원은 1,724명에 이르고 있으며, 검사 장기국외훈련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4〉와 같다.

2) 검사 외의 검찰공무원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1984년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설치한 이래 FBI 수사과정, 콜롬비아대학의 전산전문

연수과정, 일본 국립과학경찰연구소의 문서감정과정, 미국 폴리그래프스쿨 과정 등에 꾸준히 파견하였다.

2017년도 외국에 파견한 검사 외 검찰공무원 국외훈련 인원은 8명이며, 이 중 장기국외훈련 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5〉와 같다.

4.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가. '검찰 마음사랑 프로그램' 실시

수사, 형집행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찰직원의 심리적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 마음사랑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었다.

'검찰 마음사랑 프로그램'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조사자 마음건강 케어(CARE)'와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검찰 마음톡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 5.~2017. 12.까지 운용하였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한국정신분석학회'와 심리상담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2.~2017. 12.까지 집중심리상담을 실시하였다.

나. 동호회 활동 활성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및 구성원의 단결을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 전국청 동호회 활동 지원 예산 1억 원을 배정받아 각 청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고, 대검과 일선청 교류를 위하여 전국 검찰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에 참여하여 타 행정기관과의 교류에 노력하였다.

5. 효율적인 예산편성 · 집행

가. 검찰예산 개요

2017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6,924억 4600만 원으로서 2016년보다 2.7%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9,739억 3676만 원으로 2016년보다 6.8% 증액되었다.

나. 주요예산 집행상황

2017년도 일반회계 중 벌과금 등 세입은 총 1조 4,400억 1800백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목표액의 85.1%를 달성하였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9,739억 3676만 원에 예비비 87억 4,700만 원, 이·전용 15억 9,400만 원 감액 등 예산현액 9,810억 8,976만 원 중 9,769억 4,376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4,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다.

다. 2017년도 검찰예산 편성

2017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6,924억 4600만 원으로서 2016년보다 2.7%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9,739억 3676만 원으로 2016년보다 6.8% 증액되었는바 세항별 내역은 다음 〈표 11〉와 같다.

〈표 11〉 2017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 현황(편성)

(단위 : 만 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9,116억 558	9,739억 3,676	623억 3,118	6.8
인 건 비		6,199억 8,998	6,547억 3,426	347억 4,428	5.6
기본경비	소 계	426억 6,200	442억 700	15억 4,500	3.6
	검 찰 국	5억 7,900	6억 6,900	9,000	15.5
	검 찰 청	406억 6,600	435억 3,800	28억 7,200	7.1
	사회복무요원	14억 1,700	-	△14억 1,700	△100
세 부 사 업		2,489억 5,360	2,749억 9,550	260억 4,190	10.5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은 전주지검 등 7개 청의 청사신축에 필요한 건설보상비 52억 9,300만 원, 공사비 563억 1,000만 원, 기타 부대비로 42억 8,300만 원 등 합계 658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

2017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2017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2017년 예산	편 성 현 황
계	65,886,000	
건 설 보 상 비	5,293,000	· 전주지검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춘천지검 속초지청 · 전주지검 남원지청
설 계 비	1,577,000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춘천지검 속초지청 · 전주지검 남원지청 · 검찰청 기타시설
공 사 비	56,310,000	· 검찰특수기록관 · 전주지검 · 대전지검 천안지청 · 부산지검 서부지청 · 검찰청 기타시설
감 리 비	1,713,000	· 검찰특수기록관 · 전주지검 · 대전지검 천안지청 · 부산지검 서부지청 · 검찰청 기타시설
시 설 부 대 비	143,000	· 검찰특수기록관 · 전주지검 · 대전지검 천안지청 · 부산지검 서부지청 · 검찰청 기타시설
자 산 취 득 비	850,000	· 검찰관사 교환 취득 · 논산지청 독신자숙소 매입

6. 검찰시설의 개선

2017년 검찰특수기록관 등 3개 기관 준공되고, 전주지검 등 5개 기관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바, 구체적인 신축 현황은 다음 〈표 13〉와 같다.

〈표 13〉 2017년도 검찰청사 등 신축현황

청 별	규 모		총사업비	추진일정	비고
	대 지(㎡)	건 물(㎡)			
검찰 특수기록관	6,610	9,330	213억 원	'17년 완공	준공
전주지검	33,235	26,265	745억 원	'19년 완공	
수원지검	33,924	42,969	1,206억 원	'19년 완공	위탁사업
대전지검 천안지청	23,140	16,510	710억 원	'17년 완공	준공
부산지검 서부지청	18,181	21,848	657억 원	'17년 완공	준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18,000	16,859	816억 원	'21년 완공	
춘천지검 속초지청	11,135	6,505	190억 원	'20년 완공	
전주지검 남원지청	11,649	6,478	171억 원	'20년 완공	

제 6 항 국민의 권익 보호

1. 개 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 8.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위원장 : 박원순 변호사, 위원 : 조국 교수, 조균석 변호사, 김종훈 인권국장)를 구성하였고,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확대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활용,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등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한 영상녹화제를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술취득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조사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인신구속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5,782명 중 18.4%에 해당하는 6,574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17년에 모두 2,597회에 걸쳐 구속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7년 피고인 보상은 5,410건에 298억 6,604만 원, 무죄비용 보상은 1,890건에 36억 426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19건에 1억 449만 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14〉와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15〉과 같다.

〈표 14〉 2017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5,410	368	5,042	1,890	7,300
금액	29,866,042	8,702,044	21,163,998	3,604,269	33,470,311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표 15〉 2017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22	19	3	22	0	19
금액	112,757	104,494	8,263	112,757	0	104,494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제 7 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1.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 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 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 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과학수사기획관실이 각 과의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일선 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 4.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는 2007. 10.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래로 2011.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3.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후평가를 통과하였고, 2015.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7. 11.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를 통과하는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2014. 2.경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성인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업무를 개선, 수사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 5.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 장비 총 1,052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 12. 부터는 급증하는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존속살해, 사이비종교집단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비하여 임상심리평가를 도입, 피의자들의 정신감정, 싸이코패스 판별, 범죄 관련 성격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 프로그램(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이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 11.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다.

2017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28,289점(전년 대비 12.8% 증가), DNA감식 38,254점(현장감정물 16,630점, DNA DB시료 21,624점, 전년 대비 3.6% 감소), 심리분석 5,196명(전국), 문서감정 10,925점, 음성분석 1,322점, 영상분석 4,182점, 멀티미디어 복원 1,995점으로 2016년 대비 2.2%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2016. 5.경부터 성충동억제약물 투여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생리검사(PCSOT:Post Conviction Sex Offender Test)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 디스크분석 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CFT 3.5.3.을 운용중이고, 2012. 11.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중·소기업 대상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 12. 회계데이터 압수 도구인 FAST를 개발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기법 연구를 진행하여 2017. 9.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복구 도구인 MSR, MYR을 개발하여 현재 운용중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증거분석 시스템 개발·적용으로 2017년도에는 1,659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9,921건의 증거분석을 지원하였다.

게다가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 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 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 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호르몬 및 상쇄 약물 검사 등 점진적으로 감정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11. 10.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1년부터 연 1회 전국 58개청 과학수사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7. 부터는 과학수사책임관 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후 과학수사 주요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CD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1부는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관하고, 1부는 부본으로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4.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25.)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7.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838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조사실 설치현황 (2004년~2017년)

종류 / 연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3	70	-	-
계	908	21	65	673	77	72

※ 전국 수사검사(968명, 2017. 12. 31. 현재) 대비 86% 설치
※ 설치 누계는 908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38실 활용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 발생 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 12. 31.기준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145,362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37,519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으며,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1,992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연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 2014. 2, 2015. 3. 2016. 7.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 ISFG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다.

2017. 8. 28.부터 9. 2.까지는 아시아 최초로 제27회 국제 법유전 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개최하였으며,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 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 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6.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가.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 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 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관리시스템(DFIS Ⅱ)',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수사팀 간의 분석·협업을 위한 '통합/협업 디지털증거 분석환경',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수사망 인프라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를 위하여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 NET)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국군기무사령부와 디지털증거의 확보(송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 11. 디지털증거의

송치, 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개발한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를 국가 표준(KS X 1220)으로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경찰청(일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2차 구축사업, 2016년에는 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3차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6. 5. 29.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과 2016. 12. 26.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의 개정 및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현출·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8월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한 네트워크(초고속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분석의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7. 검찰업무 정보화

가.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부터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엔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12.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지식검색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정책자료 및 수사사례·기법 등 핵심지식을 손쉽게 등록·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09. 10. 정보보안을 위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전고·지검, 서울동부지검,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2017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등 총 18개 청으로 확대하였다.

2010. 11.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 생산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0. '사용자별 맞춤형 바로가기 기능' 및 '부재중 메시지 설정 기능' 추가 등 메신저의 주요기능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하였고, 전자결재와 메신저 간 연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서공유자와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재 시 소통이 증대되고 충실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2. 기존 메일용량(200MB)을 대폭 증설(15배)하여 3GB로 저장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장기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해졌고, 인사이동 시 업무 관련 자료 이관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012. 1. 해킹방지 및 신뢰성 보장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2. 7. 망분리청(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전후 2주간 메일 시스템 대용량 첨부파일 제한 용량을 확대 적용(500MB ⇒ 3GB)하여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업무편의성이 향상되었다.

2012. 10. e-PROS 통합검색 시 최적의 검색결과가 전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을 재구성하였고, 메신저 시스템의 메모리를 증설하여 메신저 자원부족현상 해소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1. e-PROS 초기화면의 청별 소식을 삭제하고 경조사, 검찰뉴스, 우리청 소식 등 3개 항목으로 재개편, 각 항목당 전시되는 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제목만으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2. 구글 크롬 및 파이어폭스의 IE Tab(부가기능)을 이용하여 검찰 인터넷 메일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교체하여 I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2013. 3.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결재 관련 메뉴에 '접수지연목록'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2013. 7.에는 e-PROS 통합검색 결과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로 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3. 10.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메신저 알림 문구 최상단에 결재 진행 상태를 표시하였다.

2013. 12. 윈도우 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 적용, 디자인·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검찰 메신저Ⅱ 구축사업의 추진 및 e-PROS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등록 불편함 해소,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게시판 및 전자결재 검색 시 본문검색을 제공하여 보다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검사전문화 관련하여 변시 기수 관리 등 법학전문대학 출신 e-PROS 검사계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였고, 공인 전문검사 인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e-PROS 시스템을 보안이 강화된 윈도우7 및 익스플로러9에 최적화하여 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거주 피조사자의 출석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사건 이송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조사에 활용하고자 전국 58개 검찰청 및 51개 교정기관에 '원격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4. 12. 검찰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공유 및 업무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지식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검찰백과사전(Prospeida)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지식관리, 게시판, 전자결재의 검색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시간을 단축시켰다.

2015. 10. 행정자치부에서 구축·배포한 공무원 모바일메신저 '바로톡'을 도입하여 이동·출장 중 업무 정보를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송수신 하도록 하였다.

2016. 3. e-PROS 초기화면에 수사자료 등을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 매뉴얼 코너 메뉴를 구축하였다.

2016. 5. 내부직원들의 자유로운 혁신 제안이 가능하도록 I-PRO(Idea Proposal) 게시판을 구축하였다.

2016. 6. 소통문화 강화와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검찰 인터넷 메일을 접속할 수 있도록 검찰 모바일 메일시스템을 오픈하였다.

2016. 10.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수사 실무전범 책자를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6. 12. 검찰메신저에서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 초기화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 제공 및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검찰 인터넷망을 통하여 수신한 전자우편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수신 메일에 발신지 국가명 표시 및 의심되는 해킹 메일 원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 전자우편시스템 보안기능을 개선하였다.

2016. 12. 팩스의 종이 걸림 등 기계적 결함에 의한 전송장애를 제거하고, 부서별 또는 개인별 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 수신이 가능토록 하는 고성능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검찰청,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수·발신 서버를 설치하여 총 21개 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 12.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대검찰청의 인프라 이중화 구성과 함께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창원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에 수·발신 서버를 설치하여 총 44개 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하였다.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는 1996. 3.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2. 2.에는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이버민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마련

하였고, 2005. 2.에는 사건진행상황 검색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 12.에는 검찰 홈페이지에서 벌과금 납부조회와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이 검찰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 위주의 편리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외부의 의사소통 채널 및 검찰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 9.에 검찰 영상방송국(SPBS)을 설립하고 검찰 영상뉴스인 '검찰포커스'를 제작하여 내부 통신망에 방송하였으며, 2007. 10.부터는 검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http://tv.spo.go.kr)를 개설하고 '검찰 포커스', '사건 속으로' 등 자체 제작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8. 10.에는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고품질의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홈페이지 서버시스템을 이중화 하여 무중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통계를 활용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통합되고 보강된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제공하는 한편, 주요 위치에 팝업존을 배치하고 검찰의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2011. 3. 25. 오픈하였다.

2011. 12.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http://www.spo.go.kr/m/)를 구축하여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찰 홈페이지와 검찰방송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검찰청 찾기', '검찰발표자료' 등 검찰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찰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2012. 11.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최신 웹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3. 10.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공을 위해 DB서버 이중화 구성을 실시하여 24시간 무중단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3~2017 지속적인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5년 연속 인증심사를 통과해 웹접근성 인증마크(제2013-1289호, 제2014-475호, 2015-596호, 2016-663호, 2017-752호)를 획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실시(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등 대상) 결과 검찰청 홈페이지는 "매우우수"로 진단되었다.

2014. 7.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의 사전정보공표대상 등 기능을 개편하여 사용자가 행정정보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2015. 4. 영문홈페이지 News Brief 신규메뉴를 메인화면에 추가하여 검찰주요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9. 법조비리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로그인 절차 등을 생략한 법조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다.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 및 고소·고발지침 개정 등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의 전·후 화면이동 기능 구현 등 일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버 메모리 증설 및 연계 서버 이중화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2011. 12. 일선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 및 공판카드 업무 간소화, 판결문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하였고, 불필요한 알림창 제거로 클릭수를 최소화하였고, 창 크기 조절 기능을 도입하여 멀티태스킹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능개선과 함께 향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화면의 이동 없이 조서작성이 가능하도록 입력절차를 개선하고, 경찰과의 처분미상전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공문서로 통보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 고도화에 한층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검찰사용자와 IT운영자로 구성된 고도화TF를 구성하여 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검사실 업무 경감 방안으로 미제사건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담당자 지정,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 통합, 수사지휘목록 개선, 관련사건 검색 기능 확대, 결정문 조회·검색, 판결문검색, 소속직원의 일정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일선 결재자들이 검사별·부별 수사실적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배당·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찰조사과·수사과 사용자들을 위해 검찰업무 절차에 부합하고 사경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한편, DB접근제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Windows 7 운영체제 도입에 대비 각종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에 노력하여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4. 12.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화면창 크기(1280×960) 확대, 내가 작성한 문서 보관기능, 화면별 매뉴얼 구성 및 서식검색, 해야 할 업무리스트 제공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검사실 업무 개선을 위하여 재기·이송시에도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을 편집·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재기 및 기소중지 업무 화면을 통합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재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전자적 불기소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권 없음'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고, 불기소 사건 재배당 및 일반사건 전환, 검사 결정 및 조서 작성, 전자약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기능을 구현하였다.

2015년에는 사건 공유 범위 확대,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자의 수작업 입력을 전자화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이원화 구축되어 있는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사건 정보가 공유되어 국제수사 공조 요청·발송·통지 등의 업무 편의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통계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담당자가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수사결정시스템에 수사지휘 사건부를 별도 구성하여 우수 수사지휘에 대한 관리로 수사업무를 효율화 하였고, 반부패 범죄사건부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송달 건수 다량 건 7종을 선정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전자화 처리함으로써 일선청 업무를 경감시켰으며,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해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여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의 신속한 통지를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시범 실시한 구술민원서비스를 서울고등검찰청 등 28개 청으로 확대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을 향상시켜 영장집행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2017년에는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결과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재구축하였고, 사용자별 권한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 및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포털을 재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하였고, 2016년에 전자화한 우편송달 업무 7종을 확대하여 체포·구속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발송 처리함으로써 담당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현재 65개 청)에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모의훈련 실시, 정보보호 교육·홍보 자료 게시판 운영 등 검찰정보시스템과 사용자 정보의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정보보호 교육(알면 편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인트라넷 게시) 12회,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등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16년 검찰메일시스템에 해킹메일 신고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2017년에는 네트워크・전자우편 APT공격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사이트와 전자우편 등으로 인한 악성코드 유입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로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급증하는 중국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기별 '한·중 수사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사이버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 보위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와 사이버수사 공조회의 개최, 주한 미 FBI 사이버수사관과 매월 협력회의 실시 등 미국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주요 보안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수사과의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분석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이버수사과에서는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경에 자체 개발하여 2017. 12.까지 총 38,785건을 차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9.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 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 음질 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 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6.), 영상녹화 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와 컴팩트 디스크용 라벨지(2010. 3.)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 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을 특허 등록하였다. DNA-DB운영 및 DNA감정 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 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을 특허 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0.),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을 특허 등록하였다.

제 4 절 범죄예방업무

제 1 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교화 및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범죄예방팀(T/F)을 신설하여 소년범 교화 및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전문 상담사, 대학생 등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상담 및 심리지원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소년원의 수용과밀 해소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진단, 치료, 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치료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약물 사범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등 성폭력·강력사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전자장치 훼손 사범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 개선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에 법교육 및 법질서 실천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법사랑 타운' 사업을 실시하고 '법체험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여 민주 시민 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최근 형사정책의 추세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선도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 이혼율 증가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행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로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서, 비행 청소년 및 출소자 등 범법자를 보호·선도할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어 법사랑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랑위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죄예방 활동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법교육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5. 3.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 3.까지 총 7차 회의에 걸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이라는 최종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법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법조계의 지원 방안 및 평생교육·시민교육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법교육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6. 7. 법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법교육 역량을 총결집한 실무추진기구 성격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법교육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6. 10.부터 초등·청소년·시민 등 각 분야별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교육 발전방안 자문을 위해 법교육 자문위원 간담회를 반기에 1회 개최하였다.

2008. 3.「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관 법교육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년부터 반기에 1회씩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7. 12. 31.까지 임시회 포함 총 21회 개의되었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와 '청소년 법교육 사업', 서울시립대학교와 '시민 법교육 사업',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 법교육 사업',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 법교육 사업', 2009년에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 법교육 사업', 고려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와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와 2012년에는 충남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등 법학전문대학원 13개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법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2016년부터는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법사랑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법동아리 시범운영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과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이 강조되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 속 법교육이 확대되었다.

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기초 법질서가 존중되고,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 3.부터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질서 실천운동은 민간과 지자체, 검찰, 법무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기초 법질서 분야', '안전법규 분야', '셉테드(CPTED) 분야' 등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추진하였다. 특히 셉테드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피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사업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주민역할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시에서 '법사랑타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2015년 9월부터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2016년에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스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배려, 클린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선수, 지도자, 심판들에게는 승부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을 대상으로는 경기장 내 기초질서 준수 운동을 대학생 법사랑 서포터스, 준법지원센터, 지역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전개하였다.

2017년에도 법질서 실천운동은 기존의 일방향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준법의식을 체득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4. 감호제도의 개선

형벌만으로 교화·교정이 불가능한 상습범과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1980. 12. 18.「사회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2005. 8. 4.「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고,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2005. 8. 4.「치료감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2008. 6. 13.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치료감호법」을 개정하였다.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근거를 마련('13. 7.「치료감호법」개정, '14. 1. 시행)하여 '15. 6.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을 법무병원으로 지정하여 무상 외래진료를 확대 실시하였고, 치료환경 다양화 및 지역사회 내 치료기반 조성을 통한 피치료감호자의 지속적인 치료환경 구축을 위해 '15. 8. 국립부곡병원 내 사법병동을 개설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는 치료감호소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소 유휴부지에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5.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988. 12. 31. 제정·공포된「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형법」개정을 통해 1997. 1.에는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초기 소년범에 대한 지도·상담위주의 선도정책에서 재범방지와 위험범죄자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보호관찰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집중 보호관찰 확대 실시, 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등 위험범죄자 관리를 위한 선진 보호관찰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근접접촉위주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도피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하여 구인·유치를 적극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복귀 조력을 위해 지역사회 우수 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해 법사랑 위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 12. 개정「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주취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시되는 등 보호관찰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방식 선택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단순 자료에 의존하던 관행으로부터 탈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경력, 경제상태, 성장배경, 심리상태 등 다양한 범죄유발요인을 근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기초로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방법을 선택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현재 성인 및 소년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각기 전문화된 평가 도구를 적용하고 있으며 더욱 정확한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 감독기법의 차별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범죄유형별 수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새로운 보호관찰기법을 도입·시행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선진화·과학화를 기하였고, 직렬 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및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보호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사이버 보호관찰 집행 시스템인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집행센터(원격집행지원시스템)를 구축하였으며, 보호관찰정보화시스템 간 상호 연계강화, 유형별 디지털 교육자원 구축, 통계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고, 보호관찰대상자 간 중심인물을 파악하여 이들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2016년 보호관찰대상자 간 관계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시범 도입하여 2013년 16개 기관에 135대를 보급한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축적된 약 200만 건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를 심층 분석, 재범위험성·재범유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재범예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방식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범죄인 관리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관찰과 더불어 출소자 등 범죄전력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갱생보호공단은,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에서 '갱생'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2009. 3.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갱생보호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민간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출소자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하였고, 2015년에 이르러 국고보조금으로 5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법무부 독자사업으로 전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2년부터 전문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출소자 심층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갱생보호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검찰의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등 갱생보호 수혜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7.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학교폭력 등 저연령 소년의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2007년 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하였다. 2012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4개 지역에, 2013년 순천·전주·춘천 3개 지역에, 2014년 부산동부·울산·수원 3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7년 현재 총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설치 지역인 제주 지역은 2016년부터 제주소년원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7년에 솔로몬로파크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를 분리·개청하여 대전지역 비행예방교육 기반을 새롭게 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비행예방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비행예방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청초기에는 대안교육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교육 의뢰기관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 교육생의 참여동기 확대 등을 위하여 교육생·보호자 등 교육수요자, 사법기관판사·검사, 교육기관의 장학사·교사,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외명칭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 2013년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검사가 의뢰한 기소유예자,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 학생, 판사가 의뢰한 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판사가 의뢰한 상담조사 및 검사가 의뢰한 결정전조사 외에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개발, 청소년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위기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 등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이 추진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특별교육, 가족캠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마련, 활성화되었다.

2014년에는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교육, 소나기 법캠프 등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를 법률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절도예방, 성비행예방 등 비행 유형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텐츠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는 기존 교육프로그램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청소년비행의 최신 경향 및 자료 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공감체험형 역할극·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사이버범죄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비행예방 교육컨텐츠를 다양화, 전문화하였다.

〈표 1〉 2017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총계	가해학생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교원 직무연수	찾아가는 예방교육	가족·사제 캠프
310,651	3,504	1,333	2,012	767	300,197	2,838

제 2 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체계적 관리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였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신임교육・전문화교육 실시, 포상기준(청소년 선도, 각종 봉사활동별 마일리지제도 개선, 협의회 소속 위원 평균 마일리지로 우수기관 선정 도입) 재정비 등 실무 자원봉사자 중심 인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에서도 '정기총회 및 임원 간담회', '전국 법사랑위원 임원 워크숍',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2017년도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 요

2017년에는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관련 주요 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지도 및 취업알선・재정지원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주도, 장학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문신제거시술 등 의료시혜 지원, 법교육 출장강연 등을 전개하여 선도유예자 및 보호

관찰 위탁 청소년 7,803명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408명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였고, 갱생보호대상자 4,178명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46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6,116명의 학생들에게 24억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범죄취약아동 등 5,318명과 결연을 맺어 상담·지원하는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전국 1,737개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생 449,593명을 상대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154명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2억 6,500만 원, 52개 지역의 지역환경 개선 비용으로 1억 9,9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확산과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가.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결집 및 사기 진작,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범국민적 운동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 8. 31.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대표이사, YTN 사장,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대상자 표창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들에게는 정부포상과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우수기관에는 단체표창을 수여하였다. 정부포상은 24명(훈장 4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범죄예방자원봉사상은 11명(대상 1명, 본상 5명, 특별상 5명), 우수단체 표창은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또한 2017. 11. 30.에는 법사랑위원 등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자 141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구축

범국민적 역량결집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사회 안정,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국 56개 지역 본부가 발족(2008. 6. 30.)하였다. 2009. 4. 23. 안양, 2011. 9. 1. 마산, 2017. 10. 23. 부산서부 본부가 추가 발족됨으로써 전국 59개 지역에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체제를 구축, 2017년에도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3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업

3대 중점 사업인 '준법의식 높이기',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가 다양한 분야의 생활운동으로 정착하도록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 법무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교육청(학교),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등 외부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법질서 준수 우수학교 선정, 표창 및 장학금 지원, 법사랑교실 및 생활법 강좌, 법질서 체험학습, 범죄취약지역 등·하교 집중 순찰활동과 범죄 방지용 호루라기 제작·배포 등 범죄예방활동 전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을 지원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확립운동,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순회공연, 아동지킴이 CCTV설치 및 아동 보호순찰차량 운행, 한마음봉사단 장애인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 청소년 孝 한마음축제 등 1지역 1특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전 국민의 생활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가. 법사랑위원 활동 활성화

각 위원협의회 소속 개인별 연간 목표설정을 통해 법사랑위원 각자가 본연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개월 마다 지역별 우수활동 사례를 취합하여 일선에 전파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나.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탈북·다문화 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법사랑위원 59개 지역연합회에서는 맞춤형 1:1 멘토링, 재능기부, 드림학교·새터민학교 등에 청소년 장학금('17년 탈북청소년 28개 지역, 다문화 청소년 40개 지역)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모·삼촌 또는 이웃사촌 되어주기'의 일환으로 탈북·다문화 청소년 밀집학교,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등에 자원봉사 대학생이 학습지도·인성지도·멘토링을 하는 등 탈북·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법사랑위원 신규위촉 인원의 1/3 이상을 인터넷, 지역방송을 통해 공개모집(35.9%)함으로써 실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활동 수요가 많은 분야에 법사랑위원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와 법사랑위원을 결연하고 있다.

라.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

상담기법, 멘토기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

하고,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을,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 신임교육 및 5년 후 재교육을 하였다.

2017년에는 광주지역연합회 등 법사랑위원 1,083명에 대한 선도예방, 보호관찰 전문화교육 및 신임교육을 실시하였다.

5.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관리, 지역연합회 조직·운영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http://pr.bumbang.or.kr)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범죄예방 지도 및 감독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일리지 제도와 포상기준 재정비에 따라 메인화면 구성·활용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다.

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법사랑위원 활동 홍보 및 국민 참여 확대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계획 게재, 각 분야별 법사랑위원의 활동상황 소개, 수범사례 게재 등 법사랑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원 및 지역연합회의 봉사활동 마일리지 실적을 관리하여 재위촉 또는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고 있다.

6.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7. 2. 10.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지역연합회장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국연합회장 이·취임식,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범죄예방 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제 3 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 개 요

법교육은 미국의 Law-Related Education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는 달리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법적 자질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처럼 법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법과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나 사법제도의 의의·기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기는 사고력 중심, 참여위주의 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가. 자율적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의 법의식 선진화 필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건전한 시민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실용적 법교육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예방

기본적인 법적 소양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법에 대한 경시 및 불신풍조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국민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현재까지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합리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여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절실하다.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가.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법교육의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05년 제1차 회의에서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법교육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방안

나. 법교육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관련된 각계 인사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6년 7월부터 반기별 1회, 총 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 및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초등(3명), 청소년(5명), 시민(5명)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2007. 11. 초등 법교육 전문가 2명을 추가하였으며 2006. 10.부터 2008. 6.까지 총 4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교육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였다.

다.「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 위원회 구성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법교육지원법」이 시행(2008. 6.) 되었고, 법률 시행에 따라 법교육 추진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기관 및 학계, 교육계 등 민·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2009. 2.)를 시작하였다.

2009. 11. 법교육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법교육사업 추진경과, 솔로몬로파크 운영 결과,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0. 3. 법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법교육 사업 운영방향 및 예산심의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0. 12. 법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2010년 법교육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1. 2. 제5차 회의에서는 법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0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1. 5. 법교육위원회 임시회의는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여 헌법광장 개관식 참석과 솔로몬로파크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1. 12. 제6차 회의에서는 2011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질서선진화과 출범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2. 3. 제7차 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교육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2. 12. 제8차 회의에서는 2012년 사업결과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3. 2. 제9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2013. 12. 제10차 회의에서는 2013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2014. 2. 제11차 회의에서는 민주 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안을 심의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헌법가치 및 법질서준수 교육안 개발을 심화하였다.

2014. 12. 제12차 회의에서는 2014년 법교육 추진 실적 경과보고 및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논의하고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 3. 제13차 회의에서는 제4기 법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 및 법교육 주요정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 12. 제14차 회의에서는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법 토론대회·글짓기 대회 개최, 소년조선일보 기획기사 '우리 곁엔 헌법!' 연재(총 38회), 공무원 대상 헌법가치 교육 등 2015년 법교육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6. 2. 제15차 회의에서는 2016년 법교육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예산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 7. 제3차 임시회의에서는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뒤,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심의하였으며, 2016. 12. 제16차 회의에서는 2016년 법교육 주요 추진실적 논의 및 법문화진흥센터 재지정을 심의하였다.

2017. 4. 제17차 회의에서는 2017년 법교육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예산계획을 심의하고, 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하였으며, 2017. 12. 제18차 회의에서는 2017년 법교육 추진 실적 경과를 보고하고 법교육위원회 운영세칙을 법교육지원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간사 규정을 두는 개정안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후 3년이 지난 4개 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심의하였다.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가. 대학생·시민용 교재

계약서 작성 등 일반시민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5. 12.)을 발간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방법, 개인 파산·회생 방법 등 불경기 극복을 위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2009. 2.),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쉽게 범하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2009. 4.)를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생활법률 지식을 담은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2010. 6.) 책자를 발간하였다.

2010년 대한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원 스포츠 폭력과 승부조작 및 비리 근절 교육을 대한축구협회 소속 각급 지도자·심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축구인을 위한 법교육 교재 '축구 잘하는 법(法)'(2011. 12.)을 발간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법적 지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노인들의 올바른 재산상속 및 보이스 피싱·다단계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 (2012. 8.)을 발간하였다.

장애인의 법의식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 '희망을 만드는 법',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 점자 및 음성도서를 발간(2013. 9.)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에 보급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던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 대해 최신 개정법률과 판례,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를 반영한 전면개정판을 발간(2015. 9.)하였다.

나. 중·고교생용 교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2005. 9.)을 발간하였고, 최근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9. 2.)을 발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의 소중함과 헌법정신·이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2009. 7.)를 발간·보급하였다.

학생들이 법과 관련한 사회과 수업에서 토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과 사회에 대해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2010. 2.) 책자를 발간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청소년 축구인의 승부조작 등 비리근절을 위한 법교육 책자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2012. 10.)과 강력범죄 예방교재 '장난과 범죄사이'(2013)를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학생자치법정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벌점제 폐지 등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학생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등의 매뉴얼을 개정 발간·배포하였다.

'청소년의 법과 생활'은 초판 및 부분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된 법률 내용 및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법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전면 개정판(2016. 3.)을 발간하였다.

다. 어린이용 교재

법에 대한 궁금증을 만화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 (2006. 4.),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마법천자문의 '손오공'과 '소라', '여의필' 등의 캐릭터와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진 법교육 만화 '손오공 무법소탕기' Ⅰ·Ⅱ (2006. 9.)·Ⅲ (2011. 6.),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이야기' (2007. 11.)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과 질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초등학생용 만화교재 '법에게 물어봐' (2008. 4.),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만화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2009. 1.)을 개발·보급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다.

유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구름빵을 활용한 워크북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2012. 11.)를 발간하였고, 강력범죄피해 예방 교재인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2013. 3.)을 발간하였으며,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을 위한 '헌법아! 놀자Ⅰ·Ⅱ'(2013. 9. 12.)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였고, 2015년에는 '헌법아! 놀자'를 점자(500권) 및 음성도서(CD 500개)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법교육 만화인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 (2013. 11.)시리즈를 연이어 발간하였고, '나는야! 법짱'(2013. 12.)을 헌법가치 부분을 강화하여 개정·발간하였다.

2014년 헌법가치 교육을 위한 소년조선일보 기획기사를 모은 '내친구 LAWⅠ·Ⅱ'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였다.

2015. 5. 어린이용 헌법교육 만화교재 '조선은 법치국가다'를 발간하여 112개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배포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헌법교육 동화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와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를 발간(2015. 12.)·배포하였다.

2016 .7. 어린이들이 헌법가치와 법질서의 소중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년조선일보 연재기사 모음집인 '우리곁엔 헌법'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6. 8. 어린이 헌법동화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을 발간·배포하였다.

2017년에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서 속 법이야기'를 발간·배포하였다.

라. 다문화가정·새터민용 교재

결혼, 취업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률 및 권리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Fun Fun 대한민국의 법'(2012. 3.)을 발간하였다.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의 종류 및 차이점에 대한 인지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법 바로알기'(2012. 6.)를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다문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교재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과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발간(2015. 6.)·보급하였다.

마. 법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006. 1. 개발된 '법은 내 친구'는 모의국회, 역할극, 판례분석, 쟁점토론 등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프로그램 해설서로 개발되었다.

또한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2008. 5.)을 개정·발간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2008. 3.), 학교폭력 OUT (2009. 12.)을 발간하였다.

2015년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과 관련하여, 중·고 사회과 교사용 수업지도서인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학교 사회용)',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고등학교 사회용)'을 발간(2015. 12.)·보급하였다.

바. 법교육 수업용 강의안

테마별 법교육 강의 자료인 'Law Educator Ⅰ·Ⅱ'는 중·고교생이 알아 두어야 할 법률 지식을 20개의 테마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들어 해설집을 수록하였다.

또한 각 테마별로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수업자료 및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개발하여 CD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법교육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 기초질서 지키기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2012. 11.)을 발간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을 대상별로 개발(2012. 6.)하여 보급하였으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사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강의안을 개발(2013. 3.)하여 보급하였고, 강력범죄 가해 방지 강의안을 추가 개발(2013. 10.)하여 보급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강력범죄 예방, 일반 생활법,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소개 등 (헌)법교육 콘텐츠를 총망라한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를 개발(2013. 10.)·보급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초·중·고교생용, 교사용, 장애인용)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을 발간·보급(2016. 9.)하였다.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6,967명이 수료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직 검사, 대학교수 등 법교육 전문 강사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대검찰청, 대법원, 보호기관 등 견학 프로그램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소년원 학생 등 비행청소년 및 새터민 법교육 실시

2006. 3. 법무부 소속 안양소년원을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주 1회, 2시간씩 '법과 함께 놀자'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권리의식, 책임의식 및 법의식 향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필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2007년에는 소년보호기관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까지 법교육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 그 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2006. 5. 한겨레 중·고등학교 탈북 청소년 학생 및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바로알기' 견학을 2007년 총 4회, 2008년에는 총 33회, 2009년에는 총 44회, 2010년에는 총 63회(999명 참석), 2011년에는 총 67회(1,227명 참석), 2012년에는 총 82회(1,480명), 2013년에는 총 116회(1,351명), 2014년 총 151회(1,606명), 2015년 총 161회(1,730명), 2016년 총 179회(1,808명), 2017년 총 244회(2,068명) 실시하였다.

다. 법교육 출장강연제도(Law Educator) 실시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 법대교수, 관료, 유명인사 등 법교육 강연에 적합한 법교육 강사진을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출장강연제를 시행하여 2006년 총 267회 11만여 명, 2007년 총 607회 19만여 명, 2008년에는 16만여 명에게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사례중심의 법률 강좌를 실시하였다.

2006년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200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운영을 통해 출장강연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9년에 총 865회 운영으로 165,34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828회 운영하여 146,131명이 참여하였고, 2011년에는 1,560회 운영하여 475,913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1,811회 운영하여 455,84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2,290회, 574,034명이 참여하고, 2014년에는 2,222회, 347,180명, 2015년 2,988회, 480,170명이 참여하는 등 총 3,125,880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 7월부터 기존 법교육 출장강연 외 전국 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6년 5,547회, 777,239명, 2017년 10,301회, 1,175,705명이 참여하였다.

라.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2006년 의정부 광동고, 전주 상산고 등 5개 시범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2007년 전국 15개교, 2008년 전국 23개교, 2009년 전국 34개교, 2010년 전국 49개교, 2011년 전국 388개교, 2012년 전국 660개교, 2013년 전국 1,045개교, 2014년 전국 1,580개교, 2015년 1,720개교, 2016년 1,139개교, 2017년 1,03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을 위반한 동료학생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내리는 대표적인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 및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2014년에는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하여, 2017년 제4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마.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인터넷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직무연수가 가진 공간적 한계를 극복, 단기간에 많은 수의 법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를 개발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988명의 교사들이 수료하였다.

바. 제12회 전국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12회 전국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 195개(고등부 형사 100개, 고등부 민사 45개, 중등부 형사 50개)팀이 대본심사에 참가하였다. 이 중 4개 권역(경기, 서울·인천·강원, 대전·광주·충청·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각 18팀 내외(고등부 민·형사, 중등부 형사 각 6팀) 총 70팀이 지역예선에 진출하였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본선대회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고등부 형사부 4팀, 고등부 민사부 4팀, 중등부 4팀 등 총 12팀이 경연을 벌인 가운데 고등부 형사부문에서는 매원고등학교 'The Lawing'팀이, 고등부 민사부문에서는 종촌고등학교 'SPES JUSTITIA II' 팀이, 중등부 형사부문에서는 원이중학교 '원이법률사무소' 팀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2017년 전국 고교생 92개교(132팀)에서 총1,124명이 제1회 고교생 생활법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해 관련 법을 적용하여 탐구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사고력과 생활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가치와 책임감 및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고등학교(법무부장관상) 등 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교사부문 수상자는 하나고등학교 교사 이은창 등 3명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본선(캠프)에서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진행되는 1박 2일간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 및 생활법 토론캠프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토론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아. 제7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대회로 진행,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질서 의식 및 헌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대회로 개인 및 단체전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예선, 4개 지역 예선, 1박 2일간의 법사랑캠프를 거쳐 최종 성적을 가리고 매년 법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7년 제8회 대회까지 총 2,891개교, 18,680명이 참여하였으며 제8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에는 전국 270개교, 1,376명이 참가하여 이 중 43개 학교, 5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부분 대상은 세도중학교 류신아 학생(법무부장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연현중학교가 수상하였다.

자. 제8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개최

가족, 학생, 직장인 등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가치를 헌법형식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일반국민에게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대회로 2017년 총 1,007편이 접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수작 147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차. 제4회 헌법토론대회 개최

학생들이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헌법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첫 대회는 255팀, 2015년에는 277팀, 2016년에는 286팀, 2017년에는 200팀이 참가하여 전국 4개 권역에서 지역예선을 거친 후 본선토론을 치뤘으며, 본선 진출 16개 팀 가운데, 대전문정중학교(중등부 대상)와 삼산고등학교(고등부 대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 스포츠선수 대상 법교육 실시

2011. 12. K리그 15개 구단 신인선수 122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2 K리그 신인선수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제주유나이티드 등 프로축구단과 배구연맹 선수 및 감독 등 155명을 대상으로 비리방지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KBO와 연계하여 프로야구 1군 7개 구단 및 2군 5개 구단 등 360여 명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심판매수 등 비리 근절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16~'17년에는 선수, 심판을 비롯한 스포츠 관계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끗한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검사를 비롯한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스포츠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KFA(대한축구협회), KBL(프로농구연맹),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KSU(한국빙상경기연맹), KBO(한국야구위원회), KOVO(한국배구연맹),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등의 선수 및 심판, 스포츠 종사자들 대상으로 총 333회

19,751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축구 선수를 위한 법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개최 및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담당자 대상 스포츠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승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스포츠계의 비리를 근절하고, 프로 신인 선수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6.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

가. 유아 법교육 확대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기관에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 법질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유아 발달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4,047권)하고 교육청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015년 18회, 2016년 14회, 2017년 27회 개최하였고, 일선 유아교육 기관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웹사이트에 탑재하는 등 유아 교육기관의 법교육 운영을 지원하였다.

나. 초등학생 법교육 확대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육부가 인증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로 배려하는 친한 친구' 등 5종과 자유학기제 법교육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법사랑학교' 프로그램을 2014년 460개교, 2015년 797개교, 2016년 282개교, 2017년 165개교에서 운영하였다.

다. 일반시민 대상 법교육 활성화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소재를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시민로스쿨'('13년~'17년 총 853회 16,965명) 및 시민법률콘서트('07년~'17년 총 95회 28,652명)를 개최하였고,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주부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7.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가. 유관기관과 MOU 체결

2006. 3.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MOU를 체결하였고, 시민 법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와도 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캠페인을 통한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법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법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2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법교육 활성화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교육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제2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2010. 4.)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저작권 퀴즈대회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게임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MOU를 체결(2010. 6.)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학교 법교육 등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법교육학회 등 민간 연구활동 지원

법교육의 학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부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약 30여 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및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8. 민간 법교육 지원

법무부는「법교육지원법」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희망재단,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안산·대전·부산·창원·광주·청주·대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총 16개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2014년에는 춘천·전주·울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총 3개 기관, 2015년에는 사단법인 청소년전략21, 수원·울산·부산 동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총 4개 기관, 2016년에는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2017.12.31. 현재 총 80개 기관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인력양성 등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9. 법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설립·운영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과 부산에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였다.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연수관(2008. 1. 개관)과 법체험관(2009. 3.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작년 한해 145회 진행하여 9,508명이 수료하였으며 개관이래 누적 68,309명이 수료하였다.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이루어진 법체험관은 작년 한 해 260,065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였으며 개관이래 총 223만 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법체험, 법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2016. 7.)된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대전과 달리 법체험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은 개관 이래 341,533명이 방문하여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였다.

제 4 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1.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법무부는 일상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체감하지만 형사법 체계상 일일이 대응하기엔 경미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내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 개선 및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원년인 2014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셉테드 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공모(62개 지역 신청)를 거쳐 25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기초 법질서 준수 분야(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광고물 금지,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는 서울 등 15개 지역에서 활발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부산 동부 '피서지 질서 확립·바다사무소 운영', 광주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등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안전법규 준수분야(산업안전, 수질안전, 화재안전[문화재])는 울산 등 7개 지역을

선정·추진하였다. 특히 김천에서는 낙동강 '水 '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셉테드 사업은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간,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저비용·고효율' 성과를 위해 셉테드 밀착설계 및 지원을 담당할 민간 셉테드 전문가와 지역을 1:1로 연결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실천운동의 사업 동력확보 및 우수모델 발굴, 국민적 실천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전국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MOU 체결, 농협, 대한건설협회, 법사랑위원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9월부터는 실천운동의 생활속 파급력 확대를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목표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였고,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수질보호, 주차배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별 배려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2015년에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로 인해 셉테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였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안산·수원 등 강력범죄발생 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을 추가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 맞춤형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배려, 법질서 실처운동'의 확산과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각종 프로·아마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16. 5.), 프로농구연맹(KBL, '16. 3.)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선수·지도자·심판 등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장 내 기초 질서 확립 및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사랑 대학생 서포터스, 법사랑위원, 전국준법지원센터 직원들과 직접 경기장을 찾아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2017년 법질서실천운동은 기존의 일방향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준법의식을 체득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임신부 및 노약자 체험, 선플달기, 법질서 실천 서약 등으로 구성된 '법질서 플레이존' 체험 부스에는 전국 4개 도시에서 약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청주KB스타즈 농구단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청주지역 6개 학교에 찾아가는 법교육 및 농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선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선플운동'을 제10기 법사랑 서포터스가 지원하였다.

또한 셉테드 사업은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부 예산이 확보 되었다. 사업 규모

확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협력하여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효성 있는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16. 2.「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제2세대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법사랑 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기존 셉테드 사업이 범죄가 빈발하는 소규모 지역에서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진행된 반면, '법사랑 타운'은 법무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범위를 행정 동(洞, Town)단위로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지자체, 학교 및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 셉테드 사업에 '범죄예방 법교육', '법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효과적 셉테드 사업 운영과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2017년 현재 총 58,946명(온라인교육 52,645명, 순회교육 6,301명)이 수료하였다.

2.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온라인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로 국민 누구나·언제·어디서든 즐기면서 시민적 규범의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법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였으며 5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유아놀이터 :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

② 어린이세상 :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영상시청을 통해 재밌게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

③ 청소년로스쿨 : 영상과 켐페인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도록 구성

④ 법사랑학교 : 합리적 법의식과 건전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법무부가 개발한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인 창의 활동 등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⑤ 참여마당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법교육 전자도서관', '유튜브' 등에 탑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법교육 콘텐츠로 실질적 법교육 효과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온라인 '법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법교육 전자도서관'은 법교육 출간교재, 연재기사, 연구보고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법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법질서 및 민주 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로, 법교육 자료가 필요한 성인, 교사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법교육 자료를 열람,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① 멀티미디어콘텐츠 : 동영상, 읽어주는 만화, 카드뉴스, 연재기사, 스포츠와 법 이야기 등으로 콘텐츠를 분류,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서 법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② 문서/전자책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기반의 법교육 자료(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를 PDF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법교육을 위한 강의자료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③ 교사커뮤니티 :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법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지도안, 워크북 형태의 법교육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하며, 법교육 교안의 요청 및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성

④ 자료검색기 : 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 다양한 분류의 전자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⑤ 전자문서 웹뷰어 : PC/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문서의 열람 및 시공간의 제약 없이 법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 홍보

법무부는 법질서 캠페인 집중 홍보를 위하여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학교폭력예방, 사이버질서, 기초질서 등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를 SBS TV, CMB 등 전국 케이블 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에 총 3,000회 이상 송출하는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등 법질서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폰용 앱 '법아! 놀자! (1탄)'를 출시하여 약 22만 건이 다운로드 되고,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 약 15만 건이 다운로드 되는 등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법질서 지수를 인터넷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LQ 테스트' 서비스를 법질서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기초질서를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한 카툰북 '법아! 카툰과 놀자'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

2012년에는 '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등 다양한 공익광고를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서울・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및 뮤직비디오 등 문화 콘텐츠를 제작,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리 캠페인에서 CD를 배포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2012. 7.)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 및 법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부의 활동을 소개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및 캠페인송을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법질서 준수 수준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을 통해 홍보(2013. 9.~12.)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2013. 9.~12.)하였다. 또한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편을 방영하였으며,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Daum'과 협력하여 셉테드(CPTED)의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20,766명이 참여하였으며,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 부를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셉테드 사업과 관련하여,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되었고,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되었으며,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당 300여 회)에 송출하였다.

2016년에는 법질서실천운동 등 법무부 주요 정책을 SNS로 홍보하기 위해 개설('15. 8.)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가 구독자 수 9,900명을 돌파하였다. 법사랑서포터스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성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삼국지 속 이야기를 법률로 풀어보는 '삼국지 웹툰' 등 총 300여 개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였으며 다양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콘텐츠 누적 조회 수 약 4만 회를 달성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홍보의 장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 하였다. 구독자 10,000명이 넘는 법질서 실천운동 페이스북에 준법지원센터와 소년원 재능 나눔을 주제로 한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청취하는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를 실시하였다.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를 실시하였고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합뉴스 TV, 채널 A에 공익광고를 송출하였다. 이런 집중 홍보 실시 결과 '17. 12. 31. 현재 재능나눔을 신청한 재능 기부자는 100명을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제 5 항 감호제도의 개선

1. 개 요

1980. 12. 18.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 자로 「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상습범에 대하여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및 천안교도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소에서 각각 체계적으로 수용·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제도 폐지 입법 정신을 존중, 가출소를 확대하여 2006년 167명, 2007년 66명이 가출소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가출소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8년 28명, 2009년 15명, 2010년 17명, 2011년 19명, 2012년 15명, 2013년 37명, 2014년 33명, 2015년 23명, 2016년

53명, 2017년 43명이 가출소 하여 2017. 12. 31. 현재 31명의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법안으로 「치료감호법」을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함으로써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였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과 출소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정신질환 사범과 약물중독사범 및 정신성적 장애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고 약물중독사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치료효과 증진과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감호소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2016년 3개년에 걸쳐 5개 유휴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증상별 분류수용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2016년~2018년 3개년에 걸쳐 11개 대형병실(정원 50인)을 10인 이하의 소형병실로 리모델링 중이다.

2. 감호의 엄정 집행

가. 보호감호 집행현황

2005. 8. 4.자 보호감호 폐지의 입법정신을 존중하여 가출소를 확대함에 따라 2017. 12. 31. 현재 31명의 피보호감호자를 경북북부제3교도소, 천안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피보호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5 내지 표 3-10〉과 같고, 피보호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집행인원	39	34	36	45	31	24	18	20	22	31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2017년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은 2008년에 비하여 23.7% 감소하였으며,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는 2017. 12. 31. 현재 1,096명이다.

피치료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11 내지 표 3-16〉과 같고, 피치료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표 3〉와 같다.

〈표 3〉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집행인원	316	389	332	288	320	372	308	305	311	241

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1)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7, 표 3-18〉과 같다.

2) 피보호감호자 학과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내에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피보호감호자 중 희망자를 상대로 학과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표 4〉와 같이 2008년에 4명, 2012년에 1명, 2014년에 1명이었다. 학사고시반은 2016년에 6명을 교육하였으며, 그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7〉과 같다.

〈표 4〉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현황

(단위 : 명)

자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	-	-	-	1	-	1	-	-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3	-	-	-	-	-	-	-	-	-
고졸자격	1	-	-	-	1	-	1	-	-	-

3)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촉진하고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990. 5. 1. 치료감호소 내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17년에는 224명에 대하여 건축시공,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5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보화 종목의 훈련을 활성화하였다.

2017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17년도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계	건축시공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224	20	44	23	52	85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 대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사항 등을 심사·결정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9, 표 3-20〉과 같다.

나. 가출소제도의 탄력적 운영

가출소인원은 「사회보호법」 시행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1,05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보호감호 제도의 존폐 및 개선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정책위원회 등 각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3. 7.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범죄유형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가출소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2005년 407명, 2006년 167명, 2007년 66명이 가출소하였으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전체 수용자 감소 등의 사유로 가출소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2008년 28명, 2009년 15명, 2010년 17명, 2011년 19명, 2012년 15명, 2013년 37명, 2014년 33명, 2015년 23명, 2016년 53명, 2017년 43명이 가출소하여 12월 말 현재 31명이 수용 중이다.

다. 집행면제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관찰을 받은 가출소자로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등 관찰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 집행면제를 결정하여 주고 있다.

그동안 집행면제 인원은 2004년 44명, 2005년 182명, 2006년 160명, 2007년 17명, 2008년 2명, 2009년부터는 2011년 13명을 제외하고는 집행면제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2007년도부터 급격한 감소는 그동안 가출소 확대 조치에 따른 수용인원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에 기인한 것이다.

라.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경과, 범죄경력,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징역형기와 상관없이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가 하고 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보호시설 연계 방안을 수립·시행하였고, 판사·검사·변호사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종료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가. 개요

치료감호소는 1987. 11. 3. 개청한 이후 정신질환자, 약물남용자, 정신성적 장애자 등을 치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방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17년도 법원·검찰·경찰로부터 464명의 정신질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정신감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재판, 사건조사 등에 협력하여 명실 공히 법정신의학 분야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치료감호소에서는 진료체제를 정비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치료감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치료감호소 업무능력 제고

2017. 12. 31. 현재 전공의 7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전문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자체교육 매주 4회, 외부강사 초빙교육 7회 7명, 유관의료기관 파견 4회 2명을 실시하는 등 수련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1997. 11. 10.부터 '국립감호정신병원'으로 기관 명칭을 병행 사용하다가 2006. 7. 11. '국립법무병원'으로 병원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외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질환 치료병원으로서의 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1. 12. 2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2013. 1. 30. 강남을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장애범법자 공동연구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7년 '범법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피치료감호자를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피치료감호자 치료재활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였다.

다. 치료감호의 효율적 집행

2014년~2016년 3개년에 걸쳐 5개 유휴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2016년 1개 병동을 재운영함으로써 과밀수용을 일부 해소하였다. 또한 2016년~2018년 3개년에 걸친 대형병실 소규모화 사업을 통해 증상 정도에 따른 구분수용으로 치료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치료감호소에서는 피치료감호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신규 입소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각 병동에 분리수용하고 있다. 이후,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치료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응훈련과 예술요법, 작업요법, 사이코드라마와 같은 집단요법 등 정신재활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7년도에는 피치료감호자에게 정신건강교육 61회 1,462명, 단주·단약 교육 144회 3,042명, 가족교육 8회 202명 등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건축시공,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5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24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89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그 속성상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치료감호 가종료 후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재발과 이에 따른 재범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무료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5. 6.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을 법무병원으로 지정하여 무상외래진료를 확대 실시, 2017년 2,263건의 무상 외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퇴소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시행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2008. 12. 14.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2009. 1. 치료감호소내 성폭력치료재활센터가 개설되었으며, 2017. 12. 31. 현재 인성병동에서 95명을 수용·치료중이다.

그리고 2011. 2.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12. 3. 정신성적 장애자 핵심심리치료 프로그램(공통), 2013. 3. 정신성적 장애자 확장심리치료 프로그램(심화)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 3.부터 대상자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험 환경을 심리체험의 장으로 유도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다중감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 치료관리 강화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

2013. 7. 30. 개정 「치료감호법」을 통해 살인범죄자 감호기간 상한 연장제도(2014. 1. 31. 시행)를 도입하고, 치료감호소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 법적근거 마련(2014. 1. 31. 시행) 및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 시설로 지정(2015. 1. 31. 시행)하였다.

2015. 12. 1. 개정 「치료감호법」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2016. 12. 2. 시행)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7. 12. 12. 개정 「치료감호법」으로 재범위험성으로 가종료되지 않고 치료감호 만기 종료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3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제도(2018. 6. 13. 시행)를 도입하였다.

제 6 항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 개 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범죄인의 죄질, 연령, 성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재범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자 각자에 맞는 차별적인 처우기법을 적용할 때 재범방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양한 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그 적용범위와 집행방식을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가. 보호관찰 강화정책 추진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범 고위험군 밀착감독 강화,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 확대, 출소자 자립지원 강화 및 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 6. 22. 「소년법」 개정으로 다양해진 보호처분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소년 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분류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인용률 제고 등을 통해 엄정·충실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고, 갱생보호시설의 숙식제공기간 연장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11. 29. 시행)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률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강화되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직·인력의 확충 등 보호관찰 내실화 기반조성을 추진하면서 소년전담 보호관찰제도 실시, 성폭력, 마약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직원제 실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원인 분석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처우계획 수립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엄정·충실한 법집행

보호관찰의 재범통제 및 사회방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2006년 평택, 대구서부, 2007년 서산, 여주, 통영, 경주, 논산, 정읍, 속초 등에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였다.

2009년 상반기 안양, 영월, 제천, 공주, 상주, 거창, 해남 7개 지역, 2009년 하반기 영덕, 밀양, 남원 3개 지역, 2010년 하반기 인천서부, 영동 2개 지역에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여 전국 법원·검찰청 설치 지역 중 장흥, 의성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보호관찰기관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보호관찰활동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고의로 회피하는 미신고자, 무단 거주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제도를 통해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도에는 1,68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재추적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 일반대상자에게 보다 내실 있는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6. 10.에는 소재불명 가출소자의 조기검거와 재범방지를 위해 가출소자,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지명수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명수배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형벌권을 더욱 내실있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다.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대상자 행동변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문치료·가족치료 등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숲체험·무용·음악·템플스테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대상자에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적 상담 실시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루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성매매사범 전문수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매매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프로그램 전문화, 전문강사 Pool 구성 및 기관 간 공유, 교육실시기관 확대 등 성구매자의 건전한 성의식 개선을 통한 성구매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라. 보호관찰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적인 연구 기획력 강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은 실증적 자료와 이에 기초한 연구기획물을 토대로 입안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건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선진화와 체계화를 위해 현직 보호직 공무원 중 보호관찰실무, 연구기획력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 '05년 11월부터 '보호관찰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11년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재범자특성자료 분석, 판결전조사 분석서 발간,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보호관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 지원 연구에도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실태분석, 보호관찰 면담론 개발, 강도사범 청구전조사 대상자 특성 분석,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특화된 사회봉사 명령 집행 방안 연구 등 보호관찰집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그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기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가.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 '10년 살인, '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12. 12.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08. 9. 1.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17. 12. 31.까지 7,501명(성폭력 4,065명, 살인 2,599명, 강도 822명, 미성년자유괴 15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90%로, 제도 도입 전 5년간('04.~'08.)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 시 1/7 수준에 불과하다. 재범률 감소의 원인은 24시간 행적이 파악되어 재범하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 월 4회 이상의 대면접촉,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점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등으로 분석된다. 대상자 스스로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 이유로 전체 설문대상자의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응답하는 등 전자감독의 재범억제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훼손하였거나 훼손 후 소재불명 된 사람은 총 95명으로 징역형 등 엄정한 제재를 받았다. 전자발찌에 내장된 센서가 미세한 훼손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은 물론 112에도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감독 관계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 공조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범죄수법 및 이동경로 분석,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대면접촉 상향 조정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근본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1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상시감독 및 24시간 경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3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도입(14팀)하여 '16년 전국으로 확대(42팀)하였다.

또한 휴대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고 스트랩 내부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늘려 훼손을 어렵게 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였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수법·이동패턴 등을 분석한 후 재범위험성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나.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시행

성폭력범 중에는 성적 이상 습벽으로 범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형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0. 7. 2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물치료제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제도이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함께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는 함께 선고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치료명령을 집행하게 되는데, 약물투여를 위한 검사 및 약물투여의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2010. 7. 법률 통과 직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준비 T/F를 구성하고, 선진외국의 운용실태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였으며, 학계, 실무계 등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 7.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진단·감정, 치료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의뢰 매뉴얼을 만들어 대검찰청 및 일선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을 감정기관(8개) 및 치료기관(10개)으로 지정하였다.

2012. 12. 18. 법률 일부개정(2013. 3. 19. 시행)으로 피해자 연령제한이 폐지('16세 미만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7. 12. 19. 법률 일부개정(2018. 1. 1. 시행)으로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가 마련되었고, 치료기간의 기산일을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일로 병기하는 등 치료기간의 기산점이 정비되었다.

2017. 12. 31. 기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11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법원판결에 따라 22건이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2명을 집행하고 있다. (20명은 징역형 복역으로 집행대기 중)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00. 7.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던 신상정보관리제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다양화되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무부에서는 2011. 4. 16.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하였으며,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주체를 각각 일원화하고 등록 대상 성범죄를 확대하는 등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였다.

2015. 7. 헌법재판소가 신상등록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 조항(제4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6. 12. 20.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범죄로서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등록 면제제도(Clean Record), 등록정보 열람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하는 등록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 12. 17. 신상정보관리센터를 출범하는 등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 2017. 12. 31.까지 58,053명의 신상정보를 등록('11년 대비 208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13,041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724명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였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4.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가. 보호관찰 활용 확대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용처우와 더불어 형사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성매매사범에까지 확대되는 등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어 2017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존스쿨 교육 등 240,073건의 실시사건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시설내처우 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 범죄수법 전수, 사회적응력 약화로 인한 재범 반복 등 문제점을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처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재범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직·비진학 대상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558명을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124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였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성과는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사회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연도별 직업훈련 등 원호 실적은 〈표 6〉와 같다.

〈표 6〉 원 호 실 적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원호	소 계	10,062	11,246	11,630	14,851	15,664	17,996	23,437	24,759	23,526	26,741
	숙소알선	243	229	190	167	256	247	238	195	214	193
	취업알선	104	152	67	75	136	251	257	152	163	124
	직업훈련	585	714	498	405	481	529	613	532	507	558
	복학주선	505	657	1,612	1,661	2,357	2,579	2,941	2,274	2,196	1,089
	경제구호	8,292	9,181	8,679	11,970	11,959	13,680	18,653	20,929	19,738	22,776
	문신제거	333	313	584	573	475	710	735	677	708	562
응급구호(의료)		25	20	119	134	232	760	1,367	724	936	1,439

5.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가. 구축배경

1989년 소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성인까지 전면 실시된 후 가정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범죄,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2017년 240,073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판결전조사, 기소전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결정전·청구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 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관찰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여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152건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미국 54건, 독일 50.8명, 일본 21건, 영국 16건, 호주 20.8건)과 비교하여 약 3~9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찰 역량의 배분이 필요하다. 즉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보호관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제로 사회적응을 도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나. 시스템 내용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은 저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IT장비(PC, 스마트폰 등)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을 통한 원격 집행감독,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현장 정보 검색 등 업무처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세서 혁신 시스템으로 나뉜다.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과 보호관찰현장업무 지원시스템'은 보호관찰 대상자 접촉을 강화하여 대상자 행동통제에 기여하였으며, 화상전화·음성분석 등의 IT기술을 통한 집행감독 강화, PDA폰·GPS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로, 재범억제를 통한 보호관찰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원격감독시스템'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감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출퇴근시간의 자의적 기록 및 명령이행 시간 계산오류를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감독함에 따라, 대리출석·무단이탈 등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이버 보호관찰소'를 통해 재범 저위험 대상자 스스로 보호관찰관이 On-line 상에서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여 컴퓨터 등으로 보고하고, 범죄예방위원은 경과통보서 등을 On-line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로 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9~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행정안전부 행정DB사업에 보호관찰카드 DB 구축사업(3단계)이 선정되어 보호관찰카드 약 41만 건(1,370만명)을 디지털화 하였다.

그리고 2011년 '보호관찰 무인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이후 2013년에 16개 보호관찰기관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무인단말기 135대를 활용하여 22,582건의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545,476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출결관리를 처리함으로써, 종이 문서 생산을 최소화하고 보호관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보급 사업을 통해 유비쿼터스 보호관찰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위치추적관제시스템(U-Guard)'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치추적관제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장치(스마트폰)를 전국 보호관찰기관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보호관찰대상자 간 관계망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간 중심인물 파악 및 이들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통한 재범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을 통해 재범 저위험 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격하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신,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게 보다 집중하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범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향후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축적된 약 200만 건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를 데이터 분석하여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도들은 계속하여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표 7〉

시 스 템	내 용	적용 대상자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보호관찰대상자의 상황 및 동태정보를 기록하고 열람하는 보호관찰 메인시스템	전(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통합지원시스템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보호자교육 등의 집행업무와 조사업무, 통계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전(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 DB시스템(PACS)	'07~'10까지 4년 간 종료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카드를(판결문, 신고서, 집행상황부 등)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	보호관찰 종료자
•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	연간 150만 건 이상의 종이 서류를 생산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무인디지털 단말기를 통하여 생활보고서·신고서 접수, 집행감독 등 친환경 보호관찰 IT환경 구축	전(全)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 (MOPIS)	출장현장에서 PDA폰(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상자 정보검색·입력, 지리정보 활용으로 현장 처리능력 획기적 개선	전(全) 보호관찰대상자

시 스 템		내 용	적용 대상자
•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 전송 서비스(P-SMS)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교육일정, 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	전(全) 보호관찰대상자
• 사이버보호관찰소(CPO)		대상자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준수사항 확인, 야간 정기 생활보고 등이 가능하게 구현된 Web상의 보호관찰소(휴일·야간 보호관찰 업무 공백 최소화 효과)	재범 저위험 보호관찰대상자
• 사회봉사·수강명령 사이버감독	1세대 화상 전화 감독 시스템(DPS)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에 설치된 화상 전화기를 통해 집행감독 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2세대 원격감독 시스템 (COEMS)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상으로 전송, 기타 문서 자동송출,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 가능	
•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CVS)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외출제한명령대상자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독	전자감독 대상자
• 위치추적 현장감독 장치 (Mobile U-Guard)		출장 현장에서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접속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 연락처, 신상 정보 등을 확인함	전자감독 대상자

6.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가. 판결전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판결전조사는 2008. 12. 26.「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법원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가 형사사건 선고 전에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인 반면 법원결정전조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같이 보호사건에 한정된 각종 피의자의 범죄원인,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 의뢰한 법원에 회보하는 것이다.

법원결정전조사는 2007. 8. 3. 공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 2007. 12. 21. 공포·개정된「소년법」제12조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등에서 규정하여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검사결정전조사

2007. 12. 21.「소년법」 제49조의2의 신설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선고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호관찰관의 조사 영역도 확대되었다. 또한 20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청구전조사

청구전조사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조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형집행종료후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조사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및 형집행종료후 보호찰명령 청구전조사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하는 제도이다.

성충동약물치료 명령 청구전조사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마. 소급청구전조사

소급청구전조사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성폭력범죄로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피조사자의 범죄의 동기,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제도이다.

바. 환경조사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여 교정 교육자료,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

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이용된다.

연도별 판결전조사 등 조사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판결전조사 등 조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판결전조사	3,631	4,273	3,597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법원결정전조사	3,186	3,311	4,234	6,398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검사결정전 조사	-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청구전조사	-	92	304	1,376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소급청구전조사	-	-	-	2,251	772	354	247	192	119	79	86
환경조사	1,861	1,862	2,009	1,738	1,581	1,715	1,701	1,594	1,561	1,555	1,920

7.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121명에 불과했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1997년 사회봉사명령을 성인범에 까지 확대하면서 명령부과 인원이 급증하여 30,551명에 이르렀고 해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63,050명에 달하는 등 보호관찰과 함께 주요 사회내처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09년 9월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66,749명을 집행하였다.

가.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2010. 4.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농촌 일손 돕기를 전국 단위로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2017년도에 연인원 97,188명을 투입하여 농번기 일손 돕기, 영세농가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재해피해 복구 등의 농촌지원을 실시하였다.

지난 2010년 이후 7년여 동안 전국 농촌 지역에서는 817,088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원활동을 펼쳤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817억 원[1]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13년 5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기존의 관(官) 주도로 진행되던 사회봉사 제도에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2017년에는 국민공모제 총 2,992건에 26,33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지원, 소외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공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내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이후 총 10,696건에 사회봉사 대상자 106,226명을 투입,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 있고 그 경제적 지원효과는 약 106억 원[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재해피해복구지원,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연탄배달', '김장 담그기', '장애우 나들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봉사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집행 분야를 발굴하여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 실시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아져 강제적 명령에 의한 집행완료 이후에도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에 미담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이 피해를 입힌 지역사회에 배상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엄정·투명한 사회봉사 집행감독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협력기관 평가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협력기관에 설치한 화상전화기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인 원격 감독시스템을 2008년에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

1) 817,088명 × 1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기준)
2) 106,226명 × 1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기준)

원격감독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하여 사회봉사대상자 출·퇴근 시간을 자동 입력하고, 명령 처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대리출석, 집행장소 이탈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전국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설치됨으로써 집행의 엄정성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다양한 집행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행개시 전, 현장감독 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8.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가. 수강명령 분야별 전문화로 집행효과성 제고

수강명령은 성폭력·가정폭력·약물·교통 사범 등 범죄인의 의식개선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억제하는, 재범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조화 및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치료적 기법을 시도하고, 범죄원인 등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범죄인의 인식 및 행동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수강명령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성인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최초 개발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실무에 맞게 보완·업데이트하고 있다.

가정폭력예방, 약물중독치료, 소년심리치료 등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수강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체 개발 T/F를 통해 2010. 2. 전문프로그램과 표준매뉴얼을 개발한 뒤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있다.

또한 2011. 8.에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전문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첫째, 모듈식 구성으로 집단의 특성 및 진행자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가 가능하고, 둘째 10명 내외 소집단 구성 및 1개월 이상 장기 집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셋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나. 수강명령담당자 전문성 향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전문 인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수강명령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교수,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상설·상시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수강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시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강명령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전문교육 수료인원이 190여 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9년 이후 성폭력치료, 가정폭력치료, 소년심리치료, 약물중독치료, 준법운전 수강명령 등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사내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명령 집행담당 보호관찰공무원 3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수강명령 담당자 집행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 노하우 공유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강명령 관련 외부전문가의 특채도 이루어져 2006년과 2007년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각 7명을 6급과 7급으로 채용하였고, 2010년과 2012년 각 10명, 2013년 25명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일선 기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10개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전문 프로그램을 사내강사가 집행함으로써 외부강사 의존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강명령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다. 범죄인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보호관찰기관은 수강명령 집행 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수강명령 대상자와 전문사회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을 중심으로 범죄인 치료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한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수강명령에 적합한 지역사회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기소유예처분 성구매자 교육(John-School) 실시

'05년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고 '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사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존스쿨 집행기관도 2006년에는 22개, 2007년에는 29개, 2009년에는 39개, 2010년부터 4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성구매 남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를 교정하고, 양성평등적·인본주의적 대안사고와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구매 남성의 인지재구조화와 행동수정을 통해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2005. 8.~12.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2,2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11,217명 집행, 2007년에는 15,124명 집행, 2008년에는 17,956명 집행, 2009년에는 34,762명 집행, 2010년에는 14,283명 집행, 2011년에는 7,409명 집행, 2012년에는 4,518명 집행, 2013년에는 3,214명 집행, 2014년에는 2,356명 집행, 2015년에는 2,526명 집행, 2016년에는 8,715명 집행, 2017년에는 7,974명을 집행하였다.

2009년까지는 매년 집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존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구매 남성들의 의식 변화로 존스쿨 집행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경찰의 단속 강화 등으로 2016년 다시 급증하였다.

한편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는데 현행 1일 8시간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T/F를 구성하여 존스쿨 표준프로그램을 전면 수정·보완하는데 착수하였고 12차례 회의와 연구 끝에 2일 16시간의 성구매자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2. 3. 1.「성구매자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9.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문화 확산

가. 보호관찰소 복수명칭 사용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명칭을 준법지원센터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준법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법지원자문위원회는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 법교육 사업, 셉테드 사업 등 주민친화사업 수행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구성(2016. 9.)되었고,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주민친화사업에 필요한 의견을 지속·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 법교육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실시

그동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도로 법교육이 운영되어왔으나 법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해「법교육지원법」에 의거, 전국 56개 보호관찰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2016. 7.)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법교육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7년에는 학생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찾아가는 로파크 및 시민로스쿨 등 법교육을 실시, 총 10,817회

1,186,518명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우범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 등 셉테드 사업을 368회 실시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제 7 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 개 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 등 갱생보호대상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무의탁·무연고 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등 다양한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방지를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선진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수공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요구에 비해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여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 증원, 예산 증액, 시설 확충, 갱생보호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가. 갱생보호사업 운영기반 확충

갱생보호대상자 증가 및 주거·창업·취업지원 등 신규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지속 협의한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력은 2012년 156명에서 2017년 204명으로 늘었고, 특히 변호사, 전문상담직, 홍보전담직, 취업전담직 등 전문가 위주의 직원 채용으로 최고의 범죄예방 전문 실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산(국고보조금)은 2012년 117억 원에서 2017년 272억 원 등으로 대폭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나. 생활관 확충 및 현대화

숙식제공 출소자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신축 및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먼저, 여성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2010년에 서울 송파, 경기 삼미·안양지소를 통폐합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현대식 건물의 여성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또한 국고조보금과 복권기금으로 2012년

인천지부와 울산지부 현대화, 2014년 가족희망센터와 전북지부, 경남지부, 2016년 충남지부, 2017년 경북지부 등을 건립하였다.

다. 전문 직업훈련시설 기반 확대

수형생활에 따른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 내에서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인천지부와 울산지부에 용접 기술교육원, 2014년 전북지부(전주)에 영농 기술교육원, 2015년 경남지부(창원)에 기계조립 기술교육원, 2016년 충남지부(홍성)에 자동차 정비 기술교육원, 2017년 경북지부(예천)에 전기 기술교육원을 각각 개관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여성출소자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지원센터(화성)를 커피전문가 과정, 제과제빵, 한식, 의류수선 및 리폼, 퓨전떡케익 등을 교육하는 여성기술교육원으로 개편하였다.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울산·전북·경남·충남·여성기술교육원에 1,799명이 입교, 1,445명(80.3%)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수료자 중 774명(53.6%)을 취업시켰다.

라. 갱생보호제도 연구

2012. 12.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를 창립하고,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갱생보호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법무보호사업의 연혁 및 실태'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전망과 과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법무보호연구 학술지를 연2회 발간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그에 맞는 신규 보호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미래전략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청사진 설계, 수익사업 전개, 공단 홍보 방안,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내부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마. 갱생보호사업 분야 확대

출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출소자 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 11.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바. 갱생보호사업 수혜대상 확대

2015년 전주지검에서 최초 도입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구직 의지가 확고한 출소자를 선별하여 법무보호사업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지검 영농조건부 기소유예자 36명, 청주지검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자 50명, 광주지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85명 등 총 181명이 공단 보호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6. 5.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공단 15개 시설이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되었고, 전국 36개 지방법원으로부터 감호위탁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7. 3월부터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위해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공단·교정 T/F'를 구성하고 수용자 가정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및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2011년 갱생보호대상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법무보호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및 예산회계 시스템을 전산화하였다.

또한 2015년 출소자 구인·구직 정보 공유, 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위해 '구인·구직전산시스템(www.jobkoreha.or.kr)'을 구축하였고, 2016년에는 공단 기술교육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보호 전산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 고도화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던 취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2017년 독자적인 '통합취업 전산시스템 '을 구축 중에 있다.

아. 전국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공단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능력에 따른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활동하고 있다.

공단 본부에 자원봉사조직의 단합과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보호위원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전국대학생보호위원연합회, 가정복원위원회 등 연합 자원봉사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2017년 현재, 공단의 자원봉사조직은 276개 위원회 6,018명으로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3. 갱생보호사업 현황

가. 갱생보호사업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17년 총 93,459명에게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분야별 사업실적은 〈표 9〉과 같다.

〈표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 년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학업 지원	기타 자립
2008	53,469	2,757	1,472	3,335	152	2,557	8,348	19,075	-	4,513	-	-	-	11,260
2009	52,958	2,637	1,465	3,422	152	3,414	9,398	17,044	30	4,475	-	-	-	10,921
2010	49,788	2,398	1,717	3,431	152	3,392	9,086	15,668	27	3,112	-	-	-	10,805
2011	54,183	2,440	1,533	7,055	152	3,507	9,812	15,798	43	3,134	-	-	-	10,709
2012	56,201	2,517	1,732	7,711	158	3,795	10,886	15,833	31	3,400	-	-	-	10,138
2013	57,124	2,303	1,774	8,199	152	4,710	10,391	15,949	18	3,264	31	3,573	-	6,760
2014	59,716	2,237	1,757	8,107	152	3,963	9,993	19,213	12	3,244	297	3,808	919	6,014
2015	69,034	2,340	2,505	9,188	152	4,708	10,993	22,113	13	3,551	331	4,899	1,059	7,182
2016	81,076	2,273	2,882	9,712	152	5,136	12,327	27,272	14	3,743	386	5,103	973	11,103
2017	93,459	2,167	3,003	10,037	152	5,659	14,343	30,795	3	3,863	437	9,322	1,163	12,515

나. 다양한 갱생보호 프로그램 운영

1) 취업지원사업

공단은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는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15,666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지부별로 운영하던 취업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 6.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고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전개하여 2017년까지 562개 업체가 참여, 1,553명에게 취업처를 제공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2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주거지원사업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5년 시범 실시된 14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878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하여 2,525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수혜를 받았다.

2017년에는 공단·교정 TF 과제인 수용자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재선정 주택의 심사권한을 일선기관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갱생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가 향상되었다.

3) 창업지원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폭넓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운영비, 시설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출소자 191명에게 76억 5,115만 원을 지원하였다.

4) 가족희망사업

가정 해체 및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가족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자녀 학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7년 출소자 210가족, 310명에게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가족희망사업 타당성 확보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호대상자 긍정심리 증진 프로그램 타당화 연구 및 심리건강척도 표준화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5)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점을 진단·치료하고,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채용하여 2017년까지 26,706명에게 47,705건의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해 집단 심리상담을 실시하였다.

6) 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지체(Social Lag)로 고통 받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초소양, 적성검사,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2017년 2,369회 10,235명에게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2005년부터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잘못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보상하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등의 빨래를 무료로 수거·세탁한 후 가정에 배달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총 36,826명의 출소자와 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522,086점의 세탁 봉사를 실시하였다.

8)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단은 2017년 4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을 위한 동계패럴림픽 관람 지원, 2017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갱생보호대상자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17년 6월 '김천대학교·U1대학교'와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맺고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9) 예술치유 프로그램 도입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실시한 '푸른꿈 희망잇기 음악축제'는 갱생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2016년 공단 9개 기관 10개 팀이 참여하였고, 2017년 공단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23기관 23개 팀이 합창, 댄스,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또한, 참가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전, 사후 심리검사를 통한 요인분석에서 분노조절, 사회적 지지 체감 등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4.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 11. 과천시민회관에서 법무부장관,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 새시대의 희망을 열다'을 주제로 2017. 허그(HUG) 후원의 날을 개최, 자원봉사자의 화합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 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70여 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법무보호가족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제 8 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1. 개 요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제정된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소년원 교과교육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모두, 전체 교육시간의 60%는 인성교육과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나머지 40%는 보통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1942. 4. 20. 개원한 조선교정원의 실과교육으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청주·춘천·제주소년원에서 자동차정비, 자동차외장관리, 용접,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진영상, 공간디자인, 예술분장, 서비스마케팅, 한식조리, 골프매니지먼트와 시범 운영 중인 전기 등 19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지속한 결과,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1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고도화', '가해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총 30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소년원 학생을 위한 인문학 콘텐츠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소년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8. 6. 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8호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주·제주소년원을 전담소년원으로 지정하고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호 처분자의 교육기간은 4주로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폭력·절도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자연친화교육·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가족관계회복·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기초질서 교육·생활예절 등 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집중적인 품행교정이 필요한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책임감 함양 등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0주간의 집중처우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제주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학교 학생 등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3. 3.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에 대한 분류심사기간을 학교출석으로 인정함에 따라 명실공히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3. 7.부터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에게 전국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3~5일 출석하여 상담 및 조사를 받도록 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소년심판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심사관 참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가. 교육기반 조성

1) 전문강사 확보 및 교수능력 향상

소년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999. 10.부터 자체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유급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도에는 인성교육 전문 소년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컴퓨터교육・교과교육・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소년원 유급 및 기타강사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소년원 유급 및 기타강사 현황

(단위 : 명)

계	유 급 강 사				보조강사
	컴퓨터	직업훈련	인 성	기 타	
124	11	28	64	20	1

2)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및 환경이 청소년의 태도・정서상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등 전인격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 소년원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을 고려하여 1~4인 규모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 11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중 대구·광주·춘천·청주소년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주소년원은 2018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나. 인성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1) 인성교육

소년원학생의 비행성 교정과 성행개선을 위하여 1969년 Moreno 심리극을 도입한 이래 꾸준히 감수성훈련, 미술치료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 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구·춘천·제주소년원 외 타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2017년까지 소년원 인성교육은 비행유형별 전문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기타(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학습권 보장, 직업선호도, 취업연계 및 사회정착률 등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조정하고 개편하여 왔다.

2012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을 6개(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안양소년원)에서 7개(전주소년원 헤어디자인반 신설)로 확대하였다.

2013년도에는 광주소년원에 9호 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교육과정, 서울소년원에 한식조리와 매직엔터테인먼트 교육과정, 제주소년원에 제과제빵과 골프매니지먼트과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서울소년원의 측량반을 전주소년원으로 재배치 하였다.

아울러, 2015. 3.부터는 9호 처분자를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을 기존 광주소년원 이외에 대구·청주·춘천·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예술분장,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등 7개 교육과정을 신설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예술분장반 과정을 추가하였다.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사진영상,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 공간디자인 등 유망직종을 신설하고, 2017년에는 지역사회 현장실무형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광주소년원에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등 모두 19개 직종에서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 직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의 최적화,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겸임교수제' 시행 등을 통해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교과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의 소년원 학생들에게도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잡스쿨(Job School)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 10. 퇴원생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MOU를 체결,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42. 4. 20.	'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 18.	'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 11. 21.	'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 11. 7.	'00. 9. 6.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용접·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축환경설비, 자동차외장관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 25.	'00. 9. 6.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공간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98. 7. 1.	'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 8호(男)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09. 7. 1.	'10. 5. 4.	8호 9호	• 8호(女)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46. 10. 1.	'00. 8. 30.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피부미용·제과제빵·서비스마케팅)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63. 9. 9.	'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 11. 9.	'00. 8. 30.	8호 9호 10호	• 8호(제주지역 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다. 개별처우 시스템 도입·운영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은 입원부터 출원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소년원생에게 실질적 교정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며, 퇴원 후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및 재비행 방지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

개별처우 운영개선 T/F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2015. 6. 최종 운영개선안을 마련, 당해 10월 'TEAMS 개별처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6. 1. 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다.

소년원 입원 후 10일 이내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분류처우를 실시하여 교육과정과 생활반 및 학과반을 결정하고, 반 배치 이후 14일 이내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며, 재원 중 계획에 따라 처우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며, 출원 시 종합적인 교육성과 평가를 통해 사회정착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개별처우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년원 교육이 1990년~2000년 초반 학교화·특성화 체제로 혁신한 이후 다시 한 번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년원생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방적 인성교육

가. 다양한 봉사활동

소년원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의타적이던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전국의 기관별로 '소년원학생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 시설 방문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2008	2,721	378	1,671	50	622	170	170	-
2009	2,344	13	915	53	1,363	16	-	16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 시설 방문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2010	2,759	4	935	74	1,746	28	-	28
2011	2,246	7	800	71	1,368	8	-	8
2012	2,546	-	837	72	1,637	2	-	2
2013	1,220	-	511	16	693	-	-	-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계	18,797		7,144	437	10,814	224	170	54

나.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

기존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던 폐쇄적 인성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예술공연 관람, 청소년 야영훈련 등 다양한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심성순화를 위해 음악회,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사회저명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 11. 사진작가 조세현이 사진촬영 특별강연을 하였고, 2011. 3.~5.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생의 연극을 지도하였으며, 2011. 9.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댄스교실을 개설하는 등 사회저명인사의 관심과 봉사로 소년원생의 재능계발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였다. 또한 김중만 사진작가, 강병인 캘리그라피 등 유명 문화계 인사를 '소년원 명예교사'로 위촉하였다.

2017년에는 (재)레인보우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야구교실 개설, '윤형주와 함께하는 정심합창단' 창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교육은 2016년까지 총 26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소년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정관을 신축·운영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문신제거시술을 통하여 사회적응상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며, 민·관 합동의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 10.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탁생 등 불우한 환경의 학생에게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드림 프로젝트(주거, 취업, 창업, 장학, 원호, 웨딩, 해외자원봉사)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 가정관 운영

비행으로 인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전용면적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가족 간에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서울소년원 등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13동 2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08~'17) 가족합숙제 1,107명, 1일 생활제 5,858명, 가정관 면회제 17,425명 등 총 24,390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나. 문신제거시술

전국의 소년원생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이 문신을 지니고 있으며, 한때의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이들 대부분은 문신제거시술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00. 4.부터 서울소년원에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한 이후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에 의한 문신제거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나 시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으로 무료문신제거시술을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2008~2017) 일반인 9,912명을 포함하여 총 28,634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 취업 지원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회정착지원계'와 민·관 합동의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취업추천, 구인업체 발굴·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출원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취업후견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취업후견인 56명, 취업알선 417명, 산업체 현장실습 394명, 구인업체방문 130회의 실적을 거두었다.

라.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YES센터 운영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 2001. 5.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안양(여자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특히, 2009년,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 1,500만 원과 2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2011년,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기·경기여자·부산·광주·대구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였다. 2014년, 2016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과 12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경기여자·부산·대전자립생활관을 증·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는 2008년~2017년 최근 10년간 총 1,632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 12.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를 복권기금 57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에 대지면적 9,989㎡(약 3천평) 건축연면적 3,289㎡(약 1천평) 규모의 YES센터를 신축하였다.

YES센터는 자동차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커피바리스타,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등 6개 과정, 학생 60명, 직원 20명,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입주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00%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전문 직업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YES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마. 멘토링

소년원 학생의 60% 이상이 결손가정인 현실을 감안, 열악한 가정환경에 따른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자원봉사자 1:1 멘토링' 시스템을 2011년 새로이 구축하여, 2011년~ 2017년 총 13,364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자와 멘토링 결연을 맺고 상담, 취업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보호·지원을 받았다.

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소년원 출원생의 재범 감소 및 안정적인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는 2012. 11.부터 2013. 4.까지 6개월간 춘천·안양소년원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통신지도 36,859회, 방문지도 2,502회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들이 출원생들에 대해 사회정착지원을 실시한 결과 출원생 사회정착률이 2014년도 80.7%, 2015년 83.5%, 2016년 84.5%, 2017년 86.49%로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5. 주요 교육성과

소년원 특성화교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컴퓨터 경시대회' 및 '전국 청소년 영상물 공모전' '뷰티콘테스트'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최근 10년간('08~'17년) 총 325회, 1,287명의 소년원 학생이 입상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1,364명의 소년원생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가. 외부 경시대회 입상

1984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훈련 직종별로 선수를 참가시킨 이래 현재까지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직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241명(금 82명, 은 68명, 동 50명, 장려 41명)의 학생이 소년원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무엇보다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진학

1) 자격 취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교과·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23,006명이 컴퓨터, 외국어,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자동차정비, 자동차외장관리, 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피부미용, 한식조리 등의

직종에서 8,863명이 전문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총 31,869명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표 13〉은 최근 10년간 소년원 학생 자격취득 현황이다.

〈표 13〉 최근 10년간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950	2,685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외 국 어	222	74	45	41	48	-	-	-	-	-
컴 퓨 터	1,478	1,389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예·체능, 기타	650	638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직업훈련	600	584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2) 취업·진학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완전한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17년에 417명이 취업하도록 하는 등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7학년도에는 검정고시 합격 617명(고입 141명, 고졸 476명), 상급학교 진학 167명(고등학교 79명, 대학교 88명), 중·고교 편입학 200명(중학교 54명, 고등학교 146명), 졸업장 취득 73명(중학교 50명, 고등학교 23명) 등 총 1,057명의 소년원 학생이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표 14〉, 〈표 15〉는 각각 최근 10년간 취업현황 및 상급학교 진학현황이다.

〈표 14〉 최근 10년간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인원	339	335	328	261	313	273	327	234	423	417

〈표 15〉 최근 10년간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13	166	108	111	137	115	134	154	159	167
대 학 교	49	52	38	22	45	45	71	91	93	88
고등학교	64	114	70	89	92	70	63	63	66	79

다.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

2017년 현재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은 NCwiz, 상상드림카페, 상상드림카케어 등이 있으며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이후부터 소년원 직업훈련교육 분야인 제과제빵, 바리스타 부문을 도입하여 상상드림카페, 별그리고달카페로 창업을 지원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소년분류심사원은「소년법」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여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자 등에게 사후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고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분류심사 결과를 지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보호소년 상담조사 도입 및 출장상담조사의 시행,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학생·기소유예대상자 대안교육 및 법교육 실시 등이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분류심사 업무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맡고 있으며 대전·광주 등 6개 소년원에서도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2007. 7.에는 안산·부산·광주·대전·창원·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및 기소유예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비행소년에 대한 상담조사,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법교육 등 위기·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 및 비행원인진단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다.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센터를, 2014년에는 부산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017년 기준 총 1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비행원인 진단과 비행예방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담조사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법교육, 법체험 및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은 물론,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각급 기관과 MOU 체결 등 업무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기관의 비행예방 교육, 비행원인진단 실적은 아래 〈표 16〉, 〈표 17〉과 같다.

〈표 16〉 최근 10년간 비행예방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안교육	계	266,741	6,410	7,348	12,862	23,382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230,913	4,683	5,629	11,396	21,280	26,814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기소·선도유예	31,346	1,516	1,425	1,124	1,191	2,034	2,767	4,993	5,123	5,757	5,416
	보호처분	4,482	211	294	342	911	1,274	507	278	217	255	193
청소년심리상담 (적성검사)		90,442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보호자교육	계	76,845	3,511	5,465	6,626	7,498	8,101	8,246	9,192	8,964	9,465	9,777
	자원	67,339	3,452	5,010	6,333	7,015	7,574	7,208	7,955	7,532	7,594	7,666
	의무	9,506	59	455	293	483	527	1,038	1,237	1,432	1,871	2,111
법교육		1,287,249	4,685	37,611	50,651	44,089	41,674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 대안교육 : 법원명령에 의한 보호처분은 소년법 개정에 따라 운영(2008. 6. 22. 시행)

※ 보호자교육 : 소년원·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통합 실적임(자원참여교육 : 2008.1.실시, 의무참여교육 : 2008. 6. 실시)

〈표 17〉 최근 10년간 비행원인진단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분류심사	계	56,424	5,198	5,627	5,723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일반	38,525	3,796	3,729	4,380	4,634	4,008	4,160	3,467	3,477	2,969	3,905
	특수	17,899	1,402	1,898	1,343	1,373	1,427	2,197	2,076	2,327	2,147	1,709
상담조사	계	47,737	5,952	5,106	5,301	5,296	5,148	4,382	4,261	4,119	3,993	4,179
	일반	39,434	4,650	4,057	3,843	3,233	3,988	4,133	3,971	3,829	3,686	4,044
	출장	8,303	1,302	1,049	1,458	2,063	1,160	249	290	290	307	135
검사결정전조사		1,429	579	295	397	126	7	-	0	0	25	0

가.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

2000년부터 자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특수인성검사'를 실무에 도입,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이 검사를 재표준화하여 2006. 6.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용성을 제고하였다.

2003년에는 서울소년원 연구실에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적성검사'를 개발하여 위탁소년 심리검사, 청소년 적성검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07. 7.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류심사관 보임기준을 직급에서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전문분류심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 8.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직원을 조사관으로 인정하는 '조사관 인정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분류심사 등 비행원인진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6. 8. 소년보호통합지시공문 개편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의 분류심사관 보임 자격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강화되었다. 첫째, 분류심사 또는 상담을 목적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보호직 공무원 둘째,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셋째, 심리 및 상담, 사회복지, 교육, 청소년지도 등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 매년 능력평가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류심사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나. 소년심판절차 개선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정책협의를 거쳐 2003. 7.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상담조사 제도

2003. 7. 새롭게 도입된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3~5일 동안 출석하여 상담, 조사,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조사는 안산센터를 제외한 1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제주소년원(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담조사 실적은 총 47,737명이다.

2) 분류심사관 심리 참여 제도

이 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 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소년에 대한 보다 적정한 처분을 도모하고 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구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 청소년비행예방 기능강화

1) 학교폭력 가해학생·선도처분 학생 등 대안교육 내실화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해왔다.

이후 2007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법교육을 전담하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제외한 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대구·전주·대전·춘천·제주 등 5개 대행소년원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했었다.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4개 센터, 2013. 11. 순천·전주·춘천 3개 센터, 2014. 12. 부산동부, 울산, 수원 3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전국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의뢰한 대안교육은 1~5일 과정으로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지능·적성·성격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후에는 교육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캠프'를 2008년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경기도교육청 공동주최로 시범운영 후, 2015년 5개 센터, 2016년 9개 센터, 2017년 전국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사제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주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선도처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안교육 실적은 230,913명(법체험, 회복캠프 등 포함)에 달한다.

2) 기소·선도유예 대상자 대안교육 실시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자, 선도유예자에게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비행성 조기개선과 재비행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기소유예 등의 대상자에 대한 대안교육은 1~5일 과정의 통학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장애체험, 심리치료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서울북부, 부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실적은 31,346명에 이른다.

3) 청소년심리상담 운영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일반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적성검사 및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및 대안교육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비행예방 및 원만한 학교적응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심리상담 운영실적은 90,442명에 이른다.

4) 보호자교육 실시

비행청소년 지도·교육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법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자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자원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의 보호력 증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호자 교육 운영실적은 총 76,845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부터는 부산·청주·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사춘기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소나기가족캠프'를 운영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성과가 참석자들과 의뢰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아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소나기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보호자교육' 또는 '대안교육' 등을 의뢰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가족캠프 운영기관이 전국 센터로 확대되었으며, '소나기 가족캠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기의 발달적 적응과 가족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실적은 총 6,590명이다.

5) 법교육 운영

법교육은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청소년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헌법가치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법교육 운영 실적은 총 1,287,249명이다.

또한 대전·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교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 1. 1. 부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고, 2017. 12. 기준 전국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80개 기관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법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제 5 절 감찰·감사업무

제 1 항 감찰업무

1. 개 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반듯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례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감찰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였다.

2. 추진상황

가.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소속기관별 감찰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직급, 지역, 직역에 따른 감찰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법무부 소속 기관별 업무특성과 동향을 토대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비위 예방에 주력하였다. 감찰과 감사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감찰업무매뉴얼 제작, 감찰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나. 검찰의 감찰업무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2017년 6회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 받음으로써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체제를 확립하였다.

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 10명 중 9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9명의 외부인사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중립성을 강화하였고, 2017년에는 감찰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제 2 항 감사업무

1. 개 요

2017년에는 '청렴한 법무부, 행복한 법무가족'을 자체감사의 목표로 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법무정책의 안정적 집행 지원, 국민생활 불편 사항 발굴·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감사 주기 및 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62개 소속기관과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을지연습기간 및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 재외공관 사증발급업무, 법무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하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채용 부적절 사례를 적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고, 일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주요 감사실적

2017년 감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307건을 지적, 관련자 355명에 대하여 징계·경고 등 신분·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29건에 대해 1억 8천 8백만 원을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출입국관리기관 종합감사 시 선원취업자의 체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선원취업(E-10)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반부패·청렴팀 신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을 고위공무원에서 5급 이상 기관장까지 확대,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개선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7년 주요 감사업무 실적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2017년 감사 실적

구 분	감 사 횟 수	실시기관수
종 합 감 사	9	74
특 정 감 사	4	14
복 무 감 사	11	전 소속·산하기관

〈표 2〉 2017년 감사결과 조치내역

(단위 : 천 원)

조치결과 / 종 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징계		경고		주의 등		계		회수		감액 등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308	355	7	7	27	44	274	304	29	188,151	18	87,324	11	100,827
종합감사	224	238	2	2	16	24	206	212	23	105,632	18	87,324	5	18,308
특정감사	21	11	5	5	4	5	12	1	6	82,519	-	-	6	82,519
복무감사	63	106	-	-	7	15	56	91	-	-	-	-	-	-

제 6 절 인 권 업 무

제 1 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법무부 인권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국제인권 활동 강화 등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와 법률구조, 법률홈닥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부내 인권침해 조사·예방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인권 강화 및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이며,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은 법무부의 주요 임무이다. 이를 위해 인권국에서는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국제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개인진정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국제적 인권보고서 관련 업무 협조 등을 충실히 하고, 점차 증대되는 우리나라 인권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응하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인권정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선진 인권국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및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구조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자율성 및 조직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 및 11개 사회복지협의회에 확대 배치하여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다.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6년 5월부터 운영해 온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등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강화시켜 왔다. 또한 2007년부터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법무행정 및 관련 법령상의 여성·아동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부서인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 보호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2014. 1. 28.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여성·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성·아동 관련 연구용역, 부내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방지 이행상황 실태 점검,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지원 등 국내·외 여성·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아동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운영

법무부는 2016년 10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담당기구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하였다.

신설 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공포·시행함으로써 일관된 자료의 보존·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16년 2회에 걸쳐 외교부·통일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제 2 항 국가인권정책 총괄 · 선도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선도하기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초안의 보완과 개선을 위하여 초안의 과제를 두고 각 부처 정책담당자와 시민사회가 협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무부 소관의 국제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각 2012년과 2015년에 심의를 받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후속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정책과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개인진정에 대한 내실있는 정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활동에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인권의장국으로서 성숙한 협력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적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UN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의 방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노력하였다.

2017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인권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마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관계부처로부터 받아 초안을 보완하였고, 10월에는 이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기구의 권고와 시민사회 각계의 요구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정책담당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가 협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여 과제를 인권정책 분야별 총 18개로 나누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국제인권활동 강화

2017년에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우리나라의 제4차 이행보고서 심의(9월),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제3·4·5차 이행보고서를 심의(5월)하였으며,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총괄하였고,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국가인권정책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법무부는 UN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유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된 개인진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시 협의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에서 공식회기를 개최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2017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인신매매보고서 작성에 협력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치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방안을 논의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재판대회'를 후원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저변 확대에 일조하였다.

3.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2017. 4. 25.(월)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4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전수식에서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하고 법률문화 증진에 기여한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명과 1개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정의실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 3 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1. 개 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2017~2021)이 총 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신속하고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피해 회복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전문적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연계, 임시거처 제공을 위하여 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일센터를 2017. 9. 의정부에 추가 설치하여 전국 11곳으로 확대하였다.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7년에도 각계 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소외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갔다.

또한 '찾아가는 법률복지 사업'인 법률홈닥터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합동법률지원단'이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체계 강화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간병비 등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 12. 19.「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장해구조금 최저 지급대상을 종전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인 입원기간을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결정 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간병비와 요양치료비 지원한도를 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검찰청·병원·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정 협력병원에서 피해자를 먼저 치료한 후, 검찰청 및 민간단체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범죄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세 미만 강력범죄 피해아동 및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을 신설하였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범죄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인 후유증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0. 7. 서울 송파구에 전문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최초 설립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7. 9. 의정부스마일

센터 개소로 이제 전국 11곳(서울송파·부산·인천·광주·대구·대전·춘천·전주·수원·서울 마포·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17년까지 9,366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137,842건의 심리치료와 11,895건의 임시주거 제공, 8,365건의 법률지원서비스 및 6,317건의 사회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약 30만명에 이르는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심리치유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구축된 심리지원단과 함께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스마일센터 미설치지역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2017년도 총 30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71,177건, 경제·의료 지원 14,655건, 신변보호 503건, 기타 11,695건 등 총 98,030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학대피해 아동 등 20명에게 총 9,6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이후 총 49명에게 2억 1,5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 기금 편성현황은 <표 1>와 같다.

〈표 1〉 201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091	32,208
	형사조정활성화	4,031	
	범죄피해자구조금	10,000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08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615	33,79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8,972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4,203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8,297	18,297
총 계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84,295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사. 제10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개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7. 11. 15.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현황을 담은 10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그 동안의 범죄피해자 지원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인권대회는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고,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센터 종사자 대표가 10주년 기념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하였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관계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인권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한국피해자학회가 공동주관으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전개

2017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현황에 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무부·검찰청 및 민간단체의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72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인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008년 37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획소송 실시 이후 2017년까지 1,62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획소송을 실시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관계미등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006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341건, 법률상담 건수는 49,180건이고, 2007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848건, 법률상담 건수는 52,723건이며, 2008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4,877건, 법률상담 건수는 58,824건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 1. 21.에는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0. 6. 대구, 2011. 5. 부산, 2012. 8. 광주, 2013. 7. 대전, 2014. 5. 수원 및 울산에 각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88,677건, 법률상담 건수는 741,488건으로 금융소외자들의 경제회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부터 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61,869건, 2010년에는 59,703건, 2011년에는 59,002건, 2012년에는 64,425건, 2013년에는 66,706건, 2014년에는 67,338건, 2015년에는 73,244건, 2016년에는 89,759건, 2017년에는 90,151건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은 2006년 656회 2,645건, 2007년 631회 2,622건, 2008년 632회 3,001건, 2009년 542회 3,023건, 2010년 468회 2,471건, 2011년 582회 2,439건, 2012년 529회 2,926건, 2013년 507회 1,871건, 2014년 549회 1,862건, 2015년 540회 2,228건, 2016년 415회 1,739건, 2017년 303회 1,251건을 실시하였다.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또한 공단은 2010. 7.부터 상담전용버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이후 1,064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2,548건, 법률구조 551건, 강연 280회를 실시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공단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 체계적인 법교육의 부재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 필요성을 인식, 2011. 7.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국적취득,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2011년 1,467명, 2012년 2,285명, 2013년 2,676명, 2014년 2,744명, 2015년 2,780명, 2016년 3,567명, 2017년 3,193명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조기 정착 및 준법의식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준법의식과 협동정신 제고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공단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공단은 2013.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다.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고, 2015.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5. 4.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 1. 국선 전담변호사를 2명 증원하여 2017. 12. 현재 전국 17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소이후 2017. 12. 31.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접수 1,088건, 화해취하 142건, 조정개시 439건, 조정성립 266건의 성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자. 법률홈닥터 사업 확대

법무부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한 지 6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정식 사업 첫 해인 2012년에 20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명으로 확대, 2017년에는 60명까지 확대하여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포스터, 리플렛, 홍보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우 권익연구소'와 업무협력을 통한 장애인 법률지원과 여수수산시장 화재 및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합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법률상담을 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 55,439건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기준 90.75점으로 나타나 매우만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법률홈닥터를 65명으로 확대·배치하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며, 기존 법률구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 4 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1. 개 요

법무부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직접조사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찰관실에서 수행하여 오던 검찰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이관 받아 2010년 상반기부터 인권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2.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가. 자기통제적 인권옹호 시스템 구축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직접조사 및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6. 5. 3. 부터 인권조사과에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의 푸르미 방송을 통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홍보포스터 및 외국인용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다.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0년부터 화상조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7년 현재 32개소의 구금·보호시설에서 화상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이 교정·출입국

관리·보호 관련 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찰 자체의 감찰기능을 우선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인권국이 추가 조사 및 직접 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수용장소 변경, 원상회복, 손해배상, 법률구조 요청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2017년 인권침해사건은 총 2,790건으로, 그중 진정사건은 2,713건(전화 20건, 우편 2,033건, 인터넷 28건, 팩스 628건, 방문 4건), 인지사건은 77건이다. 이 중 8건은 접수 전 상담 종결하고 2,782건을 접수하여 2,533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80건, 이첩 891건, 각하 1,326건, 기각 236건) 하였다.

한편,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0. 9. 28.부터 신고비용 전면 국가부담 방안을 마련·시행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통계: 표 4-4, 표 4-5〉 참조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가. 교정, 보호시설 등 구금시설 정기적 감독 및 실태 파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2017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 보호시설	계
점검 횟수	13	8	6	6	33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 설문조사,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구금시설 수용자 직접면담 : 466명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 3,809명

나.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이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각종 제도를 인권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가.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이 바라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내용 및 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청각 자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인권교육의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노력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대학 교수, 변호사,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각 분야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고, 법무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을 담당할 직렬별 내부강사를 2008년 1기 48명, 2013년 2기 43명 등 총 91명을 자체 양성하여 2017년 말 현재 55명이 활동 중이다.

나. 법무행정 각 직렬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2회,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73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20회, 내부강사 통합 워크숍 5회, 검사상대 1:1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24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14회 등 총 158회에 걸쳐 5,87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전 직렬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일선 기관 방문 교육과 내부 인권강사에 의한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인권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경력검사 71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시범 실시하였고, 그 후 전국 검찰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20회 143명, 2015년 45회 332명, 2016년 68회 477명, 2017년 24회 172명의 경력검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법무부는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위 업무 성격상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2010. 7. 감찰관실로부터 인권국으로 이관하였고,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검찰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검찰의 인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2011년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상황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5 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1. 개 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국내 법령 제·개정 시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안건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양성평등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 3. 16.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 첫 해인 2012년도에 피해자 2,908명, 2013년에는 8,084명에게 지원하였고, 2014. 9. 2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학대피해 아동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2015년에 피해자 16,106명(아동학대 피해자 1,311명), 2017년에는 19,903명(아동학대 피해자 2,108명)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7. 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 전담검사, 진술조력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2017. 8.~11. 성폭력·아동학대의 이해 및 피해자 지원 체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의 법률지원 사례 등을 주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자문회의를 거쳐 업무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는 등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피해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한편, 2013. 7. 1.부터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2014. 9. 29.부터 학대피해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국 해바라기센터 5곳,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하였고, 2014. 1. 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 4곳, 2016. 1. 제주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추가 배치하여 현재 1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지역사회의 상담시설, 전담 검사와 경찰관 등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지원대상 확대

2013. 12.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시행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4. 9. 29. 시행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3. 12. 19. 제도 시행 이후 총 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자격부여 하였으며 2017년도 총 1,381건의 진술조력을 실시하여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2차 피해방지 및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 여성·아동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사법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2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프로그램'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와 협업하여 교사 등 주요 신고의무자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활용 등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신고의무자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되었다.

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제 홍보

2017. 2.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신고의무자 소관부처를 통해 배포하고, 2017. 11. 신고의무자 안내 및 신고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상영하였으며, 영화관 송출 및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여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2017. 12. 법무부의 피해아동 보호제도 등이 수록된 아동학대 예방 핸드북 '나를 지켜주는 법'을 제작하여 법교육 출장강연 참석 학생에게 배포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성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정책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10인)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제6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소년재범률 감소 방안', ' 온라인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우리나라 여성·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 다양한 안건들을 토의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나. 법무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양성평등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법령 64개, 사업 1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양성평등 관점이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법무·검찰공무원 4,853명을 대상으로 총 72회에 걸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출입, 교정, 소년, 보호 등)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박2일 과정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2회)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기여하였다.

제 6 항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1. 개 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였고 3개월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등을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북한 인권 실태 청취 등을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2.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 체계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355건의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이관 받아 분석·보존하고 있으며, 2017. 12. 사건검색, 동일 가해자 확인, 유사사건 관리 등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을 개발·구축하였고, 북한의 권력기구, 인명자료 등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를 4회 개최하여 탈북민 등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실태, 인권 상황을 청취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하였다.

3.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북한인권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북한인권관련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북한인권 NGO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조사 환경 등을 견학하였으며, 조사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 7 절 교 정 업 무

제 1 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017년도 교정본부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성폭력사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처우계획을 수립, 출소 시까지 체계적으로 처우과정을 관리하는 수형자 개별처우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가족 만남의 집·날, 가족사랑 캠프, 가족접견실 등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도 적극 실시하였다. 한편, 2016년 10월부터는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종목을 편성하고 기능 인력 양성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 개선을 꾀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수형자 사복착용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취업면접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무의탁 수형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무의탁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에 주력하였다.

또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분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재범 고위험군인 성폭력사범 및 약물·행위 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범죄 수형자의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중이며, 2017년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 접견의 활성화 노력을 통해 민원 편의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간이 입소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중(重)경비 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영상매체를 통한 교정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교정의 노력과 변화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 및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신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수형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성공적인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등에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출소 전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밀양, 아산에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화성·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로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여성·장애인·소년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시행하여 출소 후 외부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였다.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010년 각종 교정사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과학적 처우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정사고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지정하여 한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수형자의 수용질서 확립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 2. 수형자 자치제 전담교도소인 영월교도소를 개청하여 관리중심의 수용관리가 아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율중심의 수용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의 전반적 노령화 추세에 따라 교정시설에도 고령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신장을 위한 전담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수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동순찰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직무교육 강좌를 운영 중이며 팀제 보안근무체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한편, 상습 규율위반자 등을 별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용관리와 함께 수형자 인성검사를 통해 수형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효율적 수용관리 및 안전한 수용생활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수형자의 사회복귀 의욕 고취 및 교정교화 목적달성을 위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음악, 미술, 독서, 웃음치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재범 고위험군인 성폭력사범 및 약물·행위 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범죄 수형자의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교정심리치료센터(5개)와 정신보건센터(4개)를 '심리치료센터'로 통합하여 총 9개의 심리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재범 위험성 및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의료처우의 개선과 권리구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인권옹호'라는 교정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홍성교도소를 비롯한 2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41,775명의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에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청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용자 권리구제의 신속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대구교도소 이전사업 착공 등 노후 교정시설 이전·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수용거실 바닥 온돌을 설치하고 강릉교도소 등 2개 기관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진주교도소 등 2개 기관에 수용거실 바닥 온돌 설치, 홍성교도소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 2 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1.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교정공무원의 근무형태 등 직무특성을 반영, 등급 간 편차 완화, 직무급과 성과급의 적정 균형 유지 등 교정직 맞춤형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법과 원칙에 근거한 교정행정 실천을 위해 변호사(6급, 교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교정 관련 법령 정비, 청원 및 행정심판·소송업무 수행 등 교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나. 교정공무원 증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공무원 증원을 추진한 결과 2018년 소요정원으로 총 128명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증원 분야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 인력 108명,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3명, 급식운영 인력 7명 등으로 수용자 인권처우를 보장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현장 실무 인력 중심의 보강이다.

다. 교정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순회점검, 긴급

현장점검, 각 지방교정청별 불시 기동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2016. 11. 30. 시행된「청탁금지법」미숙지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순회점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비위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등 컨설팅 방식의 시스템 감사를 지향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52개 반 321명을 순회점검반으로 편성하여 53개 교정기관 직원 복무실태, 교정부조리 근절 방안 중점추진 실태, 수용질서 및 수용자 처우개선 실태, 교육·교화·교도작업 운영실태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순회점검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경고 1건, 주의 49건, 시정 461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수용자의 부당처우 등 10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병원 계호실태에 대한 불시기동점검 등 지방교정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교정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온정주의를 배제한 비리 관련자 문책 및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자세 확립을 통한 부조리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하였다.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가. 국내·외 교육훈련 내실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교정공무원이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수용자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본 전제가 되므로 교정본부는 전문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각 기관의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선진 교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 11. 3.부터 11. 10.까지 피지에서 개최된 제37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에 교정본부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참가국가 간 교정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배양을 위해 2017년 총 11개 팀 78명의 교정공무원을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10개국에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등을 참관케 하였으며 교정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비장기유학과정에 1명(영국), 단기해외연수과정에 2명(미국 테네시 교정청, 캐나다 온타리오 교정청)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정제도를 현지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식사 및 휴식 시간에도 상시 업무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일부 현장 근무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교정공무원 애사 발생 시 장례지원

물품을 지급하는 등 현장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문병원·영화관·의류업체 등 다양한 방식의 교정공무원 제휴할인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다. 직원 결속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며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 6. 30.「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10명,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포상과 상금을 시상하였으며, 7급 이하 수상 직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하였다. 2017. 10. 27.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 8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2017. 10. 27.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 84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체력단련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직원 상호 간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 9. 22. 법무연수원 본원(진천) 체육관에서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여 유도·태권도·검도 실력의 자웅을 겨루는 장을 열었다.

라. 교정민원콜센터(1363) 개소 및 운영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정민원대표전화를 대폭 개선하여 2017. 10. 18.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였다. 교정민원콜센터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정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전화 한 통으로 접견예약에서부터 교정행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까지 종합 교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정민원 상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였다.

제 3 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1. 수용자 처우 향상

가. 외부교통권 보장을 통한 수용자 사회성 함양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수용자의 구금에서 교정교화로 변화함에 따라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및 사회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원거리에 거주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로 수용자와의 접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 여주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처음 도입한 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꾸준히 확충하여 현재는 화상접견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접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 130건이던 화상접견 실시 건수는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 2013년 198,458건, 2014년 214,205건, 2015년 246,045건, 2016년 279,4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스마트접견 시행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223,143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형자 가족 중 생업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렵거나 장애 등으로 원거리 이동이 곤란한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형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유대 강화를 위해 2013년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원인 가정 내 PC와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접견 중계서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3년 4월 10일부터 12개 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을 시행하였다. 접견 실적이 8,111건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은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에는 20개 기관에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나머지 20개 기관의 구축을 완료하여 모든 교정시설로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기존 인터넷 화상접견과 달리 어디서든 접견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한 스마트접견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 기여 및 교정행정 신뢰도 향상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사이버 접견 제도(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활성화 노력으로 154,421회 실시하여 약 80억 원의 경제적 절약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표 1〉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41,431	163,585	159,144	163,186	178,762	198,458	214,205	246,045	279,423	223,143

둘째, 수용자와 민원인 간 전화를 이용한 외부교통을 통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1998. 10.부터 모든 교정기관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하였고 2001. 8.「수용자

전화사용 지침」을 개정하여 수신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전화사용 건수가 490,903건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463,23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 487,228건, 2013년 488,153건, 2014년 501,483건, 2015년 569,562건, 2016년에는 576,35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후, 스마트 접견의 도입으로 2017년 223,143건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재해, 경조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민원인들과 급히 연락이 필요할 때는 3·4급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도 소장의 허가를 얻어 전화를 통해 신속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379,124	454,842	490,903	463,230	487,228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셋째, 접견예약제도와 접견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이며 접견예약제도는 민원인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한 일시에 접견을 할 수 있어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이 접견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접견예약제도는 수용자들에게도 사전에 접견 날짜와 시간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 수용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2년에는 410,980건, 2013년에는 479,481건, 2014년에는 533,348건, 2015년에는 579,852건, 2016년에는 657,241건, 2017년에는 751,2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361,280	349,230	345,762	374,780	410,980	479,481	533,348	579,852	657,241	751,207

또한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접견신청을 일과 중 모든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접견시간의 확대보장을 도모하고자 오전 시간대 등 상대적으로 방문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접견시간을 연장해 주는 접견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접견인센티브는 각 교정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 기관별로 시간대별 접견건수 등을 분석하여 적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 3. 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에 4.17점으로 응답자의 80.6%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접견예약 및 접견인센티브 제도가 접견민원서비스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2,020,018	2,218,193	2,030,847	1,964,389	1,979,015	2,159,672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넷째, 일반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접견 당사자인 수용자 및 민원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접견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직원의 참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녹음녹화 접견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하였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은 수용자 접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으며 2006년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교정기관을 시작으로 2008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산하 23개 교정기관에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접견대기시간이 5~10분 단축되어 접견시간이 3~5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회복적·문화적 교화프로그램 확충

교정행정은 처벌의 단계를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하여 가족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다.

2008년 9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가족의 소리'를 시범 방영 하였다. 이는 '다큐멘터리적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형자 가족 등의 사연을 담은 영상물을 교화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하는 방식으로 2009년까지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쌍방향 영상편지를 촬영하여 전 교정기관의 수용자에게 방영함으로써 가족의 신뢰회복 및 갈등해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수용자와 가족이 엽서, 편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의 정서순화 및 가족 갈등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수용자의 정서가 안정된 가운데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곡과

사연 소개 뿐만 아니라 이원복 교수의 세계사 강의, 도서 및 영화 전문가 리뷰 등 각종 문화 코너를 통해 수용자의 교양과 상식을 넓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였고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취침 전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들의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줄이고 사회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수용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전 검열 없이 저녁 TV뉴스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영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진솔한 사연과 노래를 통한 감동과 공감이 있는 '찾아가는 전국 노래자랑'을 각 기관 순회하며 개최, 교화라디오 방송을 통해 월 1회 방송하여 수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율적 심성 순화를 위하여 음악·미술·독서·웃음치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수형자 정서 순화를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05년 8월부터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취약계층 문화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16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데 이어, 매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시, 시화, 문예창작 등 문화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김천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로 구성된 '드림스케치' 합창단을 구성하고 가수 이승철의 지도를 받아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소년수형자들이 피해자와 가족, 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2년 11월 김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수 BMK, 테너 김성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스케치 합창단 공연'을 시행하였고, 2013년 1월 포항교도소에서 청주여자교도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수형자 합창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2017년 11월 30일~12월 1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형자들이 창작뮤지컬 '안녕! 내일'을 공연하였다.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08	43	335	51,909	
2009	46	362	37,403	
2010	50	401	53,639	
2011	51	457	68,162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2	51	503	78,826	
2013	51	535	68,786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다. 수용자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 증가, 검정고시 합격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과정 졸업자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 희망 증가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에 추가로 설치한 데 이어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에는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의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확대 개설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수형자가 초·중·고 및 전문대학 과정 교육은 물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방송통신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에는 17명의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초졸 및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508명이 합격하였으며, 순천교도소에서는 청암대학교(순천시 소재) 위탁교육을 통해 21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는 안양교도소 등 20개 기관에서 총 44명의 수형자가 합격하는 등 수용자 교육교화에 내실을 기하였다.

라. 중간처우 확대시행 등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강화

2009. 1. 안양교도소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원하였고, 이어 11월에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춘천·창원·청주여자·순천교도소)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 설치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개방지역작업장 으로 출·퇴근하는 등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9.에는 천안개방 교도소를 기능 전환하여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 출소 후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응 훈련원'으로 개원하여 대중 교통 이용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등 사회 복귀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3. 9.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내 중간 처우시설인 '밀양 희망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4. 11. '안성희망센터'를 개관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에서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내 중간 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6. 10. 31. '아산희망 센터'를 추가로 개관하는 등 희망센터 사업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전술한 '안성희망센터'는 2016. 12. 31. 업체 사정으로 문을 닫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희망센터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귀 모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향상과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확충, 노후교정시설 이전 및 수용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교정시설 확충 및 노후교정시설 이전

2017. 12. 31.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54%가 25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35년 이상 경과된 시설도 37%에 이르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관내 교정시설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월·밀양·해남에 500명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을 준공하였다.

2014년 초 상주·장흥교도소와 2014년 말 광주·정읍교도소를 이전·준공하였으며 거창구치소를 2015년에 착공하였고 2016년에는 속초교도소, 대구교도소를 착공하여 교정시설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도심지역의 발달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도심소재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현 교정시설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2011년 서울남부교정시설을 이전하였고 성동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로 명칭을 바꾸어 2017년 이전 완료하였다.

나. 수용환경 개선사업

수용거실 재래식 화변기로 인한 거실 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홍성교도소에 좌변기 교체작업을 완료하여 위생환경을 개선하였고 화재 시 대형 안전사고 방지와 폐쇄형 구조로 인한 대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출입문 자동화 사업('15년 부산구치소)과 수용거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작업('16년 대구구치소·춘천교도소·평택지소, '17년 경주·공주·홍성교도소, 서산지소)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 방열기(라디에이터)에 의한 간접난방을 채택하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바닥온돌 직접난방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에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3개 기관, 2017년에는 홍성교도소 등 2개 기관을 개선함으로써 동절기 수용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증축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17년에는 청주교도소 등 2개 기관의 수용동을 증축하여 난방효율 증대 등 수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건위생 증진 및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동 공동세탁기 설치(화성직훈·창원·진주·홍성·경주교도소), 하절기 반팔티셔츠 지급(포항·목포·제주교도소, 대구구치소), 개인용 식판 지급(공주·서울남부교도소, 서울동부·서울남부구치소)'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수용편의 향상 및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용자와 일선 근무자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 의료환경 개선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처우를 위하여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51명을 배치 받아 수용자 진료업무에 활용하고 2012년부터 정복간호사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2012년 54명, 2013년 97명, 2014년 50명, 2015년 98명, 2016년 67명을 선발하였으며, 교정공무원 중 1급 응급구조사 37명, 2급 응급구조사 338명, 간호조무사 431명을 일선 의료과 등에 배치하여 보건행정 및 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자동약품포장기, X-ray기, 심장제세동기 등 최신 의료장비 23종 1,306대를 구입·공급하여 의료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를 경감시키고 향상된 수용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2005년부터 외부전문기관과 검진계약을 체결, 직장인 검진 수준의 수용자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07년 29,885명, 2008년 30,195명, 2009년 31,609명, 2010년 32,612명, 2011년 32,858명, 2012년 32,125명, 2013년 34,223명, 2014년 35,935명, 2015년 38,972명 2016년 41,149명 그리고 2017년에는 실시원년인 2007년 대비 약 40% 증가한 41,778명에 대해 30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심 판정자에 대한 2차 정밀검진 및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였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전문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2008년 안양교도소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 정수시스템 등의 혈액투석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2011. 12. 이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2. 대전교도소, 2015. 12. 광주교도소, 2016. 11. 대구교도소에 혈액투석실을 추가 구축·운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806건, 2009년 2,493건, 2010년 2,980건, 2011년 3,738건, 2012년 4,631건, 2013년 5,055건 2014년 5,232건 2015년 5,813건, 2016년 7,102건, 2017년 7,503건의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목별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외부병원과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2008년 4개 기관, 2009년 6개 기관, 2010년 4개 기관, 2011년 4개 기관, 2012년 3개 기관, 2013년 2개 기관, 2014년 2개 기관, 2015년

3개 기관, 2016년 2개 기관, 2017년 2개 기관 등 총 34개 교정시설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과 등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에 의한 진료 14,377건을 실시하였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0월에는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일선기관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귀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직원에 대해 상·하반기(6월, 12월)에 하트세이브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방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통풍·채광을 고려한 쾌적한 진료 및 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 9. 대전교도소에 47개의 병상을 설치하였고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28개 병상을 신축 완료하였다. 또한 중환자, 수술환자,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부지에 국내최초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라. 대용구치시설 수용 미결수용자 처우 개선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은 협소한 공간과 수용시설·의료시설 등의 미비로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었고, 경찰청에서도 미결수용자 인수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4년부터 충주구치소 등 8개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였다.

현재 속초교도소, 거창구치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교정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예정이다.

제 4 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수용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보호장비를 환자복 내에 착용하도록 하였고 수용자 호송 시 장애인, 중환자, 노인, 여성수용자에게는 보호장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벨트형 포승'을 개발하고 '머리보호장비'를 개선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신입수용자 신체검사 시 전자영상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전 기관에 보급하고 구속 전 피의자 유치거실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법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정시설에도 증가하는 노인수형자처우 개선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인전담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 분위기에 편승, 수용생활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진정·정보공개 청구 등의 권리구제 남발, 소란·난동·공무집행방해 등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수용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벌·입건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란·난동과 같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초질서 유지 및 기동순찰 활동을 통한 취약시간대 계호력 보강을 위해 기동순찰팀(CRPT)을 창설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상습적 관규 위반 수용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에 가해 수용자의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폭력예방 프로그램, 거실 내 심성순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폭행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증거수집능력 강화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바디캠을 전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정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교정시설 재난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였다. 또한, 행동매뉴얼을 보완·재정비 하였으며, 표준화된 재난 및 사고 실무매뉴얼을 작성·보급, 재난 안전대비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하는 등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 사이코패스, 인성 특이수형자의 출소는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수형자들의 시설 내 문제행동 증가는 수용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분류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들의 체계적 선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밀하고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분류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교정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원인과 동기의 다변화에 따른 강력범죄의 증가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 증가는 교정환경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의 필요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은 교정기관과 유관기간의 협조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부처·다부서 간의 융합적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 모델은, 유관기관 간 고위험군 수형자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점 요인이 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전담을 위해 현재 4곳의 지방교정청 중 2곳의 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2곳에도 분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5년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서울남부구치소를 서울청 분류센터 기관으로 선정하여 분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16년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정읍교도소를 광주청 분류센터 기관으로 선정하여 '17년부터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6년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대전교도소를 대전청 분류센터 기관으로 선정하여 '18년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는 향후 대구교도소의 이전이 완료되면 운영할 예정이다.

분류센터 운영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와 집중적인 처우·관리로 출소 후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화·과학화, 그리고 출소 후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본부는 '16년에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인 분류심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범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방안 제시 및 위험관리 수준(Risk Management) 평가를 위한 고위험범죄 위험성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7년에는 분류센터 전담직원의 역량강화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분류센터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분류센터 운영지침」과「분류처우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3.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모범 수형자 등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17년 9월부터 가석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석방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시행하였다.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및 생계형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을 통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적응훈련생, 중간처우대상자 등 사회복귀를 성실하게 준비한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심사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다회 헌혈, 양로원·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봉사자 등에게도 가석방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준법과 사회기여가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법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였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형자에게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6〉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8,524	8,392	8,083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제 5 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1. 개 요

2017년 학과교육, 예·체능 정서교육, 교정위원에 의한 심성순화 등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내실을 기한 결과 508명의 수형자들이 초졸 및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44명의 수용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전국 52개 교정기관 10,525명이 수형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집중 인성교육을 수료하였다.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1) 검정고시반 설치 운영

정규 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수형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의 정규교육과 연계하기 위하여 매년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572명, 2010년 481명, 2011년 514명, 2012년 558명, 2013년 571명, 2014년 565명, 2015년 575명, 2016년 533명, 2017년 50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

1982.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91. 1. 10. 천안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소년수형자에게 정규 고등학교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2009년 6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2010년 천안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은 김천소년교도소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3명, 2011년 10명, 2012년 5명, 2013년 9명, 2014년 6명, 2015년 7명, 2016년 6명, 2017년 5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3) 전문대학 위탁교육

2001년 청주 주성대학과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 협정을 맺어 청주교도소 내에 전자상거래과(인테리어과로 변경 개설)를 개설한 이래, 2003년 순천교도소 내에 순천청암대학 관광호텔조리과(호텔외식조리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여, 2011년 31명의 수형자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2년에는 청암대학에서 17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2013년에는 청암대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구 주성대학)에서 22명, 2014년부터는 청암대학에서 18명, 2015년 16명, 2016년 17명, 2017년 21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참고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육과정은 교육생 감소로 2012년 폐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위탁교육기관 인증취소 및 교육내용 다변화를 위해 청암대학교(호텔외식조리과)에서 순천제일대학교(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로 위탁기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

수용생활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와 고등교육 기회 부여로 출소 후 사회복귀 기반 조성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대전교도소 등 11개 기관에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9개 전공분야의 학사 고시반을 설치하여 2009년 수용자 180명을 대상으로 독학사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학사학위취득을 목표로 1~4과정, 각 과정별 6과목(1과정 5과목)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1996년 3명의 독학사 배출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313명의 독학학위취득자를 배출하였고, 2013년에는 31명, 2014년에는 40명, 2015년 39명, 2016년 42명, 2017년 44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5) 방송통신대학교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가 높아지고 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교육은 CD·테이프 등의 교육매체를 통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 및 강의수업으로 진행된다. 2008년 여주교도소 4명, 2009년 전주교도소 6명, 2010년 여주교도소 4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1년 포항교도소 8명·청주여자교도소 2명, 2012년 여주교도소 8명·전주교도소 11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3년 전주교도소 10명·청주여자교도소 2명, 2014년 여주교도소 8명·포항교도소 11명·청주여자교도소 3명, 2015년 여주교도소 4명·포항교도소 7명, 2016년 여주교도소 7명·전주교도소 8명·포항교도소 1명·청주여자교도소 2명, 2017년 여주교도소 2명·전주교도소 11명·포항교도소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6) 외국어 전문교육

1999. 10. 의정부교도소에 어학실습실을 설치하고 영어, 일어 전문교육을 실시한 이후

2001년 여주교도소와 2002년 목포교도소, 2011년 영월교도소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각 과정마다 20~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어(CPT) 최고 640점(만점 1,000점), 평균 453점을 기록하였다. 참고로 목포교도소는 2012. 12., 의정부교도소는 2015. 12., 여주교도소는 2016. 12. 교육생 부족 등의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폐지하여 현재는 영월교도소에서 자치처우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수용자 인성교육 도입 및 시행

수형자들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시하던 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형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 정신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2008. 12. 18.부터 「수형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으로 개정하여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매회 3일 이상 5일 이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감수성훈련, 인간관계회복, 심리치료, 집단상담, 도덕성회복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였다. 2010. 8. 1.부터 인성교육과정 편성 시 효행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10월부터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에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 하였고 2015년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확대 시행 중이다. 집중인성교육은 기존의 인성교육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형 확정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형기 등에 따라 100~220시간의 헌법가치교육, 인문학, 동기부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의사소통 긍정심리, 문화예술교육, 효행교육 등 학습자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7〉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실시인원	14,463	9,118	9,245	8,744	6,789	6,202	5,763	8,604	10,066	10,525

다. 수형자 특별 활동반 운영

수형자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건전한 정신과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형자 중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운동, 서예, 회화, 악기 연주, 문예 등의 예·체능교육과 교양지 발간과 같은 정서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수형자들의 새 삶을 향한 굳은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넓혀 나가고자 수형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예활동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매년 전국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수형자의 문예작품입상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수형자 문예작품 입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서 예	한국화	서양화	시 화	공 예
출 품	229	123	47	21	-	38
입 상	120	62	36	15	-	7

2) 종교활동

종교귀의에 의한 심성순화로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전 수형자들이 종교를 갖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에 귀의한 수형자에게 종교의식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수용생활 중 교리지도는 물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새길' 발간

수형자 교화용 도서인 '새길'은 1948년 창간 이후 2017.12. 제440호를 발간·배포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정서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 문예란에 작품을 발표케 하여 문예소양을 계발하는 등 문예발표의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 1948. 4. 창간(월간 또는 격월간 발행), 2001년부터 계간 발행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가. 귀 휴

귀휴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일종의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로 석방 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017년 1,142명의 수형자에 대해 귀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실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나. 사회견학 및 봉사체험

수형자들에게 보육원·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봉사를 통한 심성순화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080명의 수형자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내 정원이나 휴게공간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2017년에는 11,095명의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라. 가족만남의 집 설치·운영

1999년부터 장기형의 모범수형자 또는 가족과 만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외곽에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와 시설의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1박 2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수형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교정교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법무부는 자체예산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2017년 말 기준 45개 교정기관에 46세대의 '가족만남의 집' 설치를 완료하였고 교정기관 신설 및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1,583명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다.

마.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수용생활로 인해 수용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 곤란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11. 10. 법무부·행안부·여가부·복지부·교과부·경찰청·서울대학교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전문가의 진행으로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수형자의 수용생활 초기 가족관계 해체 방지를 위해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교도소, 2013년에는 포항교도소·청주교도소·부산교도소·목포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4년에는 순천교도소, 2015년에는 서울구치소·공주교도소·수원구치소, 2016년에는 군산교도소·춘천교도소·창원교도소·진주교도소에 일반가정 거실과 같은 형태의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여주교도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밀양구치소·경북북부제1교도소·정읍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서울대학생과 수용자의 청소년 자녀를 연결하여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적인 생활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법무부는 출소예정자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격월로 개최하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5,921명, 구인업체 1,843개가 참여하여 2,098명 채용을 약정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참여수형자 사복착용 전면 실시, 외부전문가가

지도하는 취업면접 프로그램, 수시 취업면접 시행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 시행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출소예정자 3,582명을 참여케 하여 체계적·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창업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출소 후 창업을 원하는 1,071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9〉 연도별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87	1,165	1,243	1,138	1,298	1,489	1,696	1,561	1,707	1,702
취업	672	1,107	1,174	1,080	1,238	1,405	1,636	1,503	1,663	1,670
창업	15	58	69	58	60	84	60	58	44	32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가. 교정위원 교화활동 활성화 및 사기 진작

1998. 11. 26.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를 발족하여 전국적인 수형자 교화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000. 9.부터 교정위원을 대폭 늘려 2000. 10.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평소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교정위원 등 1,300명이 참가한 '수용자 교정·교화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와 2015. 4. 남산 제이그랜드하우스에서 교정위원 등 439명이 참석한 '교정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형자 교정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83년부터 교정본부장 주재 하에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교정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서울남부구치소 등 10개 기관에서 개최하였다. 기타 기관은 해당 기관장 주재로 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행정발전 및 수형자 교화선도에 힘쓴 유공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여 격려하였다.

나. 교화위원

1970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을 교화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개인상담, 자매결연, 교화공연, 취업알선 등 수용자에 대한 교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10〉 교화위원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845	67	47	82	1,260	29	360

다. 종교위원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지도케 함으로써 심성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11〉 종교위원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910	887	644	351	28

라. 교육위원

200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수형자 학과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해 온 교정참여인사를 교정위원제도의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수형자 교육, 상담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2〉 교육위원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29	82	9	27	15	196

마. 의료위원

2004년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 및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는 등 수용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표 13〉 의료위원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97	85	2	2	1	7

바. 취업위원

201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용자에게 취업 및 창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14〉 취업위원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49	432	24	46	55	92

제 6 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1. 개 요

가. 교도작업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도작업 수익금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고급기술(CNC선반, 머시닝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조달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함으로써 기술숙련을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제고와 교도작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교도작업 운영지침」,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집중근로선정 요건 완화, 직영작업자의 작업장려금 인상 등 교도작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교도작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제46회 교정작품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시식코너·네일아트 등 부대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나. 직업훈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요구에 따라 취업에 용이한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1969년 전국 21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한 이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출소 후 안정된 직업마련으로 자활능력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 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 6,727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농기계정비, 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출장요리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 교도작업 운영실적

가. 작업운영 형태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정역(定役)으로, 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복귀 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도작업은 교도소에서 직접 제품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직영작업, 외부업체로부터 기계·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작업, 외부통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 하는 노무작업과 교도소의 자체 시설유지·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작업이 있다.

나. 작업종목 및 취업인원

작업종목은 목공·철공·인쇄공·봉제공·식품공 등의 직영작업, 자동차부품조립·쇼핑백 제작 등의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의 노무작업, 청소·취사·시설보수·세탁 등의 운영지원작업으로 나누어지며, 1일 평균 22,200여 명의 수용자가 교도작업에 취업하고 있다.

다. 작업규모

2017년도 말 기준 교도작업 규모는 총세입액 975억 원(2016년도 이월금 포함), 총세출액 902억 원, 이월금 72억 원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국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 작업시설은 1,541억 6,600만 원이고, 공작물 등은 23억 7,800만 원으로, 1962년 독립회계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 내역은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총세입액	총세출액	다음연도 이월금	비 고
2013	61,776	40,565	21,211	
2014	69,195	51,816	17,379	
2015	85,801	53,834	31,967	
2016	104,461	86,244	18,217	
2017	97,566	90,298	7,268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표 16〉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156,544	154,166	2,378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가.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수형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 27.부터 10. 31.까지 제46회 교정작품 전시회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교도작업제품과 문예작품 총 1,133점을 전시하였다. 특히, 옥외전광판 광고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여 관람인원이 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식코너·네일아트 등 부대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나. 국화 품평회 개최

수형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다양한 국화를 한 곳에 모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국화품평회를 2016. 10. 26. 과천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서울구치소 등 5개 교정기관에서 다륜대작 8점 등 249점의 국화를 출품하여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동양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 3명이 심사하여 총 5점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행사종료 후 법무부 각 기관 및 유관기관에 국화를 기증하여 가을의 국화향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4. 작업장려금 및 조위금·위로금

가. 작업장려금

작업장려금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가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작업장려금과 특별작업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일반작업장려금은 모든 취업자에게 작업의 종류, 교정성적에 따른 작업 등급 및 작업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교도작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작업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활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종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3,000 (2,500)	2,500 (2,000)	2,000 (1,600)	1,200	1,100	1,000	3,500	3,000	2,500	900	800	700

나. 조위금 및 위로금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로서 조위금과 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수형자가 작업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근 지급실적은 <표 18>과 같다.

〈표 18〉 조위금 및 위로금 연도별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 연 도	위 로 금		
	인 원	지 급 액	1인당 평균지급액
2012	5 (1)	73,735 (42,709)	14,747
2013	3	11,346	3,782
2014	-	-	-
2015	5	98,729	19,745
2016	5 (2)	96,308 (90,034)	19,262
2017	2	20,040	10,020

※ ( )는 조위금

5. 자립형 교도작업

작업시간 부족, 근로의욕 미흡 등 교도작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수형자의 생활정착금을 마련하여 안정된 수형생활 유도, 가족관계 회복 증진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자립형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립형교도작업은 장기 수형자 대상의 구내작업으로, 1일 실제 작업시간 8시간을 확보하고 현재의 집중근로작업을

수량과정으로 실시하여 작업생산량 증가 실적에 따라 2~3배 인상된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작업형태로서 2017. 12. 말 현재 6개 기관, 15개 작업장에서 4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출소 후 생계기반 조성을 통한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모범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제도이다. 외부통근작업은 2017. 12. 말 현재 전국 26개 교도소에서 1일 평균 1,532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와 가족은 물론 취업기업체 평가 및 여론도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수형자 또한 높은 갱생의지를 보이는 등 수형자 교정교화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18년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2개 교정기관 구외 유휴부지에 작업장을 신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방지역작업장을 증설할 방침이며 취업직종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7.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

가. 산업사회에 유용한 기능인력 양성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공직업훈련 4,176명, 일반직업훈련 2,551명 등 총 6,727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숙련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성훈련은 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에 대한 기초과정이 필요한 자와 학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기능을 연마시키는 훈련이며, 향상훈련은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 또는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숙련훈련은 기능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에서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는 훈련이다.

집체훈련은 화성·서울남부·청주·청주여자·순천교도소 등의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일반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같고, 고급기술훈련은 기사이상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기사전문과정인가를 받아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청주·대구·진주·대전 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일반직업훈련 과정에 단기실무훈련과 교도작업적응훈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실시인원은 <표 19>와 같다.

〈표 19〉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470	3,537	3,725	3,825	4,129	4,852	6,276	6,484	6,644	6,727
공공직업훈련	양성·향상훈련	2,536	2,783	3,164	3,076	3,386	3,336	3,811	3,758	3,913	3,719
	숙련훈련	490	430	327	369	350	249	397	360	364	457
일반직업훈련		444	324	234	380	393	1,267	2,068	2,366	2,367	2,551

나. 기술자격 취득

법무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69년 직업훈련을 개시한 이후 2017년 현재 3,858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6,914명이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특히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으로 평가받으며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기능장 자격을 2007년도 2명, 2008년 4명(기술사 1명 포함), 2009년 8명, 2011년 2명,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4년 1명, 2015년 5명, 2016년 4명이 취득함으로써 2000년부터 17년간 총 54명(기술사 2명 포함)의 기능장을 배출하였다.

〈표 20〉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693	2,740	2,856	2,803	2,813	2,953	3,278	3,264	3,316	3,443
기 술 사	1	-	-	-	-	-	-	-	-	-
기 능 장	3	8	-	2	4	4	1	5	4	-
기 사	3	2	4	4	-	11	-	-	1	-
산업기사	269	145	277	288	252	158	79	50	56	92
기 능 사	2,417	2,585	2,575	2,509	2,557	2,780	3,198	3,209	3,255	3,351

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직업훈련 수료 후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2017년에는 77명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였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은 <표 21>과 같다.

〈표 21〉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28	128	134	86	85	95	101	87	76	77
지방대회	112	118	118	71	72	84	88	77	64	63
전국대회	16	10	16	15	13	11	13	10	12	14

라. 직업훈련교사 신기술 습득

전국 교정기관의 모든 직업훈련교사들은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직종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신지식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매년 2회(하계, 동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입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술과 선진교수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갖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역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사회직업훈련기관을 정기적으로 참관하는 등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

제 7 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1. 개 요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내에서 교정시설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장비의 성능 분석, 교정 환경에 적합한 장비 발굴,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06년도에는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교도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범기관 운용 결과 예산절감 등 효과가 탁월,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6. 10. 31. 제48차 국무회의 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분가량 동 안건으로 부처 보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에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수기능 시설(천안 개방교도소) 1개 기관을 제외한, 51개 기관 중 2007년 안양교도소 등 32개 기관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1개 기관의 전자경비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신축·이전기관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이 포함되어 구축되고 있다.

2. 추진배경

가. 인력에 의존한 교정시설 경비체계 개편

기존의 교정시설 외곽경비는 사람의 오감작용에 의한 인력 의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육안 등 오감에 의한 경비방식은 그 한계가 있어 빈틈없는 경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특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경비는 수용자의 도주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완벽한 경비체계가 요구되었다.

나. 경비교도대의 폐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방의무를 수행할 군복무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경비교도대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어 2005년도부터 부대 간 통·폐합이 진행되어오다 2012년 완전 폐지되었고 교정시설 외곽경비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었다.

다. 다양한 첨단 장비의 개발

현대 첨단 과학은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일을 기계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경비체계도 과학 장비가 개발되어 과거 인력에 의한 감시보다 정밀하고 완벽하게 경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발전된 전자 과학 장비의 교정시설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교정시설은 사형수 등 각종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완벽한 시설보안이 요구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도주사고 중 주벽을 통한 도주사고는 불과 4건에 불과하지만 다수인원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고 감시대 근무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주벽에 대한 경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외곽경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경비시스템은 내부 탈출은 물론 외부 침투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감지 센서를 교차 설치하고 정전 등의 장애에도 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센서와 연동되는 CCTV 카메라, 경고방송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통용문 등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고 수용동 또는 공장에서 직원이 비상 시에 즉시 중앙통제실에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TRS를 지급하였다. 새로 설치된 장비들은 이미 소수의 인원으로 엄정한 시설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 교정시설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의 외곽 경비는 물론 각종 기기를 제어·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시스템은 주로 외곽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수용자의 거실에 대한 감시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4. 구축 효과

본 사업은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교정시설의 경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 교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축되는 교정시설에서도 감시대가 사라져 더욱 사회 친화적 시설로 변화되었다.

또한 직원 근무회피 장소인 감시대 근무를 전자경비로 대체해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통제구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영상화면을 제공,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근무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 8 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 운영

1. 개 요

최근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및 처우의 향상으로 거실 출입횟수가 폭증함에 따라 수용자 동태관찰, 상담 업무와 같은 교도관 본연의 업무보다 입·출실 인원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에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전대상기관 및 특수기능 시설(천안개방교도소) 1개 기관을 제외한 51개 기관 중 2008년 인천구치소 등 10개 기관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1개 기관의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신축기관에는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포함되어 구축되고 있다.

2. 추진배경

그동안의 교정 관련 정책은 거실·작업장 환경 개선 등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환경은 많이 개선된 반면, 교도관의 근무여건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수용자의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처우가 향상되면서 각종 고충처리, 운동, 접견, 교화활동 등을 위한 수용자의 거실 출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가령 미결수용동 근무자 1인이 통상 20여 개 거실에 수십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평균 약 120회 가량 거실문을 개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자는 수용자 동태관찰 및 상담 업무와 같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용자의 입·출실 인원 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문 전자잠금장치 설치를 통한 근무자실에서의 출입문 원격제어, 근무자실과 수용거실 간 인터컴을 통한 통신망 구축, 그리고 거실문 개·폐 시 자동 영상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첨단과학

공법을 교정에 접목하게 되었다.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가. 구성설비

이 시스템의 구성설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존 거실문에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근무자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거실 내부에 수용자와 통화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시스템', 수용동 복도 거실문의 개폐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확인시스템', 그리고 근무자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든 CCTV 카메라의 영상은 근무자실에서 실시간 녹화되며 정전 등 비상상황 시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작동되어 약 30분간 전원을 공급,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운영방법

수용동 근무 직원은 먼저 보안과에서 거실 카드 Key와 제어반 Key를 가지고 근무자실에서 자기만의 패스워드로 시스템을 부팅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실문의 개방은 평상시 개별 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원터치로 부분 또는 모든 거실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근무자실을 떠나 현장에서 거실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실로 다시 돌아와 개방할 필요 없이 지급된 RF카드(Radio Frequency card)방식의 거실카드 Key를 자동 잠금장치에 가볍게 접촉 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다. 감독자와 야간 순찰자 등에게는 모든 수용동의 거실문을 개방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 Key를 지급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구축 효과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이후 수용자들은 자신의 고충사항 등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시로 인터컴을 통해 근무자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도 수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거실 출입문과 수용동 출입문도 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어 원활하게 수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무자들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많은 시간을 수용자 상담 및 관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예방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조금 더 나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에 의존한 경비나 계호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현대 교정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 9 항 심리치료센터 운영

1. 개 요

성폭력사범, 알코올관련사범, 정신질환자, 아동학대사범 및 동기없는 범죄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치료센터의 치료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 정신보건센터는 설치된 기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등 직제 구성의 이원적 구조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 특성 등에 따른 체계적인 심리치료 대책 수립의 곤란함을 해소하고자, 재범 고위험군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정심리치료센터 및 정신보건센터를 심리치료센터로 통합하였다.

2. 심리치료센터 현황

심리치료센터는 차별화된 심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맞춤형 재활 심리치료를 실시하며,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대상군별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다. 심리치료센터는 2011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천안심리치료센터 까지 9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하였다.

〈표 22〉 심리치료센터 현황

기관 / 구분	남부	포항	밀양	청주	군산1	군산2	의정부	천안	진주
개원일	'11.10.	'13.1.	'14.9.	'13.5.	'13.11.	'12.12.	'14.2.	'15.4.	'13.11.
소속	지방교정청					교정기관			
센터장	교정관					외부병원 정신과 전문의 위촉			기술 서기관 (계약직)
직원수	13명	8명	7명	7명	7명	6명	6명	6명	7명

※ 군산 제2심리치료센터 : 마약·알코올 등 중독사범 전문 재활센터

3. 심리치료 프로그램 현황

성폭력사범 220명, 중독사범 187명, 정신질환자 310명, 동기없는 범죄자 24명, 아동학대사범 25명 등 2017년에 총 766명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치료센터의 치료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표 23〉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 용
성폭력사범	-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3개 과정 중 집중·심화 과정 - 왜곡된 성의식 수정, 범죄원인 분석 및 대처훈련, 피해자 공감, 대인관계 훈련 등
마약류사범	- 기본(16시간), 집중(24시간), 심화(80시간 이상) 3개 과정 중 심화 과정 - 변화 동기 만들기, 약물에 대한 생각 등
알코올관련사범	- 기본(12시간), 집중(20시간), 심화(80시간 이상) 3개 과정 중 집중·심화 과정 - 변화의 필요성, 음주갈망 대처하기 등
아동학대사범	- 전문(100시간) 1개 과정 - 양육기술 배우기, 분노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
동기없는 범죄자	- 알코올 남용형,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3개 유형(각 60시간) - 친밀감 이해 및 향상, 대인관계 갈등해결, 스트레스의 관리 등
정신질환자	- 기본(8시간), 심화(120시간, 200시간 이상) 2개 과정 중 심화 과정 - 약물복용 및 증상관리, 정서관리, 개인상담 등
도벽사범	- 집중(20시간), 심화(10시간) 2개 과정 - 도벽이해, 충동 및 정서조절 등

제 8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 1 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2017 국제 인구이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2억5천800만 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49% 늘어난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7년 현재 3.4%로 증가하여 이주자의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국가별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화와 맞물려 이주 증가율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이민국가와 많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은 우수·전문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를 위해 이민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반이민 정서 확산 등으로 미국의 보수적 이민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체류외국인이 2016년도에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말 현재 218만 명(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4.2%에 해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난민신청자는 2016년 7,541명보다 31.8% 증가한 9,942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고령화로 인한 비생산연령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감소 등은 향후 아시아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50년 이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퇴직연령 상향조정, 이민촉진, 출산율 제고를 인구구조의 불리한 변화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주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범죄·테러 등 국민안전 침해의 증가와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사회복지비용 부담 논란 등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선별 유입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며, 재한외국인이 국민과의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도에는 사회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과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신청자의 처우 개선',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개선',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외국인정책을 추진하였다.

제 2 항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활성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Smart Entry Service)란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첨단 출입국심사 시스템이다.(2008. 6. 26. 인천공항에서 처음 서비스 시작)

2017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24,621천 명으로 2016년 17,269천 명 대비 약 42.6% 증가하였고, 2017년 총 출입국자의 약 30.6%(24,621천 명/80,408천 명)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21.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경우 2016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는 16,293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3,810천 명으로 46% 급증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국민은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인증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한 결과이다.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대는 5개 국제공항(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및 2개 항만(부산항, 인천항)에 총 11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 개항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 52대를 설치하고, 지방공항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대구공항 4대, 김해공항 2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러한 출입국자 편의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주관 : 행정안전부)에 선정돼 동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1〉

2.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관광객 유치정책 시행, 대회 홍보활동 강화 등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대회 참가자의 출입국편의 제공을 위하여 올림픽등록카드 소지자에 대해 대회 전·후 1개월 동안의 입국보장 및 대회 참가자의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출입국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제주 방문 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내륙지역 체류기간을 확대(10일→15일)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체류기간 15일)을 허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올림픽 분위기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모니터, 소속기관 민원실 TV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 심사대에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렘(스티커)을 부착하였으며, 인천공항 입국장 B·E지역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9.3m×2.4m)을 설치하여 대회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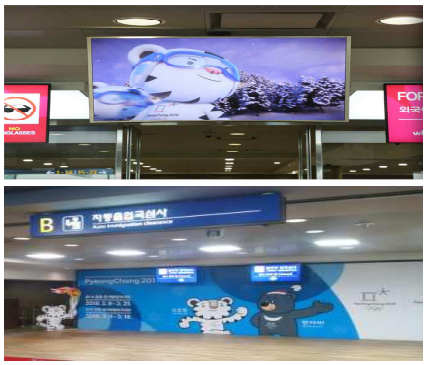

3.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입국우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국우대카드를 소지한 자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자가 선정되며, 2017년 말 현재 14,832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그림 3〉

4. 안전한 국경관리

가. 출입국안전대책 활동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회(5.20.~6.11.)',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6.24.~6.30.)' 등 국제행사 시 행사참가자에 대한 출입국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부 및 소속기관에 출입국안전대책반을 편성하고 출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출입국 안전대책 활동을 통해 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패럴림픽대회(3.9.~3.18.)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대회 1년 전부터 '출입국편의 제공 및 출입국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다.

아울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적용배제 국가를 확대(5개국→11개국)하여 위험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2017년 국가대테러 업무유공 기관에 선정(주관 : 국가정보원)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시행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사전승객정보분석(APIS)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항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우범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16일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는 타이완 타오위안공항 등 3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에바항공기가 참여 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5개국 8개 공항으로 시범운영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9월 30일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 전송 및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16년 12월 인터폴 분실여권에 대한 실시간 조회·응답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 항공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범공항과 참여 항공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45개국 170개 공항에서 국내에 취항하는 87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말 현재 항공사가 전송한 승객 정보 30,665,300건에 대한 탑승가능 여부를 응답, 인터폴 수배자 정보 7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7,057건 등을 포함한 총 13,226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우범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시행으로 테러 위험으로부터 탑승자와 항공기의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우범자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선량한 대부분의 승객들에게는 보다 신속한 입국심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우수성을 국외에 홍보하기 위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간하는 'TRIP'지에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제도로 그 특징 및 우수성을 소개하였고, 'ICAO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 세미나' 에도 참가하여 제도 도입 및 개발과정, 시범운영 경과, 주요 장점 등을 발표하였다.

2017년 9월 12일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세계 정보기술 서비스연맹(WITSA) 정보통신기술(ICT) 총회에서 매년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하는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법무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았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 출입국자 현황

2017년도 출입국자 총 수는 전년도의 79,987,974명보다 0.5% 증가한 80,407,702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 기록을 경신하였다.

국민은 53,445,030명으로 전년도 45,313,898명에 비해 17.9%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26,962,672명으로 전년도 34,674,076명에 비해 22.2% 감소하였다.

〈그림 4〉 전체 출입국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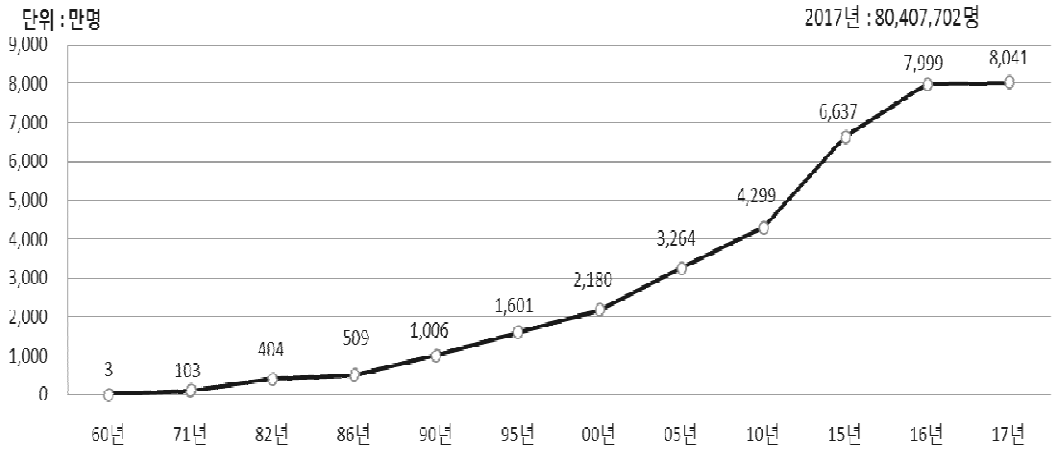

가. 외국인 입국자

2017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3,569,509명으로 전년도 17,418,307명에 비해 22.1%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439만 명(32%), 일본 234만 명(17%), 미국 97만 명(7%), 타이완 96만 명(7%) 순이다. 중국은 전년대비 387만 명(47%)이 감소하여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022만 명(75.3%)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52만 명(3.8%), 방문취업 25만 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나.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6,765,503명으로 전년도 22,659,640명 대비 18.1%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7년에도 2016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520만 명, 40대 496만 명, 20대 464만 명 순이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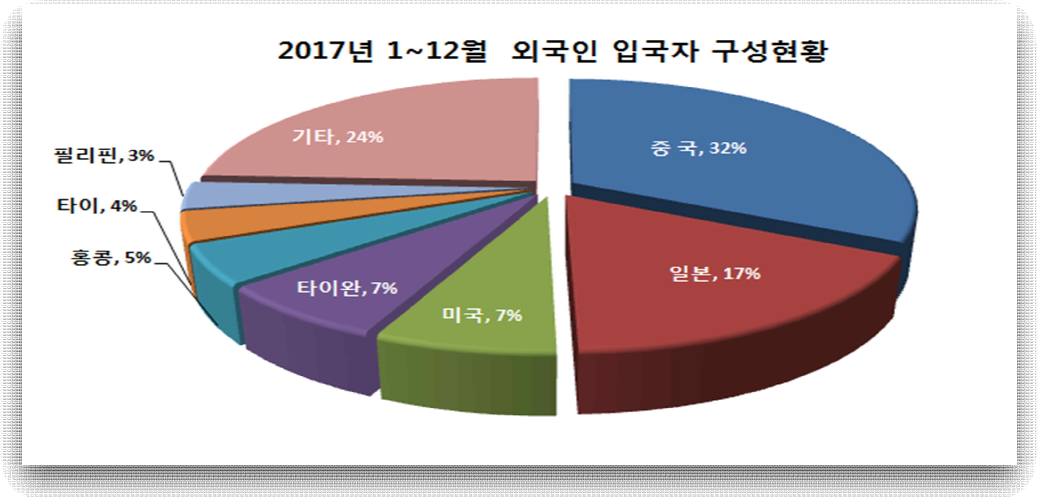

제 3 항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1. 외국인 일반연수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교육서비스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일반연수가 가능한 사설교육기관을 확대하였다.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 직업기술 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연수 가능하고,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운영 계약체결 기관'으로 한정하여 허용해왔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으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미리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에서 유학(D-2) 또는 한국어연수(D-4)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기 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7. 4. 19.)'에서 부처 합동으로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체류 우대,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우수인재와 그 가족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전문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7월 3일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수, 연구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및 이공계 석·박사 이상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어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에게 국내 영어회화지도 강사(E-2) 근무를 허용하였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특정활동(E-7) 자격 전문인력(68개 직종)에 대하여 비자신청 시 학력, 경력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기술창업자, 유학생 무역창업자 등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창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2017년 11월 1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술창업비자(D-8-4)는 2013년 10월 최초 도입 후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3]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23명의 외국인이 창업하였다. 국내 유학 중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창업을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무역비자(D-9-1)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쉽게 무역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제로 개선하여 약 90여 명의 외국인 무역업자를 배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3. 투자이민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가. 부동산투자 이민제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구(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8. 19.),

3) 창업 소양 교육, 창업 상담(멘토링), 법인 설립 지원, 창업 공간 제공, 지적 재산권 출원 지원 등 기술창업에 필요한 소양 등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천경제자유구역(11. 1.), 2013년 부산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5. 20.)를 추가 지정하였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11. 1.)을, 2016년도에는 강원 강릉 정동진지구(2. 1.) 및 전남 여수 화양지구(7. 11.)를 투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말 현재 투자 실적은 총 1,901건, 1조 3,778억 원이다.

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다.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2013년 말 기준 총 3건, 13억 원을 유치하여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투자이민상담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7년 말 현재 총 230건, 1,033억 원을 유치하였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금융상품'을 출시한 이래, 2017년 말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재원과 산업은행 재원 각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으로 조성, 일반 대출금리(현재 1.81%)보다 0.2%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4. 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

비자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배정인원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1천 명 더 늘렸고, 외국국적동포(F-4)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에게 부여하는 방문동거(F-1) 비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류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마련·시행하였다.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혜택을 입은 동포는 2017년 말 기준 475명에 이른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가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통상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H-2)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 10월 1일

부터 동 절차를 개선하여 출국 후 2개월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를 기존 3세대에서 4세대 이후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동 법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5. 체류민원 혼잡 해소를 위한 사전 방문 예약제 확대 및 민원편의 제고

2016년 2월 1일부터 일부 수도권사무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양주·세종로·천안·안산)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2017년부터 일부 지방사무소(부산·청주·고양·평택)로 확대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사무소 혼잡도를 완화하였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예약일시에 맞춰 방문하면 즉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여 불편하던 것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모바일 서비스(한국어·영어·중국어)를 도입하여 손쉽게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포항 특별재난지역 내 체류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진발생일(2017. 11. 15.) 기준 포항 지역 내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류관련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을 면제하였다.

6. 농·어·산업분야 인력난 해소 지원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15년 10월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농·어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언론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도'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90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중국인 19명이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충북 괴산군 절임배추 농가 10곳에 배치되어 출하시기에 맞추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전원 출국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4개 지자체(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 강원 양구군)에 124명 배정, 하반기에는 7개 지자체(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음성군, 전북 진안군, 경기 포천시, 충남 서천군)에 137명을 배정하였다.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 1,547명을 배정(농업 20개 지자체 1,175명, 어업 3개 지자체 372명)하였다.

또한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도입하였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 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 (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2017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2018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점수제 요건 및 도입규모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7. 외국인 조세체납 징수율 제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인 조세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하여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2017년 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징세기관이 법무부에 제공한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이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 억 원으로 외국인 체납액 1,800여 억 원의 약 6.8%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확립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8.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2017년 3월 1일부터 중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5년 간 유효한 단기일반(C-3, 30일)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경제현안 간담회(11. 3.)' 및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2. 18.)'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우수기업 직원 및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

9.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및 국제대회 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조치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 동안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린 '2017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대회'의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올림픽 참가자 및 관람객에 대한 각종 비자·체류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합 지침을 마련하여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제 4 항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2017년에 들어서도 태국 등 사증면제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 자격소지자의 불법체류 전락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지속되었고, 이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상승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연중 상시단속 실시,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 신설 및 전국 24개소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사각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역 51곳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근절 계도활동,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단속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태국·베트남 등 주요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주한외국공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자진출국 독려를 요청하고, 자진출국 안내문을 각 주한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자진출국을 적극 홍보하였다.

불법체류 감소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31,237명, 불법고용주 6,654명 등 총 37,891명을 적발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 계도활동,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완화제도' 실시 등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여 39,51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신분세탁자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6,460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체류 발생 근원의 차단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 불법고용 방지 홍보활동 강화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고용주 및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총 10,6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였고, 각 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 유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 동안 총 319명, 하반기 정부합동단속은 9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 동안 총 339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사전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3,255명, 불법고용주 2,549명 등 총 15,80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간	· 5.6.~6.30. · 10.7.~11.30.	· 5.12.~25. · 6.9.~29. · 10.13.~11.9.	· 3.9.~5.1. · 9.1.~11.8.	· 3.7.~5.13. · 9.5.~11.11.	· 3.6.~5.12. · 9.4.~11.17.
참여인원	505	406	520	638	658
불법체류 외국인	7,078	4,373	8,736	13,426	13,255
불법고용주	1,904	1,257	2,393	2,625	2,549

4.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전락 추세가 지속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입국하는 수법이 더욱 다양·교묘해짐에 따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는 기획조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이민특수조사대 및 각 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 구성,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및 공유 등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51곳을 재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7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초청 알선자 등 6,460명(733건)을 적발하여 그 중 61명을 구속, 26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272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이는 기획조사 기법연구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기획조사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법체류 발생 주요요인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등 422명을 적발하였고, '신분세탁 혐의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00명을 적발하였으며, 불법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53명, 불법취업 외국인 482명 등 총 535명 적발하였다.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자격 원어민강사 등 188명, 불법 고용주 23명 등 총 211명을 적발하였으며,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퇴폐행위 마사지업소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909명, 고용주 254명 등 총 1,163명을 적발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 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는 등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이를 통한 국민 불안 요인 해소,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표 2〉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위변조 여권		위장결혼		불법취업		기 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6년	703	6,391	120	211	28	44	158	2,869	397	3,267
2017년	733	6,460	84	196	7	11	169	2,415	473	3,838
전년대비(%)	104.3	101	70	92.9	25	25	107	84.2	119.1	117.5

5.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병행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시 단속 채증영상 모니터링 등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무소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방·전기시설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방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 위탁 교육시켰다.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대규모 지진에 따른 위험성 및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지진·해일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별로 인근 대피처를 재확인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보호외국인의 대피·이송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심층 토론하였다.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등 인권기관 및 청주·화성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교차 시설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호외국인 체불임금 3,789건(약 67억 원), 의료구호 1,283건 등 총 9,561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6.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017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46,924명이다.

이 중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26,694명(18.2%),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은 6,282명(4.3%), 출국권고 받은 외국인은 3,366명(2.3%)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2,851명(1.9%) 이었다.

그 외에 통고처분은 29,838명(20.3%), 과태료는 15,205명(10.3%), 처분면제 등 기타 62,688명(42.7%) 이었다.

〈표 3〉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		건	금액	
2016	152,482	28,784	6,183	3,345	29,380	38,592,080	2,553	7,271	988,440	74,966
2017	146,924	26,694	6,282	3,366	29,838	40,094,280	2,851	15,205	2,165,600	62,688

※ 기타 : 처분면제 등

제 5 항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 시 사증발급, 일반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변경, 귀화심사 등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2017년 8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체류혜택과 2017년 8월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는 내용의 개정「국적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증가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429명, 2011년에는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에는 14,014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2,361명, 2015년에는 25,795명, 2016년에는 30,515명, 2017년에는 41,500명으로 2009년 대비 약 30배 증가하였다.

참여자 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09년 20개에서, 2010년 77개, 2011년 150개, 2012년 271개, 2013년 278개, 2014년 304개, 2015년 308개, 2016년 300개, 2017년 309개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도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기관(개)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참여인원(명)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연도별·체류자격별)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58,908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결혼이민(F-6)	88,887 (55.9%)	846 (63.6%)	3,266 (73.7%)	4,971 (76.3%)	8,238 (66.2%)	8,572 (61.2%)	13,131 (58.7%)	14,534 (56.3%)	16,563 (54.3%)	18,766 (45.2%)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방문동거 (F-1)	8,038	246	558	534	878	593	391	1,475	1,539	1,824
방문취업(H-2)	2,824	83	130	111	238	212	324	413	519	794
영 주(F-5)	1,396	90	125	33	66	117	159	193	270	343
유 학(D-2)	7,219	14	64	154	388	392	806	1,302	1,730	2,369
기업투자(D-8)	1,980	11	89	159	248	328	333	288	245	279
비전문취업 (E-9)	17,113	19	44	148	1,356	1,272	2,181	2,734	3,177	6,182
재외동포(F-4)	5,381	-	-	-	-	-	-	-	1,487	3,894
기 타	26,070	22	153	409	1,032	2,528	5,036	4,856	4,985	7,049

다. 이민자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체계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4,211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근로, 부동산 거래, 소비생활법령 등 생활법률특강을 실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금융·경제, 소비자, 재난·안전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한국어 말하기와 다문화예술 등을 발표하는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교육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민자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장애, 취업,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1명의 강사가 9명의 이민자와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2017년 총 1,130명이 참여함으로써 최초 도입한 2010년 136명 대비 참여자 수가 약 8배 증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회화강사 등 주간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여 야간반, 주말반 등 특수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2017년 25,469명(2017년 41,500명 중 61%)이 야간·주말반에 참여하였다.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평가요령, 운영지침, 사회통합정보망 활용기법 등에 대한 내용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강사 공동연수를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3개 영역에 대한 기본소양평가 감독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 등 적응지원 강화

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이민자의 다양한 체류유형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연예인(E-6-2)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의 조치로 2017년 참여자 수는 91,938명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09년도 824명 대비 110배 증가하였다.

나.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학습권 지원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면서 본국에서 데려 온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전 성년이 된 경우 학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부담 등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마을변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2015년 외국인 집중거주 10개 지역에서 2017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144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언어장벽 등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한외국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이혼, 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1,54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라.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민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한국의 전통예절교실, 김장 나눔 봉사, 내국인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민자 네트워크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2017년도에 총 6,427명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출신국가별로 이민자 대표 총 235명을 지정하고 국내정착에 성공한 국적취득자 70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민자 대상 정착모범사례 교육강사 및 국내 정착 가이드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사랑방 등에 결혼이민자 16,320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통·번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민자의 체류, 국적 등 총 2,425건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였다.

마.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축제

2017년 10월 29일 오전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7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참여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약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평화광장, 하늘공원 둘레길(3.8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함께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축제에는 화창한 날씨 덕분에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떡메치기 체험, 고국에 편지보내기, 세계 음식 체험, 타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3.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과정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상·하반기 운영하였다.

이민정책 이해과정은 법무연수원에서 3일(2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관리, 이민통합정책, 국적제도와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총 2회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 공무원, 경찰청 외사공무원 등 총 4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나.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2017년 5월 19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여성가족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 재한외국인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며,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베트남 출신 원옥금 재한베트남 공동체 대표가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원옥금 대표는 2007년부터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 상담활동을 시작으로, 베트남 이주민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2014년 '재한베트남 공동체' 설립 및 대표활동을 통해 베트남인 정착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국내정착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로 이민자의 귀감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장인실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장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인하대학교, 강릉문화원, 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단체와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팀장, 이성순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장, 최은해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원지혜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통역상담사원 등 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김세영 고양시 이민자통합센터장 등 6명과 숭실대학교 등 1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 외에도, 재한외국인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 등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가치나 상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6〉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4.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4년 4월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와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자가 2013년 11,706명에서 2014년 8,103명, 2015년 7,05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7,330명, 2017년 7,784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제도 개선

법무부는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해 친정 부모 등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학령기 아동·청소년(미성년자)이 입국하여 출산·육아지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들의 출산·육아 지원목적의 장기체류 문제 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7년 4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의 허가 대상을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본국 가족의 무분별한 장기체류를 억제하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 6 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1.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최근 외국인의 귀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귀화 허가자들에게 귀화 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새로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 등 헌법가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서울 지역 국적취득자 54명, 인천 지역 국적취득자 56명 등 총 110명에 대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광복 72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귀화 신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 국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육자료를 증보 발간하여 우리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국적업무 제도개선

가. 「국적법」 및 하위 법령 개정

귀화·국적회복 시 국민 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귀화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었다. (2018년 12월 20일 시행 예정)

한편,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고,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 국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7년 8월 29일 공포되었다.

나.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 개선

귀화면접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귀화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종전 13개사무소(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구, 대전,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에서 운영하던 귀화민간면접관 제도를 15개 사무소(여수, 동해 추가)로 확대 운영하였다.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2017년 11월 20일부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동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질병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민원인들이 국적업무 처리 절차 전반과 신청 후 진행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및 Q&A 리플릿 형태로 국적취득 절차 안내판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거주 동포 및 재외공관 직원 등 내·외부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국적법」 현지 설명회(2017년 7월, 호주 시드니)를 실시하였다.

다. 체육분야 우수인재 국적 심사절차 등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출전선수 확보를 위한 체육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와 관련하여 장래 국익에 기여할 의사 또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올림픽 출전만을 위해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귀화를 추진하는 관련 종목 연맹 차원에서 귀화선수에 대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장래 국익기여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귀화 동기의 진정성과 소속단체 내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귀화 제도 취지에 따른 국익기여 가능성 판단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인재 심사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하였다.

라. 면접심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그간의 귀화면접심사에서는 피면접자에 대한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에 대한 평가 위주의 질문을 통하여 국민의 자격이 될 능력을 판단하였다. 이에 기초법률·일상생활 등 시사성 있는 질문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고 한정된 문제로 인한 면접 질문지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유형별 난이도를 재조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문항을 개발하는 등 귀화면접심사 평가항목 및 질문지를 개선하였다.

마. 재외공관 접수 신고업무 소속기관 위임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업무 중 재외공관 접수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업무를 국적 담당 17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재외공관 접수 문서를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아닌 국적업무 담당 소속기관의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을 도모하였다.

3. 국적업무 처리현황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3년 만인 2011년 1월 10만 명을 넘었으며, 2017년 말 현재 총 178,259명에 이르게 되었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401명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0,740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귀화허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혼인귀화가 64%(6,438명)를 차지하며, 특별귀화자는 22%(2,238명)이다. 특히,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17년 말까지 총 24회 개최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74명, 체육분야 25명, 첨단기술분야 9명, 경영·무역분야 5명, 문화·예술분야 6명 등 총 119명을 우수

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국적회복자는 2011년 1월 1일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65세 이상 고령 동포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국적법」 개정 전인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50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최근의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3년 2,686명, 2014년 2,886명, 2015년 2,610명,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72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국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 계	귀 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기 타
2013년	35,733	11,270	2,686	19,413	1,130	677	557
2014년	35,632	11,314	2,886	18,150	1,448	1,322	512
2015년	32,837	10,924	2,610	16,595	1,234	934	540
2016년	50,957	10,108	2,303	35,257	1,513	1,147	629
2017년	35,978	10,086	2,775	19,364	1,329	1,905	519

〈표 7〉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 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 타		
2013년	11,270	133	9,021	291	1,677	148
2014년	11,314	298	7,607	475	2,717	217
2015년	10,924	323	6,966	618	2,778	239
2016년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년	10,086	715	6,438	304	2,238	391

〈표 8〉 2017년 귀화시험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차	일 자	대상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율	합격률
1	1. 24.	374	274	175	73.3%	63.9%
2	2. 7.	109	80	43	73.4%	53.8%
3	2. 21.	522	393	170	75.3%	43.3%
4	3. 7.	379	303	194	79.9%	64.0%
5	3. 21.	302	233	146	77.2%	62.7%
6	4. 11.	157	100	47	63.7%	47.0%
7	4. 25.	673	551	289	81.9%	52.5%
8	5. 16.	96	87	51	90.6%	58.6%
9	5. 23.	379	292	168	77.0%	57.5%
10	6. 13.	229	190	80	83.0%	42.1%
11	6. 27.	635	495	231	78.0%	46.7%
12	7. 11.	297	219	119	73.7%	54.3%
13	9. 12.	821	651	296	79.3%	45.5%
14	9. 26.	319	278	180	87.1%	64.8%
15	10. 24.	458	356	173	77.7%	48.6%
16	11. 14.	447	362	217	81.0%	59.9%
17	11. 18.	90	75	61	83.3%	81.3%
18	12. 12.	541	428	179	79.1%	41.8%
합계	-	6,828	5,367	2,819	78.6%	52.5%

제 7 항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1.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가. 적체해소 및 이의신청 심사 개선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시리아 내전, 무슬림 간의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처리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난민심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난민심사제도를 구축하였다.

서울사무소 내 난민심사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직제 개정을 통해 난민심사 인력도 10명 증원하였으며, 인천사무소를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추가 지정하는 등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의 급증으로 적체가 심화되고 이의신청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 개선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준사법적인 기능이 강화된 난민심판

전담기구 신설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는 난민심사관의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국가정황정보, 의학적·심리학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난민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난민심사의 이론과 실무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난민심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난민심사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심사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또한 난민심사관의 인권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및 난민인권단체 등 실무자를 초빙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

가. 통역인 제도 개선

난민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촉된 총 22개 언어 220명의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난민신청 접수 및 난민면접 시 적극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통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역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난민법」 및 난민인정 절차, 통역인 윤리 및 통역 실습 등이 포함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역인의 자세 및 통역 기술 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통역 수요가 많은 언어 중심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로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난민통역인 제도를 개선하여 난민통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영·유아 동반 가족,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선발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2017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8억 1천7백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017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센터 비 입주자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센터 입주자	299,600	510,160	660,100	809,900	959,700

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아동 대상 외국어 교실 운영, 지원센터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지원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재정착난민의 수용

가. 추진 배경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과 난민의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대열에 합류하고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7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5천 명의 재정착 난민이 각국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2016년 약 19만 명에 비해 66% 감소한 수치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추진 경과

2014년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쳤으며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재정착난민의 수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수용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연 1회 가족단위로 약 3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었다.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아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 후, 건강검진 및 출발 전 사전교육

등을 거쳐 2015년 12월 23일에 1기 재정착난민(4가족 22명), 2016년 11월 2일에는 2기 재정착난민(7가족 34명), 2017년 7월 25일에는 3기 재정착난민(5가족 30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여 약 6~9개월 간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등 초기 정착 교육을 받은 후, 1기 재정착난민은 2016년 9월 29일, 2기 재정착난민은 2017년 6월 9일 퇴소하여 인천시 부평구에 정착하였고 3기 재정착난민은 2017년 말 현재 아직 지원센터에서 초기 정착 교육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재정착난민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

재정착난민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재정착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사항 및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1기 및 2기 재정착난민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취업연계, 직업훈련,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제공하였다.

라. 중장기 재정착난민 수용방안 마련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착난민 수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난민업무 처리 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총 32,733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79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1,474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난민신청자가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폭증하였다.

난민인정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난민인정자는 474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 792명의 약 60%에 이르고 있다.

2017년에는 12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간의 내전 등 자국 내 인권상황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318명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받았다.

제 8 항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1.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2까지 제20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및 사회통합교육', '이민자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이민자의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안전한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48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771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확대 적용(중국→동남아 3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16년→'17년) 등 단체관광객 시장 다변화
- 의료관광객 35만 명 유치 및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별 홍보 마케팅 확대,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중 숙련기능공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우수인력 유치 지원

②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귀화신청자의 기본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진로·직업교육 등 성장배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 사회갈등 최소화 및 사회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 수수료·범칙금 등 외국인 부담 재원으로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 추진

③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체류외국인 증가 및 체류유형 다양화 등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편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144명을 추가 위촉,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다국어 무료법률 상담 지원을 강화
- 온라인 민원처리 전담기구인 '전자비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④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 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 이민자 유입과 체류관리 및 통합정책 수립과 관련,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조치를 국세 등을 체납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
- 51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 및 국제범죄수사대·기동순찰대 등을 투입하여 특별치안활동 실시

⑤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재정착난민 선발(34명 이내) 및 기존 입국한 재정착난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 구 소련지역(CIS)의 고려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배정인원을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

2. 국제협력 강화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 되어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8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약 21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 당국 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참석, FRONTEX 주최 국제회의, 제108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UN 고문 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ICAO의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세미나 (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의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등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파트너쉽 강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재정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방안, 개발요인으로서의 이주, 이주와 이동분야 현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년 이후 UN 개발의제를 위한 이주의 틀 논의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이민 당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구축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국제정보화상 수상 및 WICT 총회에서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민에 대한 각국 운영 사례와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7년 다양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이민당국의 초국가적 범죄대처 방안 등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①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②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③ 2017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④ IGC 워킹그룹 회의 ⑤ 제10차 GFMD 회의 ⑥ FRONTEX(EU 역외국경관리협력청) 회의 ⑦ UN고문방지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회의 ⑧ 제108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17년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상응하여 한·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고, 하반기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동의를 얻어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IOM, FRONTEX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4개국의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0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 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 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IOM, FRONTEX)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 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중국, 이탈리아, 독일, 홍콩,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4개 과정에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9 절 법무·검찰개혁업무

제1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 개요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법무·검찰이 추진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7. 8. 9.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17인의 외부 위원들로 전원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 기구로서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2. 진행 상황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제1·2분과 및 성평등 특별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7. 8. 9.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9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모두 6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설치 방안,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며,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권고안의 내용과 발표 일자는 <표 1>과 같다.

제2항 검찰과거사위원회

1. 개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9. 29. 제3차 권고안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2017. 12. 12.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고, ②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며,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2. 진행 상황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대상사건 선정방안, 조사단 구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표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년 권고안

차수	일자	내용
1	8. 24.	법무부 탈검찰화
2	9. 1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3	9. 29.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4	9. 29.	과거사 관련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적정한 검찰권 행사
5	12. 7.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6	12. 7.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법 률
제 3 절 대 통 령 령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 1 절 개 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률
2008	88	16	3	7	6	61	15	22	24	11
2009	73	15	6	6	3	56	15	19	22	2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제 2 절 법 률

제 1 항 개정 법률

1.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 추진배경

○ 뇌물죄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16. 8. 11. 시행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8. 16. 국회제출
2017. 2. 23. 국회통과
2017. 3. 14. 법률 제1458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

2.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4. 제안
2017. 2. 23. 국회의결
2017. 3. 14. 법률 제14585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시 체납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등기특별회계법

가. 추진배경

○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

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2. 10. 국회제출
2017. 8. 31. 국회통과(원안가결)
2017. 9. 19. 법률 제14875호로 공포
2017. 9. 19. 시행

다. 주요내용

○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연장

4~5. 민법, 가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헌법재판소의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3헌마623)의 취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추진경과

2017. 4. 5. 국회제출
2017. 9. 28. 국회의결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제14961호로 각 공포
2018. 2. 1. 시행

다. 주요내용

○ 현행과 같이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함

○ 다만,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전(前)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함
- 생부(生父)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자녀의 친생추정의 배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등을 신설함

6. 국가배상법

가. 추진배경

○ 배상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로 공포
2017. 10. 31. 시행

다. 주요내용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방지 필요

나. 추진경과

2016. 9. 22. 제안

2017. 9. 28. 국회의결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하되 개정법률 시행 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가. 추진배경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17. 2. 22. 제안

2017. 9. 28. 국회의결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또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9. 인신보호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에서는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 또한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나. 추진경과

○ 2016. 8. 2. 김도읍의원 · 2016. 11. 11. 황주홍

의원 · 2017. 6. 23. 박정의원 대표발의
○ 2017. 9. 20. 병합심사
○ 2017. 9. 28. 국회통과(대안)
○ 2017. 10. 31. 법률 제14972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 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10. 공증인법

가. 추진배경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 31. 국회제출
2017. 11. 24. 국회통과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개정「민법」 내용 반영
- 개정「민법」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참여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

○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 배제 근거 마련
- 공증인이 유언공증 또는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는 참석인증 시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경미한 의결 사항 법인의사록 인증 면제
-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

○ 화상공증제도 도입
-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및 운영사항 개선
-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공무원 의제 등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 공증사무 알선 등 처벌규정 마련

-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1. 변호사법

가. 추진배경

○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변호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17. 3. 13. 국회제출

2017. 11. 24.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

12. 한국법학원육성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에 있어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함

나. 추진경과

2017. 12. 12. 법률 제15162호로 공포

2017. 12. 12. 시행

다.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제7조 제3항부터 제5항)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분리되었으나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석상으로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전자장치 분리 등 직접적 효용침해를 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착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17. 1. 25. 국회제출
2017. 11. 23.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공포
2018. 6. 13. 시행

다. 주요내용

○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불응으로 인한 미부착 기간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로 추가

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4. 20. 국회제출
2017. 11. 23.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공포
2018. 6. 13. 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함

15. 변호사시험법

가. 추진배경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연수 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른 행위능력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5. 31. ~ 2016. 12. 1. 의원 발의(4건)
2017. 11. 23. 법사위 대안 의결
2017. 11. 24. 국회 본회의 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민법」 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개정함

16.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16. 11. 21. 제안
2017. 11. 24.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5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송환대기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확히 규정

17. 형법

가. 추진배경

○ 현행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다수의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상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형의 시효인 3년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 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1. 23. 법사위 대안 제출
2017. 11. 24.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78조제5호 및 제6호)

○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개정함

나. 추진경과

2017. 11. 23. 법사위 대안 제출

2017. 11. 24. 국회의결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행정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3. 29. 국회제출

2017. 12. 19. 법률 제1525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 확대(제5조 제21호의2, 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신설)

○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제6조제18호의2, 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4. 14.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국회통과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함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7. 26. 국회제출
2017. 12. 1. 국회통과
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 추가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
○ 치료기간 연장사유 및 기산점 정비

22. 국적법

가. 추진배경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30. 국회제출

2017. 12. 1. 국회통과

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공포

2018. 12. 20.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의 도입(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 종전에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 증서 또는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

○ 일반귀화 신청 요건의 강화(제5조)

-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일반귀화의 요건을 강화함

23. 형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정식재판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상한 보증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점과,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으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됨

나. 추진경과

2016. 10. 6. 국회제출

2017. 12. 1. 국회의결(수정가결)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제 3 절 대 통 령 령

제 1 항 제 정 령

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추진경과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6호로 공포
2017. 3. 30. 시행

다. 주요내용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

○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규정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수행 사무를 규정

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국내·국제 분쟁에 관한 중재 활성화 및 국제적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통한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8호로 공포
2017. 6. 28. 시행

다. 주요내용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제3조)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세분화(제4조)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에 관한 통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제6조)

-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적이 있고, 5명 이상의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제 2 항 개 정 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공포
2017. 1. 7. 시행

다. 주요내용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납부기한의 연장은 최대 1년으로 제한

○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 중 보호직 등 국가공무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 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인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구인승인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하여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2. 7. 대통령령 제27850호로 공포·시행

3.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7574호, 2016. 11. 8. 공포, 2017. 3. 1. 시행)되고,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검사 70명이 증원됨에 따라 신선되는 부산서부지청 및 각급 검찰청에 검사를 배정

나. 추진경과

2017. 2. 24. 대통령령 제278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설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검사 정원 30명 중 14명은 부산지검 검사 정원에서 재배정하고, 16명(지청장 1명, 차장검사 1명, 검사 14명)은 증원되는 검사 정원에서 배정

○ 그 밖에 증원되는 검사 54명 중 2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로, 나머지 52명은 검사로 각각 배정

4. 한국법학원육성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에 있어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함

나. 추진경과

2017. 3. 15. 대통령령 제27935호로 공포
2017. 3. 15. 시행

다.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 전문개정(제2조 제1항, 제2항) 및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 삭제(제3조)

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3.5%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나. 추진경과

2017. 4. 18. 대통령령 제279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3.5%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6. 가석방자관리규정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함

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도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5. 29. 대통령령 제28053호로 공포
2017. 5.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국의 조직사항 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 조정의 신청절차, 수수료, 조정신청서의 송달 등 조정절차 관련사항 규정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의 절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 대통령령 제28086호로 공포
2017. 6. 3.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대행기관을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 기간, 사유,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9.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타법 시행령 개정

나. 추진경과

2017. 6. 15. 대통령령 제2810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불편과 혼란 방지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범을 범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절차,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의 방법과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15호로 공포
2017. 6.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절차 마련
○ 등록정보의 열람·통지 절차 마련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마련

1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7. 24. 대통령령 제28200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익법무관수당 신설 및 보수 기준 마련(안 제13조 제2항 등)
- 군법무관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대응하는 공익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8퍼센트)을 신설하면서, 공익법무관이 지급받는 보수의 종류와 지급액 등이 명시된 보수 기준 마련

1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 조정

나. 추진경과

2017. 8. 1. 대통령령 제282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제외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한편,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만 원, 1년 이상인 경우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별로 구체화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한편,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예측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만 원, 2년 이상인 경우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별로 구체화

15. 국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적상실자 등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5호로 공포·시행(단, 시행령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귀화 필기시험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 제4조제4항 신설)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귀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안 제18조제6항, 제18조의2제7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제6항 신설)

-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등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회의 시 지정 인원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16. 변호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4584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9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 회생법원 추가(제7조의2 제2항 제1호 본문)

○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출석요구·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교정기관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이자제한법」에 따른 일반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를 동일하게 인하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공포
2018. 2. 8. 시행

다. 주요내용

○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

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의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을 기존 제1급 내지 제10급까지에서 제14급까지로 확대

○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중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 기존 '1주일 이상' 입원에서 '3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

○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 구조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과 치료감호위원회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시 치료명령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치료명령 면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9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1 항 제정 규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범을 범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15호, 2017. 6. 20.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신고,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통지 신청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0. 법무부령 제902호로 공포
2017. 6. 21. 시행

제 2 항 개정 규칙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 6. 법무부령 제886호로 공포
2017. 1. 7. 시행

다.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 마련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는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2. 7. 법무부령 제887호로 공포·시행

3.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하여 동절기 실내근무 시 복제의 통일성을 높이고,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2016년도에 공고된 새로운 정부문양을 반영

나. 추진경과

2017. 2. 10. 법무부령 제888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카디건 규정 신설

○ 가슴표장 및 소매표장 변경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민원업무 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교정기관 수용자의 정신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정청 등에 인력 5명(4급 5명)을,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유휴병동 운영을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인력 24명(6급 2명, 7급 10명, 8급 12명)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한 특정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인력 37명(6급 7명, 7급 30명)을, 난민인정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력 30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둔 한시조직인 대외연수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한시정원 중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정청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교정기관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도소 등 지방교정청에

두는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18명(4급 13명, 5급 5명) 증원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9급 정원 27명을 6급 2명, 7급 10명, 8급 1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6급 과장 정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2. 28. 법무부령 제8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3. 20. 법무부령 제89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6.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27.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규정 정비

나. 추진경과

2017. 3. 27. 법무부령 제89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대통령령)」 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내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민감정보,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삭제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27.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3. 28. 법무부령 제895호로 공포
2017. 3. 30. 시행

다. 주요내용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조문(제3조의2)을 삭제

8.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가. 추진배경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개선 · 보완 필요

나. 추진경과

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서식의 용도에 따라 서식의 체제 · 내용 및 재질 등을 개선 · 보완

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나. 추진경과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

1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감정평가법인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4. 21. 법무부령 제89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4월 30일에서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4. 28. 법무부령 제90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연장)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 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특정범죄자 관리과와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5. 24. 법무부령 제90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 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성동구치소를 이전·신축하면서 그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의 급식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약물치료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보호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교정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2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크루즈 선(cruise ship)의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의 명칭 변경 및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의 보조기관 직제 순서를 현행화하고, 치료감호소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 및 피치료감호자의 간호·감호 등에 관한 사무를 간호과장의 분장사무로 일원화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도소의 위생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0. 법무부령 제90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자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를 검사로만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직위의 직무등급을 정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1. 법무부령 제9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5.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근거 마련

나. 추진경과

2017. 8. 4. 법무부령 제90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폐기

○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는 기소처분 후 폐기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측면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16. 법무부령 제90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함으로써 제재처분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임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현행 규정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분류심사 제외자로 정하고 있어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으나, 장기 노역수형자의 경우 수형자의 신분임에도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 기회를 부여함

○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함

18.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배우자 1명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귀화 신청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8. 29. 법무부령 제908호로 공포·시행 (단,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제3호는 2018.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종합평가 면제 규정 삭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부부가 함께 귀화를 신청했을 때 1인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향후 제도가 '종합평가'로 바뀐 후에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삭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

-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이수 후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1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소관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사로만 임명하던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과장 직위 10개를 포함한 검사 정원 37명을 일반직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둔 기획검사를 폐지하고, 검사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공무원 정원 중 6명(3·4급 2명, 4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0. 20. 법무부령 제9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 국장급 2개(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사 과장 10개(감찰담당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인권조사과장), 일반 검사 27개(감찰담당관실 2, 기획조정실 2, 법무심의관실 5, 법무과 2, 국제법무과 4, 국가송무과 1, 통일법무과 4, 상사법무과 2, 법조인력과 1, 범죄예방기획과 2, 보호법제과 1, 인권조사과 1)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을 심사1국과 심사2국으로 개편하고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0. 31. 법무부령 제910호로 공포·시행

※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사항은 2017. 12. 15. 시행

다. 주요내용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4급 또는 5급 정원을 3명에서 25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1. 16. 법무부령 제91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17.11. 30. 법무부령 제91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전자비자 발급, 체류 전자민원 처리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북한인권기록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2. 29. 법무부령 제91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과 치료감호위원회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시점의 약물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19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2. 29. 법무부령 제914호로 공포
2018. 1. 1. 시행

제 4 장

국 회 업 무

제 4 장 국회업무

2017년도에는 총 8회(348회~355회)에 걸친 국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헌법가치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해소, 민생경제 안정 지원 등 우리 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중점 추진 법안인 「민법」, 「상법」, 「형법」,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공증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법안 심사 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예·결산 관련 안건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여 제354회 정기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으며,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현안과제,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다.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대처방안 마련 등 대국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

회차별 국회활동 및 당정협의·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48회	'17. 1. 9.~ 20. (22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의(전체회의 1, 제1소위 1, 제2소위 2)
제349회	'17. 2. 1.~ 3. 2. (30일간)	【본회의】 ◦ 총 9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7. 2. 2.) ◦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7. 2. 3.)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 '17. 2. 6.)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49회		◦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정당, ’17. 2. 7.)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7. 2. 9.) ◦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17. 2. 10.) ◦ 통과법안(’17. 2.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9차례 개의(전체회의 6, 제1소위 2, 제2소위 1)
제350회	’17. 3. 3.~ 4. 1.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긴급현안질문(’17. 3. 16.~17.)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의(전체회의 3, 제1소위 1)
제351회	’17. 5. 29.~ 6. 27.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17. 6. 12.)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의(전체회의 1)
제352회	’17. 7. 4.~ 7. 22. (19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7차례 개의(전체회의 7)
제353회	’17. 8. 18.~ 8. 31. (14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53회		◦ 총 5차례 개의(전체회의 4, 예결심사소위 1) ◦ 업무현황 보고('17. 8. 21.) - 주요현안 보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세월호 사고 관련 소송 대응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소년사법체계 개편 - 입법추진계획 보고 ・「인신보호법」, 「집합건물법」, 「가사소송법」, 「민법」, 「중재법」, 「변호사시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공제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정책질의 ('17. 8. 21.~8. 22.) ◦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7. 8. 24.~8. 25.)
제354회 (정기회)	'17. 9. 1.~ 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8차례 개의 ◦ 정기회 개회식('17. 9. 1.)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7. 9. 4.) ◦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7. 9. 5.)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 '17. 9. 6.) ◦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정당, '17. 9. 7.)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7. 9. 11.)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7. 9. 14.)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7. 11. 1.)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7. 12. 6.)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7. 12. 6.) ◦ 통과법안('17. 9.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54회 (정기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대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통과법안('17. 11. 2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54회 (정기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17. 12. 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20차례 개의(전체회의 11, 제1소위 5, 제2소위 3, 예결심사소위 1) ◦ 국정감사('17. 10. 12.~10. 31.) - 법무부('17. 10. 16.), 대검찰청('17. 10. 27.), 종합감사('17. 10. 31.) 실시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7. 11. 9., '17. 11.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17. 11. 6., 11. 7.)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17. 11. 10., 11. 13.)
제355회	'17. 12. 11.~ '17. 12. 29. (19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2차례 개의(전체회의 2)

<표 2>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17. 9.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 당 측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1정조위원장, 박범계 법사위 간사, 한정애 5정조위원장, 유은혜 6정조위원장, 남인순 젠터특위원장, 정춘숙 젠더특위간사 등 ◦ 정부 측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이금로 법무부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이숙진 여가부차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당정 협의	'17. 11. 20.	◦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논의	◦ 당 측 -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범계 적폐청산TF위원장,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정성호 법사위원, 조응천 법사위원, 백혜련 법사위원 ◦ 정부 측 -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금로 법무부차관 등 ◦ 청 측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 5 장

통 계

제 1 절 법 무 업 무 통 계
제 2 절 검 찰 업 무 통 계
제 3 절 범죄예방업무 통 계
제 4 절 인 권 업 무 통 계
제 5 절 교 정 업 무 통 계
제 6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 계

제 5 장 통 계

제 1 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법령자문 <표 1-1>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825	3,530	3,365	4,072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기획재정부	107	107	109	136	122	149	153	171	169	174
교육부	-	-	-	-	-	185	222	217	287	303
미래창조과학부	-	-	-	-	-	107	149	192	78	92
교육과학기술부	166	197	216	280	289	41	-	-	-	99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외교부	4	16	28	27	38	27	26	23	32	33
통일부	-	-	35	11	10	153	16	28	44	41
법무부	525	501	452	398	330	480	263	438	272	570
국방부	61	95	93	104	99	121	118	138	101	142
행정자치부	-	-	-	-	-	-	19	313	418	247
안전행정부	293	247	291	444	410	625	412	-	-	187
문화체육관광부	98	123	78	133	152	192	224	225	210	240
농림축산식품부	123	201	187	338	280	281	238	287	310	279
산업통상자원부	246	110	99	300	111	316	252	324	370	248
보건복지부	303	527	424	422	356	432	346	430	469	609
환경부	93	201	136	149	174	210	164	196	220	250
고용노동부	115	145	127	141	114	194	145	172	200	261
여성가족부	-	-	72	96	84	118	125	121	77	108
국토교통부	363	533	392	472	418	553	571	578	559	687
해양수산부	-	-	-	-	-	120	194	196	179	176
국민안전처	-	-	-	-	-	-	2	150	139	103
방송통신위원회	30	75	71	66	62	38	35	47	70	67
국무조정실	9	13	22	9	18	25	21	10	25	31
공정거래위원회	30	63	56	62	46	51	33	34	74	132
금융위원회	68	96	66	123	99	192	169	94	198	186
국민권익위원회	3	16	12	12	9	14	10	9	11	25
인사혁신처	-	-	-	-	-	-	1	50	57	65
법제처	4	5	10	8	14	15	10	5	8	11
국가보훈처	55	45	69	49	46	64	55	60	66	8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91	103	103	106	131
기타	129	214	320	292	459	302	382	200	340	456

○ 법령해석 <표 1-2>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	2	3	11	14	10	168	185	188	171
기획재정부	-	-	-	1	-	1	2	-	2	-
교육부	-	-	-	1	-	-	7	6	1	2
미래창조과학부	-	-	-	-	-	-	1	1	-	-
외교부	-	-	-	-	-	-	-	-	2	4
통일부	-	-	-	-	-	-	1	-	-	-
법무부	2	-	-	-	-	1	-	8	17	12
국방부	-	-	-	-	-	-	-	1	2	1
행정자치부	-	-	-	-	-	-	-	6	6	2
안전행정부	-	-	-	-	-	-	5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2	1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2	-	-	1
산업통상자원부	1	-	1	-	2	2	2	-	1	1
보건복지부	-	-	-	-	-	1	1	5	2	2
환경부	-	-	-	2	-	-	3	-	-	1
고용노동부	-	-	-	1	1	-	3	-	-	1
여성가족부	-	-	-	-	-	-	4	3	1	-
국토교통부	1	-	-	1	1	-	4	5	7	4
해양수산부	-	-	-	-	-	-	-	-	-	1
국민안전처	-	-	-	-	-	-	-	1	1	4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1	-	-	-	-	-	-
금융위원회	-	-	-	-	-	-	1	1	1	1
국민권익위원회	1	-	-	-	-	-	-	-	3	-
인사혁신처	-	-	-	-	-	-	-	-	-	1
국가보훈처	-	-	-	-	-	-	-	-	4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2	-	-	-
기타	1	2	2	4	10	3	129	148	138	13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표 1-3>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8	73	75	68	61	59	74	55	67	62
제정	소 계	16	15	17	8	7	4	7	3	5	3
	법 률	3	6	5	-	2	1	1	-	3	-
	대통령령	7	6	4	3	3	1	4	2	1	2
	총리·부령	6	3	8	5	2	2	2	1	1	1
개정	소 계	61	56	56	58	51	54	67	52	62	59
	법 률	15	15	8	11	10	13	22	7	18	11
	대통령령	22	19	15	21	24	14	23	19	20	20
	총리·부령	24	22	33	26	17	27	22	26	24	28
폐지	법 령	11	2	2	2	3	1	-	-	-	-

○ 법무자료 발간 <표 1-4>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간횟수	4	4	9	4	10	8	22	18	17	18

2. 국제법무활동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표 1-5>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 수	86	79	75	43	38	40	56	28	14	9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표 1-6>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 수	5	3	2	7	11	5	7	7	12	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표 1-7>

(단위 : 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 수	34	32	28	30	26	39	48	27	29	11
인 원	40	46	35	44	34	73	82	55	42	20

3. 변호사 · 공증

○ 변호사 인원 <표 1-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등록인원	10,187	11,016	11,802	12,607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개 업	8,895	9,612	10,263	10,976	12,532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비 개 업	1,292	1,404	1,539	1,631	2,002	2,305	2,754	3,107	3,469	3,833

○ 공증인 인원 <표 1-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명공증인		33	33	38	42	48	59	66	73	77	75
법 무 법 인	사무소	295	309	307	291	280	268	261	245	241	239
	구성원	2,089	2,209	1,420	1,322	1,211	1,183	1,170	1,029	1,000	981
합 동 법 률 사무소	사무소	64	62	52	46	36	31	29	27	25	23
	구성원	273	260	215	188	127	121	115	109	93	86
대 행 청		13	13	14	14	13	12	12	12	12	13

○ 공증사무 처리 건수 <표 1-10>

(단위 : 건)

연도 \ 구분	사건처리건수	가 액
2008	4,258,090	59,563,370,695,375
2009	3,698,260	51,431,095,953,031
2010	3,872,079	54,138,827,021,658
2011	4,802,467	45,122,981,413,573
2012	4,027,514	47,911,345,357,891
2013	4,030,468	51,669,105,779,697
2014	3,825,991	38,138,696,634,463
2015	3,758,294	40,822,996,285,880
2016	3,745,816	384,323,860,343,243
2017	3,374,216	539,264,973,132,869

4. 국가소송

○ 전체 국가소송 사건 <표 1-11>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11,659	10,624	9,929	10,086	10,887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구 수	6,749	6,035	5,548	5,786	6,018	7,171	8,025	9,350	5,841	5,192
	신 수	4,910	4,589	4,381	4,300	4,869	4,720	5,387	5,524	4,549	4,790
처리	계	5,474	4,994	4,138	3,637	3,120	3,373	3,560	4,485	5,293	4,530
	승 소	1,897	1,813	1,534	1,440	1,360	1,477	1,623	1,882	1,822	1,746
	패 소	1,026	910	634	565	514	522	586	606	568	546
	기 타	2,551	2,271	1,970	1,632	1,246	1,374	1,351	1,997	2,903	2,238
미 제		6,185	5,630	5,791	6,449	7,767	8,518	9,852	10,389	5,097	5,45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2>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08	11,659 (4,910)	5,474	1,897	1,026	2,551	6,185
2009	10,624 (4,589)	4,994	1,813	910	2,271	5,630
2010	9,929 (4,381)	4,138	1,534	634	1,970	5,791
2011	10,086 (4,300)	3,637	1,440	565	1,632	6,449
2012	10,887 (4,869)	3,120	1,360	514	1,246	7,767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8,518
2014	13,412 (5,387)	3,560	1,623	586	1,351	9,852
2015	14,874 (5,524)	4,485	1,882	606	1,997	10,389
2016	10,390 (4,549)	5,293	1,822	568	2,903	5,097
2017	9,982 (4,790)	4,530	1,746	546	2,238	5,452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표 1-13>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1,659	10,624	9,929	10,074	10,875	11,879	13,398	14,860	10,377	9,966
국가원고	계	1,760	1,391	1,335	1,413	1,469	1,663	2,936	4,213	2,328	2,212
	부 동 산	335	249	271	316	346	351	265	314	343	419
	손해배상	59	32	15	24	26	26	30	26	17	15
	기 타	1,366	1,110	1,049	1,073	1,097	1,286	2,641	3,873	1,968	1,778
국가피고	계	9,899	9,233	8,594	8,661	9,406	10,216	10,462	10,647	8,049	7,754
	부 동 산	4,980	4,391	3,644	3,179	2,986	2,942	2,951	2,942	2,649	2,638
	손해배상	2,114	2,136	2,127	2,342	2,980	3,668	3,786	3,536	2,017	1,793
	기 타	2,805	2,706	2,823	3,140	3,440	3,606	3,725	4,169	3,383	3,323

○ 민사신청 사건 <표 1-14>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710	1,866	2,692	3,207	3,753	4,231	7,113	5,731	6,220	6,983
	구 수	44	414	1,048	1,552	2,206	2,111	4,328	3,373	3,584	4,288
	신 수	666	1,452	1,644	1,655	1,547	2,120	2,785	2,358	2,636	2,695
처리	계	362	820	1,105	998	1,398	1,543	3,718	1,785	2,020	1,977
	종 결	324	631	870	805	1,220	1,318	1,234	1,394	1,512	1,336
	본안이송	3	92	118	87	77	95	2,325	222	255	355
	취 하	29	69	96	62	66	87	86	116	137	149
	각 하	-	3	8	10	17	14	30	15	17	29
	기 타	6	25	13	34	18	29	43	38	99	108
미 제		362	1,046	1,587	2,209	2,355	2,688	3,395	3,946	4,200	5,006

5. 행정소송

○ 전체 행정소송 사건 <표 1-15>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30,890	32,088	33,424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구 수	16,821	16,608	16,920	19,400	21,346	20,289	22,317	22,775	19,239	18,246
	신 수	14,069	15,480	16,504	15,447	15,508	16,155	15,865	16,107	17,560	18,723
처리	계	14,080	15,055	13,875	13,118	16,071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승 소	6,859	7,640	6,692	6,635	7,867	6,371	7,132	6,290	9,392	10,250
	패 소	1,644	1,514	1,607	1,601	2,047	1,865	1,702	1,740	2,056	1,814
	취하등	5,577	5,901	5,576	4,882	6,157	4,855	5,758	5,255	7,216	6,736
미 제		16,810	17,033	19,549	21,729	20,783	23,353	23,590	25,597	18,135	18,169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6>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08	30,890 (14,069)	14,080	6,859	1,644	5,577	16,810
2009	32,088 (15,480)	15,055	7,640	1,514	5,901	17,033
2010	33,424 (16,504)	13,875	6,692	1,607	5,576	19,549
2011	34,847 (15,447)	13,118	6,635	1,601	4,882	21,729
2012	36,854 (15,508)	16,071	7,867	2,047	6,157	20,783
2013	36,444(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2014	38,182 (15,865)	14,592	7,132	1,702	5,758	23,590
2015	38,882 (16,107)	13,285	6,290	1,740	5,255	25,597
2016	36,799 (17,560)	18,664	9,392	2,056	7,216	18,135
2017	36,969 (18,723)	18,800	10,250	1,814	6,736	18,169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표 1-17>

(단위 : 건)

유형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0,890	32,088	33,424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조 세 관 계	5,266	4,490	4,206	4,698	4,810	5,644	6,849	7,379	6,089	5,246
공 무 원 신 분	3,731	2,264	1,742	1,611	1,623	1,681	1,582	1,645	1,515	1,611
국 토 도 시 계 획	2,641	3,208	3,916	3,625	3,473	3,129	3,141	2,846	2,642	2,477
영업허가취소·정지	2,212	3,132	3,271	2,828	3,190	3,534	3,934	3,389	2,283	2,414
자격·면허·등록·인가	2,470	2,876	2,919	3,116	2,754	2,678	2,810	2,231	1,889	2,062
기 타	14,570	16,118	17,370	18,969	21,004	19,778	19,866	21,392	22,381	23,159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표 1-18>

(단위 : 건)

구분	연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1,020	1,075	1,590	2,983	3,011	4,517	3,976	4,149	4,738	4,558
	구 수	193	267	229	443	938	885	1,130	1,057	1,059	1,140
	신 수	827	808	1,361	2,540	2,073	3,632	2,846	3,092	3,679	3,418
처리	계	752	927	1,162	2,058	2,127	3,299	2,915	3,047	3,598	2,921
	인 용	456	635	637	736	1,063	1,767	1,177	1,057	1,154	801
	기 각	249	236	426	1,222	944	1,424	1,627	1,896	2,249	2,008
	기 타	47	56	99	100	120	108	111	94	195	112
미 제		268	148	428	925	884	1,218	1,061	1,102	1,140	1,637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표 1-19>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08	1,020 (827)	752	456	249	47	268
2009	1,075 (808)	927	635	236	56	148
2010	1,590 (1,361)	1,162	637	426	99	428
2011	2,983 (2,540)	2,058	736	1,222	100	925
2012	3,011 (2,073)	2,127	1,063	944	120	884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표 1-20>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 수	계	198	178	139	177	190	167	168	174	196	175
	구 수	59	70	40	57	61	53	56	58	50	70
	신 수	139	108	99	120	129	114	112	116	146	105
처 리	계	127	144	78	114	137	111	109	124	126	109
	인 용	92	125	67	93	116	91	84	110	112	101
	기 각	28	11	6	15	16	19	20	12	14	7
	기 타	7	8	5	6	5	1	5	2	0	1
미 제		71	34	61	63	53	56	59	50	70	66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21>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08	198 (139)	127	92	28	7	71
2009	178 (108)	144	125	11	8	34
2010	139 (99)	78	67	6	5	61
2011	177 (120)	114	93	15	6	63
2012	190 (129)	137	116	16	5	53
2013	167 (114)	111	91	19	1	56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0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 접수란 중 ( )는 신수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표 1-22〉

(단위 : 건/천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 상 결 정	판 결	소송비용확정액
2008	274 / 9,037,921	104 / 161,212	170 / 8,876,709	- / -
2009	449 / 63,374,994	280 / 1,438,035	169 / 61,936,959	- / -
2010	316 / 18,989,019	139 / 283,734	177 / 18,705,285	- / -
2011	489 / 80,764,951	140 / 433,565	185 / 79,381,674	164 / 949,712
2012	659 / 133,868,655	120 / 398,033	198 / 127,482,784	341 / 5,987,838
2013	409 / 57,388,717	119 / 272,736	290 / 57,115,981	- / -
2014	745 / 203,013,306	85 / 180,384	385 / 198,871,841	275 / 3,961,081
2015	1,005 / 300,722,110	122 / 438,161	461 / 293,614,502	422 / 6,669,447
2016	960 / 236,222,861	91 / 274,776	371 / 228,695,409	498 / 7,252,676
2017	861 / 354,386,451	121 / 598,846	369 / 349,083,912	371 / 4,703,693

* 2011년 164건(9억5,000만 원), 2012년 341건(59억8,800만 원), 2014년 275건(39억6,100만 원), 2015년 422건(66억7,000만 원), 2016년 498건(72억5,200만 원), 2017년 371건(47억 원)의 소송비용확정액이 배상금 항목에서 지급됨

8. 헌법재판 현황 <표 1-23>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09	계	2,155	1,545	61	28	1	11	21	329	117	-	212	1,155	610
	위헌법률	72	23	17	11	-	6	-	6	6	-	-	-	49
	헌법소원	2,057	1,511	39	17	1	5	16	323	111	-	212	1,149	546
	권한쟁의	26	11	5	-	-	-	5	-	-	-	-	6	15
2010	계	2,330	1,670	101	69	-	7	25	267	135	-	132	1,302	660
	위헌법률	148	113	67	62	-	5	-	14	14	-	-	32	35
	헌법소원	2,161	1,545	30	7	-	2	21	251	121	-	130	1,264	616
	권한쟁의	21	12	4	-	-	-	4	2	-	-	2	6	9
2011	계	2,226	1,428	68	29	7	5	27	283	168	-	115	1,077	798
	위헌법률	77	46	24	22	-	2	-	15	15	-	-	7	31
	헌법소원	2,137	1,375	43	7	7	3	26	265	153	-	112	1,067	762
	권한쟁의	12	7	1	-	-	-	1	3	-	-	3	3	5
2012	계	2,509	1,661	74	15	7	5	47	337	140	-	197	1,250	848
	위헌법률	53	21	9	9	-	-	-	7	7	-	-	5	32
	헌법소원	2,447	1,637	65	6	7	5	47	328	133	-	195	1,244	810
	권한쟁의	9	3	-	-	-	-	-	2	-	-	2	1	6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	2	43	357	133	-	224	1,138	700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 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 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9. 제59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총괄 현황 <표 1-24>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제1차시험 응시출원자	제1차시험 면제자	제1·2차시험 면제자
2008	사법시험	23,656	21,082	2,563	11
2009	사법시험	23,430	21,156	2,264	10
2010	사법시험	23,244	20,907	2,315	22
2011	사법시험	19,536	17,498	2,030	8
2012	사법시험	14,035	12,766	1,262	7
2013	사법시험	10,089	9,232	854	3
2014	사법시험	7,428	6,848	578	2
2015	사법시험	6,182	5,768	413	1
2016	사법시험	5,763	5,453	310	0
2017	사법시험	196	-	196	0

○ 2017년 성별 출원 현황 <표 1-25>

(단위 : 명)

성별 /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사 법 시 험 (비율)	196	138 (70.41%)	58 (29.59%)

○ 2017년 연령별 출원 현황 <표 1-26>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25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35세 미만	3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사법시험 (비율)	0 (0.00%)	9 (4.59%)	29 (14.80%)	71 (36.22%)	48 (24.49%)	24 (12.24%)	9 (4.59%)	6 (3.06%)

○ 2017년 학력별 출원 현황 <표 1-27>

(단위 : 명)

학 력 / 시험구분	총 계	대학원 재학 이상	대학졸업	대학재학·중퇴	전문대 졸업·재학 등	고졸 이하
사법시험 (비율)	196	12 (6.12%)	146 (74.49%)	38 (19.39%)	0 (0.00%)	0 (0.00%)

○ 2017년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표 1-28>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사 법 시 험 (비 율)	196	148 (75.51%)	48 (24.49%)

나. 합격자 현황

○ 연도별 합격자 및 합격점 현황 <표 1-29>

(단위 : 명)

연도	시험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2008	사법시험	17,829	2,511	252.02	4,877	1,005	353.74	1,015	1,005
2009	사법시험	17,972	2,584	262.52	4,399	1,009	358.70	1,019	997
2010	사법시험	17,028	1,963	262.00	4,104	800	340.22	822	814
2011	사법시험	14,449	1,447	273.89	3,313	706	385.80	714	707
2012	사법시험	10,306	1,001	273.36	2,164	502	369.84	509	506
2013	사법시험	6,862	665	289.62	1,456	305	379.17	308	306
2014	사법시험	4,696	471	266.69	1,002	203	381.01	205	204
2015	사법시험	3,930	347	282.91	712	152	386.04	153	153
2016	사법시험	3,794	222	279.44	508	109	379.40	109	109
2017	사법시험	-	-	-	186	55	413.21	55	55

○ 2017년 성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0>

(단위 : 명)

성 별 /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사 법 시 험 (비율)	55	30 (54.55%)	25 (45.45%)

○ 2017년 연령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1>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0세 이상~25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35세 미만	3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사법시험 (비율)	4 (7.27%)	5 (9.09%)	26 (47.27%)	14 (25.45%)	5 (9.09%)	1 (1.82%)	0 (0.00%)

○ 2017년 학력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2>

(단위 : 명)

학 력 / 시험구분	총 계	대학원 재학 이상	대학졸업	대학 재학·중퇴	전문대 졸업·재학 등	고졸 이하
사법시험 (비율)	55	1 (1.82%)	44 (80.00%)	10 (18.18%)	0	0

○ 2017년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3>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사 법 시 험 (비율)	55	41 (74.55%)	14 (25.45%)

○ 2017년 출신대학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4>

(단위 : 명)

출 신 교	합격자수	출 신 교	합격자수
서 울 대 학 교	13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
고 려 대 학 교	7	건 국 대 학 교	1
한 양 대 학 교	7	경 희 대 학 교	1
성 균 관 대 학 교	5	국 민 대 학 교	1
이 화 여 자 대 학 교	5	단 국 대 학 교	1
연 세 대 학 교	4	영 남 대 학 교	1
서 강 대 학 교	2	중 앙 대 학 교	1
경 북 대 학 교	1	한 동 대 학 교	1
부 산 대 학 교	1	기 타 4 년 제 대 학	1
전 남 대 학 교	1	총 계	55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10. 제6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표 1-35>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3	변호사시험	2,095	1,158	937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 연령별 출원 현황 <표 1-36>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35세 미만	3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1 (0.03%)	1,063 (32.15%)	1,390 (42.04%)	587 (17.76%)	202 (6.11%)	48 (1.45%)	15 (0.45%)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표 1-37>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 율)	3,306	1,792 (54.20%)	1,514 (45.80%)

나. 합격자 현황

○ 연도별 합격자 현황 <표 1-38>

(단위 : 명, %)

연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기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기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2013	변호사시험	2,046	1,538	75.17	1,130	848	75.04	916	690	75.33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9>

(단위 : 명)

시험구분 \ 법학전공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율)	1,593(기준)	865 (54.30%)	728 (45.70%)
	1,600(기준)	869 (54.31%)	731 (45.69%)

제 2 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표 2-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2,797,436	2,891,156	2,464,720	2,333,951	2,401,107	2,474,033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구수		64,251	61,599	71,007	65,803	74,547	84,196	83,944	88,432	83,473	90,535
	신수		2,733,185	2,829,557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처리	계		2,736,064	2,820,395	2,398,984	2,259,500	2,316,969	2,389,660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기소	소계	1,316,987	1,196,776	1,014,849	917,335	902,552	910,158	870,320	852,314	894,616	809,882
		구공판	166,641	172,353	160,407	182,436	196,484	182,322	191,080	187,402	209,734	202,649
		구약식	1,150,346	1,024,423	854,442	734,899	706,068	727,836	679,240	664,912	684,882	607,233
	불기소	소계	1,303,386	1,478,448	1,253,203	1,203,587	1,257,938	1,297,033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무혐의	275,399	316,341	288,355	280,482	304,120	315,513	334,419	361,070	371,611	333,716
		기소유예	370,031	471,680	374,420	359,305	357,854	338,628	338,350	378,723	376,137	338,971
		기소중지	161,525	159,481	129,813	123,232	147,858	185,052	208,340	218,047	213,833	209,989
		참고인중지	23,071	22,698	18,578	17,740	17,710	17,582	15,694	12,542	10,008	8,411
		각하	70,044	86,126	71,665	67,423	83,974	87,987	95,974	112,931	104,710	116,518
		기타	403,316	422,122	370,372	355,405	346,422	352,271	352,002	376,981	382,517	360,137
	이송	소년보호	29,653	33,951	32,274	33,233	37,253	29,992	25,226	25,027	25,192	24,948
		가정보호	4,837	4,585	3,222	3,039	3,753	6,414	9,449	20,036	22,264	18,829
		타관	80,795	106,032	95,189	102,087	115,214	145,830	124,378	137,197	179,522	182,140
		성매매보호	406	603	247	219	259	233	218	387	1,338	956
		아동보호	-	-	-	-	-	-	-	-	-	2,564
미제			61,372	70,761	65,736	74,451	84,138	84,373	89,154	85,501	91,036	99,343

나. 청별 사건 <표 2-2>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733,185	2,829,557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서울중앙	219,631	243,434	199,361	190,118	184,574	183,105	175,052	175,798	181,844	171,076
서울동부	90,153	103,420	82,924	75,844	77,063	78,169	76,497	76,287	73,148	71,256
서울남부	120,316	126,277	102,752	103,816	103,313	100,572	99,170	103,045	100,839	97,922
서울북부	102,151	107,823	89,070	87,418	80,196	86,491	90,907	91,109	94,269	88,617
서울서부	79,185	86,776	67,893	65,026	64,295	69,321	68,703	67,255	70,706	65,081
의정부	98,746	103,047	83,470	77,549	82,393	87,021	87,175	93,587	98,927	92,808
고양	67,576	65,131	51,317	49,437	52,782	56,961	59,494	62,921	67,051	63,366
인천	157,700	165,670	137,107	123,444	133,871	139,475	141,832	143,257	155,534	144,821
부천	63,999	61,919	50,931	49,460	52,915	53,972	55,792	60,109	64,154	58,583
수원	180,536	148,537	107,479	106,624	114,135	119,807	123,235	136,617	152,098	142,413
성남	74,718	73,512	56,297	53,956	56,576	60,269	60,984	64,293	74,402	65,256
여주	21,351	22,747	19,553	17,497	17,600	19,137	19,216	20,627	22,661	22,466
평택	30,651	32,577	29,541	30,922	30,888	31,973	34,926	38,080	43,750	41,843
안산	85,432	82,611	66,551	68,829	67,886	70,573	69,766	82,751	94,682	81,275
안양	-	41,122	37,494	38,528	40,836	41,395	40,557	43,780	48,460	42,634
춘천	19,035	21,721	19,643	19,264	19,895	22,126	20,227	20,663	21,007	19,579
강릉	22,402	22,740	19,620	17,384	17,794	17,736	18,166	17,941	18,893	18,226
원주	19,891	19,860	18,781	18,604	20,927	19,976	18,948	19,907	21,182	20,387
속초	8,113	7,908	7,312	6,778	7,308	7,518	7,157	7,472	7,362	7,423
영월	10,273	9,367	8,017	8,289	9,010	8,299	7,790	8,403	8,745	7,315
대전	75,574	77,299	73,220	62,516	64,623	67,572	68,139	71,061	77,084	77,375
홍성	17,797	17,200	15,894	13,074	12,971	13,773	13,732	15,991	16,407	14,722
공주	7,084	6,410	6,001	5,222	5,456	5,772	5,878	5,788	5,806	5,473
논산	10,003	9,476	8,383	7,836	7,971	8,728	8,193	8,707	8,193	8,146
서산	15,548	17,926	17,264	14,443	16,433	17,688	17,597	17,529	18,782	17,920
천안	38,069	38,269	33,532	34,386	36,999	38,163	43,292	46,263	48,295	43,913
청주	50,620	49,035	43,014	36,870	39,015	40,919	41,656	44,964	51,021	46,298
충주	14,933	16,626	15,256	13,100	14,128	13,489	13,769	15,577	17,104	14,260
제천	8,532	8,629	7,796	7,466	6,886	7,691	7,158	7,086	6,787	6,390

검찰청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동	4,487	4,032	3,595	3,220	3,414	3,316	3,302	3,623	3,259	3,020
대구	111,830	117,099	100,286	100,006	101,075	94,367	95,746	98,787	98,506	89,621
안동	15,598	14,794	13,298	12,044	13,404	12,745	12,985	13,244	12,416	11,806
경주	14,697	14,934	12,700	12,201	13,256	14,377	12,774	13,362	12,974	12,393
포항	28,130	27,872	29,027	22,593	23,231	25,424	22,382	23,637	22,937	22,055
김천	25,608	25,315	26,007	24,177	25,732	27,104	25,438	26,971	27,520	25,274
상주	8,852	8,638	7,826	7,686	7,634	7,724	7,276	7,496	7,277	7,139
의성	4,209	5,036	4,756	3,897	3,796	4,056	3,687	3,846	4,415	3,944
영덕	4,666	4,651	4,071	3,307	3,726	3,913	3,959	4,239	4,244	4,376
대구서부	60,982	58,867	51,043	47,390	47,703	47,116	48,041	50,597	47,113	43,776
부산	165,563	170,938	133,659	122,481	133,132	135,847	138,579	138,971	134,094	90,312
부산동부	55,840	53,642	41,329	40,509	43,464	44,037	42,094	46,398	44,792	42,596
부산서부	-	-	-	-	-	-	-	-	-	37,240
울산	68,524	71,193	63,233	58,498	60,683	67,016	64,205	69,837	69,618	63,190
창원	95,867	92,414	80,675	71,063	48,574	54,548	49,294	52,880	54,616	51,915
진주	28,112	30,482	26,566	24,216	22,829	22,730	22,036	23,244	23,191	21,133
통영	23,408	25,522	23,874	21,727	22,008	22,604	22,667	24,614	26,793	24,519
밀양	7,001	7,241	6,608	6,583	6,782	6,341	6,753	7,009	6,918	6,836
거창	5,859	6,637	5,322	4,915	5,091	5,046	4,975	5,422	5,610	4,901
마산	-	-	-	9,394	19,111	19,963	20,829	22,187	21,268	18,875
광주	92,814	95,628	91,213	90,173	94,790	97,246	94,977	93,188	89,002	83,088
목포	27,242	28,537	26,106	23,022	23,895	25,656	24,568	25,137	25,152	22,224
장흥	3,728	3,680	3,516	3,529	3,187	3,233	3,120	3,264	3,502	3,264
순천	43,869	46,214	42,613	39,803	40,558	39,768	38,272	42,618	42,724	37,967
해남	7,606	8,017	7,014	6,884	6,879	7,263	6,619	7,106	7,081	6,992
전주	40,409	42,197	38,626	35,704	40,733	37,598	36,633	38,139	39,814	36,768
군산	29,456	32,348	30,284	28,424	30,632	27,495	26,272	26,145	26,631	26,545
정읍	9,706	9,658	9,223	8,868	8,632	8,624	8,389	8,902	8,865	9,267
남원	5,855	5,391	5,221	4,832	5,077	4,643	4,566	5,053	4,737	4,893
제주	33,248	31,511	30,549	27,302	28,793	32,346	34,134	39,537	45,049	43,096

다. 고소 · 고발 사건 <표 2-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808,718	843,993	711,513	664,971	724,116	758,785	743,223	768,579	744,960	729,229
	구 수		40,942	36,754	43,031	41,621	47,077	58,920	58,821	62,890	59,659	60,869
	신 수		767,776	807,239	668,482	623,350	677,039	699,865	684,402	705,689	685,301	668,360
처리	계		772,169	801,239	670,158	618,034	665,687	699,795	680,782	708,905	683,655	661,220
	기소	소 계	209,894	198,025	169,257	140,388	149,723	158,071	152,955	147,111	144,331	135,601
		구 공 판	40,107	42,613	39,089	36,428	38,088	43,723	46,110	43,221	45,478	43,122
		구 약 식	169,787	155,412	130,168	103,960	111,635	114,348	106,845	103,890	98,853	92,479
	불기소	소 계	514,758	544,881	445,577	418,441	449,344	461,758	465,207	497,561	464,421	452,450
		무 혐 의	178,429	191,184	170,879	161,287	167,592	167,470	169,636	175,930	174,599	166,589
		기소유예	53,918	72,981	50,770	40,195	44,070	41,160	40,706	46,201	36,880	33,939
		기소중지	77,602	74,009	62,639	64,215	73,812	84,669	84,952	87,672	84,139	80,201
		기 타	204,809	206,707	161,289	152,744	163,870	168,459	169,913	187,758	168,803	171,721
	이송	소년보호	1,808	1,788	1,991	2,232	2,199	1,573	1,441	1,241	1,614	2,040
		가정보호	624	644	574	503	549	626	867	973	909	895
		타 관	45,082	55,901	52,758	56,470	63,872	77,767	60,309	62,018	72,378	69,855
		성매매보호	3	-	1	-	-	-	3	1	2	3
		아동보호	-	-	-	-	-	-	-	-	-	376
미 제			36,549	42,754	41,355	46,937	58,429	58,990	62,441	59,674	61,305	68,009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병역사범 <표 2-4>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31.633	30,496	24,989	23,426	26,034	33,626	25,824	23,301	19,397	11,352
	구 수		249	152	210	58	81	155	160	99	76	80
	신 수		31,384	30,344	24,779	23,368	25,953	33,471	25,664	23,202	19,321	11,272
처리	계		31,481	30,292	24,882	23,345	25,888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기소	소 계	18,512	17,855	14,441	13,781	15,764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구 공 판	1,652	1,741	1,633	1,675	1,627	1,834	1,899	1,786	1,623	1,293
		구 약 식	16,860	16,114	12,808	12,106	14,137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불기소	소 계	11,769	11,297	9,588	8,789	9,129	11,973	8,682	6,443	5,091	3,348
		무 혐 의	454	408	692	383	367	405	393	432	407	242
		기소유예	923	1,115	1,204	1,096	1,309	1,493	1,187	1,207	1,026	969
		기소중지	7,965	7,454	6,277	6,596	6,968	6,823	5,870	3,903	2,591	1,240
		기 타	2,427	2,320	1,415	714	485	3,252	1,232	901	1,067	897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 관	1,200	1,140	853	775	995	1,485	443	427	375	244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 제			152	204	107	81	146	165	95	72	79	80

○ 경제사범 <표 2-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188,229	191,296	117,265	116,642	129,450	124,139	125,015	134,123	118,507	115,754
	구수		7,011	7,008	8,068	6,117	9,117	11,246	10,474	10,138	9,562	10,451
	신수		181,218	184,288	109,197	110,525	120,333	112,893	114,541	123,985	108,945	105,303
처리	계		181,216	183,779	110,300	108,529	119,048	114,372	114,950	125,059	108,785	104,756
	기소	소계	38,626	36,536	31,558	28,269	27,697	26,896	26,097	26,878	27,418	27,639
		구공판	11,026	10,844	9,581	9,090	8,277	8,479	9,146	9,208	9,114	8,897
		구약식	27,600	25,692	21,977	19,179	19,420	18,417	16,951	17,670	18,304	18,742
	불기소	소계	133,326	135,661	68,121	68,975	77,534	72,154	76,958	86,499	66,829	60,151
		무혐의	17,314	20,470	17,879	15,370	16,788	17,072	16,885	17,335	17,295	17,419
		기소유예	23,872	33,553	13,292	13,808	16,240	15,578	17,135	19,042	12,547	11,420
		기소중지	8,663	9,110	6,433	6,531	7,787	7,834	8,701	8,201	6,835	6,570
		기타	83,477	72,528	30,517	33,266	36,719	31,670	34,237	41,921	30,152	24,742
	이송	소년보호	455	492	558	808	759	833	680	700	664	534
		가정보호	-	-	-	-		-	-	-	-	1
		타관	8,809	11,090	10,063	10,477	13,058	14,489	11,215	10,982	13,874	16,431
		성매매	-	-	-	-		-	-	-	-	-
미제			7,013	7,517	6,965	8,113	10,402	9,767	10,065	9,064	9,722	10,998

○ 폭력사범 <표 2-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466,857	466,893	412,888	408,396	427,029	407,284	404,955	431,618	450,413	437,983
	구수		8,775	7,805	8,622	8,408	8,811	8,963	6,775	6,863	6,754	7,481
	신수		458,082	459,088	404,266	399,988	418,218	398,321	398,180	424,755	443,659	430,502
처리	계		459,244	458,671	404,573	400,235	418,265	399,869	397,142	424,815	443,141	429,923
	기소	소계	150,904	144,890	126,628	123,839	125,433	114,961	105,712	98,166	98,581	93,055
		구공판	23,279	23,360	20,677	19,726	22,496	25,799	30,006	28,631	32,339	30,206
		구약식	127,625	121,530	105,951	104,113	102,937	89,162	75,706	69,535	66,242	62,849
	불기소	소계	289,118	293,347	260,498	257,627	269,504	263,823	269,267	293,812	308,410	302,149
		무혐의	34,386	35,686	33,835	32,836	35,343	34,033	33,672	33,511	32,274	31,211
		기소유예	114,669	111,749	91,686	83,729	83,948	70,644	61,757	58,882	51,859	47,175
		기소중지	5,652	5,897	5,285	5,528	10,401	20,157	33,711	45,534	53,443	57,892
		기타	134,411	140,015	129,692	135,534	139,812	138,989	140,127	155,885	170,834	165,871
	이송	소년보호	10,737	10,974	9,569	10,150	12,473	7,593	6,476	6,072	6,329	7,291
		가정보호	4,617	4,386	3,067	2,897	3,605	6,170	9,069	19,127	20,989	17,701
		타관	3,868	5,074	4,811	5,722	7,250	7,322	6,618	7,638	8,832	9,471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	-	-	-	-	256
미제			7,613	8,222	8,315	8,161	8,764	7,415	7,813	6,802	7,272	8,060

○ 흉악사범 <표 2-7>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17,529	19,822	16,071	15,079	19,798	18,855	18,125	17,655	16,041	17,713
	구수		591	747	823	653	1,010	993	926	1,196	838	1,299
	신수		16,938	19,075	15,248	14,426	18,788	17,862	17,199	16,459	15,203	16,414
처리	계		16,675	18,899	15,336	14,433	18,789	17,391	16,826	16,763	14,726	16,449
	기소	소계	6,631	6,905	5,337	4,745	7,178	6,681	6,450	5,912	5,260	4,671
		구공판	6,559	6,860	5,319	4,739	6,926	6,403	5,796	5,158	4,810	4,382
		구약식	72	45	18	6	252	278	654	754	450	289
	불기소	소계	8,303	9,391	8,241	8,041	9,199	8,714	8,466	9,099	7,694	10,335
		무혐의	2,569	3,664	3,044	2,359	3,347	3,482	3,775	3,869	3,866	3,964
		기소유예	853	1,069	763	720	1,006	936	1,096	1,196	978	785
		기소중지	619	760	509	532	819	962	1,058	1,042	1,234	1,246
		기타	4,262	3,898	3,925	4,430	4,027	3,334	2,537	2,992	1,616	4,340
	이송	소년보호	1,032	1,152	683	574	1,145	673	593	379	384	347
		가정보호	12	14	8	5	22	24	25	49	29	26
		타관	697	1,437	1,067	1,068	1,245	1,299	1,292	1,324	1,359	1,066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	-	-	-	-	4
미제			854	923	735	646	1,009	1,464	1,299	892	1,315	1,264

○ 교통사범 <표 2-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988,763	848,990	745,161	629,998	650,966	654,364	644,397	663,726	688,128	581,769
	구수		2,360	2,210	2,606	1,281	2,689	1,960	1,870	2,528	2,456	2,941
	신수		986,403	846,780	742,555	628,717	648,277	652,404	642,527	661,198	685,672	578,828
처리	계		986,554	846,383	742,704	627,311	648,985	652,063	641,732	661,340	685,327	578,550
	기소	소계	723,371	553,305	477,521	407,817	394,315	388,961	361,137	351,980	358,119	310,143
		구공판	37,054	36,260	42,565	69,436	82,244	51,890	41,637	36,105	42,152	42,485
		구약식	686,317	517,045	434,956	338,381	312,071	337,071	319,500	315,875	315,967	267,658
	불기소	소계	251,711	281,683	254,676	208,819	243,731	253,597	270,987	299,463	314,563	255,695
		무혐의	31,694	39,045	31,683	19,386	44,250	53,248	59,968	67,463	76,786	50,160
		기소유예	60,598	74,004	64,894	42,239	54,666	55,688	58,600	70,892	75,315	51,319
		기소중지	20,085	15,718	11,126	8,511	9,992	11,857	14,304	14,575	15,120	14,454
		기타	139,334	152,916	146,973	138,683	134,823	132,804	138,115	146,533	147,342	139,762
	이송	소년보호	8,339	8,046	7,622	7,130	7,258	5,813	5,042	4,731	4,901	5,073
		가정보호	1	2	-	1	3	-	-	1	1	1
		타관	3,132	3,347	2,885	3,544	3,678	3,692	4,566	5,165	7,743	7,638
		성매매	-	-	-	-	-	-	-	-	-	-
미제			2,209	2,607	2,457	2,687	1,981	2,301	2,665	2,386	2,801	3,219

마. 주요신분별 사건

○ 소년사범 <표 2-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134,246	135,081	106,096	105,225	120,191	102,454	91,100	91,723	88,226	85,178
	구수		1,174	926	1,063	1,117	1,069	1,563	1,018	921	823	1,062
	신수		133,072	134,155	105,033	104,108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처리	계		133,320	134,053	104,998	104,201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기소	소계	11,232	7,936	6,855	7,262	8,475	8,086	6,764	6,618	6,238	5,648
		구공판	4,449	4,295	3,572	4,150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구약식	6,783	3,641	3,283	3,112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불기소	소계	89,275	88,343	61,948	59,317	66,766	55,541	50,897	51,086	47,718	46,166
		무혐의	4,288	4,522	5,060	4,865	6,174	5,702	5,260	6,201	5,964	5,532
		기소유예	60,994	57,951	45,313	41,720	44,349	35,132	31,036	30,371	26,558	25,416
		기소중지	2,021	1,564	1,562	1,816	2,537	5,349	6,490	5,322	6,707	6,566
		기타	21,972	24,306	10,013	10,916	13,706	9,358	8,111	9,192	8,489	8,652
	이송	소년보호	29,561	33,871	32,227	33,186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가정보호	20	32	10	14	19	36	49	156	180	183
		타관	3,189	3,855	3,948	4,412	6,257	7,820	7,253	8,023	7,972	7,067
		성매매	43	16	10	10	4	1	4	8	10	27
미제			926	1,028	1,098	1,024	1,477	1,033	942	833	949	1,152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 (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학생사범 <표 2-1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77,288	82,680	39,811	1,142	2,194	5,536	6,047	4,947	2,972	2,264
	구수		673	647	652	35	26	137	74	76	35	17
	신수		76,615	82,033	39,159	1,107	2,168	5,399	5,973	4,871	2,937	2,247
처리	계		76,642	82,060	39,776	1,118	2,077	5,460	5,970	4,912	2,957	2,242
	기소	소계	8,205	7,305	5,012	69	152	215	363	274	244	148
		구공판	1,362	1,418	825	13	69	147	177	95	85	86
		구약식	6,843	5,887	4,187	56	83	68	186	179	159	62
	불기소	소계	54,754	58,853	26,382	736	1,307	3,435	3,645	3,046	1,809	1,417
		무혐의	3,362	3,479	2,315	45	142	344	415	463	247	163
		기소유예	39,828	40,271	19,487	580	841	2,431	2,353	1,829	1,007	863
		기소중지	219	262	160	8	71	125	179	245	211	210
		기타	11,345	14,841	4,420	103	253	535	698	509	344	181
	이송	소년보호	12,502	14,284	7,463	279	529	1,473	1,520	1,089	670	495
		가정보호	16	18	4	-	-	2	2	4	4	2
		타관	1,158	1,597	914	34	89	335	439	496	229	180
		성매매	7	3	1	-	-	-	1	3	1	-
미제			646	620	35	24	117	76	77	35	15	22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표 2-1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6,662	8,126	10,852	6,669	6,636	9,182	7,778	7,942	9,480	13,466
	구수		660	527	766	870	720	822	884	1,085	960	1,233
	신수		6,002	7,599	10,086	5,799	5,916	8,360	6,894	6,857	8,520	12,233
처리	계		6,307	7,685	10,040	6,140	6,148	8,288	7,044	7,314	8,553	12,041
	기소	소계	389	525	792	528	423	332	415	293	303	345
		구공판	331	402	595	392	375	280	354	256	274	301
		구약식	58	123	197	136	48	52	61	37	29	44
	불기소	소계	5,615	6,835	8,818	5,310	5,376	7,524	6,278	6,755	7,831	11,157
		무혐의	2,121	2,052	2,547	2,128	2,349	2,561	2,560	2,443	2,481	2,894
		기소유예	147	175	986	394	165	133	121	99	104	171
		기소중지	11	28	36	12	24	58	91	71	45	79
		기타	3,336	4,580	5,249	2,776	2,838	4,772	3,506	4,142	5,201	8,013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303	325	430	302	349	432	351	266	419	539
		성매매	-	-	-	-	-	-	-	-	-	-
미제			355	441	812	529	488	894	734	628	927	1,425

○ 외국인 사건 <표 2-12>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34,962	39,871	34,635	37,143	33,121	35,281	38,674	48,277	54,200	46,928
	구수		854	885	1,049	690	757	821	775	1,283	1,049	1,257
	신수		34,108	38,986	33,586	36,453	32,364	34,460	37,899	46,994	53,151	45,671
처리	계		34,078	38,870	33,976	36,436	32,365	34,561	37,615	47,280	53,001	45,867
	기소	소계	13,263	14,495	11,846	13,999	12,584	13,965	13,863	16,535	18,332	14,944
		구공판	3,429	3,353	2,066	2,160	2,208	2,451	2,894	3,979	3,985	3,974
		구약식	9,834	11,142	9,780	11,839	10,376	11,514	10,969	12,556	14,347	10,970
	불기소	소계	18,656	22,464	20,583	20,895	18,441	19,093	22,100	28,377	31,609	28,173
		무혐의	3,043	3,053	2,823	3,003	3,040	3,410	4,138	5,981	6,832	5,840
		기소유예	8,434	12,339	8,848	10,035	7,950	7,227	8,308	10,246	11,788	9,960
		기소중지	4,295	3,210	4,721	3,163	3,026	3,405	4,191	5,642	5,863	5,325
		기타	2,884	3,862	4,191	4,694	4,425	5,051	5,463	6,508	7,126	7,048
	이송	소년보호	17	10	21	25	29	38	31	45	48	57
		가정보호	39	50	22	41	39	96	145	314	350	303
		타관	2,097	1,838	1,499	1,471	1,266	1,366	1,468	2,004	2,649	2,386
		성매매	6	13	5	5	6	3	8	5	13	4
미제			884	1,001	659	707	756	720	1,059	997	1,199	1,06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표 2-13>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 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0	건	419	399	316	20	131	165	103	102(61.8%)	205
	명	491	471	380	20	148	212	111	111(52.4%)	222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표 2-14>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 속 인 원 처 리 현 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기타
'08	계	64,534	7,648	13,785	43,032	263	41,557	40,293	40,049	244	763	501	135	3	119	244
	검사	6,526	-	1,496	4,996	-	4,590	4,556	4,551	5	2	32	24	1	1	6
	사경	58,008	7,648	12,289	38,036	263	36,967	35,737	35,498	239	761	469	111	2	118	238
'09	계	65,903	8,835	14,159	42,727	49	42,181	40,895	40,675	220	728	558	112	14	155	277
	검사	6,573	-	1,521	5,014	-	4,686	4,657	4,651	6	6	23	11	2	1	9
	사경	59,330	8,835	12,638	37,713	49	37,495	36,238	36,024	214	722	535	101	12	154	268
'10	계	50,396	7,032	10,332	32,516	13	31,078	30,093	29,941	152	560	425	66	19	137	203
	검사	6,670	-	1,610	4,728	-	4,539	4,506	4,498	8	8	25	6	5	6	8
	사경	43,726	7,032	8,722	27,788	13	26,539	25,587	25,443	144	552	400	60	14	131	195
'11	계	44,125	5,562	8,970	28,814	-	28,911	28,212	28,094	118	313	386	40	28	90	228
	검사	6,944	-	1,693	4,505	-	4,413	4,373	4,362	11	3	37	11	8	3	15
	사경	37,181	5,562	7,277	24,309	-	24,498	23,839	23,732	107	310	349	29	20	87	213
'12	계	41,270	6,202	7,195	27,327	-	27,948	27,429	27,333	96	258	261	38	31	87	105
	검사	6,873	-	1,711	4,618	-	4,421	4,398	4,381	17	1	22	4	14	1	3
	사경	34,397	6,202	5,484	22,709	-	23,527	23,031	22,952	79	257	239	34	17	86	102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380	28,040	27,953	87	118	222	33	42	65	82
	검사	7,327	-	1,769	5,075	-	5,481	5,440	5,424	16	0	41	1	32	3	5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99	22,600	22,529	71	118	181	32	10	62	77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0	36	0	30	3	3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3. 구속적부심사 <표 2-1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3,663	3,469	2,643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구수	-	-	-	-	-	-	-	-	-	-
	신수	3,663	3,469	2,643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처리	계	3,663	3,469	2,643	2,293	2,052	1,717	2,127	2,117	2,353	2,125
	석방	1,417	1,230	831	609	439	304	441	344	355	301
	기각	2,189	2,192	1,778	1,652	1,573	1,379	1,656	1,748	1,972	1,795
	취하	57	47	34	32	40	34	30	25	26	29
심사중		-	-	-	-	-	-	-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 고 <표 2-1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33,970	37,693	41,505	39,890	24,365	48,642	51,995	55,140	53,168	57,306
	구수	2,067	2,463	3,312	3,419	1,804	3,447	3,327	4,386	4,505	4,825
	신수	31,903	35,230	38,193	36,471	22,561	45,195	48,668	50,754	48,663	52,481
처리	계	31,507	34,024	38,094	36,554	22,574	45,312	47,602	50,632	48,341	51,866
	기소명령	33	20	74	98	292	176	201	121	117	85
	재기수사명령	3,390	3,211	2,562	2,671	1,795	3,060	3,606	3,436	3,067	3,646
	주문변경명령	40	32	65	96	118	103	114	90	255	240
	항고기각	23,100	25,989	31,713	30,284	19,178	37,736	39,618	42,984	40,305	42,247
	각하	4,944	4,772	3,680	3,405	1,191	4,237	4,063	4,001	4,597	5,648
미제		2,463	3,669	3,411	3,336	1,791	3,330	4,393	4,508	4,827	5,440

○ 재항고 <표 2-17>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계	5,835	5,415	4,828	4,867	2,244	2,651	2,936	3,110	2,669	3,754
	구 수	547	1,126	1,499	1,062	602	1,110	919	461	348	465
	신 수	5,288	4,289	3,329	3,805	1,642	1,541	2,017	2,649	2,321	3,289
처리	계	4,709	3,916	3,766	3,184	1,737	1,732	2,476	2,762	2,204	3,231
	기소명령	-	1	-	-	-	-	-	-	-	-
	재기수사명령	187	137	120	161	122	72	52	72	59	61
	주문변경명령	-	-	-	-	-	-	-	1	-	-
	항고기각	1,990	525	742	703	307	928	1,501	1,722	1,655	2,170
	각 하	2,532	3,253	2,904	2,320	1,308	732	923	967	490	1,000
미 제		1,126	1,499	1,062	1,683	507	919	460	348	465	523

○ 재정신청 <표 2-1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심 사 중		2,433	4,076	5,061	7,168	2,652	14,688	16,037	19,377	22,165	25,061
접수	계	11,567	12,146	14,861	14,129	7,740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공소제기명령	-	-	4	-	-	-	-	-	-	-
	고법송부	11,565	12,142	14,854	14,129	7,739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신청취소	2	4	3	-	1	-	-	-	-	-
처리	계	9,132	10,499	13,843	12,048	7,080	14,419	18,007	19,461	16,605	18,389
	신청기각	8,898	10,293	13,507	11,810	6,911	14,231	17,738	19,184	16,392	18,014
	공소제기결정	119	116	216	133	105	118	150	160	86	171
	신청취소	115	90	120	105	64	70	119	117	127	204

5. 형의 집행

○ 사형집행 <표 2-19>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03～'07	2008	'09～'15	2016	2017
집행인원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2	5	2	-	4	-	6	-	-	-

○ 벌과금 집행 <표 2-20>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 분 금 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08	30,976,405,243	1,560,488,715	3,083,700,280	586,861,144	5,231,050,139	25,745,355,104
2009	31,246,323,901	1,565,687,001	3,522,154,830	278,036,413	5,365,878,244	25,880,445,656
2010	31,517,871,678	1,407,365,718	3,766,487,989	342,982,267	5,516,835,974	26,001,035,705
2011	31,073,627,198	1,361,572,755	3,360,866,184	229,632,610	4,952,071,549	26,121,555,647
2012	30,812,230,452	1,411,087,487	2,937,264,777	302,088,236	4,650,440,500	26,161,789,951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0,582,716	238,671,053	4,218,101,678	26,037,347,344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표 2-21>

(단위 : 명)

구분 / 실시일자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감형	특별감형	일반복권	특별복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비 고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 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 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 대통령 담화 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 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 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91. 12. 24.	-	1	-	-	-	1	-	
'92. 12. 24.	-	9	-	1	-	12	2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 취임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 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구분 / 실시일자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감형	특별감형	일반복권	특별복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비 고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 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 경축(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08. 1. 1.	-	8	-	14	-	18	35	
'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	165	
'13. 1. 31.	-	16	-	3	-	18	18	
'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 8. 15.	-	858		261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 12. 30.	-	6,182 (4)	-	245	-	17	6,444 (4)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1,716명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2-22>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2,367,112	4,213,780	3,961,348	4,080,000	7,972,000	11,000,000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보상인원	285	342	5,155	15,116	39,519	29,015	34,363	14,546	8,713	7,374
지급금액	6,082,103	10,610,675	17,362,009	22,565,518	53,178,959	57,671,711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2-23>

(단위 : 천 원)

종 류 \ 구 분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120,000	180,388	300,388
2017	120,000 (173)	180,388 (2,221)	300,388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표 2-24>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표 2-25>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2005	4	1	1	-	-	-	-	-	-	1	1	-	-
2006	4	1	-	-	-	-	1	2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2008	7	3	-	-	-	1	1	1	-	1	-	-	-
2009	5	2	1	-	-	-	1	1	-	-	-	-	-
2010	6	3	-	-	-	1	1	1	-	-	-	-	-
2011	6	3	1	-	-	-	1	-	-	-	-	1	-
2012	5	3	-	-	-	-	1	1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2014	7	3	-	-	1	-	2	1	-	-	-	-	-
2015	6	3	-	-	-	-	2	1	-	-	-	-	-
2016	4	3	-	-	-	-	-	1	-	-	-	-	-
2017	5	3	-	-	-	1	-	1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 3 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비행소년 선도

가. 선도유예

○ 검찰청별 선도유예인원 <표 3-1>

연도 / 검찰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886	7,104	2,967	1,363	5,694	4,548	3,472	3,413	3,409	3,485
서울중앙	173	72	35	15	254	179	80	42	21	11
서울동부	189	141	31	20	375	134	108	39	7	58
서울남부	734	500	186	114	164	141	145	86	158	135
서울북부	546	1,224	328	119	161	204	160	113	80	99
서울서부	115	116	28	-	113	87	106	131	36	77
의 정 부	462	354	194	26	135	503	662	417	718	711
인 천	209	210	336	44	571	243	165	119	171	69
수 원	714	932	360	451	899	583	395	673	648	1,091
춘 천	382	382	57	17	92	269	128	98	78	82
청 주	180	332	59	94	362	155	160	602	295	102
대 전	450	359	158	32	286	332	270	69	145	232
대 구	420	504	304	204	551	344	260	127	126	64
부 산	219	205	76	52	552	138	172	95	65	111
울 산	64	49	53	-	444	484	157	306	261	188
창 원	399	712	100	22	198	284	169	154	212	153
광 주	350	685	577	120	267	387	179	140	258	260
전 주	242	282	59	33	225	70	132	160	122	42
제 주	38	45	26	-	45	11	24	42	8	-

○ 죄명별, 연령별, 직업별 선도유예인원 <표 3-2>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886	7,104	2,967	1,363	5,694	4,548	3,473	3,413	3,409	3,485
죄명	폭력행위 등	1,751	1,774	763	364	1,649	1,015	672	664	521	578
	절 도	2,379	3,438	1,319	603	2,228	2,068	1,477	1,503	1,314	1,420
	강 도	64	45	4	7	25	12	6	1	3	3
	강 간	45	31	13	7	31	32	12	23	39	8
	교 통	1,023	860	289	196	560	424	375	328	368	513
	재 산	317	217	194	66	269	345	241	325	353	293
	기 타	307	739	385	120	932	652	690	569	811	670
연령	14세	830	833	352	176	765	649	477	341	258	333
	15세	1,640	1,788	675	297	1,272	928	723	671	492	660
	16세	1,626	1,893	755	353	1,351	1,122	874	866	755	875
	17세	1,050	1,573	629	267	1,220	1,081	830	780	856	891
	18세	498	743	390	185	696	607	488	534	643	584
	19세 이상	242	274	166	85	390	161	81	221	405	142
직업	학 생	5,056	5,447	2,521	1,133	4,349	3,557	2,745	2,781	2,841	2,502
	공원(工員) 및 종업원	58	290	24	20	72	51	57	37	34	70
	무 직	695	1,087	354	206	579	535	362	276	312	481
	기 타	77	280	68	4	694	405	309	319	222	432

※ 죄명별 선도유예인원 '기타'항목을 2005년부터 교통, 재산,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

2.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표 3-3>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04	389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보호감호	-	-	-	-	-	-	-	-	-	-
치료감호	304	389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 죄명별 청구인원 <표 3-4>

죄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	304	-	389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3	-	23	-	27	-	1	-	7	-	5	-	1	-	-	-	1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37	-	34	-	76	-	36	-	42	-	36	-	27	-	18	-	1	-	-
절도	-	15	-	11	-	9	-	30	-	14	-	7	-	11	-	5	-	10	-	8
강도	-	14	-	22	-	6	-	8	-	4	-	5	-	4	-	2	-	2	-	2
살인	-	41	-	68	-	47	-	10	-	27	-	40	-	22	-	29	-	17	-	9
강간	-	12	-	47	-	42	-	12	-	16	-	13	-	6	-	4	-	4	-	1
사기	-	28	-	10	-	5	-	40	-	10	-	10	-	4	-	3	-	0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1	-	1	-	-	-	-	-	-	-	-	-	-	-	-	-	-
상해·폭행	-	12	-	9	-	6	-	11	-	16	-	14	-	16	-	15	-	16	-	12
방화·실화	-	7	-	14	-	17	-	23	-	10	-	14	-	11	-	11	-	6	-	14
상해(폭행)치사	-	5	-	4	-	6	-	2	-	-	-	-	-	2	-	3	-	1	-	-
무고	-	1	-	-	-	-	-	2	-	-	-	-	-	-	-	-	-	-	-	-
기타	-	119	-	146	-	90	-	115	-	98	-	110	-	52	-	65	-	60	-	51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5>

연도 / 죄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강 도	33	37	52	43	43	33	32	32	18	8
절 도	5	5	17	18	23	23	19	16	10	3
폭 력	1	2	5	5	4	4	2	2	0	-
성 폭 력	-	-	-	53	64	59	48	47	32	20
기 타	27	40	27	1	1	-	3	3	2	-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6>

연도 / 전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초 범	10	9	7	10	8	7	6	7	3	3
2 ~ 3범	14	18	22	27	32	28	22	18	11	5
4 ~ 5범	20	30	38	41	47	39	31	32	20	10
6 ~ 7범	15	14	18	30	34	33	31	29	20	7
8 ~ 9범	4	6	9	7	8	7	8	7	4	3
10범 이상	3	7	7	5	6	5	6	7	4	3

○ 동기별 수용인원 <표 3-7>

연도 / 동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이욕(利慾) (생활비, 유흥비, 허영)	47	80	90	108	120	105	101	98	62	31
원한·분노	3	2	-	-	-	-	-	-	-	-
취 중	7	1	2	1	2	4	3	2	-	-
우 연	1	-	-	-	-	-	-	-	-	-
기 타	8	1	9	11	13	10	-	-	-	-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8>

연도 / 학력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무 학	5	6	2	2	2	9	15	11	14	-
초 졸	19	28	23	27	34	40	31	36	14	7
중 졸	17	20	34	42	45	21	19	17	12	11
고 졸	24	26	39	47	52	47	38	35	22	13
대 졸	1	4	3	2	2	2	1	1	-	-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9>

연도 / 직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노 동	6	13	29	38	45	22	29	30	12	1
종업원	19	8	40	42	53	32	16	14	6	1
농 업	3	2	3	3	3	1	-	1	-	-
상 업	18	9	25	29	27	13	10	9	8	3
기 타	20	52	4	8	7	51	49	46	36	26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0>

연도 / 집행기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	84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년 미만	20	16	18	25	17	10	5	4	7	3
1년 이상~ 2년 미만	30	22	17	24	28	20	13	11	7	4
2년 이상~ 3년 미만	6	21	22	22	30	30	23	12	10	7
3년 이상~ 4년 미만	2	8	25	20	18	27	27	24	22	7
4년 이상	8	17	19	29	42	32	36	49	16	10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11>

죄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살 인	266	289	297	297	318	334	340	372	343	338
상해(폭행)치사	31	38	37	33	35	37	37	36	34	38
폭 력	117	117	127	149	163	180	195	161	137	156
절 도	58	70	80	70	66	64	58	68	60	59
방 화	49	51	54	62	62	63	71	80	75	80
강 도	39	55	53	50	40	45	54	57	52	48
성 폭 력	76	100	131	170	209	247	263	279	272	242
기 타	87	104	108	117	128	152	131	127	120	135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12>

전과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초 범	467	537	566	596	664	721	759	769	728	721
2 범	76	80	93	95	112	130	121	132	133	129
3 범	35	44	46	58	63	63	70	77	61	65
4 범	37	40	45	41	38	44	42	40	45	35
5범 이상	108	123	137	158	144	164	157	162	126	146

○ 병명별 수용인원 <표 3-13>

병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조 현 병	395	428	355	382	450	480	509	533	507	519
정 신 지 체	56	72	100	82	86	89	104	102	97	93
조 울 증	67	58	64	42	54	57	72	81	85	84
성격(인격)장애	14	17	52	33	38	44	38	35	27	27
간 질	14	12	25	25	28	26	20	14	12	10
약 물 중 독	51	56	68	50	71	85	176	175	130	35
기 타	126	181	223	334	294	341	230	240	235	328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14>

연도 / 학력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무 학	39	38	42	55	59	42	41	48	44	73
초 졸	116	128	130	131	129	138	143	141	139	189
중 졸	137	165	194	212	202	222	230	227	202	186
고 졸	316	347	377	389	444	497	494	512	475	478
대 졸	115	146	144	161	187	223	241	252	233	170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15>

연도 / 직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노 동	52	55	81	83	89	103	104	102	85	94
종 업 원	22	32	33	26	35	43	94	67	53	46
농 업	35	30	37	33	32	29	28	28	27	27
상 업	10	13	9	7	11	10	41	7	40	22
무 직	485	547	589	629	669	732	759	745	695	693
기 타	119	147	138	170	185	205	123	231	193	214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6>

연도 / 집행기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23	824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년 미만	237	313	313	320	293	434	548	279	283	220
1년 이상~ 2년 미만	173	172	198	195	225	188	126	199	181	230
2년 이상~ 3년 미만	87	106	107	129	135	126	115	173	133	156
3년 이상~ 4년 미만	65	58	81	81	104	110	99	126	115	103
4년 이상	161	175	188	223	264	264	261	403	381	387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교육훈련 인원 <표 3-17>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1	4	9	11	11	17	14	7	7	-
학과교육	소계	9	-	-	-	2	4	12	7	6	-
	초등반	-	-	-	-	-	-	-	-	-	-
	중등반	3	-	-	-	-	-	-	-	-	-
	고등반	1	-	-	-	1	-	2	-	-	-
	학사고시반	5	-	-	-	1	4	10	7	6	-
직업훈련	소계	2	4	9	11	9	13	2	-	1	-
	목공	-	-	-	-	-	-	-	-	-	-
	미(도)장	-	-	-	-	-	-	-	-	-	-
	조적	-	-	-	-	-	-	-	-	-	-
	타일	-	-	-	-	-	-	-	-	-	-
	배관	-	-	-	-	-	-	-	-	-	-
	전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	-	12	-	-	-	-
	이·미용	-	-	-	-	-	-	-	-	-	-
	원예	-	-	-	-	-	-	-	-	-	-
	양재	-	-	-	-	-	-	-	-	-	-
	정비	-	-	-	-	-	1	1	-	-	-
	정보기기	1	2	-	-	-	-	-	-	-	-
	기타	1	2	9	11	9	-	1	-	1	-

○ 기능자격취득 인원 <표 3-18>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	4	9	11	9	13	2	-	1	-
천안 교도소	소 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경북북부 제3교도소	소 계	1	4	9	11	9	13	2	-	1	-
	1·2기능사	1	4	9	11	9	13	2	-	1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표 3-19>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6	42	24	39	25	38	33	39	59	53
가 출 소	29	15	17	19	17	37	33	23	53	43
가출소취소	25	27	7	7	8	1	-	16	6	10
집 행 면 제	2	-	-	13	-	-	-	-	-	-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표 3-20>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82	293	271	295	265	268	330	354	456	320
종 료	-	3	3	-	-	2	1	4	2	3
가 종 료	274	283	260	275	255	247	275	266	394	226
가종료취소	8	7	8	20	10	19	54	84	60	91

바. 보호감호 가출소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표 3-21>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8	15	17	19	15	37	33	23	53	43
3년 미만	24	15	5	3	1	5	-	-	3	1
3년이상~ 4년 미만	-	-	3	8	4	6	5	5	6	6
4년이상~ 5년 미만	-	-	1	2	4	3	8	5	12	23
5년 이상	4	-	8	6	6	23	20	13	32	1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표 3-22>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7	15	17	19	15	37	33	23	53	43
절 도	7	2	2	4	3	7	9	9	10	12
강 도	11	10	10	8	7	13	9	5	20	11
폭력행위등	2	-	-	2	3	3	2	-	4	1
성 폭 력	-	-	-	5	2	14	13	9	19	17
기 타	7	3	5	-	-	-	-	-	-	2

○ 전과별 가출소 인원 <표 3-23>

전과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8	15	17	19	15	37	33	23	53	43
초 범	4	4	2	-	3	2	2	-	4	2
2 ~ 3 범	2	4	5	2	3	6	10	6	9	8
4 ~ 5 범	9	4	4	7	3	14	11	5	14	13
6 ~ 7 범	9	2	4	6	3	11	8	7	17	14
8 ~ 9 범	2	1	1	4	1	1	1	4	5	3
10범 이상	2	-	1	-	2	3	1	1	4	3

사. 치료감호 종료 · 가종료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4>

연도 / 기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1년 미만	-	111	-	117	3	60	-	55	-	48	-	47	1	65	2	59	1	68	-	11
1년 이상 2년 미만	-	58	-	67	-	108	-	126	-	107	1	94	-	94	2	72	-	80	2	51
2년 이상 3년 미만	-	40	1	40	-	40	-	39	-	47	1	43	-	36	-	41	-	62	1	26
3년 이상	-	65	2	59	-	52	-	55	-	53	-	63	-	80	-	94	1	183	-	138

○ 죄명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5>

연도 / 죄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살 인	-	36	-	32	1	19	-	23	-	33	-	33	-	42	-	27	-	77	-	48
상 해 (폭 행) 치 사	-	9	1	25	1	7	-	3	-	2	-	3	-	5	-	6	-	10	-	2
폭 력 행위등	-	37	-	31	1	28	-	28	-	39	-	48	-	39	2	81	-	78	2	26
강 간	-	18	-	20	-	5	-	3	-	7	1	9	-	31	1	16	1	50	-	56
강 도	-	11	-	12	-	16	-	12	-	21	-	9	-	6	-	13	1	17	-	12
절 도	-	19	2	21	-	27	-	38	-	26	-	23	-	24	1	13	-	26	-	16
방 화, 실 화	-	13	-	18	-	19	-	15	-	18	1	17	-	10	-	10	-	32	-	11
기 타	-	131	-	124	-	139	-	153	-	109	-	105	1	118	-	100	-	103	1	55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6>

연도 / 전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초 범	-	106	-	100	1	122	-	120	-	90	-	102	-	114	1	119	-	209	-	124
2 범	-	28	1	42	1	30	-	33	-	28	1	29	1	37	2	33	1	43	3	25
3 범	-	15	-	13	1	10	-	14	-	14	-	16	-	15	-	17	1	31	-	13
4 범	-	19	-	15	-	14	-	16	-	16	-	14	-	14	1	9	-	10	-	15
5범 이상	-	106	2	113	-	84	-	92	-	107	1	86	-	95	-	88	-	100	-	49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표 3-27>

연도 / 병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74	3	283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조현병	-	88	-	35	3	42	-	52	-	66	-	71	-	65	2	83	1	139	2	80
정신지체	-	13	1	47	-	44	-	25	-	17	1	17	-	11	-	16	-	27	-	19
조울증	-	14	-	12	-	16	-	29	-	13	-	14	-	11	-	15	-	24	-	14
성격(인격)장애	-	4	2	21	-	27	-	22	-	8	-	8	-	8	-	9	1	8	1	1
간질	-	2	-	4	-	11	-	3	-	3	-	4	-	7	-	7	-	4	-	2
약물중독	-	108	-	133	-	81	-	82	-	76	1	107	1	143	-	105	-	138	-	37
기타	-	45	-	31	-	39	-	62	-	72	-	26	-	30	2	31	-	53	-	73

3.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표 3-28>

(2017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계	6,144	2,841	835	651	1,160	657
가 석 방	39	4	2	20	2	11
임 시 퇴 원	1,812	815	195	275	501	26
기 타 (임시해제, 전자발찌부착 및 가해제, 각종 취소 등)	4,293	2,022	638	356	657	620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표 3-29>

(2017년)

구분 \ 대상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신 수		
계	240,073	77,713	162,360	161,401	78,672
선 고 유 예	58	25	33	28	30
집 행 유 예	129,850	44,767	85,083	82,137	47,713
보 호 처 분	38,675	14,356	24,319	24,187	14,488
가 석 방	8,385	1,589	6,796	6,282	2,103
임 시 퇴 원	1,807	615	1,192	1,140	667
가 출 소	169	91	78	61	108
가 종 료	1,208	774	434	424	784
감 호 가 석 방	-	-	-	-	-
가 정 보 호	480	6	474	69	411
치 료 명 령	12,241	3,115	9,126	9,619	2,622
성 매 매	1,921	478	1,443	1,570	351
선 도 위 탁	17,026	3,900	13,126	13,617	3,409
성구매자 교육	9,237	3,420	5,817	8,510	727
형 기 종 료	2,907	2,112	795	579	2,328
벌 금 대 체	9,819	1,537	8,282	8,344	1,475
이 수 명 령	6,290	928	5,362	4,834	1456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표 3-30>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31,236	161,877	132,429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형법	소계	71,059	68,592	61,021	56,395	56,437	57,485	60,190	63,746	76,366	81,808
	선고유예	12	10	7	15	17	13	9	22	23	16
	집행유예	65,394	62,218	54,984	50,911	51,677	52,803	55,992	59,568	70,670	74,996
	가석방	5,653	6,364	6,030	5,469	4,743	4,669	4,189	4,156	5,673	6,796
소년법	소계	31,433	41,295	39,858	41,253	41,440	34,932	27,765	26,517	24,718	25,511
	단기보호관찰	17,559	21,976	19,907	21,252	20,599	16,010	12,214	12,974	11,240	11,815
	장기보호관찰	11,669	12,930	12,916	12,948	13,018	13,692	10,956	9,570	9,538	9,594
	단독명령	1,260	5,233	5,858	5,964	6,400	3,910	3,238	2,889	2,707	2,910
	임시퇴원	945	1,156	1,177	1,089	1,423	1,320	1,357	1,084	1,233	1,192
치료보호법	소계	438	466	506	535	482	510	531	481	690	986
	가출소	61	34	39	45	22	61	61	40	87	78
	감호가석방	-	-	-	-	-	-	-	-	-	-
	가종료	377	432	467	490	460	449	470	441	603	434
	치료명령	-	-	-	-	-	-	-	-	-	474
성폭력특별법	소계	880	989	915	1,114	1,132	716	3,144	4,389	5,533	10,957
	선고유예	-	1	-	-	-	3	1	5	11	16
	벌금(이수명령)	-	-	-	-	-	-	-	-	-	5,074
	집행유예	880	988	915	1,114	1,132	713	3,143	4,384	5,522	5,867
가정폭력특별법	소계	3,408	3,115	2,380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보호처분	3,408	3,115	2,380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성매매처벌법	소계	1,132	1,303	1,090	572	646	760	910	1,619	2,274	2,835
	보호처분	674	665	531	215	273	335	239	390	1,050	1,443
	집행유예	458	638	559	357	373	425	671	1,229	1,224	1,392
선도위탁(기소유예)	소계	3,453	3,770	4,885	5,002	5,090	5,899	7,859	11,425	14,859	13,126
	1급	65	123	124	277	130	199	106	190	103	96
	2급	3,388	3,647	4,761	4,725	4,960	5,700	7,753	4,096	3,810	3,553
	선도교육	-	-	-	-	-	-	-	7,139	10,946	9,477
성구매자교육	소계	19,433	37,679	13,413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기소유예	19,433	37,679	13,413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형기종료	소계	-	1	226	468	311	996	971	833	870	795
	형기종료	-	1	226	468	311	996	971	833	870	795
벌금대체사회봉사	소계	-	4,667	7,971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벌금대체	-	4,667	7,971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아동청소년법	소계	-	-	164	919	1,055	1,287	5,175	5,608	4,444	1,609
	선고유예	-	-	-	-	-	-	-	-	1	1
	벌금(이수명령)	-	-	13	129	274	414	4,454	4,356	3,219	257
	집행유예	-	-	151	790	781	873	721	1,252	1,224	1,351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	-	-	-	-	-	-	522	981	1508
	벌금(이수명령)	-	-	-	-	-	-	-	149	20	31
	보호처분	-	-	-	-	-	-	-	301	839	1235
	집행유예	-	-	-	-	-	-	-	72	122	242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표 3-31>

기관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31,236	161,877	132,429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서울	7,503	10,790	8,300	6,223	5,766	5,924	7,052	7,875	8,645	8,438
서울동부	3,746	4,475	3,676	2,764	3,065	3,167	3,191	3,626	3,964	3,718
서울남부	4,553	6,691	5,247	4,292	4,169	4,099	4,298	4,758	5,436	5,880
의정부	5,236	5,014	5,252	4,554	4,962	4,527	4,338	4,670	6,561	6,175
인천	7,216	11,963	7,354	5,729	4,640	4,414	5,315	6,092	7,633	7,895
수원	7,846	6,598	5,251	4,391	5,421	5,799	5,966	6,687	8,784	8,857
춘천	1,183	1,110	1,280	1,383	1,642	1,353	1,335	1,340	1,478	1,717
대전	5,690	6,272	4,651	4,461	4,322	4,382	4,255	4,541	4,895	5,753
청주	2,962	3,610	2,842	2,736	2,200	2,151	2,348	2,631	2,654	3,155
대구	6,343	5,921	4,809	4,518	4,612	4,164	4,056	5,975	6,351	5,843
부산	5,942	7,246	7,501	6,063	5,144	4,866	5,370	5,413	7,460	6,634
울산	3,342	3,944	3,616	4,096	3,234	2,961	4,110	3,552	3,178	4,964
창원	4,949	5,553	3,709	4,076	4,043	3,333	3,963	3,818	4,843	4,961
광주	5,017	5,184	4,352	4,925	5,504	5,270	5,159	5,577	5,355	7,899
전주	3,092	2,159	2,282	2,487	2,141	1,747	2,041	2,104	2,888	3,191
제주	1,760	1,709	1,464	1,475	1,451	1,528	1,797	1,699	2,493	3,103
서울서부	2,985	4,446	3,432	2,593	2,491	2,276	2,662	2,988	3,330	3,247
서울북부	3,108	4,331	3,187	2,606	2,364	2,439	2,294	2,898	3,152	3,014
고양	3,176	4,250	2,961	2,926	2,816	2,810	2,942	4,070	4,401	4,155
부천	2,405	3,608	2,759	2,663	2,358	2,619	2,837	2,991	3,548	4,351
성남	3,267	3,544	3,515	2,572	2,877	2,899	3,302	3,344	4,440	4,676
여주	779	832	1,260	1,345	1,507	1,277	1,109	1,172	1,422	1,588
안산	6,034	8,244	4,655	4,453	3,652	4,375	4,253	5,301	6,515	5,177
평택	1,955	1,960	1,636	1,437	1,669	1,679	1,802	2,286	3,063	2,580
안양	-	3,319	2,263	2,227	2,028	1,653	1,828	2,156	2,606	2,378
강릉	1,310	1,148	959	1,056	811	887	1,259	1,192	1,366	1,355
원주	1,615	1,180	883	958	1,583	1,194	1,214	1,562	1,780	1,561
속초	671	590	576	437	437	548	548	474	630	396
영월	-	785	524	482	534	438	445	501	487	489
홍성	1,665	1,142	932	1,020	856	914	843	1,128	992	900
공주	-	723	421	454	431	376	421	429	547	505
논산	757	903	626	651	608	769	805	778	891	890
서산	688	1,245	963	916	813	914	1,191	1,205	1,079	988
천안	2,030	2,831	2,167	2,149	2,288	2,007	2,034	2,283	3,304	3,059
충주	1,432	1,423	908	1,244	912	1,042	904	1,048	1,182	1,130
제천	-	586	446	497	559	557	723	746	629	623
대구서부	2,697	3,816	3,179	2,862	2,568	2,422	2,389	3,147	3,790	3,011
안동	1,347	1,240	1,198	1,028	1,304	863	971	948	1,296	958
경주	523	605	587	573	521	556	703	685	789	724
포항	1,125	1,790	1,230	1,425	923	1,039	1,193	1,584	2,178	2,317
구미	2,076	2,211	1,673	1,462	1,555	1,545	1,611	1,533	1,974	1,978
상주	-	826	563	667	536	533	510	608	612	657
영덕	-	251	312	385	353	260	209	308	388	336
부산동부	2,431	3,372	4,183	3,080	2,943	2,524	2,870	2,918	4,196	3,708
진주	2,067	1,714	1,437	1,317	966	1,006	1,156	1,170	1,478	1,659
통영	1,280	1,767	1,724	1,549	1,615	1,294	1,513	1,499	2,015	2,025
밀양	-	474	343	362	335	418	421	482	544	464
거창	-	537	385	310	331	335	351	361	503	448
목포	1,765	1,754	1,408	1,218	1,567	1,560	1,603	1,755	1,932	2,366
순천	2,942	2,770	2,476	2,176	1,761	1,974	2,036	2,431	2,955	3,319
해남	-	772	596	627	683	654	738	783	788	866
군산	1,953	1,682	1,582	1,416	1,409	1,379	1,438	1,482	1,778	1,469
정읍	773	698	809	825	865	691	700	608	782	851
남원	-	269	431	410	407	351	320	335	348	324
인천서부	-	-	1,489	2,185	1,882	1,847	2,426	2,577	3,057	3,417
영동	-	-	165	452	426	269	349	240	251	218

마. 소년 · 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표 3-32>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75,318	184,362	199,713	227,141	240,073
소년	계			65,815	57,064	51,978	49,687	47,493
	형 법	소 계		1,119	1,053	823	745	727
		선고유예		1	-	1	2	5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014	976	764	698	657
			단독명령	59	49	37	33	52
		가 석 방		45	28	21	12	13
	소년법	소 계		57,815	47,874	44,050	40,693	40,482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26,331	20,502	19,952	18,637	18,465
			장기보호관찰	24,038	21,453	18,912	17,103	16,721
			단독명령	5,355	3,876	3,454	3,227	3,489
		임시퇴원		2,091	2,043	1,732	1,726	1,807
	치료감호법	소 계		-	-	-	-	3
		치료명령		-	-	-	-	3
	성폭력법	소 계		153	145	118	105	107
		선고유예		-	1	2	-	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25	119	94	85	83
			단독명령	28	25	22	20	22
	가정폭력법	소 계		13	28	31	61	55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9	21	24	48	34
			단독명령	4	7	7	13	21
	성매매법	소 계		1	5	7	8	1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4	6	5	9
			단독명령	1	1	1	3	3
		소 계		2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2	-	-	-	-
			단독명령	-	-	-	-	-
	선도위탁	소 계		6,585	7,774	6,714	7,864	5,894
		기소유예		6,585	7,774	6,714	7,864	5,894
	성구매자교육	소 계		10	3	2	17	11
		기소유예		10	3	2	17	11
	벌금대체	소 계		50	85	91	67	68
		벌금대체		50	85	91	67	68
	아동청소년법	소 계		67	97	142	122	129
		선고유예					-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3	79	108	85	110
			단독명령	11	15	32	33	13
		이수명령		3	3	2	4	5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	-	-	5	5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	-	4	5
			단독명령	-	-	-	1	-
		소 계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	-	-
		이수명령		-	-	-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인	계			109,503	127,298	147,735	177,454	192,580
	형 법	소 계		87,562	91,603	96,954	109,973	122,762
		선고유예		28	21	29	40	2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1,783	52,873	54,952	62,588	67,840
			단독명령	29,756	33,211	36,638	40,582	46,524
		가 석 방		5,995	5,498	5,335	6,763	8,372
	치료감호법	소 계		1,145	1,179	1,147	1,380	1,854
		가 출 소		97	120	112	157	169
		감호가석방		-	-	-	-	-
		가 종 료		1,048	1,059	1,035	1,223	1,208
		치료명령		-	-	-	-	477
	성폭력법	소 계		2,189	4,122	11,256	12,186	14,342
		선고유예		3	1	4	15	2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443	2,087	2,741	3,254	3,575
			단독명령	743	2,034	8,511	8,917	4,797
		이수명령		-	-	-	-	5,946
	가정폭력법	소 계		3,902	7,155	9,662	10,098	12,186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010	4,985	7,735	6,644	7,849
			단독명령	892	2,170	1,927	3,454	4,337
	성매매법	소 계		395	312	493	1,192	1,90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287	253	418	732	1319
			단독명령	108	59	75	460	590
		소 계		728	993	1,657	1,938	2,23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66	727	1,189	1,360	1,661
			단독명령	162	266	468	578	571
	선도위탁	소 계		1,649	2,679	8,055	12,324	11,132
		기소유예		1,649	2,679	8,055	12,324	11,132
	성구매자교육	소 계		3,987	3,220	3,462	12,493	9,226
		기소유예		3,987	3,220	3,462	12,493	9,226
	형기종료	소 계		1,573	2,228	2,532	2,844	2,907
		형기종료		1,573	2,228	2,532	2,844	2,907
	벌금대체	소 계		4,618	7,680	9,941	9,825	9,751
		벌금대체		4,618	7,680	9,941	9,825	9,751
	아동청소년법	소 계		1,755	6,127	2,049	1,930	2,211
		선고유예					2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90	809	859	793	828
			단독명령	554	719	872	912	1085
		이수명령		511	4,599	318	223	298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	-	453	1,080	1,690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	392	894	1,306
			단독명령	-	-	61	186	384
		소 계		-	-	74	191	37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43	100	183
			단독명령	-	-	31	64	150
		이수명령		-	-	-	27	45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표 3-33>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75,318	184,362	199,713	227,141	240,073
보호관찰	계			96,574	95,198	96,419	100,995	105,705
	형 법	소 계		44,256	44,653	45,608	50,743	55,951
		선고유예		29	21	30	42	31
		집행유예		38,187	39,106	40,222	43,926	47,535
		가 석 방		6,040	5,526	5,356	6,775	8,385
	소년법	소 계		38,689	33,639	31,090	28,809	27,520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8,448	14,690	14,180	13,761	12,940
			장기보호관찰	18,150	16,906	15,178	13,322	12,773
		임 시 퇴 원		2,091	2,043	1,732	1,726	1,807
	치료감호법	소 계		1,145	1,179	1,147	1,380	1,814
		가 출 소		97	120	112	157	169
		감호가석방		-	-	-	-	-
		가 종 료		1,048	1,059	1,035	1,223	1,208
		치료명령						437
	성 폭력법	소 계		1,058	1,362	1,733	2,092	2,323
		선고유예		3	2	6	15	26
		집행유예		1,055	1,360	1,727	2,077	2,297
	가정 폭력법	소 계		2,277	3,629	5,724	6,361	5,956
		보호처분		2,277	3,629	5,724	6,361	5,956
	성 매매법	소 계		636	702	1,082	1,508	2,112
		보호처분		183	171	278	476	820
		집행유예		453	531	804	1,032	1,292
	선도 위탁	소 계		6,457	7,253	6,587	5,875	5,340
		기소유예		6,457	7,253	6,587	5,875	5,340
	형기 종료	소 계		1,573	2,228	2,532	2,844	2,907
		형기종료		1,573	2,228	2,532	2,844	2,907
	아동 청소년법	소 계		483	553	613	588	596
		선고유예		-	-	-	2	1
		집행유예		483	553	613	586	595
	아동학대 처벌법	소 계		-	-	303	795	1,186
		보호처분		-	-	283	738	1,076
		집행유예		-	-	20	57	110
사회봉사명령	계			41,511	43,293	45,549	48,395	53,231
	형 법	소 계		29,953	32,116	34,247	37,624	41,054
		보호관찰부		9,731	9,799	9,957	12,055	12,755
		단독명령		20,222	22,317	24,290	25,569	28,299
	소년법	소 계		9,089	7,212	7,170	6,432	6,981
		단기보호관찰		3,340	2,733	2,997	2,456	2,804
		장기보호관찰		3,422	2,741	2,342	2,276	2,311
		단독명령		2,327	1,738	1,831	1,700	1,866
	치료감호법							43
	성 폭력법	소 계		315	583	885	1,184	1,406
		보호관찰부		146	226	271	307	361
		단독명령		169	357	614	877	1,045
	가정 폭력법	소 계		324	590	634	795	820
		보호관찰부		166	296	332	322	275
		단독명령		158	294	302	473	545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봉사명령	성매매법	소 계	280	411	772	849	1,076
		보호관찰부	127	169	338	300	442
		단독명령	153	242	434	549	634
	선도위탁	소 계	1,346	2,135	1,515	1,140	1,354
		기소유예	1,346	2,135	1,515	1,140	1,354
	아동청소년법	소 계	204	246	292	299	348
		보호관찰부	79	101	94	86	97
		단독명령	125	145	198	213	251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	-	34	72	149
		보호관찰부	-	-	15	30	51
		단독명령	-	-	19	42	98
수강명령	계		28,054	30,281	33,513	38,857	45,459
	형 법	소 계	14,472	15,887	17,933	22,358	26,488
		보호관찰부	4,879	4,944	5,537	7,312	8,211
		단독명령	9,593	10,943	12,396	15,046	18,277
	소년법	소 계	10,037	7,023	5,790	5,452	5,981
		단기보호관찰	4,543	3,079	2,775	2,420	2,721
		장기보호관찰	2,466	1,806	1,392	1,505	1,637
		단독명령	3,028	2,138	1,623	1,527	1,623
	성폭력법	소 계	969	2,322	3,496	4,169	4,774
		보호관찰부	367	620	837	955	1,000
		단독명령	602	1,702	2,659	3,214	3,774
	가정폭력법	소 계	1,314	2,964	3,335	4,777	5,465
		보호관찰부	576	1,081	1,703	1,783	1,652
		단독명령	738	1,883	1,632	2,994	3,813
	성매매법	소 계	210	197	303	781	965
		보호관찰부	92	113	193	289	435
		단독명령	118	84	110	492	530
	선도위탁	소 계	431	1,065	1,510	-	-
		기소유예	431	1,065	1,510	-	-
	아동청소년법	소 계	621	823	956	938	1,093
		보호관찰부	181	234	250	206	246
		단독명령	440	589	706	732	847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	-	190	382	693
		보호관찰부	-	-	117	173	257
		단독명령	-	-	73	209	436
성구매자교육	계		3,997	3,223	3,464	12,510	9,237
	기 소 유 예		3,997	3,223	3,464	12,510	9,237
벌금대체사회봉사	계		4,668	7,765	10,032	9,892	9,819
	벌금대체사회봉사		4,668	7,765	10,032	9,892	9,819
이수명령	계		514	4,602	5,571	5,073	6,290
	이수명령		514	4,602	5,571	5,073	6,290
선도교육	계		-	-	5,165	11,419	10,332
	기 소 유 예		-	-	5,165	11,419	10,332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4>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3	2,324	2,315	1	3	-	5
2014	2,574	2,564	-	6	-	4
2015	5,343	5,320	1	-	7	15
2016	2,618	2,602	1	-	2	13
2017	2,840	2,811	-	-	7	22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5>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3	2,431	67	2,287	46,981	635	1,960	149	26	80	107	22
2014	2,128	43	1,976	36,307	657	1,821	148	23	72	75	42
2015	1,980	40	1,800	35,514	744	1,812	126	11	79	71	128
2016	1,796	31	1,695	36,129	726	1,780	109	11	40	58	149
2017	1,713	24	1,594	38,752	791	1,576	118	7	49	70	194

자. 구인 · 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표 3-36>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율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 · 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3	67	43	3,604	13	3,591	2,431	2.1	1,197	155	3	7	2,333	2,333	4	310	1,748	4	168
2014	43	16	3,161	14	3,147	2,128	2.0	1,036	135	5	3	1,925	1,925	8	298	1,526	3	154
2015	40	16	2,934	8	2,926	1,980	1.9	1,037	140	12	18	1,850	1,850	6	275	1,381	1	129
2016	31	29	2,663	5	2,658	1,796	1.7	791	87	10	4	1,695	1,695	5	293	1,264	3	111
2017	24	32	2,613	15	2,598	1,713	1.6	806	85	14	11	1,594	1,594	4	300	1,160	-	121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37>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3	41,511	35,220	32,607	592	1,372	649
2014	43,293	35,882	33,279	526	1,475	602
2015	45,549	38,554	35,677	562	1,625	690
2016	48,395	39,532	36,426	572	1,825	709
2017	53,213	44,157	40,653	644	2,061	79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38>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청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13	41,511	34,784	29,953	25,041	9,089	7,511	-	-	315	252	324	298	280	245	1,346	1,260	204	177	-	-
2014	43,293	37,085	32,116	27,298	7,212	6,107	-	-	583	530	590	532	411	384	2,135	2,016	246	218	-	-
2015	45,549	38,153	34,247	28,420	7,170	6,128	-	-	885	775	634	548	772	690	1,515	1,304	292	255	34	33
2016	48,395	41,435	37,624	32,117	6,432	5,459	-	-	1,184	1,036	795	698	849	729	1,140	1,071	299	259	72	66
2017	53,231	44,386	41,054	33,914	6,981	5,923	43	42	1,406	1,188	820	708	1,076	945	1,354	1,237	348	293	149	136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39>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3	41,511	17,388	24,123	10,606	7,291	3,315	30,905	10,097	20,808
2014	43,293	16,468	26,825	9,442	6,017	3,425	33,851	10,451	23,400
2015	45,549	16,569	28,980	8,677	5,641	3,036	36,872	10,928	25,944
2016	48,395	17,969	30,426	7,616	4,973	2,643	40,779	12,996	27,783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0>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3	33,199	8,994	24,205	18	22,211	605	1,016	355
2014	33,805	9,131	24,674	24	22,519	505	1,247	379
2015	36,239	8,966	27,273	56	24,990	658	1,433	136
2016	36,998	9,236	27,762	88	25,457	681	1,346	190
2017	41,297	8,538	32,759	79	30,747	952	734	247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41>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3	28,054	22,757	20,899	318	883	657
2014	30,281	24,309	22,493	249	958	609
2015	33,513	25,850	23,751	252	1,035	812
2016	38,857	30,038	27,674	284	1,261	819
2017	45,459	36,859	34,100	311	1,452	996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42>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청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13	28,054	23,013	14,472	12,181	10,037	7,750	969	797	1,314	1,152	210	198	431	430	621	505	-	-
2014	30,281	24,879	15,887	13,203	7,023	5,491	2,322	2,006	2,964	2,460	197	150	1,065	906	823	663	-	-
2015	33,513	27,588	17,933	14,916	5,790	4,544	3,496	2,704	3,335	2,911	303	255	1,510	1,342	956	729	190	187
2016	38,857	31,971	22,358	18,532	5,452	4,367	4,169	3,320	4,777	3,980	781	699	-	-	938	745	382	328
2017	45,459	36,657	26,488	21,508	5,981	4,775	4,774	3,781	5,465	4,488	965	698	-	-	1,093	834	693	573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43>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3	28,054	13,107	14,947	10,176	7,088	3,088	17,878	6,019	11,859
2014	30,281	11,913	18,368	7,297	4,991	2,306	22,984	6,922	16,062
2015	33,513	14,460	19,053	6,056	4,250	1,806	27,457	10,210	17,247
2016	38,857	14,643	24,214	5,587	3,999	1,588	33,270	10,644	22,626
2017	45,459	16,159	29,300	6,139	4,446	1,693	39,320	11,713	27,607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4>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3	21,217	20,233	984	38	9	240	174	135	388
2014	22,742	21,446	1,296	37	4	103	218	137	797
2015	24,003	23,521	482	23	2	27	180	67	183
2016	27,958	27,386	572	26	-	27	275	51	193
2017	34,411	33,845	566	1	-	5	244	22	294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표 3-45>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조사	소 계	1,842	2,009	1,742	1,616	1,740	1,701	1,594	1,561	1,555	1,921
	소 년 원	1,477	1,668	1,454	1,380	1,500	1,555	1,395	1,432	1,419	1,693
	교 도 소	304	274	224	173	146	43	106	59	60	167
	감 호 소	61	67	60	28	69	103	93	70	76	60
환 경 개 선		-	-	4	35	25	-	-	-	-	1

머. 조사 <표 3-46>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판 결 전 조 사	4,273	3,597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결 정 전 조 사	3,311	4,234	6,398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검사결정전조사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청 구 전 조 사	92	304	1,376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소급청구전조사	-	-	2,251	772	354	247	192	119	79	86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표 3-47>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3	4,199	3,203	2,365	838	2,658	2,172	1,754	418	1,541	1,031	611	420
2014	3,835	2,821	2,083	738	2,110	1,721	1,429	292	1,725	1,100	654	446
2015	3,566	2,753	2,005	748	1,924	1,604	1,297	307	1,642	1,149	708	441
2016	3,288	2,396	1,817	579	1,666	1,344	1,133	211	1,622	1,052	684	368
2017	3,196	2,315	1,682	633	1,479	1,181	997	184	1,717	1,134	685	449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표 3-48>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8,629	9,393	8,705	6,766	6,144	6,658	6,297	6,252	7,895	8,821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표 3-49>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 수	8,396	8,257	8,093	7,067	6,502	6,150	5,503	5,716	7,221	8,248
필 요	5,233	5,459	5,493	4,779	4,246	4,174	3,734	3,816	5,127	6,205
불 요	3,163	2,798	2,600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허 가	3,163	2,798	2,600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4. 갱생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표 3-50>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4,261	2,575	3,101	10,164	152	5,854	14,487	34,462	3	7,243	1,600	11,202	13,418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표 3-51>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93,459	2,167	3,003	10,037	152	5,659	14,343	30,795	3	3,863	1,600	9,322	12,515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표 3-52>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802	408	98	127	-	195	144	3,667	-	3,380	1,880	903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입·출원 인원 <표 3-53>

입·출원		성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원	계	남	2,415	3,257	3,382	3,848	4,314	3,863	3,223	2,884	2,763	2,974
		여	461	641	631	706	665	572	484	504	476	510
	전년도 이월	남	999	920	978	1,217	1,202	1,197	1,175	945	928	858
		여	145	203	213	224	195	201	169	155	215	176
	송 치	남	1,386	2,249	2,265	2,534	2,995	2,548	1,933	1,858	1,754	2,022
		여	305	398	396	426	435	341	295	321	241	308
	임시퇴원 취 소	남	30	88	139	97	117	118	115	81	81	94
		여	11	40	22	56	35	30	20	28	20	26
	이탈학생 재 수 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1,518	2,291	2,381	2,360	2,954	2,685	2,275	1,961	1,900	2,029
		여	262	438	439	401	446	401	333	281	316	320
	퇴 원	남	764	1,495	1,595	1,555	1,873	1,676	1,254	1,119	1,045	1,135
		여	107	227	226	235	278	243	188	164	147	194
	임시퇴원	남	709	753	735	768	1,036	941	952	786	788	832
		여	148	197	199	158	159	145	137	103	158	114
	처분변경 ·취 소	남	34	35	31	25	29	48	46	43	41	36
		여	7	12	13	8	9	12	8	13	10	8
	사 망	남	-	-	-	-	-	-	-	-	-	-
		여	-	-	-	-	-	1	-	-	-	-
	이 탈	남	-	-	-	-	1	-	-	-	-	-
		여	-	-	-	-	-	-	-	-	-	-
	기 타	남	11	8	20	12	15	20	23	13	26	26
		여	-	2	1	-	-	-	-	1	1	4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54>

기관 \ 연도	성별	2008	2009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남	982	962	963	계	남	1,063	1,188	1,207	1,056	921	932	981
	여	179	230	200		여	201	202	173	181	192	199	185
서 울	남	194	222	208	서 울	남	254	270	295	270	236	234	246
	여	-	-	-		여	-	-	-	-	-	-	-
부 산	남	186	123	127	부 산	남	140	161	175	132	118	138	124
	여	-	1	1		여	-	1	1	1	1	1	1
대 구	남	88	111	130	대 구	남	127	143	128	137	130	141	137
	여	-	1	-		여	-	-	-	-	-	-	-
광 주	남	139	110	99	광 주	남	142	165	161	129	94	104	134
	여	-	-	-		여	-	-	-	1	-	-	-
전 주	남	123	118	112	전 주	남	110	126	128	123	108	92	81
	여	-	-	-		여	-	-	-	-	-	-	-
대 덕	남	154	140	142	대 전	남	146	165	139	112	111	92	109
	여	-	9	9		여	16	14	9	10	5	6	12
청 주	남	-	-	-	청 주	남	-	-	-	-	-	-	-
	여	-	18	54		여	48	60	54	46	45	45	45
안 양	남	-	-	-	안 양	남	-	-	-	-	-	-	-
	여	179	201	136		여	137	127	109	123	141	147	127
춘 천	남	69	99	106	춘 천	남	112	128	151	117	93	89	107
	여	-	-	-		여	-	-	-	-	-	-	-
제 주	남	29	38	39	제 주	남	32	30	30	36	31	42	43
	여	-	-	-		여	-	-	-	-	-	-	-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기관별 신수용 인원 <표 3-55>

기관 \ 연도 / 성별		2008	2009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남	1,416	2,337	2,404	계	남	2,534	2,994	2,666	2,048	1,939	1,835	2,116
	여	316	438	418		여	426	435	371	315	349	261	334
서 울	남	241	278	344	서 울	남	521	552	635	489	474	442	524
	여	-	-	-		여	-	-	-	-	-	-	-
부 산	남	227	287	381	부 산	남	322	337	351	267	281	213	265
	여	5	11	60		여	31	46	44	44	44	54	48
대 구	남	153	212	174	대 구	남	138	129	88	110	143	176	162
	여	2	7	38		여	25	16	21	15	25	16	13
광 주	남	108	94	79	광 주	남	97	116	146	154	122	90	137
	여	1	1	17		여	27	19	40	28	36	9	28
전 주	남	115	81	48	전 주	남	69	109	69	16	5	-	5
	여	7	1	12		여	22	15	3	-	-	-	-
대 덕	남	440	1,228	1,285	대 전	남	1279	1,540	1,242	921	828	849	943
	여	6	12	21		여	22	10	9	4	3	15	21
청 주	남	-	-	-	청 주	남	-	-	-	-	-	-	-
	여	-	27	168		여	181	228	137	106	110	71	102
안 양	남	-	-	-	안 양	남	-	-	-	-	-	-	-
	여	295	379	90		여	105	90	113	108	122	87	114
춘 천	남	112	130	54	춘 천	남	74	146	90	53	66	38	39
	여	-	-	4		여	4	3	-	6	1	3	1
제 주	남	20	27	39	제 주	남	34	65	45	38	20	27	41
	여	-	-	8		여	9	8	4	4	8	6	7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수용기간별 인원 <표 3-56>

연도 / 기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728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1월 미만	161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3월 미만	132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월 미만	588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6월 이상	128	110	100	76	115	149	108	91	126	115
7월 이상	11	14	5	4	16	20	19	15	13	8
8월 이상	1	16	15	14	28	15	19	28	13	20
9월 이상	33	34	20	32	26	26	29	16	14	16
10월 이상	90	43	24	23	14	11	13	16	11	12
11월 이상	48	45	13	11	10	11	20	15	12	8
12월 이상	46	100	86	32	39	25	30	30	47	19
13월 이상	67	177	156	91	139	81	77	43	71	46
14월 이상	59	107	134	161	181	114	91	86	83	90
15월 이상	68	79	69	117	138	82	132	84	75	71
16월 이상	79	25	31	38	53	72	80	58	73	59
17월 이상	103	4	4	14	23	30	37	30	37	49
18월 이상	101	8	1	3	8	21	35	26	21	23
19월 이상	8	-	-	4	4	7	19	11	11	10
20월 이상	5	1	2	1	4	3	4	7	20	3
평균수용기간(월)	7.9	5.71	4.61	4.66	4.66	4.9	5.18	4.8	5.35	4.85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처우과정 분류인원 <표 3-57>

기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732	2,775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7호	소계	28	66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기타	28	66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8호	소계	294	1,269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기타	294	1,269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9호	소계	657	793	782	780	975	960	768	766	713	857
	교과	131	80	54	57	132	111	125	168	161	95
	직업	68	62	-	-	-	77	70	102	72	243
	특성화	154	53	189	178	244	188	134	178	136	132
	기타	304	598	539	545	599	584	439	318	344	387
10호	소계	753	647	655	748	663	687	562	611	538	581
	교과	95	110	118	227	174	196	118	53	31	45
	직업	366	328	297	244	295	279	294	408	332	374
	특성화	177	57	47	62	50	36	27	13	12	8
	기타	115	152	193	215	144	176	123	137	163	154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교과교육 수료인원 <표 3-58>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14	384	286	287	389	228	139	135	154	187
초등학교	-	-	-	-	-	-	-	-	-	-
중 학 교	263	266	206	198	210	101	49	32	25	26
고등학교	151	118	80	89	179	127	90	103	129	161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3-59>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78	425	394	497	688	619	670	600	676	617
중입자격	7	2	4	5	3	4	3	1	-	-
고입자격	246	207	228	254	283	246	224	190	152	141
고졸학력	225	216	162	238	402	369	443	409	524	476

○ 직업훈련 수료인원 <표 3-60>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업훈련	472	449	386	374	523	472	497	500	640	55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표 3-61>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950	2,674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일 반 기 능	600	584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컴퓨터관련	1,478	1,389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외국어관련	222	74	45	41	48	-	-	-	-	-
기 타	650	627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라. 위탁소년 수용 · 분류심사

○ 입 · 출원 인원 <표 3-62>

구분		성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원	계	남	4,806	5,343	5,486	5,691	5,746	5,888	5,230	5,508	4,778	4,931
		여	1,114	1,220	1,277	1,445	1,307	1,228	1,095	1,104	1,051	1,372
	이월인원	남	248	388	387	366	392	336	341	364	348	333
		여	52	110	81	88	77	69	75	68	73	61
	신수용인원	남	4,558	4,955	5,099	5,325	5,354	5,552	4,889	5,144	4,430	4,598
		여	1,062	1,110	1,196	1,357	1,230	1,159	1,020	1,036	978	1,311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4,015	4,975	4,942	5,359	5,351	5,547	4,866	5,159	4,446	4,593
		여	1,034	1,138	1,185	1,348	1,240	1,153	1,027	1,030	992	1,270
	보호자위탁	남	24	15	22	13	14	8	10	29	16	14
		여	4	11	15	8	6	9	4	8	-	6
	보호시설위탁	남	367	450	460	435	440	492	429	474	430	456
		여	30	97	145	195	189	197	181	163	201	241
	소년원송치	남	949	1,882	1,797	2,049	2,243	2,090	1,684	1,709	1,507	1,689
		여	228	388	340	321	312	301	270	319	243	288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272	2,354	2,321	2,483	2,262	2,603	2,318	2,472	2,121	2,138
		여	627	585	592	697	599	555	494	418	461	630
	위탁변경	남	247	135	130	107	111	112	114	112	92	72
		여	67	25	12	24	40	26	25	21	18	17
	심리불개시	남	3	1	-	-	1	-	-	-	-	-
		여	-	-	1	-	-	-	-	-	-	-
	불처분	남	22	12	20	5	15	16	10	9	8	5
		여	6	2	2	-	-	2	2	2	2	1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131	126	192	267	265	226	301	354	272	219
		여	72	30	78	103	94	63	51	99	67	87
연말현재인원		남	292	272	371	337	336	341	364	348	333	338
		여	80	52	70	79	69	75	68	73	61	101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63>

기관 \ 연도 / 성별		2008	2009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남	282	327	341	계	남	367	379	391	391	364	327	348
	여	61	72	77		여	89	85	80	80	72	71	95
부 산 (부산심)	남	55	54	63	부 산 (부산심)	남	83	78	74	73	78	70	70
	여	9	10	12		여	17	17	11	11	16	17	18
대 구 (대구심)	남	23	29	27	대 구 (대구심)	남	27	25	28	28	28	32	30
	여	3	7	8		여	7	5	7	7	5	6	6
광 주 (광주심)	남	23	32	40	광 주 (광주심)	남	34	35	41	41	37	35	43
	여	4	6	9		여	8	8	8	8	8	6	10
전 주	남	11	9	15	전 주	남	14	11	7	7	-	-	-
	여	2	3	4		여	4	2	2	2	-	-	-
대 덕 (대전의료)	남	30	39	36	대 전 (대전의료)	남	28	20	24	24	26	35	28
	여	8	8	6		여	6	4	5	5	5	7	11
청 주	남	-	-	-	청 주	남	-	-	-	-	-	-	-
	여	-	-	-		여	-	-	-	-	-	-	-
춘 천	남	5	6	10	춘 천	남	12	14	11	12	9	9	15
	여	1	2	4		여	4	4	2	2	1	1	2
제 주	남	2	2	2	제 주	남	1	1	3	3	3	2	2
	여	1	-	1		여	-	-	1	1	1	1	1
서울심	남	129	156	148	서울심	남	168	195	203	203	183	144	160
	여	33	36	33		여	43	45	44	44	36	34	47
창 원	남	4	'07. 7. 23. 기관폐지										
	여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기관별 위탁 인원 <표 3-64>

연도 / 기관 / 성별		2008	2009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남	4,630	4,954	5,099	계	남	5,325	5,352	5,552	4,889	5,142	4,430	4,598
	여	1,071	1,110	1,196		여	1,357	1,230	1,159	1,020	1,036	979	1,311
부 산 (부산심)	남	1,018	861	966	부 산 (부산심)	남	1,257	1,208	1,074	1,059	1,055	893	901
	여	183	160	207		여	271	250	167	195	213	211	249
대 구 (대구심)	남	280	344	363	대 구 (대구심)	남	342	327	336	367	368	395	344
	여	56	96	113		여	103	66	89	71	68	73	75
광 주 (광주심)	남	393	488	559	광 주 (광주심)	남	426	422	495	403	463	413	513
	여	79	94	124		여	110	99	105	97	110	73	110
전 주	남	167	133	170	전 주	남	181	144	111	1	-	-	-
	여	45	41	49		여	50	32	28	1	-	-	-
대 덕 (대전의료)	남	540	671	620	대 전 (대전의료)	남	454	299	355	305	387	450	363
	여	142	126	114		여	101	56	75	57	81	102	150
청 주	남	-	-	-	청 주	남	-	-	-	-	-	-	-
	여	-	-	-		여	-	-	-	-	-	-	-
춘 천	남	80	114	135	춘 천	남	176	207	161	176	139	144	215
	여	12	35	54		여	61	54	33	31	18	19	34
제 주	남	32	36	50	제 주	남	22	30	38	44	44	27	26
	여	18	5	16		여	15	8	14	21	16	8	11
서울심	남	2,049	2,307	2,236	서울심	남	2,467	2,715	2,982	2,534	2,686	2,108	2,236
	여	526	553	519		여	646	665	648	547	530	493	682
창 원	남	71	'07. 7. 23. 기관폐지										
	여	10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위탁기간별 인원 <표 3-65>

연 도 / 기 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출원 인 원	5,549	6,113	6,164	6,707	6,589	6,700	5,893	6,187	5,438	5,863
계	5,155	6,113	6,164	6,707	6,589	6,700	5,893	6,187	5,437	5,863
10일 미만	89	137	164	159	158	124	154	166	106	124
10~20일	1,915	1,651	1,491	1,182	1,053	949	754	950	679	562
21~30일	2,297	3,424	3,578	4,367	4,200	4,392	3,874	3,850	3,326	3,851
31~40일	689	727	784	851	916	1,026	877	1,014	1,018	1,032
41~50일	139	154	113	128	198	145	191	160	250	238
51~60일	26	20	34	20	64	64	43	47	58	56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표 3-66>

연 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분류심사	5,198	5,627	5,723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상담조사	5,952	5,106	5,301	5,296	5,148	4,382	4,261	4,119	3,993	4,179
검사결정전조사	579	295	397	126	7	-	-	-	25	1,429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표 3-67>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402	18,069	25,926	38,853	47,668	40,636	42,842	56,648	71,255	80,266
대안교육	소 계	6,410	7,348	12,862	23,382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일반학생	4,683	5,629	11,396	21,280	26,814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기·선유예	1,516	1,425	1,124	1,191	2,034	2,767	4,993	5,123	5,757	5,416
	보호처분	211	294	342	911	1,274	507	278	217	255	193
청소년적성검사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보호자교육		3,511	5,465	6,626	7,498	8,101	8,246	9,192	8,964	9,465	13,314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표 3-68>

판정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665	6,113	6,164	6,707	6,591	6,700	5,893	6,189	5,438	5,863
1호	111	26	37	21	20	17	14	37	16	20
2호	11	19	39	54	47	59	31	42	46	47
3호	23	24	34	50	35	65	69	55	33	29
4호	610	1,035	1,214	1,287	1,088	1,132	1,153	1,464	1,118	1,169
5호	2,146	1,919	1,663	1,893	1,773	2,026	1,659	1,426	1,464	1,599
6호	340	547	605	643	650	689	610	637	631	697
7호	18	50	50	79	87	69	88	74	63	99
8호(1개월)	374	876	941	1,035	1,164	860	682	672	525	593
9호(단기)	619	669	621	618	754	837	684	714	670	774
10호(장기)	385	537	525	638	627	622	501	568	492	511
기타	28	411	435	389	346	324	402	500	380	325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 4 절 인권업무 통계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표 4-1>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7	77,653	271	77,382	22,494	1,085,712
2008	99,043	190	98,853	25,952	1,194,603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표 4-2>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3	57,240	41,748	10,140	1,641	3,711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표 4-3>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878,000	2,246,220	3,268,220	9,305,000	9,584,000	7,929,000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보상인원	152	205	209	287	291	312	331	382	279	264
지급금액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표 4-4>

구분 \ 연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3	1,509	63	1,115	87	85	159
2014	1,755	54	1,369	56	147	129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신수기준) <표 4-5>

구분 \ 연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3	1,472	584	641	166	81(5.4%)
2014	1,715	921	495	217	82(4.7%)
2015	1,780	930	543	223	84(4.6%)
2016	2,513	1,289	846	293	85(3.2%)
2017	2,533	1,326	891	236	80(2.9%)

제 5 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5-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용정원			43,100	44,430	45,930	45,690	45,690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1일평균수용인원			46,684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2,316	33,179	32,652	31,644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수형자	30,280	30,749	30,607	29,820	29,448	30,181	30,727	32,649	33,791	35,382
		노역수	2,036	2,430	2,045	1,824	1,854	2,097	2,024	1,976	1,827	1,624
	미결구금자	소 계	14,368	16,288	14,819	14,201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피의자	937	1,008	786	724	703	712	747	847	864	753
		피고인	13,431	15,280	14,033	13,477	13,483	14,934	16,630	18,420	20,013	19,539

○ 인구대비 수용인원 <표 5-2>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08	48,606,787	46,684	0.096	14,413	3.2
2009	48,746,693	49,467	0.101	14,521	3.4
2010	48,874,539	47,471	0.097	15,221	3.1
2011	49,779,000	45,845	0.092	15,478	3.0
2012	50,004,441	45,488	0.091	15,757	2.9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 수용자 성별 인원 <표 5-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7,966	48,228	45,681	45,038	46,708	48,824	51,760	54,667	57,675	55,198
수형자	소 계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남	30,723	30,759	30,534	29,694	29,863	30,525	31,661	33,122	34,281	33,905
	여	1,474	1,538	1,447	1,504	1,571	1,612	1,783	1,976	2,198	2,262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4.6	4.8	4.5	4.8	5.0	5.0	5.3	5.6	6.0	6.3
미결수용자	소 계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18,316	19,569	21,196	19,031
	남	14,709	14,866	12,772	12,915	14,263	15,376	17,008	18,026	19,488	17,520
	여	1,060	1,065	928	925	1,011	1,311	1,308	1,543	1,708	1,511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6.7	6.7	6.8	6.7	6.6	7.9	7.1	7.9	8.1	7.9

○ 수형자 연령별 인원 <표 5-4>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16세 미만	5	2	1	2	16	6	3	0	2	4
18세 미만	60	73	46	49	70	55	50	47	46	45
20세 미만	228	273	304	231	251	280	270	262	290	244
25세 미만	2,189	2,471	2,457	2,153	2,147	2,327	2,514	2,609	2,642	2,484
25세 이상	3,898	3,697	3,295	2,899	2,539	2,366	2,247	2,244	2,450	2,562
30세 이상	8,998	8,733	8,436	8,018	7,681	7,677	7,584	7,678	7,678	7,543
40세 이상	10,381	10,166	9,925	9,708	9,714	9,714	9,986	10,310	10,275	9,712
50세 이상	5,032	5,387	5,876	6,344	6,866	7,362	7,989	8,624	9,255	9,330
60세 이상	1,406	1,495	1,641	1,794	2,150	2,350	2,801	3,324	3,841	4,243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표 5-5>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407	1,611	1,250	1,198	1,132	1,222	1,271	1,884	1,997	2,096
소계	기 결	821	1,155	911	848	769	773	770	1,123	1,232	1,320
	미 결	586	456	339	350	363	449	501	761	765	776
중국	기 결	491	761	510	488	482	488	492	800	852	903
	미 결	386	217	169	206	223	269	340	500	477	431
일본	기 결	9	14	17	14	4	3	4	6	8	8
	미 결	11	5	-	2	2	1	3	1	1	4
미국	기 결	23	23	22	24	30	30	34	35	37	35
	미 결	22	12	19	12	20	20	24	29	28	26
기타	기 결	298	357	362	322	253	252	240	282	335	374
	미 결	167	222	151	130	118	159	134	231	259	315

○ 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6>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절 도	5,610	5,805	5,898	5,315	4,752	4,650	4,599	4,420	4,061	3,858
폭행 및 상해	1,090	914	848	854	854	889	978	1,036	1,719	1,861
사기 및 횡령	3,772	4,076	3,897	3,951	4,150	5,024	5,911	6,834	7,699	7,630
과 실 범	1,635	1,294	1,175	1,123	1,257	1,315	1,463	1,423	1,691	1,722
강 도	3,855	3,909	3,882	3,623	3,506	3,276	3,014	2,821	2,552	2,333
살 인	3,851	3,769	3,785	3,729	3,711	3,675	3,750	3,728	3,584	3,484
폭력행위등 처벌법	1,746	1,711	1,582	1,489	1,542	1,693	1,770	1,827	1,096	763
기 타	10,638	10,819	10,914	11,114	11,662	11,615	11,959	13,009	14,077	14,516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표 5-7>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징역	소 계	30,982	31,070	30,683	29,889	30,082	30,796	32,064	33,694	35,048	34,736
	1년 미만	7,298	6,379	5,430	5,421	5,322	5,078	5,312	5,724	6,362	6,050
	1년 이상	10,219	10,861	10,673	9,666	9,829	10,344	10,898	12,001	13,010	13,208
	3년 이상	5,503	5,980	6,458	6,610	6,493	6,613	6,866	6,870	6,747	6,727
	5년 이상	3,943	3,953	4,197	4,335	4,601	4,912	5,088	5,216	5,195	5,029
	10년 이상	3,419	3,347	3,396	3,344	3,317	3,299	3,335	3,283	3,127	3,071
	20년 이상	600	550	529	513	520	550	565	600	607	651
금고	소 계	70	47	72	45	84	53	60	67	86	73
	6월 미만	5	2	4	2	2	1	4	5	8	1
	6월 이상	41	23	35	23	51	32	33	37	39	31
	1년 이상	22	18	29	15	26	16	19	17	28	28
	3년 이상	2	4	4	5	5	4	4	8	11	13
무기징역		1,145	1,180	1,226	1,264	1,268	1,288	1,320	1,337	1,345	1,358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표 5-8>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무경험자		15,304	15,456	15,384	15,225	16,676	17,483	18,604	19,794	20,649	20,055
유경력자	소 계	16,893	16,841	16,597	15,973	14,758	14,654	14,840	15,304	15,830	16,112
	1 회	6,176	5,955	5,835	5,373	5,308	5,292	5,552	5,987	6,437	6,979
	2 회	3,034	2,947	2,850	2,622	2,540	2,515	2,531	2,506	2,665	2,728
	3 회	2,203	2,138	2,066	1,993	1,889	1,833	1,790	1,742	1,685	1,615
	4회이상	5,480	5,801	5,846	5,985	5,021	5,014	4,967	5,069	5,043	4,790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표 5-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소자	계	66,464	73,073	62,862	55,046	53,689	55,479	56,044	62,395	64,541	62,624
	신 입 소	35,286	41,236	32,817	27,253	26,145	27,333	26,573	29,357	28,330	24,851
	형 확 정	26,539	26,704	25,380	23,163	22,931	23,267	24,281	27,206	30,269	31,500
	기 타	4,639	5,133	4,665	4,630	4,613	4,879	5,190	5,832	5,942	6,273
출소자	계	65,315	72,510	63,228	55,436	53,202	54,297	54,203	60,414	62,979	62,819
	형기종료	17,561	17,607	17,468	16,551	15,742	16,374	17,191	19,187	21,357	23,324
	가 석 방	8,524	8,392	8,083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사 면	583	625	12	0	374	13	282	559	479	309
	기 타	22,354	26,299	21,105	17,367	16,857	17,501	16,173	15,927	14,184	12,559
	노역종료	16,293	19,587	16,560	14,389	13,729	14,208	15,163	19,234	19,802	18,352
연도말 인원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나. 미결구금자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표 5-1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7,107	58,076	48,335	44,300	43,152	44,274	48,265	52,129	55,240	51,863
신 입 소	53,372	54,013	44,276	40,084	39,029	39,604	43,171	46,585	49,405	45,976
기 타 (보석취소 등)	3,735	4,063	4,059	4,216	4,123	4,670	5,094	5,544	5,835	5,887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표 5-1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5,155	70,008	61,815	43,987	41,433	42,651	46,272	50,654	53,470	53,890
구속취소	1,308	1,888	1,893	1,465	1,355	1,400	1,669	2,056	2,452	2,761
벌 금	1,988	2,156	1,574	1,235	947	1,078	1,224	1,306	1,310	1,218
집행유예	15,951	17,052	13,074	11,030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보 석	4,672	4,709	3,885	3,376	2,662	2,882	3,167	3,069	2,678	2,555
형 확 정	25,626	25,804	24,351	21,955	21,660	22,017	23,155	25,985	29,019	30,173
기 타	15,610	18,399	17,038	4,926	4,868	5,174	5,280	5,324	5,564	5,956
연도말인원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12>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6	169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절 도	73	62	45	26	42	43	34	26	23	24
사기·횡령	1	3	3	-	2	1	2	10	2	12
폭력·상해	9	3	1	5	17	17	5	10	27	4
강 간 등	24	44	32	33	54	46	34	27	35	44
강 도 등	24	32	33	18	24	16	11	14	19	8
살 인	9	6	11	10	11	7	6	5	5	4
과 실 범	5	2	3	1	2	-	2	2	2	-
기 타	11	17	18	21	18	22	37	36	37	32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표 5-13>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6	169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	-	-	1	2	4	1	-	-	-
	10년 이상	3	3	5	4	5	4	3	2	2	-
	5년 이상	14	15	15	12	13	10	11	12	13	9
	3년 이상	27	42	45	38	44	39	42	48	56	47
	1년 이상	87	89	58	48	94	87	67	56	69	64
	1년 미만	24	19	23	10	12	8	7	11	8	8
	6월 미만	1	1	-	1	-	-	-	1	1	-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	-	-	1	-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표 5-14>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17	101	114	69	86	101	103	74	94	83
가 석 방	58	17	21	10	17	10	12	8	9	10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만 기 석 방	164	59	75	45	45	68	78	53	64	38
기 타	95	25	18	14	24	23	13	13	21	35

○ 2013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표 5-15>

재복역 기간	'13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2,121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43	0.2%
6월 이내	279	1.3%
1년 이내	1,460	6.6%
2년 이내	3,834	17.3%
3년 이내	5,471	24.7%

※ 조사대상인원 : 22,121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3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출소사유별 · 재복역기간별 · 성별 재복역률 <표 5-16>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2,121	1,454	5,471	148	43	2	236	3	1,181	26	2,374	64	1,637	53
형기종료	15,888	821	5,057	132	33	1	220	3	1,125	23	2,214	60	1,465	45
가석방	6,202	631	406	15	10	1	15	-	56	3	154	3	171	8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18	-	7	-	-	-	1	-	-	-	5	-	1	-
사 면	13	2	1	1	-	-	-	-	-	-	1	1	-	-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형기종료 31.8%, 가석방 6.5%,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38.9%, 사면 7.7%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3월 이내 0.2%, 6월 이내 1.3%, 1년 이내 6.6%, 2년 이내 17.3%, 3년 이내 24.7%

※ 재복역기간별 인원

3월이내 43명(0.8%), 3월이상 6월이내 236명(4.3%), 6월이상 1년이내 1,181명(21.6%), 1년이상 2년이내 2,374명(43.4%), 2년이상 3년이내 1,637명(29.9%)

※ 성별 재복역률

남자 25.8%, 여자 10.2%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표 5-17>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2,121	12,031	3,887	1,729	1,180	3,294
	재복역인원	5,471	1,282	1,008	691	557	1,933
	재복역률	24.7	10.7	25.9	40.0	47.2	58.7
형기종료	출소인원	15,888	6,919	2,843	1,688	1,177	3,261
	재복역인원	5,057	1,031	858	684	556	1,928
	재복역률	31.8	14.9	30.2	40.5	47.2	59.1
가석방	출소인원	6,202	5,101	1,042	40	1	18
	재복역인원	406	251	149	6	-	-
	재복역률	6.5	4.9	14.3	15.0	-	-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8	-	1	1	1	15
	재복역인원	7	-	1	1	-	5
	재복역률	38.9	-	100.0	100.0	-	33.3
사면	출소인원	13	11	1	-	1	-
	재복역인원	1	-	-	-	1	-
	재복역률	7.7	-	-	-	100.0	-

※ 범수별 재복역률
초범 10.7%, 2범 25.9%, 3범 40.0%, 4범 47.2%, 5범 이상 58.7%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형기종료 5범(59.1%), 가석방 3범(15.0%), 가출소 2·3범(100.0%), 사면 4범(100.0%)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표 5-18>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2,121	179	3,072	5,028	6,840	5,369	1,633
	재복역인원	5,471	63	868	1,267	1,831	1,214	228
	재복역률	24.7	35.2	28.3	25.2	26.8	22.6	14.0
형기종료	출소인원	15,888	140	1,832	3,797	5,062	3,904	1,153
	재복역인원	5,057	43	718	1,198	1,730	1,153	215
	재복역률	31.8	30.7	39.2	31.6	34.2	29.5	18.6
가석방	출소인원	6,202	39	1,240	1,225	1,766	1,456	476
	재복역인원	406	20	150	69	98	57	12
	재복역률	6.5	51.3	12.1	5.6	5.5	3.9	2.5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8	-	-	2	9	7	-
	재복역인원	7	-	-	-	3	4	-
	재복역률	38.9	-	-	-	33.3	57.1	-
사면	출소인원	13	-	-	4	3	2	4
	재복역인원	1	-	-	-	-	-	1
	재복역률	7.7	-	-	-	-	-	25.0

※ 연령별 재복역률
20세 이내 35.2%, 20대 28.3%, 30대 25.2%, 40대 26.8%, 50대 22.6%, 60대 이상 14.0%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형기종료(39.2%)는 20대, 가석방(51.3%)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표 5-19>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2,121	655	885	1,148	2,628	3,746	6,721	1,554	1,839	2,945
	재복역인원	5,471	53	191	215	866	1,725	1,006	733	297	385
	재복역률	24.7	8.1	21.6	18.7	33.0	46.0	15.0	47.2	16.2	13.1
형기종료	출소인원	15,888	231	599	1,147	2,259	3,287	3,865	1,549	1,223	1,728
	재복역인원	5,057	33	157	214	829	1,594	887	732	243	368
	재복역률	31.8	14.3	26.2	18.7	36.7	48.5	22.9	47.3	19.9	21.3
가석방	출소인원	6,202	417	272	-	368	456	2,854	5	615	1,215
	재복역인원	406	20	31	-	36	128	119	1	54	17
	재복역률	6.5	4.8	11.4	-	9.8	28.1	4.2	20.0	8.8	1.4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8	-	14	1	1	2	-	-	-	-
	재복역인원	7	-	3	1	1	2	-	-	-	-
	재복역률	38.9	-	21.4	100.0	100.0	100.0	-	-	-	-
사면	출소인원	13	7	-	-	-	1	2	-	1	2
	재복역인원	1	-	-	-	-	1	-	-	-	-
	재복역률	7.7	-	-	-	-	100.0	-	-	-	-

※ 죄명별 재복역률
살인(8.1%), 강도(21.6%), 성폭력(18.7%), 폭력(33.0%), 절도(46.0%), 사기·횡령(15.0%), 마약류(47.2%), 과실범(16.2%)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8.5%) 및 가석방(28.1%)은 절도가, 가출소는 성폭력(100.0%)·폭력(100.0%)·절도(100.0%)가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표 5-20>

출소사유	구 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 소 인 원	22,121	831	6,900	9,962	2,473	640	419	403	213	280
	재복역인원	5,471	168	1,674	2,616	638	121	82	68	40	64
	재 복 역 률	24.7	20.2	24.3	26.3	25.8	18.9	19.6	16.9	18.8	22.9
형 기 종 료	출 소 인 원	15,888	818	5,579	6,473	1,728	429	267	243	137	214
	재복역인원	5,057	168	1,596	2,397	570	101	72	58	35	60
	재 복 역 률	31.8	20.5	28.6	37.0	33.0	23.5	27.0	23.9	25.5	28.0
가석방	출 소 인 원	6,202	13	1,321	3,485	735	205	149	157	73	64
	재복역인원	406	-	78	217	66	19	8	9	5	4
	재 복 역 률	6.5	-	5.9	6.2	9.0	9.3	5.4	5.7	6.8	6.3
감 호 기 간 종 료	출 소 인 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 복 역 률	-	-	-	-	-	-	-	-	-	-
가출소	출 소 인 원	18	-	-	2	4	4	3	3	1	1
	재복역인원	7	-	-	2	1	1	2	1	-	-
	재 복 역 률	38.9	-	-	100.0	25.0	25.0	66.7	33.3	-	-
사 면	출 소 인 원	13	-	-	2	6	2	-	-	2	1
	재복역인원	1	-	-	-	1	-	-	-	-	-
	재 복 역 률	7.7	-	-	-	16.7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6월 미만(20.2%), 6월 이상 1년 미만(24.3%), 1년 이상 3년 미만(26.3%), 3년 이상 5년 미만(25.8%), 5년 이상 7년 미만(18.9%), 7년 이상 10년 미만(19.6%), 10년 이상 15년 미만(16.9%), 15년 이상 20년 미만(18.8%), 20년 이상(22.9%)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7.0%, 가석방은 5년이상 7년미만이 9.3%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 검정고시 교육인원 <표 5-21>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43	890	874	873	761	785	720	609	556	616
고졸 검정	499	465	536	569	485	510	498	428	411	444
중졸 검정	311	305	260	238	207	228	188	147	126	150
초졸 검정	233	120	78	66	69	47	34	34	19	22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5-22>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97	572	481	514	558	571	565	575	533	508
고졸 검정	355	330	291	325	390	370	390	394	383	371
중졸 검정	209	205	169	162	130	187	163	147	133	125
초졸 검정	33	37	21	27	38	14	12	34	17	12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표 5-23>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교육인원	21	40	40	40	30	30	30	30	30	21
	졸업인원	8	6	13	10	5	9	6	7	6	5
천안	교육인원	21	폐지	-	-	-	-	-	-	-	-
	졸업인원	8	-	-	-	-	-	-	-	-	-
김천	교육인원	-	40	40	40	30	30	30	30	30	21
	졸업인원	-	6	13	10	5	9	6	7	6	5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귀휴 인원 <표 5-24>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1,084	1,000	1,157	1,165	1,209	1,282	1,356	999	1,084	1,142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표 5-25>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4,386	2,994	5,108	4,323	4,099	4,245	4,417	4,322	4,991	5,080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표 5-26>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11,503	6,807	11,078	11,566	11,681	11,578	11,855	12,755	14,393	11,095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표 5-27>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782	795	1,223	1,120	1,177	1,261	1,338	1,361	1,431	1,583

다. 교정위원 활동

○ 교정위원 현황 <표 5-28>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656	4,574	5,220	5,069	4,915	4,833	4,688	4,706	4,765	4,830
교화위원	2,313	2,255	2,232	2,070	1,971	1,915	1,778	1,804	1,790	1,845
종교위원	1,910	1,925	1,963	1,962	1,942	1,967	1,924	1,895	1,931	1,910
교육위원	263	241	248	225	218	211	246	275	315	329
의료위원	170	153	140	123	112	108	98	102	98	97
취업위원	-	-	637	689	672	632	642	630	631	649

○ 교화위원 활동실적 <표 5-29>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담(명)	2,317	1,896	1,454	1,728	1,615	1,591	2,390	1,629	1,734	1,704
교화강연(회)	99	61	15	13	6	3	8	11	15	5
자매결연(명)	661	549	778	719	186	363	515	519	341	204
수용생활 지원(명)	3,114	4,439	4,747	4,739	4,440	4,619	6,992	5,867	6,726	4,434

○ 종교위원 활동실적 <표 5-30>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리지도(명)	48,150	38,201	44,678	37,072	39,667	41,207	37,790	29,560	36,876	33,215
자매결연(명)	6,962	13,428	12,466	9,652	2,920	3,989	3,448	3,828	3,333	7,158
수용생활 지원(명)	24,939	25,309	24,891	26,093	27,305	24,780	22,336	22,170	23,962	24,725
교화도서 기증(권)	994	9,028	3,429	2,361	1,782	401	670	346	3,441	164

○ 교육위원 활동실적 <표 5-31>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훈련 지도(명)	20,213	12,905	8,777	8,783	7,665	6,761	7,668	11,401	14,162	18,003
자매결연(명)	30	5	6	7	4	8	29	18	13	44
수용생활 지원(명)	161	720	400	110	1	-	11	36	187	67
교화도서 기증(권)	97	514	97	89	276	-	20	100	43	249

○ 의료위원 활동실적 <표 5-32>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지원(명)	8,787	6,757	2,754	6,029	4,970	4,762	4,731	10,716	12,310	11,566
자매결연(명)	-	2	1	-	3	2	5	9	3	-
수용생활 지원(명)	45	33	29	38	19	-	-	45	115	68
교화도서 기증(권)	-	-	-	33	-	-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취업 인원 <표 5-33>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형자 총인원		31,506	32,575	31,975	31,032	31,620	32,076	32,867	34,425	36,082	36,433
취업 불가능인원		7,577	8,562	8,575	8,469	9,053	9,140	9,085	10,458	12,154	11,506
취업가능인원	계	23,929	24,013	23,400	22,563	22,567	22,936	23,782	23,967	23,928	24,927
	취업 인원	19,471	19,441	18,892	19,379	18,826	18,991	21,471	22,090	22,100	23,027
	비율 (%)	81	81	81	86	83	83	90	92	92	92
	불취업 인원	4,458	4,572	4,508	3,184	3,741	3,945	2,311	1,877	1,828	1,900

※ 감호작업은 제외

○ 생산실적 <표 5-34>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33,351	31,600	31,800	32,000	32,913	33,789	37,699	42,082	55,541	57,033
실적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실적/계획(%)	94.1	106.7	103.9	122.6	115.6	124.6	125.3	132.6	112.1	115.9
실적 증가율(%)	△8.5	7.4	△2.0	18.7	△3.0	10.7	12.2	18.1	11.6	6.2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표 5-35>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실 적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47,246	55,792	62,239	66,127
직영작업	실 적	19,938	23,187	21,284	26,496	22,951	22,873	24,801	30,228	34,998	38,141
	구성비 (%)	63.5	68.8	64.4	67.6	60.3	54.3	52.5	54.2	56.2	57.7
위탁작업	실 적	4,957	4,811	5,455	6,170	7,907	11,548	15,026	17,448	18,763	19,312
	구성비 (%)	15.8	14.3	16.5	15.7	20.8	27.4	31.8	31.3	30.1	29.2
노무작업	실 적	5,933	5,560	6,154	6,256	7,004	7,020	7,217	7,914	8,330	8,456
	구성비 (%)	10.9	16.5	18.6	16.0	18.4	16.7	15.3	14.2	13.4	12.8
잡수입	실 적	571	155	160	298	176	658	202	202	148	218
	구성비 (%)	1.8	0.5	0.5	0.8	0.5	1.6	0.4	0.4	0.2	0.3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표 5-36>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총액		31,399	33,713	33,053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관수용품	계	17,645	21,287	19,146	23,857	20,320	19,354	22,504	28,503	31,723	35,343
	교 도 소	16,663	19,960	18,492	23,081	19,513	18,757	20,535	25,971	27,479	31,060
	법무부산하	366	367	145	153	346	296	311	205	994	74
	부 외 처	616	960	509	623	461	301	1,658	2,327	3,250	4,209
일반판매		13,754	12,426	13,907	15,363	17,718	22,745	24,743	27,289	30,516	30,784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표 5-37>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급액(천 원)	11,111,119	10,800,307	10,174,852	10,550,869	11,966,506	14,901,986	17,798,954	20,231,129	20,853,628	19,882,229
지 급 연인원(명)	5,125,320	5,168,684	4,745,771	4,958,200	4,965,893	5,022,670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1인당 1일평균(원)	2,168	2,090	2,144	2,128	2,410	2,967	4,013	3,591	3,713	3,385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표 5-38>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급인원	5 (1)	6	8	6	5 (1)	3	-	5	5 (2)	2
지 급 액	46,768 (30,506)	42,694	69,627	60,804	73,735 (42,709)	11,346	-	98,729	96,308 (90,034)	20,040

※ ( )는 조위금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표 5-39>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 급 액	250,211	329,100	423,956	549,227	599,907	700,846	630,667	687,043	449,740	405,258
지급인원	67	80	90	97	122	117	98	92	64	32
1인당 평균 지급액	3,734	4,114	4,711	5,662	4,917	5,990	6,435	7,468	7,027	12,664

나. 직업훈련

○ 직업훈련 실시인원 <표 5-4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470	3,537	3,725	3,825	4,129	4,852	6,276	6,484	6,644	6,727
양성·향상훈련	2,536	2,783	3,164	3,076	3,386	3,336	3,811	3,758	3,913	3,719
숙련훈련	490	430	327	369	350	249	397	360	364	457
일반훈련	444	324	234	380	393	1,267	2,068	2,366	2,367	2,551

○ 기능자격 취득인원 <표 5-41>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693	2,740	2,856	2,803	2,813	2,953	3,278	3,264	3,316	3,443
산업기사 이상	276	155	281	294	256	173	80	55	61	92
기 능 사	2,417	2,585	2,575	2,509	2,557	2,780	3,198	3,209	3,255	3,351

제 6 절 출입국 · 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표 6-1>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계	38,203,620	35,206,504	42,988,101	45,422,910	50,322,102
	승 객	34,326,585	31,431,486	38,863,373	40,976,012	45,744,545
	승무원	3,877,035	3,775,018	4,124,728	4,446,898	4,577,557
국민	소 계	24,677,484	19,586,995	25,585,627	26,064,463	28,136,628
	승 객	22,608,575	17,576,130	23,419,302	23,759,315	25,557,744
	승무원	2,068,909	2,010,865	2,166,325	2,305,148	2,578,884
외국인	소 계	13,526,136	15,619,509	17,402,474	19,358,447	22,185,474
	승 객	11,718,010	13,855,356	15,444,071	17,216,697	20,186,801
	승무원	1,808,126	1,764,153	1,958,403	2,141,750	1,998,673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승 객	48,888,699	55,316,870	60,054,078	73,916,823	75,134,915
	승무원	6,077,530	6,335,288	6,318,830	6,071,151	5,272,787
국민	소 계	30,352,303	32,722,368	39,111,816	45,313,898	53,445,030
	승 객	27,646,533	29,971,333	36,228,736	42,197,580	50,130,062
	승무원	2,705,770	2,751,035	2,883,080	3,116,318	3,314,968
외국인	소 계	24,613,926	28,929,790	27,261,092	34,674,076	26,962,672
	승 객	21,242,166	25,345,537	23,825,342	31,719,243	25,004,853
	승무원	3,371,760	3,584,253	3,435,750	2,954,833	1,957,819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2>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5,897,517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중 국	1,015,699	1,212,305	1,723,849	2,045,380	2,731,121
일 본	2,358,333	3,032,376	3,004,066	3,270,290	3,497,525
미 국	644,012	647,566	693,892	694,990	733,984
타 이 완	352,071	411,591	438,041	457,680	570,442
홍 콩	150,423	206,918	221,121	272,600	352,019
필 리 핀	79,266	86,477	94,897	113,552	126,566
타 이	118,877	156,167	219,231	262,703	334,502
말 레 이 시 아	67,326	66,148	98,807	136,531	161,970
베 트 남	72,020	76,537	92,810	106,360	110,250
인 도 네 시 아	49,768	48,891	61,592	85,351	110,209
러 시 아	68,079	65,180	77,024	86,129	104,273
싱 가 포 르	77,074	84,351	100,526	110,610	138,813
인 도	43,140	40,877	49,762	52,009	56,329
캐 나 다	95,993	102,145	112,496	112,417	119,943
오스트레일리아	91,801	94,262	105,304	114,844	121,795
영 국	82,093	84,213	90,331	97,817	104,724
독 일	76,686	80,525	81,396	80,142	86,327
프 랑 스	52,577	53,721	58,531	60,209	63,555
몽 골	43,113	38,192	41,889	48,632	61,771
우 즈 베 키 스 탄	22,165	15,763	22,385	29,910	42,133
뉴 질 랜 드	23,809	23,074	25,792	25,504	28,239
기 타	313,192	314,904	360,903	402,843	465,460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중 국	3,923,190	5,663,482	6,154,730	8,268,262	4,393,936
일 본	2,715,451	2,254,307	1,859,190	2,321,842	2,337,588
미 국	743,017	798,858	859,361	960,682	969,277
타 이 완	566,200	666,805	551,362	865,948	957,836
홍 콩	391,340	550,268	524,116	651,639	659,182
필 리 핀	133,595	162,615	412,197	566,692	459,588
타 이	313,347	412,217	375,021	474,262	503,777
말 레 이 시 아	187,322	227,434	223,782	311,686	308,152
베 트 남	114,357	141,827	199,323	299,084	380,929
인 도 네 시 아	119,179	132,547	194,472	296,377	231,908
러 시 아	119,691	164,628	190,934	237,854	275,779
싱 가 포 르	157,696	185,712	160,402	221,844	216,574
인 도	60,675	68,097	154,294	196,773	124,458
캐 나 다	122,330	135,163	147,715	178,023	178,761
오스트레일리아	114,106	129,504	134,357	153,125	151,583
영 국	106,783	113,786	124,833	136,900	128,046
독 일	86,759	89,004	101,251	111,413	111,077
프 랑 스	67,836	73,846	85,093	93,039	94,013
몽 골	65,446	63,584	81,201	82,780	108,139
우즈베키스탄	44,326	48,777	59,453	71,299	81,711
뉴 질 랜 드	27,065	29,119	28,806	32,038	33,526
기 타	498,623	570,439	737,808	886,745	863,669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3>

항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5,897,517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인 천 공 항	4,231,876	4,874,647	5,360,400	5,810,937	6,694,670
제 주 공 항	278,252	325,048	372,620	374,352	610,609
김 해 공 항	405,783	442,303	462,688	578,389	706,527
김 포 공 항	474,293	747,496	867,397	1,097,356	1,200,431
부 산 항	206,208	217,310	250,111	236,334	259,977
인 천 항	191,630	218,857	296,826	364,524	364,662
청 주 공 항	10,014	7,829	23,292	20,577	37,470
평 택 항	21,878	28,444	42,008	71,655	113,328
대 구 공 항	13,932	9,455	8,700	12,039	9,962
군 산 항	9,571	22,479	24,889	28,568	28,877
감 천 항	7,347	7,246	7,509	7,327	9,384
울 산 항	7,984	6,717	6,772	8,120	7,928
광 양 항	1,726	1,606	2,164	3,431	2,452
오 산 공 항	7,914	8,171	17,037	21,388	26,380
무 안 공 항	3,425	2,771	3,490	4,135	4,591
양 양 공 항	679	0	2,437	2,253	11,320
동 해 항	983	3,952	7,581	11,017	9,962
여 수 항	3,721	3,933	4,388	4,774	12,376
창 원 항	1,065	1,300	1,319	1,879	1,658
서 산 항	1,534	1,751	2,153	2,309	2,216
속 초 항	6,682	6,015	4,138	56	526
기 타	11,020	4,853	6,726	5,083	6,644

항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인천공항	6,791,570	7,910,157	7,778,178	10,010,950	9,288,559
제주공항	1,035,720	1,188,019	958,601	1,327,513	555,387
김해공항	768,412	826,736	789,992	1,059,397	1,062,683
김포공항	1,080,350	1,056,803	943,451	1,029,912	922,837
부산항	244,125	223,248	460,625	850,990	412,465
인천항	416,320	465,523	543,334	621,693	332,305
청주공항	70,967	190,906	194,255	237,282	61,021
평택항	96,698	141,425	170,805	179,051	211,138
대구공항	11,961	40,523	51,145	103,339	68,730
군산항	30,859	35,035	47,844	65,265	76,979
감천항	9,800	10,070	56,558	57,818	57,964
울산항	8,593	8,429	48,852	48,071	46,328
광양항	9,651	9,622	29,080	44,614	38,986
오산공항	24,943	29,920	36,431	34,994	32,599
무안공항	23,639	32,019	37,727	34,295	4,074
양양공항	19,231	86,785	47,005	34,202	2,446
동해항	8,329	8,320	21,234	27,978	31,066
여수항	10,809	4,649	20,337	26,904	26,031
창원항	1,659	2,380	13,526	13,191	13,034
서산항	2,186	2,380	6,433	6,590	7,782
속초항	7,452	8,879	1,386	1,101	11,858
기타	5,060	400,191	1,102,902	1,603,157	305,237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4>

연도 / 체류자격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5,897,517	6,942,183	7,774,645	8,666,503	10,121,950
사증면제(B-1)	610,756	657,800	803,617	909,930	1,066,334
관광통과(B-2)	3,526,403	4,409,336	4,601,828	4,969,884	5,524,120
단기상용(C-2)	264,715	226,416	224,574	182,404	22
단기종합(C-3)	503,599	617,044	959,374	1,324,640	2,102,656
유 학(D-2)	64,930	85,439	106,961	112,291	111,219
기술연수(D-3)	3,080	1,371	2,274	2,274	1,951
일반연수(D-4)	34,023	37,573	30,938	37,432	34,413
종 교(D-6)	2,485	2,254	2,346	2,190	4,083
주 재(D-7)	8,225	7,537	7,930	8,469	8,908
기업투자(D-8)	41,924	36,471	37,966	38,102	39,584
무역경영(D-9)	10,545	11,729	16,848	18,191	17,456
교 수(E-1)	4,819	6,184	7,454	7,824	8,181
회화지도(E-2)	38,822	45,006	47,405	44,108	40,848
연 구(E-3)	6,519	6,456	7,829	8,023	8,525
예술흥행(E-6)	4,845	4,577	4,183	3,655	4,162
특정활동(E-7)	21,222	21,022	24,525	29,143	35,907
비전문취업(E-9)	101,272	85,654	82,099	106,442	99,140
선원취업(E-10)	5,144	5,947	7,084	8,900	7,173
방문동거(F-1)	29,391	29,787	34,595	29,597	38,883
거 주(F-2)	113,643	114,463	122,063	117,377	19,099
동 반(F-3)	24,356	25,082	26,459	27,671	31,704
재외동포(F-4)	70,030	77,948	129,142	190,212	227,836
영 주(F-5)	28,294	29,257	41,561	58,805	70,890
기 타	378,475	397,830	445,590	428,939	618,856

체류자격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사증면제(B-1)	1,090,907	1,426,293	1,249,506	1,556,536	1,634,095
관광통과(B-2)	5,040,354	5,335,626	4,632,593	5,833,225	5,269,825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2,728,573	3,725,073	3,635,898	5,026,435	3,319,579
유 학(D-2)	114,818	117,836	140,160	169,715	212,295
기술연수(D-3)	1,806	1,663	1,934	1,678	1,723
일반연수(D-4)	37,282	45,624	62,550	81,033	90,357
종 교(D-6)	2,362	2,323	2,292	2,348	2,428
주 재(D-7)	9,234	9,103	8,991	9,160	8,548
기업투자(D-8)	39,859	40,550	40,795	42,007	41,984
무역경영(D-9)	32,326	38,867	33,958	26,302	18,288
교 수(E-1)	8,186	7,323	7,555	7,550	7,491
회화지도(E-2)	38,572	34,567	32,299	32,158	30,922
연 구(E-3)	9,223	9,670	9,810	9,494	9,618
예술흥행(E-6)	4,368	4,710	4,596	3,996	3,765
특정활동(E-7)	36,904	39,260	43,300	46,324	47,528
비전문취업(E-9)	105,738	115,294	123,433	134,764	140,072
선원취업(E-10)	8,281	9,574	9,431	9,877	10,720
방문동거(F-1)	41,740	41,043	49,310	69,742	82,857
거 주(F-2)	24,948	30,189	35,728	43,041	48,924
동 반(F-3)	36,544	40,173	43,222	43,684	40,048
재외동포(F-4)	280,130	349,137	405,948	468,336	515,587
영 주(F-5)	87,497	101,184	118,553	134,138	151,115
기 타	898,682	1,156,937	2,667,839	3,666,764	1,881,740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5>

국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중 국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베 트 남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9,738
미 국	134,711	136,663	138,660	140,222	143,568
타 이	55,110	94,314	93,348	100,860	153,259
필 리 핀	47,514	53,538	54,977	56,980	58,480
우 즈 베 키 스 탄	38,515	43,852	47,103	54,490	62,870
일 본	56,081	49,152	47,909	51,297	53,670
인 도 네 시 아	41,599	46,945	46,538	47,606	45,328
캄 보 디 아	31,986	38,395	43,209	45,832	47,105
몽 골	24,175	24,561	30,527	35,206	45,744
네 팔	22,015	26,790	30,185	34,108	36,627
타 이 완	27,698	31,200	30,002	34,003	36,168
러 시 아	12,804	14,425	19,384	32,372	44,851
스 리 랑 카	23,383	26,057	26,678	27,650	26,916
캐 나 다	23,655	24,353	25,177	26,107	25,692
미 얀 마	12,678	15,921	19,209	22,455	24,902
방 글 라 데 시	13,600	14,644	14,849	15,482	16,066
호 주	12,203	12,468	12,303	13,870	13,008
파 키 스 탄	10,423	11,209	11,987	12,639	12,697
인 도	9,174	10,196	10,414	10,515	11,244
영 국	7,998	7,398	7,275	7,180	6,727
기 타	72,530	86,910	97,156	114,576	127,764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6>

연도 / 체류자격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사증면제(B-1)	47,890	93,619	95,427	112,323	177,629
관광통과(B-2)	87,908	96,113	104,287	118,566	121,725
단기방문(C-3)	131,951	146,357	154,105	190,443	199,518
단기취업(C-4)	759	593	685	594	1,719
유 학(D-2)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기술연수(D-3)	3,648	3,507	3,497	2,950	2,705
일반연수(D-4)	23,005	27,000	31,810	41,592	49,939
종 교(D-6)	1,770	1,855	1,727	1,719	1,723
상사주재(D-7)	1,659	1,593	1,492	1,631	1,340
기업투자(D-8)	6,053	6,026	5,924	5,999	5,939
무역경영(D-9)	8,272	8,856	7,236	5,697	2,982
교 수(E-1)	2,637	2,664	2,612	2,511	2,427
회화지도(E-2)	20,030	17,949	16,144	15,450	14,352
연 구(E-3)	2,997	3,195	3,145	3,174	3,214
예술흥행(E-6)	4,940	5,162	4,924	4,302	3,704
특정활동(E-7)	18,213	19,109	20,299	21,498	21,206
비전문취업(E-9)	246,695	270,569	276,042	279,187	279,127
선원취업(E-10)	12,163	14,403	15,138	15,312	16,069
방문동거(F-1)	60,927	71,203	85,759	103,826	111,449
거 주(F-2)	39,704	37,504	38,881	39,681	40,594
동 반(F-3)	20,150	21,809	22,652	22,828	22,457
재외동포(F-4)	235,953	289,427	328,187	372,533	415,121
영 주(F-5)	100,171	112,742	123,255	130,237	136,334
방문취업(H-2)	240,178	282,670	285,342	254,950	238,880
기 타	197,895	202,436	204,615	226,398	223,470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7>

연도 / 사무소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서 울	105,767	115,235	118,466	116,280	113,921
서 울 남 부	113,922	127,086	130,208	126,799	121,990
부 산	58,069	63,060	66,351	47,788	48,752
인 천	80,807	90,072	94,630	97,343	102,281
수 원	126,717	144,892	153,856	119,924	123,675
제 주	10,864	14,204	16,960	19,593	21,689
대 구	40,554	44,165	46,183	47,524	48,647
대 전	29,396	31,396	33,696	35,358	36,771
여 수	4,876	5,270	5,734	5,897	6,004
양 주	32,815	34,854	35,473	36,416	36,774
광 주	23,579	26,006	27,635	29,724	31,564
창 원	28,189	30,725	31,728	31,279	30,815
춘 천	9,059	9,854	10,138	10,561	11,146
청 주	26,214	29,348	31,290	34,169	35,357
전 주	18,416	19,864	20,661	21,830	23,322
울 산	29,637	34,280	35,380	32,933	30,701
세 종 로 (출)	53,931	56,466	59,947	63,173	63,312
안 산 (출)	75,301	83,738	87,233	85,796	85,764
구 미 (출)	12,612	13,463	13,360	13,287	13,127
포 항 (출)	6,425	6,985	7,166	7,557	7,844
천 안 (출)	29,109	31,637	32,239	34,530	37,231
서 산 (출)	9,959	11,264	6,925	7,394	7,676
고 양 (출)	19,811	21,037	22,024	22,524	22,929
목 포 (출)	10,272	12,469	14,122	14,452	13,386
거 제 (출)	11,272	13,724	15,051	14,178	9,089
군 산 (출)	4,651	5,222	5,533	5,490	5,266
평 택 (출)	-	-	-	37,829	40,424
김 해 (출)	-	-	-	20,761	21,123
기 타	13,699	15,215	21,098	21,288	21,182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8>

지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경 기	314,715	352,166	369,665	373,923	381,628
서 울	244,410	266,360	274,957	273,441	267,153
경 남	69,126	77,778	82,316	81,021	75,136
충 남	52,399	57,316	60,064	64,098	68,280
인 천	50,382	55,323	57,669	59,103	62,596
경 북	43,499	47,805	49,765	51,351	53,364
부 산	35,943	38,315	39,991	41,840	42,837
충 북	27,481	30,671	32,637	35,499	36,656
전 남	24,544	28,254	30,566	31,750	31,221
전 북	23,067	25,086	26,194	27,320	28,588
대 구	23,302	25,203	26,141	26,493	26,442
울 산	22,427	25,885	26,183	23,457	20,513
광 주	15,557	17,064	18,455	19,920	21,279
제 주	10,864	14,204	16,960	19,593	21,689
대 전	14,798	15,658	16,416	17,035	17,431
강 원	13,409	14,443	15,108	15,833	16,949

※ 충남(64,098명)은 세종시(3,745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표 6-9>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602,226	704,536	754,427	775,715	841,308
중 국	512,120	606,964	647,717	652,028	702,932
미 국	45,253	46,426	46,737	46,050	45,177
캐 나 다	13,586	14,598	15,397	15,959	15,947
우 즈 베 키 스 탄	14,385	17,637	20,653	26,385	31,081
러 시 아	5,051	5,524	8,590	15,555	21,264
오 스 트 레 일 리 아	3,955	4,288	4,521	4,609	4,617
뉴 질 랜 드	1,972	2,155	2,310	2,387	2,395
카 자 흐 스 탄	1,494	1,869	2,504	5,236	9,223
독 일	875	916	920	908	854
일 본	816	802	812	817	827
기 타	2,719	3,357	4,266	5,781	6,991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6-10>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유 학(D-2)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한국어연수(D-41)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외국어연수(D-47)	-	15	6	14	4
증감률(전년대비,%)	(-3.4%)	(5.6%)	(11.5%)	(20.3%)	(16.5%)

국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중 국	54,235	55,008	59,192	66,614	67,133
베 트 남	3,760	5,177	7,445	15,193	27,563
몽 골	4,166	3,735	4,847	6,000	7,784
우즈베키스탄	771	1,064	1,442	2,386	4,793
일 본	2,184	2,147	2,213	2,384	2,464
인도네시아	962	1,011	1,316	1,365	1,418
파키스탄	879	1,052	1,164	1,266	1,461
인 도	870	1,011	1,059	1,151	1,406
말레이시아	714	860	961	1,099	1,093
미 국	1,001	1,081	1,119	1,062	1,119
타 이 완	733	890	911	1,030	1,211
방글라데시	570	620	677	824	1,016
러 시 아	583	725	702	766	824
네 팔	581	616	690	722	1,078
필 리 핀	583	590	660	672	666
기 타	9,255	10,823	11,959	13,393	14,058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6-11>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 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증감률 (전년대비, %)	(1.6%)	(0.1%)	(0.4%)	(0.5%)	(2.0%)

국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중 국	62,400	60,663	58,788	56,930	57,644
베 트 남	39,854	39,725	40,847	41,803	42,205
일 본	12,220	12,603	12,861	13,110	13,400
필 리 핀	10,383	11,052	11,367	11,606	11,783
캄 보 디 아	4,650	4,618	4,555	4,473	4,459
미 국	2,845	3,006	3,192	3,354	3,471
타 이	2,643	2,675	2,821	3,182	3,671
몽 골	2,368	2,394	2,384	2,381	2,396
우 즈 베 키 스 탄	2,141	2,219	2,244	2,302	2,367
캐 나 다	1,268	1,300	1,295	1,318	1,345
러 시 아	1,311	1,308	1,305	1,182	1,367
네 팔	1,112	1,138	1,081	1,032	974
파 키 스 탄	847	889	915	936	937
타 이 완	645	740	823	929	1,072
영 국	698	742	792	842	911
인 도 네 시 아	555	616	653	687	748
방 글 라 데 시	353	352	355	369	369
기 타	4,572	4,954	5,330	5,938	6,338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표 6-12>

국가 \ 연도	허가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귀화	11,270	11,314	10,924	10,108	10,086
	회복	2,686	2,886	2,610	2,303	2,775
중국	귀화	5,380	6,650	6,477	5,126	4,781
	회복	421	402	193	113	245
베트남	귀화	3,952	2,977	2,722	3,289	3,742
	회복	82	67	47	56	57
필리핀	귀화	524	392	280	337	359
	회복	8	8	6	3	7
몽골	귀화	112	120	101	107	93
	회복	11	13	10	7	17
우즈베키스탄	귀화	90	80	81	62	48
	회복	20	16	28	19	27
일본	귀화	40	30	44	35	29
	회복	44	52	49	31	38
타이	귀화	79	71	45	41	52
	회복	12	13	5	5	4
파키스탄	귀화	33	39	24	33	51
	회복	0	1	0	0	10
기타	귀화	1,060	955	1,150	1,078	931
	회복	2,088	2,314	2,272	2,069	2,370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표 6-13>

(단위 : 건)

구분 \ 연도	합계	'94~'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난민 신청	32,733	809	278	717	364	324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1	9,942
심사 결정	19,438	204	138	108	129	1,086	248	339	649	586	2,377	2,134	5,394	6,046
난민 인정	792	41	11	13	36	70	45	42	60	57	93	105	98	121
인도적 체류허가	1,474	27	13	9	14	22	35	20	31	6	539	194	246	318

※ 2010년 난민인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 2명, 2016년 난민인정 취소됨
※ 2014년 난민인정을 받은 이집트인 1명, 2017년 난민인정 취소됨

자 료

Ⅰ. 직 제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Ⅲ. 장관 연설문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Ⅵ. 인 사
Ⅶ. 국외훈련·출장
Ⅷ. 국제교류 현황
Ⅸ. 상 훈
Ⅹ. 위원회 현황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목 차

Ⅰ. 직 제 ····· 477

1. 직제 연혁 ····· 477
2. 조직도 ····· 511
3. 정원 변동표 ····· 512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 516

1. 훈 령 ····· 516
2. 예 규 ····· 522
3. 주요지시 ····· 527

Ⅲ. 장관 연설문 ····· 533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 626

1. 법무부장관 ····· 626
2. 검찰총장 ····· 628
3. 법무부차관 ····· 629
4. 대검찰청 차장검사 ····· 631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632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640

1. 본 부 ····· 640
2. 법무연수원 ····· 644
3. 검 찰 청 ····· 645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679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682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 683
7.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 686

Ⅵ. 인 사 ····· 687

Ⅶ. 국외훈련 · 출장 ····· 688

Ⅷ. 국제교류 현황 ····· 689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 689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 692

Ⅸ. 상 훈 ····· 699

1. 총 괄 ····· 699
2. 훈장 · 포장 · 표창자 명단 ····· 700

Ⅹ. 위원회 현황 ····· 711

1. 총 괄 ····· 711
2. 위원회 개요 ····· 711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717

Ⅰ. 직 제

1. 직제 연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 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 및 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 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 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3과 신설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2001. 4.24.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 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2001.10.10.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2002. 3.30.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 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 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 (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 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 (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 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 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25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1, 7급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2015. 1. 6.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26	2015. 2.26.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 (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2015. 2.27.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27	2015. 5.26.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2015. 5.28.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2016. 5.10.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016. 9. 5.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 → 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6.10.11.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2016.12.30.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35	2017. 2.28.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2017. 5.24.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138	2017. 6.20.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 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자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40	2017.10.2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41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 (23명 → 45명)
143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 (2017. 12. 31. →2019. 12. 31., 2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2. 조직도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5
	연수원	2
	보호관찰기관	63
	치료감호기관	2
	소년보호기관	27
	교정기관	56
	출입국관리기관	46
	인권기록보존소	1
계	263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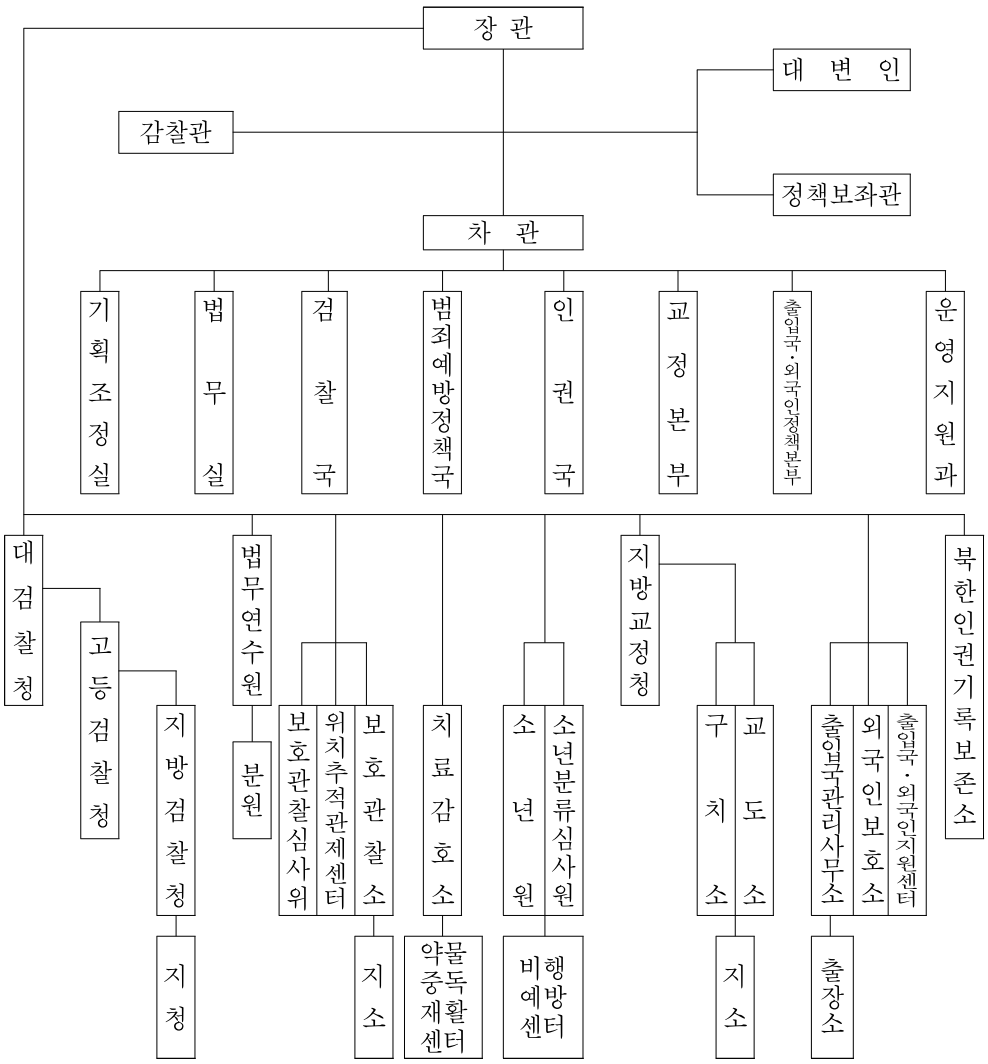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계	4,573	4,621 (+148)				4,556 (-65)		4,526 (-30)	4,553 (-27)	4,080 (-473)	3,859 (-221)		3,952 (+93)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855 (+178)
본부		148				83 (-65)		53 (-30)		68 (+15)				170 (+102)	177 (+7)	199 (+22)	189 (-10)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사	163								190 (+27)						220 (+30)		243 (+23)		300 (+57)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 (+3)	904 (+135)	903 (-3)	996 (+93)	1,089 (+93)			1,273 (+184)	1,338 (+65)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 형무소 →				2,914 (-458)	2,790 (-124)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229 (+140)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년원	126									96 (-30)			136 (+40)	164 (+28)		181 (+17)		250 (+69)		363 (+113)	397 (+34)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7 (-2)	59 (+12)	116 (+57)	118 (+1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 조선형무관학교 → 126									← 형무관학교	129 (-97)			138 (+9)			← 교도관학교 →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6,975 (+120)	7,568 (+59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29)	9,589 (+1,033)	9,938 (+349)	10,628 (+690)	10,959 (+331)	11,502 (+543)	13,210 (+1,708)	13,431 (+221)	13,820 (+130)	13,820 (+259)	13,967 (+147)	14,216 (+147)	15,216 (+961)	16,708 (+492)	19,126 (+2,418)
본 부	332 (+120)	256 (-67)	245 (-10)	248 (+3)	210 (-38)	291 (+81)	295 (+4)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44 (+15)			
검찰청 검 사		343 (+43)		360 (+17)	377 (+17)		417 (+40)		473 (+20)			467 (+30)	497 (+30)	527 (+30)	557 (+30)	587 (+30)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457 (+119)		1,473 (+16)	1,539 (+66)	1,565 (+26)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2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4 (-2)	8,092 (+18)			8,447 (+355)	8,574 (+127)	10,780 (+2,0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427 (+30)	425 (-2)		484 (+59)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749 (+54)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8)	166 (-10)	202 (+36)	218 (+16)		279 (+61)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81 (+50)	621 (+40)	783 (+162)	795 (+62)
법무연수원		137 (-1)			67 (-70)	75 (+8)		76 (+1)			80 (+4)	86 (+6)		90 (+4)			135 (+4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19,126 (+1,082)	21,211 (+1,003)	21,795 (+40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2,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8,986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11)	491 (-7)	479 (-12)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5 (+2)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354 (+61)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102 (+10)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62)		930 (+60)	929 (-1)	937 (-2)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702 (+83)
법무연수원			150 (+2)	149 (-1)	147 (-2)		156 (+9)		99 (-57)								105 (+6)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89 (+6)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검찰청	검 사	1,942 (+95)					2,032 (+90)	2,112 (+80)	2,182 (+70)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교도소(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법무연수원						107 (+2)	124 (+17)	131 (+7)	130 (-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2 (+12)	12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88	2017. 1. 2.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유치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저조와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체류관리과
1089	2017. 1. 4.	법무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회계·기금별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추가 ○ 기관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삭제 및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위치추적관제센터 추가	운영지원과
1090	2017. 1. 17.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 지급대상을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 ○ 공무원 수당 지급액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091	2017. 2. 3.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근거 규정 마련 -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	난민과
1092	2017. 2. 10.	법무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운영지원과
1093	2017. 2. 14.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리치료과 위임전결 사항의 신설 및 행정업무 변화 등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094	2017. 2. 27.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외부 전문가를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법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감사담당관실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95	2017. 2. 27.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상위 근거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명칭 반영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 신설	기획재정 담당관실
1096	2017. 3. 6.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회 규정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 신설	기획재정 담당관실
1097	2017. 3. 13.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검찰과
1098	2017. 3. 20.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 재외공관의 장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기관에 추가 ○ 판결문 등을 출입국자명부 수정 사유로 추가	이민 정보과
1099	2017. 3. 21.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 규정	○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1102	2017. 5. 1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2016.10.20.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기준 수정 ○ 훈령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소년과
1103	2017. 5. 12.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가족이 자비치료 요청 시, 진의와 부담능력,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요건 명시	소년과
1104	2017. 5. 1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통제실 설치 근거 조항 수정	소년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05	2017. 5. 12.	보호소년 처우지침	○ 수용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제동행·개방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 상 · 벌점 제도 운영 방식 개선 및 용어 명확화	소년과
1106	2017. 5. 1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 지침	○ 포승 사용 방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 ○ 감호대상 및 인원에 따른 감호책임자 직급 세분화	소년과
1107	2017. 5. 23.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칙	○ 국민 참여 플랫폼의 적극 활용 및 제안 실시불가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등 신설	혁신행정담당관실
1108	2017. 5. 29.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전문직위 6개 추가 신설 ○ 소속기관 전문직위 운영 근거 마련 ○ 교정 5급 공채 합격자의 최초 보직경로 변경 등	혁신행정담당관실
1109	2017. 6. 13.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2017. 2. 16.)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 추가, 외부강의 등의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 요령을 신설	감사담당관실
1110	2017. 6. 19.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패용지침을 상호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통합하여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은 폐지함	교정기획과
1113	2017. 6. 26.	법무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6. 1. 25.)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	감사담당관실
1114	2017. 8. 7.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규정	○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기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15	2017. 10. 1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근무 재외국민에 대하여도 카드발급 허용	출입국 심사과
1116	2017. 10. 18.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	○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기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변경 및 교육과정 명칭 오류 수정	소년과
1117	2017. 10. 18.	보호소년 교육지침	○ 사회복귀 교육기간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규정 정비	소년과
1118	2017. 10. 1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명칭과 근무복 등의 지급기준을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	소년과
1119	2017. 10. 18.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이발횟수, 두발 길이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을 삭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소년과
1120	2017. 10. 18.	보호소년 처우지침	○ 기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신설 및 폐지 반영, 수용구분 기준 정비	소년과
1121	2017. 10. 23.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적시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	국가 송무과
1122	2017. 10. 27.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세세한 일부 규정들을 변경 ○ 교정시설 보안청사 내 탈모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교도관 예절 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보완	교정 기획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23	2017. 11. 15.	계호업무지침	○ 구인 피의자(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가 일반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며 겪는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호업무지침에 구인 피의자 신체검사 방법 등을 신설	보안과
1124	2017. 11. 21.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의 직무범위, 위촉 시기, 직무교육, 봉사활동 마일리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치조직 운영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소년과
1125	2017. 11. 28.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규정	○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폐지	형사기획과
1126	2017. 11. 29.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설치기관·대상기관·관할 및 위원장을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함 ○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연구 결과물의 미제출 및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 함 ○ 부당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 참여제한 규정을 신설함	의료과
1127	2017. 12. 12.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기타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1128	2017. 12. 15.	참고인 등 비용지급 규칙	○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조문 내 '사회보호법' 및 '보호사안조사공무원'을 삭제하는 한편 일몰규정 신설	검찰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29	2017. 12. 20.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청주소년원의 특수인성교육 과정 이관에 따른 규정 정비 ○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면회와 관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항 명확하	소년과
1130	2017. 12. 20.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안양소년원에서 운영하던 중학교 과정을 청주소년원으로 이관하고 전주소년원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 ○ 청주소년원에서 운영하던 특수인성교육을 안양소년원으로 이관 ○ 청주소년원에 직업훈련과정 신설	소년과
1131	2017. 12. 20.	보호소년 교육지침	○ 전주소년원에 고등학교 과정 추가 신설	소년과
1132	2017. 12. 20.	보호소년 처우지침	○ 여성 단기·장기 보호소년의 권역별 분류처우 및 이송을 명확히 함 ○ 보호소년의 처분별 당연 이송허가 규정을 정비	소년과
1133	2017. 12. 29.	법무시설기준규칙	○ 업무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표준화 정립 ○ 보호시설 중 위치추적관제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신설에 관한 기준규칙 제정	시설 담당관실
1134	2017. 12. 29.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등급 정비 ○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대상 확대 ○ 훈령 재검토기한 설정(3년)	체류 관리과

2. 예 규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36	2017. 1. 2.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영에 관한 지침	○ 오염·감염 등에 쉽게 노출되는 수용자 환자복 1인당 지급 기준량을 변경(1벌 → 2벌) ○ 교정시설 취사장 취업자인 취사원의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강화를 위해 위생화 지급 근거를 신설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복지과
1137	2017. 1. 4.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가족사랑캠프 참여 및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등 추가 ○ 일반 가족접견, 사회적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위기수용자 및 가족긴급지원서비스 접견 등 분산되어 있는 가족접견실 이용 제도 정비	사회 복귀과
1138	2017. 1. 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심리치료과 「심리치료업무지침」에 규정되는 교육 내용 삭제 ○ 수용자 간 수수서신의 동봉 제한물품의 의미 명확화 ○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소지 범위 조정	사회 복귀과
1139	2017. 2. 3.	심리치료 업무 지침	○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 수용자 전문상담을 통한 안정적 수용관리	심리 치료과
1140	2017 3. 3.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운영 지침	○ 비상송수신시스템 관련내용 삭제, 땅파기 방지시설 설치 예외규정 신설, 재검토기한 재설정	보안과
1141	2017 3. 3.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 그룹 개방 관련규정 수정, 비밀번호 변경규정 신설, 재검토기한 재설정	보안과
1142	2017 3. 3.	교정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지침	○ 재검토기한 재설정	보안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43	2017 3. 3.	국가정보원 조사대상자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 재검토기한 재설정	보안과
1144	2017. 4. 7.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 상호부조회 회원 등 용어 정의 ○ 상호부조회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명확화 ○ 상호부조의 대상 확대	교정기획과
1145	2017. 4. 13.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몰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직업훈련과
1148	2017. 4. 18.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행정기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행정기관 위원회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방안」에 따라, 동 지침에 위원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및 서약서 제출 등 직무 윤리 검증 규정을 신설함.	국적과
1149	2017. 4. 19.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지침	○ 수형자에 대한 취업·창업 알선 근거 마련 등 취업·창업지원 업무의 필요사항 보완	직업훈련과
1150	2017. 4 19.	도주수용자 검거 등 공로자 포상에 관한 지침 제정	○ 도주자 수용자 검거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	보안과
1151	2017. 5. 12.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검수관의 식육 구입관련 서류 보관기간 명시 ○ 주식 혼합의무 및 비율 기준 폐지 ○ 급식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위촉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조리과정 중 가열조리 식품 온도확인에 관한 규정 정비	소년과
1152	2017. 5. 12.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 위원회 위원 위·해촉 규정을 신설 ○ 예규 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기한(3년) 설정 등	운영지원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54	2017. 6. 30.	비상대기숙소 관리 지침	○ 서울동부구치소 비상대기숙소 일부 세대를 교정본부 및 서울지방교정청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복지과
1155	2017. 7. 28.	공익법무관 관리 지침	○ 공익법무관 수당과 함께 특정업무경비를 대체할 업무활동장려금 근거규정 마련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일부개정 추진	법무과
1157	2017. 8. 16.	교정기관 공용차량 관리지침	○ 호송용 승합차량에 부착하는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2016년 변경된 정부상징체계에 따른 새로운 법무부와 소속기관 마크로 부착하도록 개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 도래 예정인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복지과
1158	2017. 8. 16.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	○ 교정시설 수용 중 사망한 수용자[형(구속) 집행정지 되었으나 가족의 인수 포기로 일시 수용중인 수용자 포함]의 장례비 지급 내용과 관련, 적정한 장례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표준 장례비(안) 마련	복지과
1159	2017. 8. 17.	교도작업 운영지침	○ 미결수용자 자비구매 평상복의 종류 및 제식을 관급평상복과 통일시키고, 무기수·장기수형자에 대한 집중근로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교도작업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직업훈련과
1160	2017. 8. 17.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생산작업 중 직영작업 기피현상에 따라 직영작업자의 작업장려금을 인상하여 직영작업의 활성화 도모	직업훈련과
1161	2017. 8. 17.	분류처우 업무지침	○ 순수 노역수형자(노역일수 180일 이상)에 대한 분류심사 제도 도입 ○ 징역형 집행 중 또는 종료 후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분류심사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62	2017. 8. 31.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예규명 및 지침 내 명칭 변경 ○ 출장기간 도과 후 심사 의뢰 시 심사 불가 및 출장 실시 불가 조항 등 신설	혁신행정담당관실
1163	2017. 9. 4.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 교정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원 교육 및 평가, 상담자료 관리 및 각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교정기획과
1164	2017. 9. 14.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침의 실효성 제고 ○ 현실에 맞는 용어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직업훈련과
1165	2017. 9. 18.	영치금품 관리지침	○ 통장, 현금카드, 안경, 칫솔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지침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복지과
1166	2017. 10. 1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	○ 진정업무 처리전담반을 인권보호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정업무 이외에도 인권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 ○ 진정에 필요한 용지·필기도구 등을 진정함 옆에 비치, 보호소년 등의 진정신청 편의 제공	소년과
1167	2017 11. 1.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2017. 8. 29. 국적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확대(기존 20명 이내), 정부위원을 7명, 민간위원을 23명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회의 시 지정 인원수는 10명 이상 15명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정부위원과 전문위원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국적과
1168	2017. 11. 22.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공무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폐지에 따라 인용 규정을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 ○ 기관 명칭 및 준용 규정 변경	혁신행정담당관실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69	2017. 11. 28.	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	○ 대검예규인「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여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폐지	형사 기획과
1170	2017. 12. 01.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규정	○ 근거규정 조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삭제 ○ 민방위 경보 발령 요청권자 변경 ○ 민방공 경보 전달 시 보고체계 및 재난 경보 발령체계의 정비 등	비상안전 기획관실
1171	2017. 12. 5.	분류센터 운영 지침	○「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자문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분류 심사과
1172	2017. 12. 13.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 재검토 기한 연장	이민 조사과
1173	2017.12.20.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 본 예규 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참고 기준인「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시행일자 등 삭제	교정 기획과
1174	2017. 12. 26.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 지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함{개정(안) 제25조}	감찰 담당관실
1175	2017. 12. 29.	교정공무원 기관장에 관한 규정	○ 교정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사망 시,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여 최대한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교정 기획과
1176	2017. 12. 29.	수용자 청원 처리 지침	○ 청원사항이 아닌 경우의 처리 및 조사절차, 각하 및 기각 사유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분류 심사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 11.	정부부처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 가이드라인 시행	○ 정부부처(소송수행청)이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여 시달	정부부처	국가송무과
1. 16.	공용차량 안전운행 지시	○ 사고사례 전파 및 공용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이행사항 지시	무	복지과
1. 2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체류심사 관련 지시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지시	기	이민통합과
2. 2.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시행 알림	○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환승객 이용 노선·대상국가·중국인 노선 확대 등 제도 정비 ○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적용배제 국가 확대 (5개국→11개국)	기	출입국심사과
2. 6.	2017년도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침 시달	○ 외국인 연예인 이수 의무화 ○ 전담인력 수당 조정 등 처우개선 및 청탁금지법 상 준수사항 규정	기	이민통합과
2. 7.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시달	○ 소비자 교육, 재정착난민 아동에 대한 교육 신설 ○ 수료 기준 출석시간을 80%로 상향 ○ 전담인력 수당 조정 등 처우개선 및 청탁금지법 상 준수사항 규정	기	이민통합과
2. 9.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지시	○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 감염 추정 식중독 의심환자가 전국적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지시	무	복지과
2. 17.	테러대비 태세 강화 지시	○ 국제 테러분자·국익 위해자 등 입국 규제자 확인 철저, 선박 검색 및 상륙 허가자 심사 강화,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활동 강화, 보안관리 철저 지시	기	출입국심사과
2. 18.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시달	○ '17. 3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에 대한 사전등록 절차 생략 전면시행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2. 21	민간보조사업자(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철저 지시	○ 보육시설의 정부지원금 위반사례 전파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조금 신청·교부·정산과정 예산집행 적정 여부 점검 지시	무	복지과
2. 23.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출입국지원방안 시달	○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출입국 안전대책 수립·시행 방안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3. 6.	해빙기·건조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강조 지시	○ 해빙기와 건조기에 따른 재난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화재사고 예방 활동 지시	무	복지과
3. 13.	재외공관 접수 국적 신고 업무 전면위임에 따른 업무 지시	○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외공관 접수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취득신고 등 업무 처리를 국적담당 17개 소속기관으로 확대 위임, 시달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기	국적과
3. 16.	기동순찰팀 업무 전문성 등 제고 방안 시달	○ 전문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정사고에 대한 전국 교정기관의 통일되고 향상된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 증진 효과 기대 ○ 변화하는 교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무	보안과
3. 2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지침 개정·시달	○ '17. 4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시행을 대비한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기준 마련	기	출입국심사과
3. 22.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지시	○ 2014. 1.부터 2017. 5. 31. 사이 전산 미입력·미등록 항목 확인하여 입력 지시 ○ 2017. 6. 이후 전산 입력 철저 지시 (소장 접수 단계 7일 이내, 판결 선고 단계 7일 이내, 판결확정 단계 3일 이내) ○ 미입력·미등록 관련 분기 보고 철저	소송수행검찰청	국가송무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3. 27.	외국인근로자「마약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업무처리지침」알림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단체 마약검사를 받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E-10)에 대한 마약 2차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차 검사기관을 '법무부 지정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 개선	기	체류관리과
4. 26.	2017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회 지원방안 시달	○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출입국 안전대책 수립·시행 방안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4. 28.	남용적 국적 신청 의심자에 대한 신속심사 대상 보고 지시	○ 귀화허가 신청건에 대한 불허 처분을 받고 국내 체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 보고	기	국적과
5. 2.	귀화요건 미충족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지시	○ 귀화요건 미충족 사례 발생 시, 즉시 본부에 유선 보고하고「귀화요건 미충족자의 신청 접수 관련 업무처리지침」(국적난민과-3492, 2007. 10. 6.)의 보고서식에 따라 접수 당일 전자결재 시행하여 보고	기	국적과
5. 10.	세계인의 날 기념주간 이민자 가정 등 재한외국인 무료법률상담계획 시달	○ 제10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세계인 주간에 진행되는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 지시	기	이민통합과
5. 12.	교정시설 외부화재 예방대책 시달	○ 2017. 5. 6.(토)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강릉교도소 인근까지 확산되어 시설 및 수용자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	무	보안과
5. 12.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 철저 지시	○생닭 등 가금류의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지시	무	복지과
5. 26.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온피해가 예상되어 혹서기 수용관리 대책 조기 수립·시행 필요	무	보안과
6. 7.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입국 지원 방안 시달	○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출입국 안전대책 수립·시행 방안 시달	기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6. 15.	제주환승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제주입도 조건 한시적 제외 시행	○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제주 입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및 내륙지역 체류기간 확대 (10일 → 15일) ※ 시행기간 : '17.7.1.~'18.4.30.	기	출입국 심사과
6. 27.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달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보유건수 현행화와 개인정보방침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 변경 지시	기	이민 통합과
7. 5.	사무소 출석이 불가능한 사람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처리절차 지시	○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통해 입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할 것	기	국적과
7. 14.	탈모구역 확대 및 복제의 탄력적 착용 지시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관련 탈모구역 확대 및 복제의 탄력용 착용 지시	무	교정 기획과
7. 25.	영주(F-5) 자격자의 국내 출생자녀에 대한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지시	○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자녀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시 제출서류 중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기	체류 관리과
8. 2.	독립유공자 후손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 등 지시	○ 2017. 8. 11.「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참석 독립유공자 후손 총 12명에 대해 조국독립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재외동포 포용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 수수료 등 면제 지시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
8. 4.	의약품 복용 관리 강화 대책 시달	○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복용관리강화 대책	무	보안과
8.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이행 지시	○ 일선 현장에서 체류업무 수행 중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	기	체류 관리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8. 23.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점검 관련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각종 보고, 학사 및 운영인력 관리 등 철저 지시	기	이민통합과
8. 25.	교정시설 내 불건전매체 등 반입 방지 대책 시달	○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불법영상물 및 영상재생기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효과성을 제고하고, 음란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	무	보안과
9. 1.	가석방 운영 개선(안) 및 유의사항 시달	○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방안 시달	무	분류심사과
9. 5	결혼이민자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심사 철저 지시	○ 결혼이민 체류허가 신청 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심사에 철저 지시	기	이민통합과
10. 10.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 알림 및 업무지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내용 시달 및 개정내용 직원 교육 철저 지시	기	출입국심사과
10. 13.	국적 법령에 따른 신청·신고 시 「외국인 증명 서류」 관련 업무 지시	○ 국적 법령에 따른 신청·신고 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중국 여행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지시	기	국적과
10. 30.	노로바이러스 예방 철저 지시	○ 식약처의 노로바이러스 예방철저 요청문서,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	무	복지과
11. 7.	국가·행정소송 중요사건 분류기준 정비에 대한 협조 요청	○ 각 검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국가·행정소송의 중요사건 분류기준을 정비할 것 지시	소송수행검찰청	국가송무과
11. 7.	실질적 소송지휘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요사건의 경우 소송시작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소송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수행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지시	소송수행검찰청	국가송무과
11. 10.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 방안 시달	○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분기별 실시 정례화 ○ 사무소 내 외국인 인권·고충상담창구 운영	기	이민통합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신처	비 고
11. 1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및 지정심사 지시	○ 소속기관별로 운영기관 모집 홍보 및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심사 등 실시 후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	기	이민통합과
11. 21.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지시	○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동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지시	기	국적과
11. 23.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 시범 운영 알림(지시)	○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 시범운영에 따른 심사관 교육, 관련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사항 지시 (협조 요청)	기	출입국심사과
11. 23.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방안 시달 및 업무협조 요청	○ 중국인 제한적 무사증 입국허가 주요내용 시달 및 항공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지시 등	기	출입국심사과
11. 27.	기록상 국적포기 불이행자 정리 지시	○ 우리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되었거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였음에도 시스템상 기록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국적포기 불이행자로 표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 지시	기	국적과
12. 6.	연말연시 테러대비 대테러 활동 강화 지시	○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체류외국인 동향조사활동 강화 등 연말연시 테러위기 대응태세 확립 지시	기	출입국심사과
12. 14.	귀화필기시험 방식 변경 관련 홍보 지시	○ 2017. 8. 29.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사무소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지시 (홍보기간 : 2017. 12. 26. ~ 2018. 2. 28.)	기	국적과

Ⅲ. 장관 연설문

연설문 목록

○ 2017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신년사
○ 사법연수원 수료식
○ 법령경연 학술대회
○ 2017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 전입 검사 신고식
○ 신임 검사 임관식
○ 제3기 O.K. 아카데미 개소식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행사
○ 신임 검사 임관식
○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 개막사
○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책자발간 및 기업인 간담회
○ 신임 검사 임관식
○ 법교육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 제13차 세계변호사협회(IBA) 경쟁법 컨퍼런스
○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
○ HCCH Asia Pacific Week 2017
○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사
○ 신임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
○ 신임 검사 임관식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촉식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전입 검사 신고식
○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 의정부 스마일센터 개소식
○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제25차 정기총회
○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 법무부장관 추석 인사장
○ 검찰일반직 승진 신고식
○ 2017년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 서울동부구치소 · 보호관찰소 이전 기념식
○ 제4회 다링행사
○ 법무부 홍보 브로슈어
○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
○ 2017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제72주년 교정의 날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명예보호관찰관 발대식
○ 2017년 제3주기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수석대표 모두·마감발언
○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2017년 허그(HUG) 후원의 날
○ 부산서부지청 개청식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
○ 2017년 선진법제포럼
○ 2017년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및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 제9기 블로그 기자단 해단식 및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 2017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신년사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전자어음 만기 단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같이 국민행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등으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지문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류질서 확립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독 범죄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올 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테러발생 가능성으로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사정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국가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Ⅳ

첫째,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갑시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본질적인 임무'라고 하셨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국가경쟁력 결정의 주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무·검찰이 항상 솔선수범하도록 합시다.

셋째,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켜냅시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고있습니다.

여성·아동·노인과 같은 범죄취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재범 방지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에 대한 투자사기와 갈취범죄, 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갑시다.

금년부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개선과 법교육, 법질서 실천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범죄율을 낮추는 실효적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 수형자별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갑시다.

증원되는 법률홈닥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국의 마을변호사와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구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 재산은닉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계속 강화해 나갑시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기본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됩니다.

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국민체감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숙련된 기능 인력을 비롯한 우수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그 외에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무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시는지 자주 현장을 찾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법무정책을 알려드림으로써 국민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Ⅴ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크건 작건간에,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땅을 일궈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한 송이 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묵묵

히 수행해 나가면 좋은 결실이 한데 어우러져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사법연수원 수료식

Ⅰ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생 여러분!

2년 동안의 연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신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용구 사법연수원장님과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Ⅱ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 동안 꿈꾸어왔던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법조인이 되느냐',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은 개인의 행동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주어진 업무 하나 하나를 정성을 다해 처리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청렴한 법조인이 되기 바랍니다.

법조인은 타인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게되는 만큼,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꼿꼿한 검사로 존경받았던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께서도 "청렴하기 때문에 강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으로서 새출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검소한 생활,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욕심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마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역량과 실력을 갖춘 당당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이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역량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법무·검찰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 분야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검사 전문화에 힘쓰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관심사나 소질에 맞는 분야를 발굴하고 꾸준히 정진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당당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전문성과 실력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Ⅳ

수료생 여러분!

최근 법조인 수가 급증하고 신규 법조인 임용 방식이 바뀌는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어 간다면, 현재의 도전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꿈 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신뢰와 법치가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이 더욱 강건한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3회 '믿음의 법치 법령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학생 여러분을 마주하고 보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동하는 봄기운이 한껏 느껴집니다.

먼저, 예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경연대회를 준비한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지원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참가자 여러분!

"법은 상식(常識)이 정장을 입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회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하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행복한 법치, 믿음의 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믿음, 법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국민이 믿고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연대회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에게 입법 활동의 기초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Ⅲ

학생 여러분!

오늘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은 총 2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도 좋은 법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참신하고 생생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행복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9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창재

○ 2017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Ⅰ

존경하는 법사랑 전국연합회 신정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지역연합회 회장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丁酉)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전국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사랑 위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탈북·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 캠프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 각종 사랑 나눔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CCTV 설치,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과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별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믿음의 법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Ⅲ

위원 여러분!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상황과 불확실한 세계 경제사정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는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범죄 취약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법교육, 법질서 실천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법사랑타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마을 일부 지역에만 실시하던 환경개선을 동 전체로 확대하고,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환경개선사업, 불우 청소년에 대한 결연, 공부방 설치 등 법사랑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또한, 최근 소년사건 재범률이

48%에 이르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년범죄예방팀'도 출범시켰습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범의 학업·취업·의료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간처우 시설인 소년보호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사랑위원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소년범 선도인 만큼 소년 선도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Ⅳ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는 "우리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겁고 활기차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10.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전입검사 신고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임지로 영전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검사의 보직 하나하나는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소중한 임무인 만큼, 어느 한 자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새 임지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계획을 실천하거나, 아쉬웠던 점을 변화시켜 더욱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Ⅱ

첫째,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나라 안팎 사정이 어렵고, 법무·검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검찰에 도움을 기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과 애환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자세로 매사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할 때, 국민의 사랑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검사는 사회의 부정을 바로잡고,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어느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검소한 생활,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최근에는 아동·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사는 어려운 이웃, 그늘진 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하나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이 쌓여갈 때 검찰은, 힘없고 약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Ⅲ

사랑하는 검사 여러분!

논어(論語)에 '경사이신(敬事而信)', 즉, "섬기는 자세로 나라 일을 하여야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자세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든 항상 낮은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영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임지에서도 커다란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0.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신임검사 임관식

I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눈빛과 패기 넘치는 모습을 대하니 법무·검찰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 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법무·검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과 힘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가족의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는 만큼, 검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I

신임 검사 여러분!

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검사의 길에 막 들어서는 지금부터 '어떤 검사가 될 것인지', '검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꿈과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멋진 검사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첫째, 모든 업무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공복입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자세로 매사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함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의 임무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올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형(刑)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결정 내용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철저하고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긋남이 없어야 자존을 지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검소한 생활,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욕심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마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 주기 바랍니다.

Ⅳ

사랑하는 신임 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약속한 검사선서문에는 오랫동안 검찰 선배들이 추구해 온

가치와 덕목이 녹아 있습니다.

용기 있고, 따뜻하며, 공평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바른 검사!

그런 검사가 되겠다는 오늘의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쌓여갈 때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검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행사

Ⅰ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는 봄의 문턱에서 기업과 개인의 재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오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개원 준비 작업을 훌륭하게 마쳐주신 이경춘 신임 회생법원장님과 개원준비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도산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효율적 도산 절차는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변혁의 시기에는 신속한 도산절차를 통해 경제 구조의 민첩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Ⅲ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 도산법제를 받아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도산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도산 법제를 정비하고, 법원은 도산 절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은행에서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 가운데 도산 절차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선진적인 도산 절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도산과 관련된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 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Ⅳ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흥국의 추격, 성장 동력 저하 등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고 있고, 세계 경제도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산 절차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산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Ⅴ

구조조정 제도가 최적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은 법률, 금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고, 때로는 국회나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사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행정부, 실무와 학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을 축하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각계가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기업의 채무 구조 다변화로 인해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법원의 협업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회생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당해 기업의 재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Ⅵ

법무부는 도산 제도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의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구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서울회생법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실무와 학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도산 제도 발전을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 제3기 「O.K. 아카데미」 개소식

Ⅰ

청년법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이 움트는 3월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오늘, 「제3기 O.K. 아카데미」의 희망찬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번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님, 그리고 실무적인 준비를 담당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법조인 여러분들께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Ⅱ

우리나라 법조계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와 법률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국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과 오늘 아카데미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1, 2기 O.K. 프로젝트 참여자 중 12명의 청년법조인들이 LA 소재 로펌과 두바이 소재 우리 기업 해외사무소 등으로 장기 인턴 진출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료생 중 1명은 코이카(KOICA)에 정식 채용되어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충분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업무로 바쁘더라도 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하여 국제법무 전반에 걸쳐 한층 향상된 법률지식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카데미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 지원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고 해외 진출을 위해 도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세계 진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Ⅲ

청년법조인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An investment in knowledge still yields the best returns)」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법조인 여러분들이 배움을 얻고자 투자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아카데미가 각자가 꿈꾸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시작이자,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기 「O.K. 아카데미」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8.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 검사로서의 각오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임검사 여러분의 열정과 포부,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각오와 다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꾸준히 정진하여,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사로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II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검사는 단순한 직업의 하나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참으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고된 업무, 치열한 고민, 수많은 도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은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고귀한 임무인 만큼,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의 무게를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께 검사가 지녀야 할 몇 가지 덕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II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검사는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와 겸손한 마음가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권위적인 태도와 오만한 마음은 잘못된 판단과 주변의 반감을 가져옵니다.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스스로의 오류를 막고 타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야 말로 검사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은 “신중”입니다.

검사의 임무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올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형을 다스리는 요체는 밝고 삼가는 데

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斷獄之要 明愼而已, 人之死生 係我一念 可不愼乎)'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덕목은 "청렴"입니다.

꼿꼿한 검사로 존경받았던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께서는 "청렴하기 때문에 강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 어긋남이 없어야 자존을 지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온정이나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도 문제될 수 있을 만큼, 공직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검소한 생활, 기품있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사랑하는 신임검사 여러분!

중국 고전 채근담에는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물방울이 떨어져도 돌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繩鋸木斷, 水滴石穿).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정이야말로 검사로서의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굳은 각오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검찰의 훌륭한 전통을 더욱발전시켜 나가는 멋진 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3.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 개막사

Ⅰ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화창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사로운 4월의 봄날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 매일경제신문사와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파파 드미트리우 의장님, 크리스티앙 요프게 교수님, IOM(국제이주기구) 도나토 코루치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님을 비롯하여 주한 외교사절과 금번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실 패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게이츠는 그의 저서에서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다가 올 10년의 변화가 더 클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민 유입 현상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체류 외국인이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4%인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에는 300만 명을 상회하여 총 인구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가오는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법, 제도 개선 등 정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왔고,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이민자가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해외 우수 인재, 유학생 유치 등 이민정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경 관리 강화, 법질서 확립 등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와 많은 유럽 국가는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중국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소비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민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다기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이고 압축적인 이민자 유입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숙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이민자가 들어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증진하고, 국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공감 이민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Ⅳ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모두에게 세계적 이민현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4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책자발간 및 기업인 간담회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언제였는지 모르게, 어느덧 완연한 봄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약 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 출발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날에 신생 벤처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책자를 출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흔쾌히 오늘 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 측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바야흐로 세계 각국은 혁신적 기술이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도전입니다.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와 민첩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Ⅲ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하에 신생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무장한 강소 벤처기업이야 말로 변혁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규제의 틀에 갇히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들이 법률분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연의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Ⅲ

법무부는 그러한 고민을 담아 오늘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개선 방안을 수록하는 한편, 상당수의 우리 창업 기업들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의 각종 법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습니다.

한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집」에는 창업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지식을 강연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벤처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위한 법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Ⅳ

페이팔(PayPal)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혁신에 의한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오늘 책자 발간식과 더불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분들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률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Ⅳ

끝으로 오늘 발간되는 책자들을 직접 집필하고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 및 법무담당관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이 좋은 계절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예로운 대한민국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임검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는 만큼, 신임검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검사로 맞이한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새로운 검사 양성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검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인회계사, 공학박사 등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이 신임검사로 임관하게 되어,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임관을 계기로 법무·검찰의 다양성과 전문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께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Ⅲ

첫째,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은 가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The best prize that life offers is the chance to work hard at work worth doing).

검사는 단순한 직업의 하나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중한 업무, 치열한 고민, 수많은 도전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무는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고귀한 임무입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 행복이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공복으로서 당당하고 명예롭게 생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모든 업무를 원칙과 정도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역할은 대립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사 스스로가 한 없이 맑고 바른 자세로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상황에 따라 원칙을 쉽게 포기하거나, 당장의 편익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격무에 지쳐 사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싶거나, 실체 진실 발견이 매우 어려운 사건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정도를 따르는 것이 검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와 겸허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위적인 자세와 경솔한 태도는 주위의 반감과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의 결정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할 때, 스스로의 오류를 막고 타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사건을 모두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사랑하는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 동안 꿈꾸어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사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의 길에 막 들어선 지금부터 어떤 검사가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법무·검찰에서 검사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배양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초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정진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7.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창 재

○ 법교육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4월이 지나가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정재황 위원장님과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어느 때 보다도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준법문화 확산이 절실한 때에 법교육위원 위촉식과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교육위원회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법교육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법교육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법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법교육을 운영하고, 도서벽지까지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교육을 체험한 많은 분들이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약속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의 가치가 일상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노력과 함께 현장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7년도 법교육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 모두가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7.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제13차 세계변호사협회(IBA) 경쟁법 컨퍼런스

Ⅰ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IBA 경쟁법 컨퍼런스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자넷 맥데이빗', '피터 스테인' IBA 반독점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정경택', '윤호일' 공동주최의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BA 반독점위원회는 공정거래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로서는 최초로 IBA 경쟁법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공정거래 관련 활동과 비전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60여 년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서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검찰은 수천 건의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진 1980년대 이후에도 검찰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은 카르텔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대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합리적인 형사제재를 통해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성카르텔 등 중대한 범죄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대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설립 첫해부터 국책 건설사업의 입찰담합, 대기업 CEO의 경영비리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경제사범을 수사하여 관련 기업과 개인을 엄정히 처벌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소형베어링 시장의 1,2위를 점유하는 외국 회사들의 가격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한국 최초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역외적용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는 민사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 등 국고 손실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법무부에 국고손실환수 송무팀, 2017년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특별송무팀을 신설하여, 국고손실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송무 기능을 강화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검사들과 협력하여 법정에서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큽니다만, 권리의식과 적법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정부법률가인 검사와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송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거래사범 협의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력과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관련 활동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은 '행정규제'와 '민형사 법집행'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양 기관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Ⅲ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지향하는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쟁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사점과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진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며, 그 혜택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한 국가의 사법작용은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격담합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기업 구성원이 부당한 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가 효율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도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작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집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 법무부로서는 최초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와 카르텔 워킹그룹에 옵저버로 참석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ICN 회원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 독일 연방카르텔청, 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 등 외국 사법경쟁 당국들과 친선 간담회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무부가 최초로 참석하게 된 것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심과 의지의 발로입니다.

Ⅳ

한국에서 6월은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은 절기"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전 세계 경쟁법 발전을 위한 알찬 씨앗이 될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15.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

○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

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이겨내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시원한 한 자락 바람에도 사뭇 고마워지는 불볕 쨍쨍한 이 여름에 드디어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오기까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주신 수상자 가족 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귀한 걸음으로 본 시상식을 더욱 빛내주고 계시는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님, 고대영 KBS 한국방송 사장님, 그 외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자랑스러운 교정공무원 여러분!

시대가 요청하는 교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소명과 책임을 완수하며 겸허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교정은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사회 지도층 가석방 심사를 강화하였고,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이 가정에서도 수용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더욱 원활한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용 시작부터 마지막에 걸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효율적인 직업훈련, 개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사범 교육과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주역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이십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수용자의 교화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관행이 있다면 기꺼이 개선해주십시오. 또한 수용자들이 과감히 재범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과 가능성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해 처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Ⅳ

존경하는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거쳐 소외와 무관심에

상처 입은 수용자들과 나란히 걷고 계신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용자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나 그 구성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용자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역사회의 손, 바로 교정참여 인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Ⅴ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편견 없는 눈으로 수용자들을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Ⅵ

이 자리를 채워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가족 여러분!

법무부는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법무정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이 두루 편안해지고, 이 나라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곳곳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법치에 기반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교정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이와 더불어, 교정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자연재해, 교정사고 등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안전시스템 구동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행복한 대한국민과 안전한 대한국민의 시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여러분들이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Ⅶ

끝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순길 심사위원장님과 더불어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금 로

○ HCCH Asia Pacific Week 2017

Ⅰ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개최되는 「2017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시아 태평양 주간」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크리스토퍼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권성동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최재형 사법연수원장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그리고 정병석 한국국제사법학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 주신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님,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님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까지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1893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조화와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82개의 국가와 EU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고, 150개의 국가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이라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목적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대한민국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7년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각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 2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법무부, 사법연수원, 외교부가 한국 국제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시아 태평양 주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탈취, 입양, 아포스티유, 송달 및 증거조사 등과 관련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다양한 협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행 상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Ⅳ

19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한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쎄르는 국가 간의 분쟁은 각 국가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아쎄르의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행사 기간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3.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 금 로

○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8개월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장관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관 부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이창재 전임 차관님과 이금로 차관님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저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데 미력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변화를 이끌고, 법무부에 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Ⅱ

법무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세대와 계층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안팎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소명을 받들기 위한 다짐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적 책무와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

국민의 신뢰는 법무부의 존재근거입니다.

그 동안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했던,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된 법무부의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법무·검찰을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먼저,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하고,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경지환(木梗之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인형의 근심이라는 뜻으로 나무인형은 자기 본래의 모습인 나무로 돌아가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무·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숭고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때 인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던 어두운 시대를 넘어, 인권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사회를 어느 정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기보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중히 여겨,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갑시다. 지난 겨울,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깊게 하고,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받은 특혜엔 눈을 감아 버리고 남의 잘못만 심하게 탓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방산비리와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심각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갑시다.

범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 뽑고, 이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죄대책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냅시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자나 북한이탈 주민과 같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갑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서비스가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빈틈없이 제공되고, 부당한 차별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 과중한 업무와 근무환경, 그리고 업무방식이 각자의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고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헌신적인 업무수행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력만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Ⅳ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우리 사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과제도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고와 전략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맹자에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합니다.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有爲者譬若掘井 掘井九軔而不及泉 猶爲棄井也)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우리 법무부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를 맞이하기 위해 고된 업무를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법무부장관 박상기

○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익법무관 제도 첫 해인 20여 년 전 21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이제는 500명을 넘어섰고, 업무 영역과 배치 기관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선배 법무관들은 국가송무와 법률구조 분야에서 핵심적인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Ⅱ

공익법무관 여러분!

오늘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송무는 국고손실 환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 환수,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국고손실 환수, 일제 강점기 토지 환수 소송 등은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기능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합니다.

둘째,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마음에 새기고,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민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같이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법무부는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의 새로운 여정에 뜻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有爲者譬若掘井 掘井九軔而不及泉 猶爲棄井也)'는 맹자의 한 구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게으름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임용을 축하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분들과 새 보직을 부여받은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첫째,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검찰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잉수사도 사건관계인을 힘들게 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행적인 행정에 안주하지 말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집행 과정에서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법무·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국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환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검찰 고위 간부 여러분!

국민의 신뢰는 법무·검찰의 존재 근거입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이야말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31.
법무부장관 박상기

○ 신임검사 임관식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검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법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법무행정의 중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 받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하고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긋남이 없어야 자존을 지킬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한 사람의 부적절한 처신은 개인의 불명예 뿐 아니라, 검찰 전체의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검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가볍지는 않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굳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촉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먼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한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Ⅲ

국민들의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들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법무·검찰개혁안이 새로운 법무·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 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축사

Ⅰ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손 및 가족들,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인 여러분들께 오늘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국난을 겪으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슬픔을 또 다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추앙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조들 이십니다.

그분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눈부신 성장으로 이끌어 주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손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평화롭고 튼튼한 대한민국 건설에 다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Ⅱ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여러분들 선조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무부는 선열의 공적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특별귀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각자 자리에서 자신들이 꿈꾸었던 삶을 이루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각지에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찾아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오랜 문화유산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약간의 바람으로도 쓰러질 수 있지만, 큰 나무가 되면 어떠한 폭풍에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암울한 시절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들의 혼과 정신이 바탕이 되어 이제 우리 민족은 어엿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 크고 든든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1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전입검사 신고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분들과 새 보직을 부여받은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여정의 일부로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첫째,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지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받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만이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상하관계와 관행적 업무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분위기가 정착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17.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Ⅰ

존경하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현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소순무 변호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내외 귀빈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그 동안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포함한 법적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조계도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더욱 더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Ⅲ

변호사 여러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 하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며,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얼마 전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모두 7개의 실・국・본부장 가운데 4곳을 비검사로 보임하는 인사혁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확산될 수 있으려면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여기에 계신 변호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될 심포지엄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여러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변호사 여러분!

올해로 26회를 맞는 변호사대회는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되돌아보고,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들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법조계의 산적한 과제들을 국민을 위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2017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Ⅰ

존경하는 법사랑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교준 중앙일보 대표님과 김호성 YTN 총괄상무님, 신정택 법사랑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지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Ⅱ

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간 법사랑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탈북·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 캠프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 각종 사랑 나눔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꽃밭 조성, 벽화 그리기,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별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Ⅲ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취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법무부의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와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는 법무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예방 분야가 그러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시적 일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에는 법제도 이외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자가 소외되고 외면 받는 사회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권이 존중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동안의 관심은 이들의 사회복귀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의롭고 더욱 밝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의와 인권, 약자보호는 여러분들의 '범죄예방 활동'과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도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Ⅳ

세계적인 재력가이면서도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 전 다른 누군가가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모여 우리의 미래 세대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크고 아늑한 그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3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30주년 기념 축사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률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님, 미야자키 마코토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님, 루오빙청 대만법률부조기금회 이사장님 등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Ⅱ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전국 48개의 사무소로 출발하여,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국에 본부·18개의 지부 · 41개의 출장소 · 72개의 지소와 법문화교육센터 등 총 13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민사 184만 7천여 건, 형사 32만 3천여 건의 소송구조와, 2,585만여 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법률구조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하고,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법률구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료 법률구조 수혜대상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248만여 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오늘의 심포지엄은, 학계, 실무계, 외국 주요 법률구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동안의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돌아보고 국제적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복지국가에 걸맞은 법률구조 시스템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Ⅲ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법률복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은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의 국민들에게 법적 도움을 받는 공적 기관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는 더욱 노력할 것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Ⅳ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로서 창립 30주년이 되어, 대한민국의 법률구조를 이끌어갈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공단이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구조 및 복지 시스템은 조만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Ⅴ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현직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의정부 스마일센터 개소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의정부 스마일센터를 개소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희상 의원님, 홍문종 의원님, 안병용 의정부시장님을 비롯해,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약 1,000건의 살인범죄, 5,300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사건은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오랜 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족적 비극과 함께 사회적 비용 지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주디스 허먼도 그의 책 '트라우마'에서, 강간이나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전쟁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적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에서 심리치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Ⅲ

스마일센터는 이처럼 강력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입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에 열 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되었고, 오늘 열한 번째로 의정부에 스마일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스마일센터는 8천 2백여 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임시 주거지원·법률지원등 총 13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곳 의정부가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 의정부 스마일센터의 개소로, 보다 많은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범죄자들의 권리 보장이나 그 관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스마일센터를 매년 1~2곳에 추가로 설치, 향후 총 18곳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센터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검찰청 심리지원단과 스마일센터 심리지원팀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출장상담·치료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해 어린이 또는 피해자의 자녀를 위해 돌봄비용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와 요양치료비 지원의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한 경우 검찰청에서 협력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V

내외귀빈 여러분!

스마일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스마일센터를 통하여, 의정부와 인근 지역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정부 스마일센터의 개소를 위해 애써 주신 최근수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님과 이경욱 의정부 스마일센터장님, 그리고 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희망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의정부 스마일센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8.

법무부장관 박상기

○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제25차 정기총회

I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인 법률가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 귀국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국을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미화 한국

회장님과 리사 양 해외 회장님, 그리고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님,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과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Ⅱ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창설 이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법률가들의 교류와 공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전세계 30여 개 국에서 2,500명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도 회원 간 교류, 주요 법률문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법률 지원」,「로스쿨생 멘토링」등 다양한 공익활동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이러한 포용성은 한인법률가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우고, 국제화 시대의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법률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법무부는 해외진출의 꿈을 가진 우리의 청년변호사들이 무대를 세계로 넓혀 활동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세계한인법률가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청년법조인들이 해외로 나가 국제적인 안목과 실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법조인들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동안 정성들여 쌓아온 여러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법조인들이 공정과 정의, 인권의 가치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Ⅳ

저는 지난 7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회원 여러분들께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도 제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 인권의 옹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여정에 저도 동참하여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V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원 여러분!

Silver Jubilee로 개최되는 이번 제25차 학술대회의 주제는 "Past, Present, Future"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형법, 인공지능, 여성, 국제무역, 노동, 공익 등 17개 세부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미래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의 장이 50년을 기념하는 Golden Jubilee, 100년을 기념하는 Centenary Jubilee까지 계속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5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5.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기념사

I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교정가족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곳 법무연수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경기

단체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법무연수원과 교정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수용자 인권보호와 교정교화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무도 기량을 갈고닦아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단 여러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

1949년 시작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올해로 어느덧 52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대회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보여준 상무정신과 페어플레이는 교정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자랑스러운 교정문화를 공유하고 교정발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가족 여러분 !

그 동안 교정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법정의를 실천하고 그들을 건강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젠더폭력, 동기없는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업을 지원하였으며,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실효적인 사회복귀 지원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화상접견, 스마트 접견을 활성화하고 교정민원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과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과밀수용 해소,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교정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Ⅳ

선수단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단지 승부를 결정짓기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법무부장관 추석 인사장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은 살며시 물러가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이제 가을로 들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두 달이 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진력해 온 법무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법무·검찰의 존재 근거입니다.

법무·검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이야말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불편부당하게 업무에 임하는 한편, 인권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고통 받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서 그간의 관행과 업무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국민이 요구하는 법무·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임시 및 대체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10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기간에 대비하여 각별히 복무자세를 가다듬어 업무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고, 명절 기간 전후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만한 금품과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염자안렴 지자이렴(廉者安廉 知者利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청렴은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신뢰받는 법무·검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풍요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에 가족·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법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9. 25.

법무부장관 박상기 드림

○ 검찰일반직 승진 신고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준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직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검찰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실체적 진실 또한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가운데 얻어진 것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관행적인 수사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법질서 확립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공사생활에 조금의 어긋남도 없어야 자존을 지킬 수 있고, 타인의 잘못을 논하는 검찰 업무에 당당히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검소한 생활, 기품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소통을 막는 경직된 조직문화, 비합리적인 업무관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는 없는지 살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자유로운 소통, 탈권위를 향한 조직문화 쇄신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선 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간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법무·검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25.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먼저, 2017년「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에 입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폭력 근절' 이라는 공모전 주제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상당한 수준의 작품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직장 내 성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호소력 있게 보입니다.

성폭력은 인권을 파괴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공모전이,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26.

법무부장관 박상기

○ 서울동부구치소·보호관찰소 이전 기념식 식사(式辭)

Ⅰ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 지역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역인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인숙 국회의원님, 박춘희 송파구청장님,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님,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신축과 이전 개청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송파구 지역주민 여러분!

1977년 가락동에서 개청한 성동구치소는 지난 40년의 교정역사를 뒤로하고, 도심 속 고층형 교정시설로 신축 이전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교정역사를 써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수용환경을 갖춘'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전국 교정시설의 원격진료 컨트롤타워인 '원격의료센터'를 구축하여 열악한 수용자 의료처우에도 진일보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용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교정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005년 개청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와 보호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아동학대 예방, 시민 법교육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돕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문정법조타운 내 신축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원인의 편의성을 우선하였으며, 법조분야의 업무능률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운영과 경비, 소방·방재 등의 대부분을 전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최첨단, 친환경 교정·보호시설로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인에 대한 시설내 교정처우에서부터 출소 후 보호관찰 등 일련의 재범방지 시스템까지도 미흡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오늘 기념식이 교정·보호 사법시스템을 변화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보호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보호시설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정·보호시설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범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사사법시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을 포용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도 인근지역의 결손가정, 범죄피해자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부지역 법조타운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송파구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27.

법무부장관 박상기

○ 법무부 홍보 브로슈어 인사말씀

적폐청산은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적가치와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원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법무·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부단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법무·검찰은 수사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땀 흘린 대가로 이룩한 경제 혜택은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검찰개혁을 통하여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무정책을 추진하여 '공정', '정의',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의 높은 인권수준이 변화된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지 않고, 인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와 같은 젠더 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아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가족처럼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겪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법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엄정히 구현하고, 수용자가 건강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인정받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4회 다링행사 인사말씀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범죄피해자를 위하는 뜻깊은 행사인 '제4회 다링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갑식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로, 특히 피해자와 제일 가까이에서 함께해 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삼성에스원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Ⅲ

오늘 열리는 이 다링(DaRing)행사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손을 잡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로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아름답다'는 말처럼, 소외된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걷는 한 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Ⅳ

오늘 다링행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순수함과 푸르름을 간직한 어린이대공원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4.

법무부장관 박상기

○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정취가 가득한 좋은 계절에 문화·관광의 생태도시 광양에서 전국 최초로 법사랑타운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번 사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복 광양시장님,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님과 백복인 KT&G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백 광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는 전국 마흔아홉 곳의 범죄 취약지역에서 CCTV나 반사경, 비상벨 설치와 같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주민 안전 체감도가 평균 17% 개선되는 등 환경개선사업이 범죄율 감소와 주민 불안감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범죄를 온전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납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의 집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끌려가는 동안 동네 주민 그 누구도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그 아이에게 '너 괜찮니?'라고 물어 범행을 제지하거나, 신속히 신고를 하였다면 이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공동체를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법교육 프로그램도 결합시킨 법사랑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Ⅲ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와 광양시는 광영동 전 지역에서 주민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맞춤형 설계안을 마련한 다음,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폐가 등 우범지역에 대한 출입차단막과 안심 주소판, 반사경을 설치하고, 담장 도색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영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펜스와 안심등을 설치하고, 주요 지역에 CCTV·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이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고, 법교육도 수 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곳 광양에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여러분!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라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서 본 피해사례가 이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20.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김현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변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청년 법조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Ⅰ

여러분들께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으신 만큼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제조건이자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내실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Ⅱ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통일 합의서의 체결, 통일헌법의 제정, 남북한 법률통합 등 우리의 통일과정에서도 대두될 수 있는 법적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교육·상담 등 법률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Ⅲ

법무부는 통일법무과를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연구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는 한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연4회 발간하고,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법 연구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3년간 280여 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했고, 올해에도 60여 명의 법조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북문제와 통일법제에 관한 최고 전문가 분들께서 통일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북한의 법제도, 남북관계와 남북합의서 등에 대해 훌륭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Ⅳ

10주간의 대장정에 참여를 신청하신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강좌들이 통일법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전문가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강의를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과 행사실무 담당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24.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사

Ⅰ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교정을 시작한 지 제7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정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정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교정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순직 교정공무원과 교정동우회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였고, 통합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다자간 원격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수용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었으며,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수형자 사회복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접견을 활성화하고, 교정민원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교정정책이 수용자 처우 중심에서 수용자 가족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까지 그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자랑스러운 우리 교정의 모습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교정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재능을 나눠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처벌받은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희망과 재기의 의지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정부나 교정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Ⅳ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 교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형벌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관행과 불공정을 청산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교정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에 교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준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제52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져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법무시설 재난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재난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평상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합동훈련이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구로구청장님 등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명예보호관찰관 발대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추의 정취가 느껴지는 11월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지원 할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서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서의 값진 활동을 다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그간 청소년 비행예방과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여 청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비행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Ⅲ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소년법 폐지 주장을 돌이켜보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기성세대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비행청소년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지속적 상담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기 명예 보호관찰관에 위촉되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 진심 어린 애정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보호관찰관으로 칭송되는 미국의 '존 어거스트'도 자원봉사자였으며, 일본에도 '보호사'라고 불리우는 5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갖는 대한민국의 '명예보호관찰관'제도 역시 세계 형사사법 역사에 손꼽히는 민관 협력사례로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마지막으로 다 시 한 번 우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나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2017년 제3주기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수석대표 모두 · 마감발언

[모두발언]

샬바 치스카라쉬빌리(Shalva Tsiskarashvili) 부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오늘 제3주기 UPR 심의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유엔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심의를 위해 10개 부처 24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인 UPR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유엔 회원국 간의 엄정하고 건설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엔의 책임있는 일원인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UPR 심의에서 대표단 여러분들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국내 인권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제3주기 UPR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제3주기 UPR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들이 충실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2012년 10월 제2주기 UPR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의 권고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를 주요사안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주기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UPR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2012년 제2주기 UPR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UPR 심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의 후에 UPR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과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번 제3주기 UPR 심의 후, 대한민국 정부는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 즉, 국가 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차 계획이 만료되었으며, 인권을 우선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권정책자문단을 재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의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였고,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자유권,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출 과정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특별절차 등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가 국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2008년 유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을 수락한 이래 거의 매년 특별절차의 방한을 접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정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특별절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절차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가입 국제 인권조약들에 대해서도 비준 방안과 국내 이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 금지를 요구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반복적인 권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 병역의 형평성 확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상황별 유의사항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년 6월 인권 중심의 경찰 개혁을 위해 출범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차 및 차벽 사용을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의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금년 9월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4명을 기소하였고, 앞으로도 공권력 남용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 모든 사람의 사회권적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번 정부의 국정 전략 중 하나로 삼아, 사회권의 포괄적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아동,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대상별로 필요에 따라 수당이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권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비정규직·하도급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제도·재택근무 환경구축 및 유연근무제도 사업주 지원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교육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와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권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수가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2022년까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정책

실천이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도입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개선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장관급 중 31.6%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직에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행할 뿐 아니라 종합적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2015년 수립된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에 대한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생존권과 참여권이라는 아동권리협약상 4대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입양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 13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사사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소년범에 대한 대안처분을 확대하는 등 사법절차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주기 UPR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팀과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외국인의 차별없는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개선 과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은, 노년기에 대한 국가 주도적 지원과 돌봄, 존엄성 강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 등 학대 노인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하여 2020년까지 ODA 규모를 GNI(국민총소득) 대비 0.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ODA 공여가 수혜국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인권과 장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지난 제2주기 UPR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제2주기 UPR에서 제시된 권고와 관련된 진전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권고는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답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점검하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존중과 준수를 위한 원칙들이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과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뜻깊은 대화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여러 인권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호 대화가 각국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발언]

샬바 치스카라쉬빌리(Shalva Tsiskarashvili) 부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수석대표로서 오늘 UPR 심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화를 갖다 보니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중 태어난 저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궈낸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증진에 대해, 국제사회는 흔히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적 시민혁명인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은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과 조정의 과정도 겪어야 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맞이한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적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작년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꽃피우는 불꽃이며, 인간은 말하는 불꽃이다."[1]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말하는 불꽃"이 되어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과, 인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에는 끝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립을 핵심에 두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권고들을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의하고 인권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1) 가스통 바슈라르, 촛불의 미학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소외를 견디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시 복원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연대와 협력입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각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 NGO 단체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하기 위한 끝없는 정진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됨을 명시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뉴욕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 평창에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통해 세계 평화를 다지는 행사가 석달 후 개최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인권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시기에 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헌법 만들기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대회 개최에 동참해 주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현덕 매일경제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님,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님, 천명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응모작이 천여 편에 이를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존중, 배려와 신뢰의 가치를 담은 훌륭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동료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담은 직장헌법인 「손끝에서 피어나는 손로몬」, 서로를 믿어주고 응원하자는 가정헌법인 「서윤, 서진이 가족의 속삭임」은 읽는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치사상가들의 이념을 헌법 문구로 활용한 대학생들의 '정치외교헌법', 선생님과 6학년 학생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한 '띠앗공화국 헌법'도 참신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학급, 직장에서 헌법을 만들어 봄으로써 헌법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함께하는 약속임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헌법을 지키듯, 우리들이 만든 헌법과 법률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굳고 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도 바른 법률을 만들고, 법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15.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Ⅰ

존경하는 내·외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용기를 내어 함께 해주신 범죄피해자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

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축하드립니다.

Ⅱ

내외 귀빈 여러분!

2003년'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초로 제정한 이래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제정한 선구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천명한'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은 범죄피해자 지원의 도약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기초로, 국가도 그 동안 다방면에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 왔습니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스마일센터'를 전국 11곳에 설치하였습니다.

20여 년간 최대 천만 원이었던 범죄피해 구조금을 10배 이상 늘리고,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범죄로 생계곤란의 이중고를 겪는 어려움을 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의 불모지와도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범죄피해자 지원 모범사례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눈물과 한숨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온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저는 지난 9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의정부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과밀수용을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여 국가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있어서 대표적인 과밀수용시설인 의정부 교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의정부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가해자 교정과 피해자 보호 모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

이듯, 가해자의 인권과 더불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이며, 인권 선진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기관으로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정책전반에서 그 가치가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Ⅳ

내외 귀빈 여러분!

부단한 노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나고,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범죄연령은 낮아지며 잔혹성은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피해자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면서도 더욱더 충실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동반자로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큰 힘을 보태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고통과 역경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일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범죄피해자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년 허그(HUG) 후원의 날 격려사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님, 손현덕 매일경제 상무이사님,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허그 후원의 날'행사를 위해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보호위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그간의 헌신과 열정으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구본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내외 귀빈 여러분!

법무부는'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자녀 학업지원과 같은 가정복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대상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Ⅲ

보호위원 여러분!

공단의 보호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70여 년이 넘는 공단의 역사와 함께한 보호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은 오늘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보호대상자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주신 보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과 전국의 보호위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오늘 행사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부산서부지청 개청식

Ⅰ

존경하는 부산서부지청 검찰 가족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개청식을 축하하고자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부산서부지청 개청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개청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산서부지청 직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여러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교통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부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부산서부지역은 명지국제신도시 등 서부산 그랜드플랜을 통해 '新 낙동강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서부지청 개청은 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경사(慶事)이자, 부산서부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인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법무·검찰에 대한 무거운 임무 부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무도 인권 보장의 전제 위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강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처분에 그치지 말고 사건의 근저를 살피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무, 검찰, 더 나아가 국가를 신뢰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검찰청의 존재 의의 중 하나는 지역 사회의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과 다른 부산서부지역의 사정은 무엇인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검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부산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부산서부검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 정부 법무부는 변화된 검찰, 신뢰받는 검찰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서부지청이 빛나는 전통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산서부지청 개청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2.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Ⅰ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60 여일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전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전 직원이 고생한 덕분에 내년 1월 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평창 손님맞이'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과 업무 특성상 필요한 남녀구분 채용문제가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출입국 인력이 360 여명 증원되고 예산도 전년대비 9.8% 증가한 840억 원을 배정받는 등 우리 외국인정책본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여러분 !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문제와 복지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최초로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인구절벽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외국인정책 또는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과의 갈등, 범죄나 불법체류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에 수반되는 부정적 현상이 정책개발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주재관들은 주재국의 외국인정책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리적 국경이 점차 약화되는 국제사회의 현실 앞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Ⅲ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새 정부는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과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국인정책본부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정책 환경도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쇄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중심의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법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의 외국인정책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국가를 혁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간에 쌓은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 직후에 패럴림픽 대회가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3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해 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추운 겨울을 잘 나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업무를 점검하고 시급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7.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격려사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되신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저는 2017년 7월 19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숭고한 가치인 '인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법질서 수호와 함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법무부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때에 비로소 법무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여러분은 그 동안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동이 취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등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발달장애인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에게는 사회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DNA 검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호칭을 사용하여 소년보호시설의 소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베풀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모 산소에 성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배려를

통해 이들의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신속한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정성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Ⅳ

도덕경에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인권옹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권옹호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가족분들께서도 수상자들이 모범적인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Ⅴ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8.

법무부장관 박상기

○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식

Ⅰ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김갑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지금까지 법무·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되풀이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그 방향을 잃고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우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 또한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법무·검찰은 이를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Ⅲ

지금까지 법무·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이를 토대로 한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법무·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법무·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끝으로, 어려운 책무를 수락해 주신 김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2.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년 선진법제포럼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의미」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법학자, 기업법무 분야의 법률실무가, 인권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모여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서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변호사이시자 세계변호사협회 자문위원이신 윤세리 대표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님,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지은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최근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1년 기업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지도원칙을 채택하였고 국제사회는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 지면서 인권 경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인권 경영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과 인권 분야는 상사법, 인권법, 형사법, 통상법, 국제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법률 역영이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Ⅳ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문제를 바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논의는 기업 내부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일체의 부정적 작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경영은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권 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경영상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가들에게는 기업과 인권 분야가 새로운 활동 영역과 역할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법률가들이 기업과 인권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Ⅴ

법무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포럼을 계기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속적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2017년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및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Ⅰ

사랑하는 보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보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의 보호관찰관상'과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먼저, 오늘 '올해의 보호관찰관'과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신 분들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보호가족 여러분!

법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도입, 치료명령 대상자 및 정신질환 소년원생 관리·감독 강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은 여러분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뒷받침될 때 보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말처럼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생에게도 당연히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따뜻해지고 살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진심어린 노력과 헌신이 지속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호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겠습니다.

Ⅳ

친애하는 보호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자신과 주변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수상자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9기 블로그 기자단 해단식 및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제9기 블로그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기로 선발된 기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출범한 지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제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위촉되었고 현재까지 누적 기자는 700명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기획하고 취재하여 블로그에 게재한 기사는 4천 800건이 넘고, 법무부 블로그의 누적 방문자 수는 천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활약으로 그동안 법무부 블로그가 SNS 대상,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거두어 왔습니다.

10년 전 우리 기자였던 한 대학생 친구는 현재 아나운서가 되었고 기자로서 영상을 찍으며 실력을 쌓은 한 주부는 현재 학생들에게 영상제작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블로그기자로 활동한 후에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었거나, 법무부 산하 기관의 직원이 된 기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기자들이 사회 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국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이 법무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준 23명의 제9기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기자 생활이 끝난 후에도 법무부 블로그와 기자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촉된 기자들 또한 앞선 기자단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냉철한 판단으로 기자로서의 역할을 마음껏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임기제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1988~)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晙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정무차관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사무차관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洿洙)	2018. 6. 22.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정책홍보 관리실로 개편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기획조정실로 개편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법무국 신설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법무실로 개편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晙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신설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 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방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개방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방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방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방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방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직무대리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일반직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일반직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17. 12. 31. 기준)

1. 본 부(5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朴相基	2017. 7. 19.
차 관	李今魯	2017. 5. 22.
장관비서관	許喆安	2017. 7. 26.
장관정책보좌관	李種根	2017. 8. 17.
〃	具承熙	2017. 8. 16.
감 찰 관	張仁鍾	2015. 3. 16.
감찰담당관	宋奎鍾	2017. 8. 17.
검 사	安炯完	2017. 8. 17.
검 사	孫尙煜	2016. 1. 27.
검찰사무관	曺旻鎬	2015. 8. 31.
〃	金峰奭	2015. 8. 31.
교 정 관	鄭 鎭	2015. 1. 19.
감사담당관	文權点	2016. 7. 4.
서 기 관	李永一	2017. 1. 1.
〃	金政福	2015. 1. 1.
〃	李漢植	2015. 8. 3.
행정사무관	李東勳	2014. 7. 11.
〃	權泰成	2015. 1. 1.
〃	金範映	2015. 1. 1.
〃	金英南	2016. 7. 4.
시설사무관	裵聖龍	2014. 9. 15.
운영지원과장	柳志重	2016. 7. 4.
서 기 관	金洙徹	2015. 1. 1.
행정사무관	鄭東桓	2014. 7. 21.
〃	辛漢憲	2012. 7. 2.
〃	李相榮	2015. 4. 7.
시설사무관	林暎卓	2016. 12. 23.
대 변 인	文泓性	2017. 8. 17.
홍보담당관	韓正珍	2013. 9. 1.
서기관(일반임기제)	宋제나타아	2015. 9. 29.
행정사무관	高暎錫	2016. 12. 22.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李相雨	2014. 5. 1.
기획조정실장	趙商喆	2017. 8. 1.
정책기획관	金泰福	2016. 7. 1.
검 사	朴恩惠	2016. 8. 31.
검 사	宋圭榮	2016. 1.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비상안전기획관	金晩河	2014. 1. 1.
행정사무관	李康采	2013. 7. 29.
기획재정담당관	李相洵	2016. 1. 1.
서 기 관	崔相嫮	2016. 7. 4.
〃	金珍燮	2013. 12. 4.
행정사무관	李濬碩	2015. 4. 7.
〃	李賢貞	2017. 4. 1.
혁신행정담당관	崔珥錫	2016. 1. 1.
서 기 관	趙五行	2016. 7. 4.
행정사무관	柳炅南	2017. 1. 5.
〃	梁東圭	2016. 11. 30.
〃	朴箱烈	2016. 4. 5.
시설담당관	金鍾泰	2014. 12. 31.
시설서기관	曺錄煥	2014. 12. 31.
시설사무관	鄭秉澤	2011. 4. 20.
〃	金昌燮	2015. 8. 3.
〃	金永採	2016. 12. 23.
〃	嚴東哲	2014. 11. 12.
〃	姜東憲	2015. 4. 7.
공업사무관	李亨燮	2014. 11. 12.
〃	姜秉鴻	2014. 11. 12.
정보화담당관	洪淳乭	2012. 5. 7.
기술서기관	周埌根	2015. 8. 3.
〃	徐仁錫	2016. 1. 1.
전산사무관	姜外求	2017. 7. 24.
〃	陳瑀錫	2012. 12. 17.
〃	辛秉默	2015. 8. 3.
〃	鄭惠燦	2015. 10. 12.
정책성과관리팀장	姜義坤	2016. 7. 4.
행정사무관	金에오	2015. 8. 24.
〃	金容甲	2016. 5. 24.
행복민원센터장	沈景輔	2016. 7. 6.
시설사무관	崔海圭	2014. 9. 15.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裵龍贊	2017. 8. 17.
검 사	鄭普泳	2016. 1. 27.
전산사무관	金玩烈	2010. 12. 22.
〃	金奉友	2016. 5. 2.
보호사무관	金鎭五	2016.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법 무 실 장	李容九	2017. 8. 22.
법 무 심 의 관	李鎭琇	2017. 8. 17.
검 사	曺旻佑	2016. 1. 27.
〃	朴良浩	2015. 2. 25.
〃	李始佺	2015. 2. 25.
〃	金炫佑	2016. 1. 27.
〃	金準先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朱永秀	2017. 9. 27.
법 무 과 장	金潤燮	2017. 8. 17.
검 사	曺英姬	2016. 1. 27.
〃	申載弘	2017. 2. 20.
검찰수사서기관	金容寬	2017. 1. 16.
검 찰 사 무 관	孫柱根	2017. 9. 27.
국 제 법 무 과 장	李基榮	2017. 8. 17.
검 사	金志彦	2015. 2. 25.
〃	蘇正秀	2015. 8. 27.
〃	申東桓	2017. 2. 20.
〃	金相賢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丁海煐	2016. 8. 2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申殷瑛	2014. 7. 14.
〃	崔 초	2016. 10. 4.
국 가 송 무 과 장	宋吉大	2017. 8. 17.
검 사	金恩美	2015. 2. 25.
〃	崔成洙	2017. 8. 17.
검찰수사서기관	金相佑	2017. 9. 27.
검 찰 사 무 관	金圭河	2015. 8. 31.
〃	金淮仟	2016. 8. 2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柳政旼	2016. 4. 1.
통 일 법 무 과 장	朴祥振	2017. 8. 17.
검 사	徐京源	2015. 2. 25.
〃	朴起兌	2017. 8. 17.
〃	金正勳	2017. 2. 20.
〃	崔鏞普	2016. 1. 27.
검 찰 사 무 관	張錫京	2017. 9. 2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李玩蕙	2016. 4. 1.
상 사 법 무 과 장	朴晟燻	2017. 8. 17.
검 사	趙宰鐵	2017. 2. 20.
검 사	金俸進	2016. 1. 27.
행정서기관(일반임기제)	李奎哲	2015. 11. 16.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裵權秀	2016. 2. 17.
전 문 임 기 제 나 급	金孝宣	2015. 1. 26.
전 문 임 기 제 나 급	車慶珍	2015. 9. 30.
법 조 인 력 과 장	車淳吉	2017. 8. 17.
검 사	金成苑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尹錫仁	2016. 8. 29.
〃	安泰星	2016. 8. 29.
행 정 사 무 관	金弘俊	2011. 7. 29.
〃	崔永萬	2016. 5. 24.
〃	李昇恒	2015. 4. 7.
검 찰 국 장	朴均澤	2017. 5. 22.
사법연수원부원장	金基東	2017. 8. 1.
검 찰 과 장	權純汀	2017. 8. 17.
검 사	權尙大	2017. 8. 17.
〃	金秀湑	2017. 2. 20.
〃	羅夏那	2015. 2. 25.
〃	羅熙錫	2016. 1. 27.
검찰수사서기관	韓生一	2016. 2. 22.
〃	金東圭	2017. 9. 27.
검 찰 사 무 관	金東煜	2015. 2. 16.
형 사 기 획 과 장	姜知聲	2017. 8. 17.
검 사	張峻豪	2016. 1. 27.
〃	金鎭赫	2017. 2. 20.
검찰수사서기관	李昊烈	2017. 9. 27.
검 찰 사 무 관	白相洪	2015. 8. 31.
〃	丁永運	2016. 2. 22.
공 안 기 획 과 장	李憲柱	2017. 8. 17.
검 사	宋奉駿	2017. 2. 20.
〃	崔洙逢	2016. 8. 31.
〃	辛相祐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姜義求	2015. 8. 31.
〃	金光洙	2015. 8. 31.
국 제 형 사 과 장	徐楨旼	2016. 1. 13.
검 사	金亨遠	2015. 2. 25.
〃	申都旭	2015. 2. 25.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 사	金南秀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朴原伯	2013. 7. 29.
〃	崔暢桓	2017. 1. 16.
형 사 법 제 과 장	朴性玟	2017. 8. 17.
검 사	金相玟	2016. 8. 31.
〃	申熙英	2017. 8. 17.
〃	韓尙亨	2017. 8. 17.
검 찰 사 무 관	尹炳得	2016. 2. 22.
〃	金昶玉	2017. 9. 27.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장	高基榮	2017. 8. 1.
범 죄 예 방 기 획 과 장	鄭鍾和	2017. 8. 17.
검 사	崔鍾必	2016. 1. 27.
〃	姜聖基	2017. 2. 20.
보 호 사 무 관	李承旭	2013. 1. 28.
〃	吳相燮	2013. 10. 1.
〃	趙莖淏	2014. 1. 13.
〃	金忠燮	2016. 1. 1.
법 질 서 선 진 화 과 장	朴夏英	2017. 8. 17.
검 사	崔娜瑛	2015. 8. 27.
〃	李尙勳	2016. 1. 27.
보 호 사 무 관	李東駿	2017. 1. 9.
검 찰 사 무 관	玄 臨	2014. 2. 24.
행 정 사 무 관	許泰九	2015. 8. 3.
〃	金洙晶	2017. 1. 1.
보 호 법 제 과 장	文映權	2017. 8. 17.
검 사	孫貞淑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崔洙鐘	2015. 8. 31.
보 호 사 무 관	全相昊	2016. 1. 1.
보 호 사 무 관	權銀娥	2015. 1. 12.
보 호 사 무 관	曺亨燮	2016. 1. 1.
소 년 과 장	李泳冕	2016. 3. 7.
서 기 관	李容浩	2017. 1. 9.
보 호 사 무 관	李憲求	2014. 1. 13.
〃	金芝秀	2016. 7. 18.
〃	金仁洙	2016. 1. 1.
행 정 사 무 관	金景洙	2015.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호 관 찰 과 장	朴守煥	2017. 1. 9.
서 기 관	李法虎	2015. 3. 30.
보 호 사 무 관	姜信源	2016. 7. 18.
〃	成奉虎	2015. 8. 31.
〃	金求會	2016. 7. 18.
〃	洪性學	2016. 7. 18.
특정범죄자관리과장	李泰源	2015. 11. 2.
서 기 관	黃振圭	2017. 1. 9.
보 호 사 무 관	閔悳熙	2015. 8. 31.
〃	姜映旭	2016. 1. 1.
〃	金忠源	2017. 1. 9.
인 권 국 장	黃希錫	2017. 9. 29.
인 권 정 책 과 장	吳侑珍	2017. 11. 16.
서 기 관	金에오	2017. 9. 29.
검 찰 사 무 관	潘俊成	2017. 1. 16.
사 무 관	朴殷瑩	2017. 12. 4.
〃	林賢景	2017. 11. 13.
인 권 구 조 과 장	安喜俊	2017. 8. 17.
검 사	鄭迦珍	2016. 1. 27.
서 기 관	趙商民	2017. 9. 29.
검 찰 사 무 관	崔賢太	2016. 2. 22.
행 정 사 무 관	徐惠珠	2014. 9. 22.
인 권 조 사 과 장	徐仁善	2017. 8. 17.
검 사	許志勳	2016. 1. 27.
검 찰 사 무 관	曺修熙	2017. 9. 27.
〃	李昌埈	2016. 2. 22.
여 성 아 동 인 권 과 장	朴賢珠	2017. 8. 17.
검 찰 수 사 서 기 관	李廷國	2017. 9. 27.
행 정 사 무 관	金裕浩	2017. 1. 1.
검 찰 사 무 관	朴光洙	2017. 1. 16.
교 정 본 부 장	金學成	2016. 7. 1.
교 정 정 책 단 장	兪炳喆	2016. 9. 12.
보 안 정 책 단 장	尹在興	2016. 9. 12.
교 정 기 획 과 장	崔帝榮	2016. 9. 12.
서 기 관	朴冏琁	2017. 7. 3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琴鏞鴫	2017. 2. 13.
교 정 관	安泳三	2017. 2. 13.
〃	趙炳珠	2015. 8. 3.
〃	曺官成	2017. 2. 13.
〃	李廷容	2016. 1. 25.
〃	崔鍾一	2017. 7. 31.
〃	崔在佑	2016. 9. 12.
직업훈련과장	朴柄馹	2016. 9. 12.
교 정 관	許萬赫	2017. 2. 13.
〃	鄭惠利	2015. 8. 3.
행정사무관	李埈瑞	2016. 2. 29.
사회복귀과장	李彦淡	2016. 9. 12.
교 정 관	宋鎭洙	2016. 9. 12.
〃	金晟昊	2015. 8. 3.
〃	金光熙	2016. 9. 12.
복 지 과 장	吳光云	2017. 7. 31.
교 정 관	沈載東	2016. 3. 14.
행정사무관	趙始衡	2015. 1. 1.
시설사무관	吳成根	2015. 8. 3.
보 안 과 장	金珍求	2016. 9. 12.
교 정 관	許德煥	2016. 9. 12.
〃	徐豪成	2015. 8. 3.
〃	張元載	2015. 8. 3.
분류심사과장	南俊洛	2017. 7. 31.
서 기 관	梁元東	2016. 9. 12.
교 정 관	金宣希	2017. 2. 13.
〃	裵敬錫	2014. 9. 29.
의 료 과 장	吳世鴻	2017. 2. 13.
교 정 관	朴大澈	2016. 9. 12.
〃	朴基柱	2016. 9. 12.
심리치료과장	朴振悅	2016. 9. 12.
교 정 관	李成鎬	2017. 2. 13.
〃	徐輔均	2016. 9. 12.
행정사무관	金秉天	2016. 9. 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車圭根	2017. 9. 4.
출입국정책단장	張世根	2016. 7. 13.
국적·통합정책단장	金榮根	2017. 12.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출입국기획과장	공석	
서 기 관	李相達	2017. 1. 9.
출입국관리사무관	文壽龍	2015. 8. 31.
〃	金炳哲	2016. 7. 20.
〃	李大雨	2017. 1. 9.
〃	劉炫松	2017. 1. 9.
출입국심사과장	金度均	2017. 1. 9.
서 기 관	成在新	2017. 1. 9.
출입국관리사무관	安東寬	2014. 7. 14.
〃	李翠庚	2017. 1. 9.
체류관리과장	李東煇	2016. 8. 22.
출입국관리사무관	李承賢	2015. 8. 10.
〃	金旼勁	2016. 2. 17.
〃	姜榮佑	2017. 1. 9.
〃	柳在錫	2017. 1. 9.
이민조사과장	林辰澤	2017. 1. 9.
출입국관리사무관	高錫坤	2012. 1. 20.
〃	尹相龍	2015. 8. 10.
〃	金珹振	2014. 7. 14.
〃	李相翰	2016. 7. 20.
이민정보과장	李德龍	2017. 1. 9.
출입국관리사무관	林焌植	2017. 1. 9.
〃	金基聖	2017. 1. 9.
외국인정책과장	姜性煥	2017. 9. 4.
서 기 관	潘在烈	2017. 1. 9.
출입국관리사무관	具本俊	2013. 1. 28.
〃	李在炯	2016. 7. 20.
〃	朴濟晟	2016. 2. 25.
국 적 과 장	金鉉彩	2017. 2. 23.
출입국관리사무관	崔文禎	2016. 7. 20.
〃	金鎭成	2013. 7. 29.
〃	柳深熙	2017. 1. 9.
이민통합과장	陸承烹	2016. 7. 20.
출입국관리사무관	李浩遠	2016. 2. 17.
〃	朴眞洙	2016. 7. 20.
〃	金泰亨	2016. 2. 17.
〃	金才楠	2017. 1. 9.
난 민 과 장	河勇國	2016. 1. 27.
출입국관리사무관	具炳謨	2015. 3. 7.
〃	李正美	2016. 1. 27.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 장	검 사	김 오 수(金汚洙)	2017.08.01.
기 획 부 장	검 사	이 동 열(李東烈)	2017.08.01.
교정연수부장	고 위 공 무 원	유 승 만(柳承晩)	2017.02.13.
연 구 위 원	검 사	장 호 중(張鎬仲)	2017.10.30.
		류 장 만(柳長萬)	2014.04.28.
	이 사 관	최 상 진(崔相鎭)	2017.01.23. (국회파견)
기 획 과 장	검 사	윤 상 호(尹相皓)	2017.08.17.
검 사 교 수	검 사	안 미 영(安美英)	2017.08.17.
		정 규 영(鄭圭永)	2017.08.17.
		박 재 현(朴載現)	2017.08.17.
		전 현 민(全鉉珉)	2016.01.13.
		오 세 영(吳世榮)	2017.08.17.
		진 정 길(陳正吉)	2017.08.17.
		최 두 천(崔斗泉)	2017.02.20.
		김 은 미(金恩美)	2017.02.20.
		위 수 현(魏秀鉉)	2017.02.20.
		김 형 원(金亨元)	2017.02.20.
검 사 교 수 (로 스 쿨)	검 사	김 한 조(金漢祚)	2017.02.20.
		조 남 철(趙南喆)	2017.02.20.
		조 홍 용(曺弘用)	2017.02.20.
		조 지 은(趙祉殷)	2017.02.20.
		이 효 진(李効眞)	2017.02.20.
		최 재 아(崔在雅)	2017.02.20.
		박 정 난(朴貞暖)	2017.02.20.
총 무 과 장	서 기 관	천 정 훈(千政熏)	2016.01.01.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홍 승 모(洪承謨)	2017.01.16.
교정연수과장	서 기 관	박 상 용(朴相龍)	2017.07.31.
교정훈련과장	서 기 관	김 상 권(金尙權)	2017.01.01.
시설관리팀장	서 기 관	이 석 재(李錫宰)	2015.08.03.
용 인 분 원 장	검 사	김 재 구(金在龜)	2017.08.17.
대외연수과장	검 사	최 재 민(崔在珉)	2017.08.17.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배 길 문(裵吉文)	2016.08.29.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文武一	2017.07.25.
차 장 검 사	奉 旭	2017.05.22.
기획조정부장	車京煥	2017.08.01.
반부패부장	金宇鉉	2017.08.01.
형 사 부 장	李盛潤	2017.08.01.
강 력 부 장	裵城範	2017.08.01.
공 안 부 장	權益煥	2017.08.01.
공판송무부장	宋三鉉	2017.08.01.
과학수사부장	李廷會	2017.08.01.
감 찰 부 장	鄭炳昱	2016.06.13.
범죄정보기획관	權純範	2017.08.17.
범죄정보1담당관	芮世民	2017.08.17.
범죄정보2담당관	成尙憲	2017.08.17.
대 변 인	朱映奐	2017.08.17.
정책기획과장	金南佑	2017.08.17.
정보통신과장	權奇大	2017.08.17.
수사지휘과장	金亨根	2017.08.17.
수사지원과장	朴廣培	2017.08.17.
형 사 1 과 장	李定桓	2017.08.17.
형 사 2 과 장	李鍾赫	2017.08.17.
조직범죄과장	金泰權	2017.08.17.
마 약 과 장	李丞浩	2017.08.17.
피해자인권과장	韓允卿	2017.08.17.
공 안 기 획 관	李秀權	2017.08.17.
공 안 1 과 장	楊重鈔	2017.08.17.
공 안 2 과 장	宋 岡	2017.08.17.
공 안 3 과 장	鄭映學	2017.08.17.
공판송무과장	朴億洙	2017.08.17.
과학수사기획관	全亨根	2017.08.17.
과학수사1과장	李貞勳	2017.08.17.
과학수사2과장	鄭珍溶	2017.08.17.
디지털수사과장	崔鍾武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이버수사과장	李載昇	2017.08.17.
감 찰 1 과 장	金志容	2017.08.17.
감 찰 2 과 장	邢振輝	2017.08.17.
국제협력단장	金哲秀	2017.08.17.
검 찰 연 구 관	李 龍	2016.01.13.
〃	金煦坤	2017.08.17.
〃	趙鍾泰	2017.08.17.
〃	徐暎受	2017.08.17.
〃	裵鏞元	2017.08.17.
〃	趙在彬	2017.08.17.
〃	金泰勳	2017.08.17.
〃	申昇熙	2017.08.17.
〃	朴赫洙	2017.08.17.
〃	尹炳竣	2017.08.17.
〃	朴台顥	2017.08.17.
〃	李成植	2017.08.17.
〃	李東彦	2017.08.17.
〃	權裕植	2016.01.27.
〃	李光石	2016.01.27.
〃	鄭守辰	2016.01.27.
〃	姜世顯	2016.01.27.
〃	金侖宣	2016.01.27.
〃	李燦揆	2016.01.27.
〃	金永男	2016.08.31.
〃	李一揆	2017.02.20.
〃	金姸實	2017.02.20.
〃	吳宗烈	2017.02.20.
〃	趙容珝	2017.02.20.
〃	金度延	2017.02.20.
〃	徐賢旭	2017.02.20.
〃	丁維宣	2017.02.20.
〃	劉敏鍾	2017.02.20.
〃	韓文赫	2017.08.17.
〃	韓演奎	2017.08.17.
〃	鄭令西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金永昌	2017.10.12.
운 영 지 원 과 장	尹振雄	2017.09.27.
집 행 과 장	尹權鎬	2017.01.16.
검 찰 총 장 실	鄭棟引	2016.08.29.
수 사 지 원 과	鄭基成	2017.09.27.
디 지 털 수 사 과	李在浩	2017.09.27.
운 영 지 원 과	成贊五	2017.01.16.
관 리 과 장	李炯奉	2017.01.16.
검 찰 연 구 관 실	張柄仁	2017.09.27.
감 찰 1 과	李仁柱	2017.01.16.
감 찰 2 과	金默鎭	2016.08.29.
비 상 안 전 담 당 관	柳春烈	2012.03.28.
정 보 통 신 서 기 관	邊興九	2015.02.16.
정 보 통 신 서 기 관	高成順	2014.02.24.
(서울고등검찰청)		
검 사 장	趙垠奭	2017.08.01.
차 장 검 사	姜南一	2017.08.01.
형 사 부 장	朴順哲	2017.08.17.
공 판 부 장	安權燮	2017.08.17.
송 무 부 장	崔聖男	2017.08.17.
감 찰 부 장	李成熙	2017.08.17.
검 사	鄭明鎬	2017.08.17.
〃	申培植	2016.01.13.
〃	金基正	2017.08.17.
〃	崔永權	2016.01.13.
〃	李學成	2016.01.13.
〃	金鎬榮	2016.01.13.
〃	宋承燮	2014.01.16.
〃	皇甫仲	2014.01.16.
〃	吳圭珍	2016.01.13.
〃	梁普承	2014.01.16.
〃	申殷澈	2016.09.05.
〃	朴鍾基	2014.07.26.
〃	李承永	2017.02.20.
〃	魏聖雲	2013.04.2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吉龍	2017.08.17.
〃	郭圭洪	2014.01.16.
〃	林采源	2014.01.16.
〃	吳廷敦	2017.08.17.
〃	崔尙燻	2015.02.25.
〃	李在九	2014.01.16.
〃	高錫洪	2016.01.13.
〃	朴東辰	2016.01.13.
〃	房峰爀	2016.01.13.
〃	金 勳	2017.08.17.
〃	崔昌鎬	2016.01.13.
〃	李溶民	2017.08.17.
〃	玉善棋	2014.01.16.
〃	朴哲完	2015.02.25.
〃	李秀澈	2014.01.16.
〃	李重霽	2014.01.16.
〃	金龍昇	2016.01.13.
〃	孫峻鎬	2015.02.25.
〃	李鍾根	2016.01.13.
〃	朴鎔浩	2013.04.23.
〃	柳宗完	2017.08.17.
〃	韓東榮	2017.08.17.
〃	安永圭	2017.08.17.
〃	李興洛	2017.08.17.
〃	金已俊	2016.01.13.
〃	金賢哲	2017.08.17.
〃	朴桂賢	2017.08.17.
〃	崔鉉奇	2016.08.31.
〃	金贊中	2017.08.17.
〃	趙南寬	2016.01.13.
〃	鄭智泳	2016.08.31.
〃	金忠宇	2017.08.17.
〃	崔仁鎬	2017.02.20.
〃	金昡采	2016.01.13.
〃	金 薰	2017.04.1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鄭銖峯	2017.06.12.
〃	邊昶範	2017.08.17.
〃	李枓奉	2017.08.17.
〃	尹春九	2016.01.13.
〃	柳炳斗	2017.08.17.
〃	田盛元	2017.02.20.
〃	金炫辰	2017.02.20.
〃	金鉉善	2017.08.17.
〃	權敬日	2017.08.17.
〃	金炳求	2016.01.13.
〃	金基文	2016.01.13.
사무국장	李榮鎬	2017.09.27.
총무과장	全炳烈	2017.09.27.
사건과장	全德鎭	2016.08.29.
관리과장	白種東	2017.09.27.
소송사무제1과장	李云淵	2016.08.29.
소송사무제2과장	朴在云	2017.09.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尹錫悅	2017.05.22.
제1차장검사	尹大鎭	2017.08.17.
제2차장검사	朴璨浩	2017.08.17.
제3차장검사	韓東勳	2017.08.17.
형사1부장검사	洪承郁	2017.08.17.
형사2부장검사	朴鍾根	2017.08.17.
형사3부장검사	李進東	2017.08.17.
형사4부장검사	韓奭履	2017.08.17.
형사5부장검사	朴哲雄	2017.08.17.
형사6부장검사	朴志英	2017.08.17.
형사7부장검사	孫準晟	2017.08.17.
형사8부장검사	朱祥鎔	2017.08.17.
조사1부장검사	羅贊基	2017.08.17.
조사2부장검사	金洋洙	2017.08.17.
여성아동조사부장검사	洪終姬	2017.08.17.
총무부장검사	金秀炫	2017.08.17.
공안1부장검사	林 炫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공안2부장검사	陳載仙	2017.08.17.
공공형사부장검사	金成勳	2017.08.17.
외사부장검사	金永鉉	2017.08.17.
공판1부장검사	李尙昱	2017.08.17.
공판2부장검사	金鍾根	2017.08.17.
공판3부장검사	鄭惟美	2017.08.17.
특수1부장검사	申子容	2017.08.17.
특수2부장검사	宋庚鎬	2017.08.17.
특수3부장검사	梁碩祚	2017.08.17.
특수4부장검사	金昌珍	2017.08.17.
강력부장검사	朴在億	2017.08.17.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申奉洙	2017.08.17.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	黃秉柱	2017.08.17.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검사	丘尙燁	2017.08.17.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李龍一	2017.08.17.
부장검사	徐鍾赫	2017.08.17.
〃	孫榮培	2017.08.17.
(부부장)검사	金德吉	2017.08.17.
〃	高泂坤	2016.01.13.
〃	金英逸	2016.01.13.
〃	金玟炯	2016.01.13.
〃	全俊喆	2016.01.13.
〃	羅昌洙	2017.08.17.
〃	金恩心	2017.08.17.
〃	安炳洙	2017.08.17.
〃	李泳揆	2017.08.17.
〃	千奇弘	2017.08.17.
〃	曺廣煥	2017.08.17.
〃	李喜東	2017.08.17.
〃	李禎燮	2017.08.17.
〃	金熹榮	2017.08.17.
〃	金炯錫	2017.08.17.
〃	李卜鉉	2017.08.17.
〃	趙相元	2017.08.17.
〃	金香連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부부장)검사	嚴熙竣	2017.08.17.
〃	任大赫	2017.08.17.
〃	段成翰	2017.08.17.
〃	崔任烈	2017.08.17.
〃	裵盛訓	2017.08.17.
〃	崔榮娥	2017.08.17.
〃	裵文基	2017.08.17.
〃	文炫喆	2017.08.17.
〃	周慇暾	2017.08.17.
〃	林歲虎	2017.08.17.
〃	朴柱誠	2017.08.17.
〃	崔昌玟	2017.08.17.
〃	李蔓欽	2017.08.17.
〃	金知完	2017.08.17.
〃	元智愛	2017.08.17.
〃	金原鋕	2017.08.17.
〃	金洋燮	2017.08.17.
검사	李坤胡	2016.01.27.
〃	崔宰鳳	2017.08.17.
〃	趙柱衍	2015.02.25.
〃	李相錄	2017.02.20.
〃	秋慧胤	2017.02.20.
〃	李知炯	2016.01.27.
〃	金政煥	2014.08.29.
〃	金洛賢	2015.02.25.
〃	龍聖鎭	2016.01.27.
〃	朴奎炯	2015.02.25.
〃	金鍾佑	2015.02.25.
〃	張俊浩	2015.02.25.
〃	李東均	2015.02.25.
〃	申宗坤	2017.02.20.
〃	車帆濬	2015.02.25.
〃	申俊浩	2016.01.27.
〃	李東源	2015.08.27.
〃	朴大範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孫儹旿	2016.01.27.
〃	金奉俊	2016.01.27.
〃	金泫我	2016.01.27.
〃	孫晉郁	2017.02.20.
〃	梁善順	2015.08.27.
〃	柳竟弼	2015.02.25.
〃	朴建昱	2016.01.27.
〃	李容均	2017.02.20.
〃	金泳吾	2015.02.25.
〃	金海敬	2017.02.20.
〃	鞠相佑	2015.02.25.
〃	安晟熙	2012.07.26.
〃	洪完喜	2016.01.27.
〃	許 準	2014.08.29.
〃	羅懿燁	2015.02.25.
〃	崔大健	2016.01.27.
〃	林有慶	2017.02.20.
〃	文芝善	2017.02.20.
〃	姜旼廷	2016.08.31.
〃	權善英	2015.02.25.
〃	權那元	2016.01.27.
〃	崔宰熏	2017.02.20.
〃	金 中	2017.02.20.
〃	吳起燦	2016.01.27.
〃	閔丙權	2016.01.27.
〃	姜尙默	2016.01.27.
〃	許誠桓	2016.01.27.
〃	吳世文	2015.02.25.
〃	林仙和	2017.02.20.
〃	陳昊植	2015.02.25.
〃	金泳周	2017.02.20.
〃	任杉彬	2015.02.25.
〃	洪晟準	2016.08.31.
〃	金載赫	2017.02.20.
〃	朴鎭成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志榮	2015.02.25.
〃	金泰見	2014.02.05.
〃	金益洙	2015.08.27.
〃	朴炅燮	2017.02.20.
〃	金鍾必	2017.08.17.
〃	李義燦	2013.02.28.
〃	秋義晶	2014.02.05.
〃	蔡熹滿	2017.02.20.
〃	金宰禾	2016.01.27.
〃	宋妊恩	2016.01.27.
〃	盧先均	2017.02.20.
〃	孔浚赫	2017.02.20.
〃	金保成	2016.01.27.
〃	李秉柱	2016.01.27.
〃	金泰勳	2017.02.20.
〃	金丞杰	2017.02.20.
〃	崔泰銀	2017.02.20.
〃	許 勳	2015.02.25.
〃	魚寅成	2015.02.25.
〃	朴晉奭	2017.02.20.
〃	洪龍和	2015.02.25.
〃	金正局	2015.02.25.
〃	金志容	2017.02.20.
〃	金潤龍	2016.01.27.
〃	鞠 元	2017.02.20.
〃	李相睦	2016.01.27.
〃	鄭熙선	2017.08.17.
〃	李承學	2015.02.25.
〃	尹琇楨	2016.01.27.
〃	李在晩	2015.02.25.
〃	朴鍾宣	2015.02.25.
〃	李豪錫	2015.02.25.
〃	李治炫	2016.01.27.
〃	朴建永	2015.02.25.
〃	李相赫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張眞英	2014.02.05.
〃	朴香徹	2014.02.05.
〃	崔鍾赫	2015.02.25.
〃	朴慶澤	2017.02.20.
〃	金正玉	2016.01.27.
〃	朴 徹	2017.02.20.
〃	裵哲晟	2017.02.20.
〃	沈亨錫	2014.02.05.
〃	韓相潤	2016.01.27.
〃	印 勳	2016.01.27.
〃	李泰協	2017.08.17.
〃	金昌燮	2016.01.27.
〃	金가람	2016.01.27.
〃	申基煉	2017.08.17.
〃	崔在洵	2014.02.05.
〃	朴健榮	2017.08.17.
〃	崔斗憲	2016.01.27.
〃	張大圭	2014.02.05.
〃	李元模	2015.08.27.
〃	宋旼侹	2016.01.27.
〃	徐成牧	2016.01.27.
〃	朴지나	2017.02.20.
〃	張有剛	2014.02.05.
〃	全秀珍	2015.02.25.
〃	姜容默	2016.01.27.
〃	朴智勳	2017.02.20.
〃	曺 哲	2015.02.25.
〃	鄭愚錫	2017.02.20.
〃	裵相玧	2017.02.20.
〃	金瀛斌	2017.02.20.
〃	秋昌賢	2015.02.25.
〃	金容帝	2015.02.25.
〃	李東根	2015.02.25.
〃	陳乙宗	2016.01.27.
〃	南哲佑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趙正鎬	2017.02.20.
〃	趙晟允	2017.02.20.
〃	許允僖	2017.02.20.
〃	李正浩	2017.02.20.
〃	高永河	2017.02.20.
〃	鄭宇俊	2015.02.25.
〃	徐廷和	2017.02.20.
〃	李周龍	2017.02.20
〃	李大憲	2017.02.20.
〃	趙常圭	2015.02.25.
〃	李周炫	2015.02.25.
〃	金榮伸	2016.01.27.
〃	張麗美	2015.02.25.
〃	尹孝善	2015.02.25.
〃	洪熙英	2015.02.25.
〃	趙雅羅	2016.01.27.
〃	金兌謙	2016.01.27.
〃	金勁穆	2016.01.27.
〃	崔亨圭	2016.01.27.
〃	朴榮植	2016.01.27.
〃	李裁源	2016.01.27.
〃	金炳昱	2016.01.27.
〃	韓康一	2016.01.27.
〃	金成勳	2016.01.27.
〃	柳時棟	2016.01.27.
〃	金珉呈	2016.01.27.
〃	全哲鎬	2016.01.27.
〃	李先基	2016.01.27.
〃	河逸秀	2016.01.27.
〃	黃那英	2016.01.27.
〃	朴採願	2016.01.27.
〃	洪志睿	2017.02.20.
〃	李承炫	2017.02.20.
〃	梁栽榮	2017.02.20.
〃	李玄珍	2016.03.02.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閔庚元	2016.04.01.
〃	朴魯山	2016.04.01.
〃	車炳坤	2016.04.01.
〃	全聖桓	2017.03.01.
〃	張太源	2017.04.01.
〃	金南燁	2017.04.01.
〃	金玟秀	2016.03.02.
〃	金素英	2016.02.01.
〃	崔先希	2016.02.01.
〃	梁孝承	2017.03.01.
〃	金珍榮	2017.03.01.
〃	郭炳壽	2017.02.20.
〃	申智媛	2017.02.20.
〃	金柱錫	2015.02.25.
〃	徐載殖	2016.01.27.
사무국장	姜鎭求	2017.09.27.
총무과장	朴舜雨	2017.09.27.
사건과장	朴元赫	2017.09.27.
집행제1과장	曺宇鉉	2017.09.27.
집행제2과장	李連盛	2017.01.16.
기록관리과장	郭明圭	2017.09.27.
형사증거과장	林承哲	2017.09.27.
피해자지원과장	鄭然喆	2017.07.26.
공안과장	李東鎭	2017.09.27.
수사제1과장	朴泳緖	2017.09.27.
범죄정보과장	梁又德	2017.09.27.
수사제2과장	尹在淳	2016.08.29.
수사지원과장	金泰鎰	2017.09.27.
조사과장	吳萬玉	2017.01.16.
조직범죄수사과장	鄭炳樹	2017.09.27.
마약수사과장	崔鎭	2016.08.29.
공판과장	金容郁	2017.09.27.
검사직무대리	金炳善	2016.08.29.
검사직무대리	朴永範	2016.02.22.
검사직무대리	朴相植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趙嬉珍	2017.08.01.
차 장 검 사	文燦晳	2017.08.17.
형사1부장검사	黃鉉德	2017.08.17.
형사2부장검사	金鍾範	2017.08.17.
형사3부장검사	辛應碩	2017.08.17.
형사4부장검사	金裕喆	2017.08.17.
형사5부장검사	朴倫錫	2017.08.17.
형사6부장검사	朴振源	2017.08.17.
공판부장검사	朴恩貞	2017.08.17.
(부부장)검사	姜信燁	2017.08.17.
〃	全錫洙	2017.08.17.
〃	崔盈禕	2017.08.17.
〃	李準植	2016.01.13
〃	李周泳	2017.08.17.
검 사	李世珍	2017.08.17.
〃	金相顯	2016.01.27.
〃	鄭星賢	2017.02.20.
〃	鄭太元	2015.02.25.
〃	魏秀鉉	2015.02.25.
〃	金基龍	2015.02.25.
〃	申太勳	2017.02.20.
〃	朴明姬	2017.02.20.
〃	金琪勳	2017.02.20.
〃	朴俊映	2016.01.27.
〃	姜善珠	2017.02.20.
〃	徐孝沅	2017.08.17.
〃	金兌炯	2017.02.20.
〃	李允姬	2016.01.27.
〃	李在涓	2017.02.20.
〃	金周昡	2017.02.20.
〃	南修娟	2016.01.27.
〃	李尙勳	2014.02.05.
〃	崔龍洛	2017.02.20.
〃	潘 智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仁淑	2015.02.25.
〃	李世元	2015.02.25.
〃	張송이	2017.02.20.
〃	崔芝賢	2014.02.05.
〃	金美志	2016.01.27.
〃	鄭効玟	2016.01.27.
〃	吳相淵	2016.01.27.
〃	林陞琅	2016.01.27.
〃	李知恩	2017.02.20.
〃	楊鎭善	2017.02.20.
〃	李承哲	2016.01.27.
〃	姜弦昊	2016.04.01.
〃	金秀吉	2016.04.01.
〃	李卿煥	2017.04.01.
〃	李柾雨	2017.04.01.
〃	羅珖允	2017.04.01.
〃	河龍萬	2016.03.02.
〃	元相煥	2016.03.02.
〃	金해슬	2016.02.01.
〃	元敬禧	2016.02.01.
〃	金範埈	2017.03.01.
〃	崔惠眞	2017.03.01.
〃	徐하나	2017.02.20.
〃	李東旭	2017.04.27.
〃	金智慧	2017.04.27.
사무국장	劉承俊	2017.01.16.
총무과장	金泳憲	2017.09.27.
사건과장	鄭安鎭	2017.09.27.
집행과장	洪興杓	2017.09.27.
공판과장	宋泳銖	2017.09.27.
조사과장	朴炯碩	2016.08.29.
수사과장	洪永權	2017.09.27.
검사직무대리	康貴楠	2016.10.01.
검사직무대리	金相佑	2017.12.23.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崔鍾元	2017.08.01.
제 1 차 장 검 사	張瑛洙	2017.08.17.
제 2 차 장 검 사	李炫哲	2017.08.17.
형 사 1 부 장 검 사	崔容熏	2017.08.17.
형 사 2 부 장 검 사	金賢洙	2017.08.17.
형 사 3 부 장 검 사	魏聖國	2017.08.17.
형 사 4 부 장 검 사	申英植	2017.08.17.
형 사 5 부 장 검 사	丁珍雄	2017.08.17.
형 사 6 부 장 검 사	金鍾五	2017.08.17.
공 판 부 장	姜亨旻	2017.08.17.
공 안 부 장	韓濟熙	2017.08.17.
금융조사1부장검사	文成仁	2017.08.17.
금융조사2부장검사	鄭大正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金永泰	2017.08.17.
〃	河忠憲	2017.08.17.
〃	柳斗烈	2017.08.17.
〃	許 正	2016.01.13.
〃	禹基烈	2017.08.17.
〃	金 愚	2017.08.17.
검 사	李芳炫	2017.02.20.
〃	李應鐵	2016.01.27.
〃	洪碩基	2016.01.27.
〃	申東原	2016.01.27.
〃	金一權	2017.02.20.
〃	金桐熙	2017.02.20.
〃	朴炫奎	2014.02.05.
〃	朴起煥	2017.02.20.
〃	任世鎭	2017.02.20.
〃	尹垣基	2016.08.31.
〃	曺娥羅	2015.08.27.
〃	朴基太	2016.01.27.
〃	崔淸浩	2016.01.27.
〃	南桂植	2017.02.20.
〃	金倫廷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姜貞英	2017.02.20.
〃	李宗益	2016.08.31.
〃	李晉鏞	2015.02.25.
〃	金志讌	2015.02.25.
〃	奇老星	2016.01.27.
〃	曺永成	2017.02.20.
〃	金鎭晧	2017.02.20.
〃	張仁鎬	2015.02.25.
〃	李貞和	2016.01.27.
〃	李先女	2015.02.25.
〃	龍泰昊	2017.02.20.
〃	鄭仙帝	2016.01.27.
〃	朴先民	2017.02.20.
〃	具玟技	2017.02.20.
〃	車敬子	2015.02.25.
〃	方俊盛	2015.02.25.
〃	李政勳	2016.01.27.
〃	金珉廷	2016.01.27.
〃	朴祥姬	2016.01.27.
〃	崔유리	2016.01.27.
〃	崔修銀	2015.02.25.
〃	金孝珍	2017.02.20.
〃	李炅珉	2015.02.25.
〃	段瀞麗	2017.02.20.
〃	申賢萬	2016.01.27.
〃	金銀貞	2016.01.27.
〃	金世稀	2016.01.27.
〃	金智恩	2016.01.27.
〃	李正賢	2017.02.20.
〃	李尙美	2017.02.20.
〃	朴信映	2017.02.20.
〃	玄東佶	2017.02.20.
〃	徐聖光	2017.02.20.
〃	田惠賢	2017.02.20.
〃	李受眞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李羅英	2016.01.27.
검 사	李定娥	2017.02.20.
〃	韓檯光	2016.04.01.
〃	金漢俊	2016.04.01.
〃	文晧燮	2017.04.01.
〃	盧永鎭	2016.03.02.
〃	朴英雨	2016.03.02.
〃	沈奇昱	2016.03.02.
〃	朴東唆	2016.02.01.
〃	柳晶仁	2017.03.01.
〃	金奎完	2017.03.01.
〃	李惠媛	2017.03.01.
〃	崔完榮	2017.02.20.
〃	李泳周	2017.04.27.
〃	李明熙	2017.04.27.
사 무 국 장	金貞玉	2017.01.16.
총 무 과 장	兪正玟	2017.06.14.
사 건 과 장	張東駿	2017.01.16.
집 행 과 장	李承哲	2016.02.22.
조 사 과 장	李憲	2016.08.29.
수 사 과 장	朴千燮	2017.01.16.
공 판 과 장	文命鎬	2017.09.27.
검사직무대리	姜信光	2017.01.16.
검사직무대리	河永植	2017.09.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安相燉	2017.08.01.
차 장 검 사	朴成鎭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梁要安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金孝鵬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李榮載	2017.08.17.
형사제4부장검사	鄭鎭宇	2017.08.17.
형사제5부장검사	具滋賢	2017.08.17.
형사제6부장검사	李東洙	2017.08.17.
공판부장검사	朴奉熙	2017.08.17.
(부부장)검사	白種宇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成烈	2017.08.17.
(부부장)검사	崔容碩	2017.08.17.
〃	林恩貞	2017.08.17.
〃	陳賢一	2017.08.17.
〃	崔賢喆	2017.08.17.
검 사	張惠榮	2017.02.20.
〃	朴志容	2016.01.27.
〃	黃壽淵	2016.01.27.
〃	柳孝濟	2016.01.27.
〃	韓尙勳	2017.02.20.
〃	金喜柱	2017.02.20.
〃	金泰憲	2017.08.17.
〃	金銀慶	2016.01.27.
〃	千大元	2015.02.25.
〃	黃正妊	2017.02.20.
〃	庾晶鉉	2017.02.20.
〃	尹元一	2017.02.20.
〃	金相文	2017.02.20.
〃	任斗煥	2016.01.27.
〃	河竣皓	2016.01.27.
〃	姜銀善	2017.02.20.
〃	鞠 眞	2016.08.31.
〃	金美守	2016.01.27.
〃	鄭美蘭	2016.01.27.
〃	李大成	2017.02.20.
〃	李京錫	2016.01.27.
〃	李志英	2015.02.25.
〃	金東律	2017.02.20.
〃	李慈璟	2014.02.05.
〃	嚴永旭	2016.01.27.
〃	李柱勳	2016.01.27.
〃	任志洙	2016.01.27.
〃	林智妍	2017.02.20.
〃	許善珠	2016.01.27.
〃	鄭惠丞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	文定信	2017.02.20.
검 사	金味宣	2016.01.27.
〃	閔琇洪	2017.02.20.
〃	金胤鎭	2016.04.01.
〃	權五璋	2016.04.01.
〃	林載雄	2017.03.01.
〃	金珉秀	2017.04.01.
〃	安希卿	2015.02.25.
〃	徐敏羽	2016.03.02.
〃	金東敏	2016.03.02.
〃	姜旼廷	2016.02.01.
〃	鄭主喜	2016.02.01.
〃	崔智允	2017.03.01.
〃	李惠珍	2017.03.01.
〃	金楨元	2017.02.20.
〃	金珍鎬	2017.04.27.
〃	孔昭正	2017.04.27.
사 무 국 장	許雄	2017.01.16.
총 무 과 장	奇性鎬	2017.01.16.
사 건 과 장	柳在燮	2017.09.27.
집 행 과 장	李洪龍	2017.01.16.
조 사 과 장	李相男	2017.01.16.
수 사 과 장	吳宗熙	2017.01.16.
공 판 과 장	金百中	2017.01.17.
검사직무대리	金洪哲	2017.09.27.
검사직무대리	金斗源	2017.09.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申裕澈	2017.08.01.
차 장 검 사	安晟秀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朴昭瑛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羅炳勳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柳政元	2017.08.17.
형사제4부장검사	李文聖	2017.08.17.
형사제5부장검사	金寧基	2017.08.17.
공판부장검사	安瑩駿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李俊燁	2017.08.17.
(부부장)검사	白欑河	2017.08.17.
〃	高秉民	2017.08.17.
〃	劉一錫	2017.08.17.
〃	姜承熙	2017.08.17.
〃	具兌妍	2017.08.17.
〃	鄭在賢	2017.08.17.
〃	張潤台	2017.08.17.
〃	朴勝煥	2017.08.17.
검 사	金昌洙	2017.02.20.
〃	金帝星	2017.02.20.
〃	金度燁	2017.02.20.
〃	鄭永洙	2017.02.20.
〃	李峻東	2016.01.27.
〃	具美玉	2017.02.20.
〃	朴成珉	2016.01.27.
〃	孫正賢	2014.02.05.
〃	權純基	2015.02.25.
〃	李承惠	2017.02.20.
〃	權讚赫	2016.01.27.
〃	趙允鐵	2015.02.25.
〃	李圭原	2015.02.25.
〃	朴允姬	2016.08.31.
〃	鄭秀正	2016.01.27.
〃	李周玹	2015.08.27.
〃	房志炯	2017.02.20.
〃	李俊憙	2017.02.20.
〃	金珍用	2017.02.20.
〃	王善珠	2016.01.27.
〃	金賢祐	2017.02.20.
〃	柳官模	2017.08.17.
〃	崔根榮	2016.01.27.
〃	金玟貞	2014.02.05.
〃	鄭佳媛	2016.01.27.
〃	金志殷	2016.08.31.

직 위	성명	발령일
〃	禹玉英	2015.02.25.
검 사	崔祐赫	2017.02.20.
〃	金知慧	2017.02.20.
〃	金炫秀	2015.02.25.
〃	金晳淳	2017.02.20.
〃	朴智元	2017.02.20.
〃	朴宰成	2016.04.01.
〃	呂한울	2016.04.01.
〃	朴埈奭	2017.04.01.
〃	高鉉昱	2016.03.02.
〃	權다송이	2016.03.02.
〃	李徽素	2016.02.01.
〃	曺受延	2016.05.02.
〃	全和貞	2017.03.01.
〃	金度希	2017.03.01.
〃	金岐旺	2017.02.20.
사 무 국 장	李甲洙	2017.09.27.
총 무 과 장	徐鎭鶴	2017.09.27.
사 건 과 장	趙東奎	2017.09.27.
집 행 과 장	朴鍾哲	2017.01.16.
조 사 과 장	金根模	2016.08.29.
수 사 과 장	金承賢	2017.09.27.
공 판 과 장	田貴鉉	2017.09.27.
검사직무대리	崔星圭	2017.09.27.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會在	2017.08.01.
차 장 검 사	李泰炯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金榮基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宋然奎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玉成大	2017.08.17.
형사제4부장검사	朴相鎭	2017.08.17.
공안부장검사	李尙璡	2017.08.17.
공판송무부장검사	徐奉何	2017.08.17.
(부부장)검사	金鍾徹	2016.01.13.
검 사	李光佑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高鎭源	2014.08.29.
검 사	金恩美	2015.02.25.
〃	崔埈豪	2016.01.27.
〃	朴慧永	2015.02.25.
〃	曺喜英	2015.02.25.
〃	林藝珍	2016.01.27.
〃	李貞旼	2016.01.27.
〃	吳美鏡	2016.01.27.
〃	安昶柱	2017.02.20.
〃	徐源翊	2017.02.20.
〃	金尙俊	2016.01.27.
〃	金明玉	2017.08.17.
〃	吳昔炫	2015.08.27.
〃	權載皓	2017.02.20.
〃	金다래	2016.08.31.
〃	全世貞	2015.02.25.
〃	尹仁植	2016.01.27.
〃	吳大健	2016.01.27.
〃	李承炫	2016.08.31.
〃	李惠美	2015.02.25.
〃	梁益準	2016.01.27.
〃	朴 守	2017.02.20.
〃	姜賢貞	2016.01.27.
〃	金鎣疋	2014.02.05.
〃	宋燦雨	2017.02.20.
〃	姜眞旭	2017.02.20.
〃	朴相宣	2017.02.20.
〃	崔慧卿	2016.01.27.
〃	李栗熙	2017.02.20.
〃	徐東昳	2017.02.20.
〃	薛秀晛	2017.02.20.
〃	李承泌	2016.01.27.
〃	李穗定	2016.01.27.
〃	金台浩	2016.01.27.
〃	金恩慧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恩貞	2016.01.27.
〃	許秀珍	2016.01.27.
〃	申基昌	2016.04.01.
〃	宋亨振	2016.04.01.
〃	柳相宇	2017.04.01.
〃	柳喜敬	2016.03.02.
〃	金東輝	2016.02.01.
〃	崔滋允	2017.03.01.
〃	許成好	2016.05.02.
〃	李東炯	2017.02.20.
〃	金龍善	2017.04.27.
〃	朴保泳	2017.04.27.
사 무 국 장	梁興守	2017.01.16.
총 무 과 장	金取冠	2017.01.16.
사 건 과 장	張文玉	2017.09.27.
집 행 과 장	金寧奎	2017.01.16.
수 사 과 장	金龍雲	2017.01.16.
공 판 송 무 과 장	宋英根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崔先奎	2017.09.27.
(고 양 지 청)		
지 청 장	金國一	2017.08.17.
차 장 검 사	黃銀永	2017.08.17.
부 장 검 사	申明浩	2017.08.17.
〃	孫錫仟	2017.08.17.
〃	金榮俊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尹席主	2016.01.13.
〃	鄭銀惠	2017.08.17.
검 사	河在武	2016.01.27.
〃	鄭普泳	2014.02.05.
〃	金琪昀	2017.02.20.
〃	崔在俊	2017.02.20.
〃	崔善瓊	2017.02.20.
〃	張惠永	2017.02.20.
〃	趙은수	2015.02.25.
〃	朴順愛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相凡	2017.02.20.
검 사	崔倫炅	2015.02.25.
〃	劉知妍	2016.08.31.
〃	李昌熙	2016.01.27.
〃	金有那	2016.08.31.
〃	柳京煥	2017.02.20.
〃	金亨燮	2017.02.20.
〃	黃景媛	2015.02.25.
〃	朴芝英	2015.02.25.
〃	李善美	2015.02.25.
〃	孫娅我	2015.02.25.
〃	崔鍾卿	2017.02.20.
〃	嚴庠竣	2016.01.27.
〃	崔大虎	2016.01.27.
〃	鄭京眞	2016.01.27.
〃	溫政勳	2017.04.01.
〃	李潤錫	2017.08.01.
〃	高斗成	2016.03.02.
〃	河보람	2016.03.02.
〃	朴慧眞	2017.03.01.
〃	金齋植	2017.02.20.
〃	李아람	2017.04.27.
〃	安世映	2017.04.27.
사 무 국 장	金鵬會	2017.01.16.
총 무 과 장	趙顯哲	2017.01.16.
사 건 과 장	金得鎬	2017.09.27.
집 행 과 장	全紋仙	2017.09.27.
수 사 과 장	鄭泰雲	2016.08.29.
(인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孔相勳	2017.08.01.
제 1 차 장 검 사	金石載	2017.08.17.
제 2 차 장 검 사	徐榮敏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明点植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韓雄在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全映俊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4부장검사	吳賢哲	2017.08.17.
형사제5부장검사	閔奇鎬	2017.08.17.
형사제6부장검사	李朱亨	2017.08.17.
공판송무부장검사	吳政姬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金 雄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盧萬錫	2017.08.17.
강 력 부 장 검 사	朴榮彬	2017.08.17.
외 사 부 장 검 사	崔浩永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朴文洙	2017.08.17.
〃	金忠瀚	2017.08.17.
〃	姜智植	2017.08.17.
〃	申乘浩	2015.01.06.
〃	金載滇	2017.08.17.
〃	李昶葐	2017.02.09.
〃	梁建洙	2017.02.20.
〃	金兌垠	2017.08.17.
〃	孔太究	2017.08.17.
〃	金希京	2017.02.20.
〃	李映準	2016.01.13.
〃	韓台和	2017.08.17.
〃	河澹美	2017.08.17.
〃	劉相畋	2017.08.17.
검 사	李英彰	2015.02.25.
〃	李政雨	2016.01.27.
〃	閔庚鎬	2017.02.20.
〃	兪芝衍	2017.02.20.
〃	李完熙	2015.08.27.
〃	金亨元	2015.02.25.
〃	李承勳	2017.02.20.
〃	鄭赫濬	2015.02.25.
〃	嚴宰祥	2016.01.27.
〃	李京植	2016.01.27.
〃	韓尙亨	2016.01.27.
〃	鄭一權	2017.02.20.
〃	崔昭延	2015.08.27.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修民	2017.02.20.
검 사	金秉徹	2017.02.20.
〃	金成泰	2015.02.25.
〃	林豊成	2017.02.20.
〃	禹萬祐	2017.08.17.
〃	曺洙榮	2016.01.27.
〃	李潤九	2016.01.27.
〃	李炅和	2016.01.27.
〃	孫秀珍	2017.02.20.
〃	李煥羽	2016.01.27.
〃	金垠亨	2017.02.20.
〃	朴賢圭	2017.08.17.
〃	李政珉	2016.01.27.
〃	崔允僖	2014.02.05.
〃	金智潤	2016.01.27.
〃	李秀賢	2016.01.27.
〃	李賢珠	2017.02.20.
〃	黃晟雅	2016.01.27.
〃	宋明眞	2016.01.27.
〃	金炫宇	2016.01.27.
〃	朴炯秀	2017.02.20.
〃	任하나	2015.02.25.
〃	宋惠淑	2016.01.27.
〃	李建雄	2017.02.20.
〃	金成見	2017.02.20.
〃	金智娟	2017.02.20.
〃	朴京花	2015.02.25.
〃	高明我	2015.02.25.
〃	崔賢珠	2016.01.27.
〃	朴금빛	2016.01.27.
〃	金熙松	2016.01.27.
〃	許泰勳	2016.01.27.
〃	金春成	2016.01.27.
〃	李秀環	2016.01.27.
〃	黃湖釋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秀姬	2016.01.27.
검 사	鞠陽根	2016.01.27.
〃	金나리	2017.02.20.
〃	李政桓	2017.02.20.
〃	朴奇雄	2016.03.02.
〃	金首謙	2017.02.20.
〃	沈在鋠	2017.02.20.
〃	鄭 赫	2017.02.20.
〃	朴之英	2017.02.20.
〃	李洪烈	2017.02.20.
〃	康馨允	2017.02.20.
〃	趙晋庸	2016.04.01.
〃	柳義埈	2016.04.01.
〃	金東炫	2016.08.01.
〃	朴大韓	2017.04.01.
〃	權俊澤	2017.04.01.
〃	李東遠	2017.08.01.
〃	高基哲	2017.08.01.
〃	李相墩	2016.03.02.
〃	鄭世演	2016.03.02.
〃	金正和	2016.03.02.
〃	閔庚宰	2016.02.01.
〃	河나	2017.03.01.
〃	金素煐	2016.05.02.
〃	趙倫英	2017.02.20.
〃	金孳妍	2017.04.27.
〃	李嘉恩	2017.04.27.
사 무 국 장	姜聖植	2017.09.27.
총 무 과 장	李吉載	2017.01.16.
사 건 과 장	金聖凡	2017.01.16.
집 행 과 장	趙禾翼	2017.01.16.
조 사 과 장	黃世一	2017.09.27.
수 사 과 장	李大烈	2017.09.27.
마 약 수 사 과 장	金千守	2017.09.27.
공판송무과장(代)	尹泰永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직 무 대 리	張福	2017.09.27.
검 사 직 무 대 리	馬在翼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鄭圭烈	2017.09.27.
(부 천 지 청)		
지 청 장	李炯澤	2017.08.17.
차 장 검 사	李魯公	2017.08.17.
부 장 검 사	高閏碩	2017.08.17.
〃	柳志悅	2017.08.17.
〃	申鉉成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金載夏	2016.01.13.
〃	李宗燦	2017.08.17.
〃	金源學	2017.08.17.
검 사	梁盛弼	2017.02.20.
〃	丁芝榮	2016.01.27.
〃	申惠軫	2016.01.27.
〃	黃盛玟	2014.02.05.
〃	金炯傑	2016.01.27.
〃	徐民珠	2015.02.25
〃	張阿糧	2017.08.17.
〃	高銀實	2017.02.20.
〃	李姿英	2016.01.27.
〃	殷宗郁	2016.01.27.
〃	崔辰嫮	2017.02.20.
〃	許 政	2016.01.27.
〃	羅敏榮	2017.02.20.
〃	愼恩廷	2017.02.20.
〃	李洪錫	2017.02.20.
〃	金榮俊	2016.04.01.
〃	宋潤相	2016.01.27.
〃	金炤定	2016.01.27.
〃	朴商勳	2017.04.01.
〃	吳光一	2016.03.02.
〃	吳自妍	2016.03.02.
〃	金正潤	2017.03.01.
〃	康民旭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李英勳	2017.04.27.
검 사	鄭多美	2017.04.27.
사 무 국 장	朴公雨	2017.09.27.
총 무 과 장	蘇雄	2016.08.29.
사 건 과 장	鄭燦勳	2017.01.17.
집 행 과 장	朱雄一	2016.08.29.
수 사 과 장	金東浩	2017.01.16.
(수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韓璨湜	2017.08.01.
제 1 차 장 검 사	車孟麒	2017.08.17.
제 2 차 장 검 사	李周炯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李橿洙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李시원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朴世鉉	2017.08.17.
형사제4부장검사	徐正植	2017.08.17.
형사제5부장검사	全陽碩	2017.08.17.
공판송무부장검사	李殷彊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韓廷和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朴吉培	2017.08.17.
강 력 부 장 검 사	李鎭鎬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朴奎殷	2017.08.17.
〃	朴斗淳	2017.08.17.
〃	徐洪紀	2017.08.17.
〃	裵鐘赫	2017.08.17.
〃	李晟圭	2017.08.17.
〃	朴惠敬	2017.08.17.
〃	鄭孝三	2016.08.08.
〃	金鐘鎬	2017.08.17.
〃	鄭景塡	2017.08.17.
〃	金楨珍	2017.08.17.
〃	金潤候	2017.08.17.
〃	金廷憲	2017.08.17.
검 사	洪甫佳	2014.02.05.
〃	金承彦	2017.02.20.
〃	金秀桓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李靜雨	2016.01.27.
검 사	柳光烈	2015.08.27.
〃	李 春	2016.01.27.
〃	兪禎澔	2016.01.27.
〃	鄭源斗	2015.02.25.
〃	黃賢娥	2015.02.25.
〃	兪沃根	2017.02.20.
〃	鄭有利	2014.08.29.
〃	鄭 玹	2015.08.27.
〃	張永一	2016.01.27.
〃	高은별	2016.01.27.
〃	李泰淳	2016.08.31.
〃	張鎭成	2017.02.20.
〃	金虎庚	2016.01.27.
〃	孫明枳	2017.02.20.
〃	郭錦禧	2017.08.17.
〃	韓智嫮	2017.02.20.
〃	李銀閏	2017.02.20.
〃	崔聖謙	2016.08.31.
〃	金恩正	2016.01.27.
〃	金載煥	2016.01.27.
〃	兪宗建	2017.02.20.
〃	許容準	2016.01.27.
〃	申承昊	2017.02.20.
〃	金治勳	2017.02.20.
〃	崔相勳	2014.02.05.
〃	丁貞旭	2016.01.27.
〃	金智雅	2016.08.31.
〃	金 建	2017.02.20.
〃	陳慶燮	2017.02.20.
〃	鄭聖憲	2017.02.20.
〃	金 珍	2015.02.25.
〃	崔麗蓮	2015.02.25.
〃	金방글	2017.02.20.
〃	姜逸民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成煜	2017.02.20.
검 사	金眞姬	2016.08.31.
〃	宋旻霞	2017.02.20.
〃	金柚奈	2015.02.25.
〃	李在涓	2017.02.20.
〃	李智恩	2014.02.05.
〃	李羲俊	2016.01.27.
〃	金正勳	2016.01.27.
〃	金貞宣	2016.01.27.
〃	朴한나	2017.02.20
〃	李芙蓉	2014.02.05.
〃	延濟赫	2017.02.20.
〃	徐康源	2017.02.20.
〃	朴贊榮	2017.02.20.
〃	尹信明	2017.02.20.
〃	南昭禎	2017.02.20
〃	李受行	2016.03.02.
〃	鄭德採	2017.02.20.
〃	具世熹	2017.02.20.
〃	姜政旭	2016.04.01.
〃	安洪均	2016.04.01.
〃	李聖職	2017.03.01.
〃	權英佑	2017.04.01.
〃	趙赫	2017.08.01.
〃	黃翊晋	2017.08.01.
〃	李廈英	2016.03.02.
〃	金多樂	2016.02.01.
〃	吳슬기	2017.03.01.
〃	鄭修僖	2017.03.01.
〃	金男容	2017.02.20.
〃	洪永基	2017.04.27.
〃	申明恩	2017.04.27.
사 무 국 장	鄭然翼	2017.01.16.
총 무 과 장	盧熙東	2017.01.16.
사 건 과 장	金雄容	2017.01.16.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金晶奉	2016.02.22.
조 사 과 장	金峰奭	2016.02.22.
수 사 과 장	李永哲	2017.09.27.
공 판 송 무 과 장	趙敬翼	2017.06.19.
검 사 직 무 대 리	安東鮮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吳張壽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張晶皓	2017.01.16.
(성 남 지 청)		
지 청 장	呂煥燮	2017.08.17.
차 장 검 사	白龍夏	2017.08.17.
부 장 검 사	崔盛弼	2017.08.17.
〃	金正浩	2017.08.17.
〃	周容完	2017.08.17.
〃	金仙花	2017.08.17.
검 사	權邦文	2017.02.20.
〃	李政烈	2016.01.27.
〃	尹棟煥	2017.02.20.
〃	張允瑛	2017.02.20.
〃	李侑眞	2017.08.17.
〃	趙庸祐	2017.02.20.
〃	尹나라	2017.02.20.
〃	呂京珍	2017.02.20.
〃	金金洌	2015.02.25.
〃	劉새롬	2015.08.27.
〃	洪石基	2017.02.20.
〃	趙正福	2016.01.27.
〃	盧庚垠	2015.02.25.
〃	崔한나	2015.02.25.
〃	申正秀	2017.02.20.
〃	金惠主	2015.02.25.
〃	姜 現	2017.02.20.
〃	吳承恩	2017.02.20.
〃	張 鎭	2017.02.20.
〃	吳信煥	2016.04.01.
〃	玄昇錄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世顯	2016.01.27.
검 사	李雄熙	2017.03.01.
〃	金祿元	2016.01.27.
〃	金奐權	2017.04.01.
〃	李字禧	2015.02.25.
〃	孫現眞	2017.08.01.
〃	申義浩	2016.03.02.
〃	梁瑞洹	2016.03.02.
〃	朴亨哲	2017.03.01.
〃	尹志允	2017.02.20.
〃	鄭成旭	2017.04.27.
〃	鄭在勳	2017.04.27.
〃	朴貞暖	2015.02.25.
사 무 국 장	權相日	2017.09.27.
총 무 과 장	辛戊承	2016.08.29.
사 건 과 장	金惠慶	2016.08.29.
집 행 과 장	丁海榮	2016.08.29.
수 사 과 장	徐榮鍾	2017.01.16.
검사직무대리	金度錫	2017.09.27.
(여 주 지 청)		
지 청 장	李沅秬	2017.08.17.
부 장 검 사	姜範求	2017.08.17.
검 사	丁炫升	2015.08.27.
〃	金한민	2014.02.05.
〃	兪炳國	2015.02.25.
〃	鄭潤式	2016.01.27.
〃	李昇柱	2015.02.25.
〃	趙顯雄	2017.02.20.
〃	金瑞賢	2017.02.20.
〃	趙素寅	2016.01.27.
검 사	李政奎	2016.01.27.
〃	丁鍾憲	2017.02.20.
〃	申珠稀	2017.02.20.
〃	姜範求	2017.08.17.
사 무 과 장	金昌洙	2017.01.16.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李東英	2016.08.29.
(평 택 지 청)		
지 청 장	金官正	2017.08.17.
부 장 검 사	張成哲	2017.08.17.
부 장 검 사	李太日	2017.08.17.
검 사	安埈奭	2016.01.27.
〃	吳振世	2015.02.25.
〃	吳智錫	2015.02.25.
〃	申憲燮	2016.01.27.
〃	姜顯旭	2017.02.20.
〃	車東鎬	2017.02.20.
〃	黃塡先	2015.02.25.
〃	李性樺	2015.02.25.
〃	朴奎南	2016.01.27.
〃	權槿歡	2016.01.27.
〃	金슬아	2016.01.27.
〃	邊在恩	2016.01.27.
〃	張玲瓏	2017.02.20.
〃	具宰演	2017.02.20.
〃	金慈恩	2017.02.20.
〃	金秀炫	2017.02.20.
사 무 과 장	李相敦	2017.03.01.
수 사 과 장	奇鏞度	2016.08.29.
(안 산 지 청)		
지 청 장	高 興	2017.08.17.
차 장 검 사	尹載弼	2017.08.17.
부 장 검 사	崔永云	2017.08.17.
〃	金載浩	2017.08.17.
〃	許丁穗	2017.08.17.
〃	申銀善	2017.08.17.
(부부장) 검 사	全美花	2017.08.17.
〃	尹大永	2017.08.17.
〃	朴光炫	2017.08.17.
〃	金俊燮	2017.08.17.
검 사	尹재슬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振湳	2017.02.20.
검 사	愼金宰	2016.01.27.
〃	洪丞賢	2017.02.20.
〃	盧貞玉	2016.01.27.
〃	朴鍾善	2017.02.20.
〃	李東炫	2014.02.05.
〃	朴寅佑	2017.02.20.
〃	金秀珉	2016.01.27.
〃	權英周	2017.02.20.
〃	宋秀淵	2017.02.20.
〃	文芝妍	2017.02.20.
〃	鄭先哲	2016.01.27.
〃	崔庸熙	2016.01.27
〃	崔銘洙	2016.01.27.
〃	鄭先熙	2017.02.20.
〃	曺圭雄	2016.08.31.
〃	韓承勳	2017.02.20.
〃	朴宣映	2017.02.20.
〃	李炯錫	2016.03.02.
〃	李昭娟	2017.02.20.
〃	崔芝叡	2017.02.20.
〃	尹基馨	2016.04.01.
〃	朴慶世	2016.01.27.
〃	金承坤	2016.02.01.
〃	金守志	2016.01.27.
〃	金智雄	2017.04.01.
〃	田鍾澤	2017.04.01.
〃	陳아름	2015.02.25.
〃	李恩貞	2016.03.02.
〃	羅相顯	2017.03.01.
〃	朴惠珍	2017.03.01.
〃	金美仙	2017.02.20.
〃	李宰衍	2017.04.27.
〃	吳承植	2017.04.27.
사 무 국 장	方善培	2016.08.29.

직 위	성명	발령일
총 무 과 장	金泰縣	2017.01.16.
사 건 과 장	蔡義洙	2016.08.29.
집 행 과 장	權奇源	2017.09.27.
수 사 과 장	咸燦信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文福男	2017.01.16.
(안 양 지 청)		
지 청 장	朴章佑	2017.08.17.
차 장 검 사	李永基	2017.08.17.
부 장 검 사	吳永信	2017.08.17.
〃	朴英濬	2017.08.17.
〃	朴基鍾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尹中鉉	2017.02.20.
검 사	朴順培	2017.02.20
〃	郭英煥	2016.01.27.
〃	崔在萬	2015.02.25.
〃	金倫廷	2017.02.20.
〃	邊晋煥	2017.02.20.
〃	金希娟	2017.02.20.
〃	金美冏	2016.01.27.
〃	金昇基	2016.01.27.
〃	李尙珉	2016.01.27.
〃	金慶年	2016.01.27.
〃	金寶美	2016.01.27.
〃	南相吾	2016.04.01.
〃	成珍永	2016.01.27.
〃	朴基兌	2017.04.01.
〃	金祐廷	2014.04.16.
〃	孫在鏞	2017.08.01.
〃	朴亨健	2016.03.02.
〃	朴嘉喜	2016.02.01.
〃	鄭惠羅	2017.03.01.
〃	姜在河	2017.02.20.
〃	沈東善	2017.04.27.
〃	曺廈林	2017.04.27.
사 무 국 장	金榮一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총 무 과 장	全孝洙	2017.01.16.
사 건 과 장	崔源緖	2016.05.11.
집 행 과 장	李昌均	2017.09.27.
수 사 과 장	金賢浩	2017.09.27.
(춘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英珠	2017.08.01.
차 장 검 사	金伶奎	2017.08.17.
부 장 검 사	朴宰輝	2017.08.17.
〃	朴光燮	2017.08.17.
(부부장)검사	金溟雲	2017.08.17.
검 사	李蕙恩	2015.02.25.
〃	李正培	2017.02.20.
〃	崔熙貞	2017.02.20.
〃	安在昱	2017.02.20.
〃	安美賢	2016.01.27.
〃	韓銀智	2016.01.27.
〃	張有那	2017.02.20.
〃	林賢哲	2016.04.01.
〃	李한별	2017.03.01.
〃	梁俊烈	2017.04.01.
〃	崔鎭宇	2017.08.01.
〃	李琛纁	2016.03.02.
〃	張惠洙	2017.04.27.
사 무 국 장	鄭旬哲	2017.01.16..
총 무 과 장	朴熙相	2017.01.16.
사 건 과 장	金學相	2016.08.29.
수 사 과 장	金浩珉	2016.08.29.
집 행 과 장	孫東燮	2016.08.29.
(강릉지청)		
지 청 장	申成植	2017.08.17.
부 장 검 사	柳國樑	2017.08.17.
검 사	陳鍾圭	2016.01.27.
〃	陳세언	2017.02.20.
〃	安世濬	2016.01.27.
〃	趙倫卿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吳燃澤	2016.01.27.
검 사	金常範	2016.01.27.
〃	河知秀	2017.02.20.
사 무 과 장	魏在洪	2016.08.29.
수 사 과 장	李一男	2017.01.16.
(원주지청)		
지 청 장	金宰玉	2017.08.17.
부 장 검 사	高泌亨	2017.08.17.
검 사	李建杓	2014.02.05.
〃	金辰雨	2015.02.25.
〃	李康宇	2016.01.27.
〃	鄭鍾元	2017.02.20.
〃	張智熀	2015.02.25.
〃	鄭敏熙	2016.01.27.
〃	柳柱賢	2016.01.27.
〃	梁在憲	2017.02.20.
〃	羅彗允	2017.02.20.
〃	鄭壹斗	2017.02.20.
사 무 과 장	姜鍾植	2017.01.16.
수 사 과 장	洪錫根	2017.01.16.
(속초지청)		
지 청 장	金炯秀	2017.08.17.
검 사	金世官	2016.01.27.
〃	宋成光	2016.01.27.
〃	黃海哲	2017.02.20.
사 무 과 장	金勝虎	2017.09.27.
(영월지청)		
지 청 장	姜正錫	2017.08.17.
검 사	全孝坤	2016.01.27.
검 사	金榮敏	2017.02.20.
〃	崔準桓	2017.02.20.
〃	安寅秀	2017.02.20.
사 무 과 장	李永壹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대전고등검찰청)		
검 사 장	金康旭	2015.12.24.
검 사	白淳鉉	2017.08.17.
검 사	林武永	2016.01.13.
〃	姜呂贊	2017.08.17.
〃	姜吉柱	2016.01.13.
〃	李光珍	2016.01.13.
〃	金種七	2016.01.13.
〃	李正洙	2017.08.17.
〃	沈載哲	2017.08.17.
〃	朱鎭撒	2017.08.17.
〃	鄭玉子	2017.08.17.
〃	金容彬	2017.08.17.
〃	李濟榮	2017.10.30.
사 무 국 장	具滋翊	2015.08.31.
총 무 과 장	郭大奎	2017.09.27.
사 건 과 장	趙然基	2017.09.27.
(대전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相虎	2017.08.01.
차 장 검 사	權政勳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金郁埈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高敬順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閔基泓	2017.08.17.
여성아동범죄조사부	尹源祥	2017.08.17.
공 판 부 장 검 사	盧珍英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金度亨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金泰佑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李柱壹	2017.08.17.
〃	金英翼	2017.08.17.
〃	朴昞謨	2016.01.13.
〃	裵成孝	2017.08.17.
〃	趙奭泳	2015.02.25.
〃	姜大權	2017.08.17.
〃	李桓基	2016.01.13.
〃	李宗珉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鍾弦	2017.02.20.
〃	李俊範	2016.08.31.
〃	金皓駿	2016.01.27.
검 사	李東原	2017.08.17.
〃	權昡有	2017.02.20.
〃	李晟範	2016.01.27.
〃	李俊昊	2017.02.20.
〃	朴鍾敏	2017.08.17.
〃	金載南	2016.01.27.
〃	權乃建	2016.08.31.
〃	孫尙希	2017.02.20.
〃	權性熙	2016.08.31.
〃	宋濬求	2017.02.20.
〃	林演珍	2017.02.20.
〃	李珠熙	2017.02.20.
〃	扈丞鎭	2017.02.20.
〃	金貞華	2017.02.20.
〃	崔正民	2017.02.20.
〃	崔受京	2015.02.25.
〃	金廷恩	2015.02.25.
〃	洪楨娟	2015.02.25.
〃	高아라	2017.02.20.
〃	任銀晶	2017.02.20.
〃	崔秀智	2014.02.05.
〃	申起容	2017.02.20.
〃	金泰希	2017.02.20.
〃	金旻晶	2015.02.25.
〃	宋姝昳	2015.02.25.
〃	李弦錫	2016.01.27.
〃	黃允宣	2015.02.25.
〃	辛芝那	2016.01.27.
〃	尹效貞	2017.02.20.
〃	李宰杓	2016.01.27.
〃	潘泳起	2016.04.01.
〃	朴建泰	2016.04.01.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炫坤	2016.01.27.
〃	李昇洙	2017.04.01.
〃	洪등불	2016.03.02.
검 사	金鍾旻	2017.03.01.
〃	李知恩	2016.05.02.
〃	任明煥	2017.02.20.
〃	黃淙鉉	2017.04.27.
〃	朱銀惠	2017.04.27.
사 무 국 장	白雲起	2017.09.27.
총 무 과 장	申正浩	2017.01.16.
사 건 과 장	金鍾甲	2017.09.27.
집 행 과 장	金泰庚	2017.09.27.
조 사 과 장	朴榮奎	2017.01.16.
수 사 과 장	柳廣福	2017.09.27.
검사직무대리	裵乙燮	2017.01.16.
(홍 성 지 청)		
지 청 장	鄭淳信	2017.08.17.
부 장 검 사	金 鉉	2017.08.17.
검 사	李榮振	2016.01.27.
〃	石洙畋	2016.01.27.
〃	文鐘培	2017.02.20.
〃	梁貴浩	2016.01.27.
〃	李信愛	2016.01.27.
〃	安和妍	2017.02.20.
〃	金畋姬	2017.02.20.
사 무 과 장	林承照	2017.09.27.
수 사 과 장	徐用基	2017.09.27.
(공 주 지 청)		
지 청 장	金京秀	2017.08.17.
검 사	趙鐘敏	2016.01.27.
〃	尹基瑄	2017.02.20.
〃	金衍守	2017.02.20.
사 무 과 장	金容昊	2017.09.27.
(논 산 지 청)		
지 청 장	金南順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柳濟民	2016.01.27.
검 사	金祐中	2017.02.20.
〃	曺在熤	2017.02.20.
검 사	吉善美	2017.02.20.
사 무 과 장	李典喆	2017.09.27.
(서 산 지 청)		
지 청 장	安範鎭	2017.08.17.
부 장 검 사	朴柱鉉	2017.08.17.
검 사	金英植	2016.01.27.
〃	李周珩	2017.02.20.
〃	鄭盛斗	2017.02.20.
〃	宋佳炯	2016.01.27.
〃	趙慧畋	2016.01.27.
〃	朴珉勁	2017.02.20.
〃	全佑鎭	2017.02.20.
〃	金喜眞	2017.02.20.
사 무 과 장	朴時重	2017.09.27.
수 사 과 장	趙亨植	2017.09.27.
(천 안 지 청)		
지 청 장	魯禎妍	2017.08.17.
차 장 검 사	白宰明	2017.08.17.
부 장 검 사	黃鍾根	2017.08.17.
〃	鄭淵憲	2017.08.17.
〃	李映林	2017.08.17.
검 사	許修眞	2017.02.20.
〃	曺碩奎	2016.01.27.
〃	李効眞	2015.02.25.
〃	元新惠	2015.08.27.
〃	姜好俊	2017.02.20.
〃	蔡良姬	2016.01.27.
〃	鄭在信	2017.02.20.
〃	李銖暢	2015.02.25.
〃	車昊東	2014.02.05.
〃	徐慧善	2014.08.29.
〃	金妍姝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培熙	2016.08.31.
〃	崔智恩	2017.02.20.
〃	蔡弼圭	2016.01.27.
검 사	金珉我	2016.01.27.
〃	李綜罡	2017.04.01.
〃	高在麟	2017.02.20.
〃	高銀珍	2016.03.02.
〃	金鉉昌	2016.02.01.
〃	金京會	2017.04.27.
〃	金昌煥	2017.03.01.
〃	崔仁相	2017.08.17.
〃	丁龍煥	2017.08.17.
〃	李坤炯	2017.08.17.
〃	河信旭	2017.08.17.
사 무 과 장	朴相樂	2017.09.27.
집 행 과 장	金銅燮	2017.09.27.
수 사 과 장	姜永珍	2017.09.27.
(청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錫煥	2017.08.01.
차 장 검 사	金俊淵	2017.08.17.
부 장 검 사	金 信	2017.08.17.
〃	姜壽山那	2017.08.17.
〃	李宣赫	2017.08.17.
(부부장)검사	金廷勳	2017.08.17.
〃	趙南喆	2017.08.17.
〃	成祥旭	2017.08.17.
〃	孔鳳娘	2017.08.17.
〃	黃宇璡	2017.08.17.
검 사	金南勳	2017.08.17.
〃	馬秀烈	2017.02.20.
〃	李勝亨	2017.02.20.
〃	李侑宣	2014.02.05.
〃	金海中	2017.02.20.
〃	張旭桓	2016.01.27.
〃	崔惠璟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郭桂姈	2017.02.20.
〃	洪尙徹	2017.02.20.
〃	崔荷淵	2017.02.20.
검 사	裵志勳	2015.02.25.
〃	姜和連	2017.02.20.
〃	李桃熙	2017.02.20.
〃	朴棟圭	2017.02.20.
〃	許世珍	2016.01.27.
〃	鄭玹旭	2016.04.01
〃	朴世赫	2017.04.01.
〃	金智惠	2016.03.02.
〃	朴元英	2017.03.01.
〃	金靑疋	2017.02.20.
사 무 국 장	李聖範	2016.08.16.
총 무 과 장	金雲祥	2017.01.16.
사 건 과 장	朴蒔雨	2017.01.16.
집 행 과 장	鄭泰容	2016.02.22.
수 사 과 장	金春鎬	2016.08.29.
검사직무대리	朴武烈	2016.02.22.
(충주지청)		
지 청 장	曺基龍	2017.08.17.
부 장 검 사	朱晋佑	2017.08.17.
검 사	咸載元	2016.01.27.
〃	吳昇煥	2017.02.20.
〃	崔甲鎭	2016.01.27.
〃	昔東賢	2016.01.27.
〃	愼芝媛	2016.01.27.
〃	金娟熙	2017.02.20.
〃	金必守	2017.02.20.
사 무 과 장	金正烈	2016.02.22.
(제천지청)		
지 청 장	梁在赫	2017.08.17.
검 사	洪銅基	2016.01.27.
〃	金周惠	2017.02.20.
〃	任丁彬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李時東	2017.09.27.
(영 동 지 청)		
지 청 장	李榮男	2017.08.17.
검 사	崔榮俊	2016.01.27.
〃	吳興植	2017.02.20.
사 무 과 장	張鍾喆	2017.09.27.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 장	黃喆奎	2017.08.01.
검 사	丁滿鎭	2016.01.13.
〃	李鍾大	2016.01.13.
〃	鄭盛允	2017.08.17.
〃	金泰光	2016.01.13.
〃	林龍奎	2016.01.13.
〃	朴錫宰	2017.08.17.
〃	張鳳文	2017.08.17.
〃	蔡錫賢	2017.08.17.
검 사	李喆鎬	2017.08.17.
사 무 국 장 (代)	趙義坤	2017.10.23.
총 무 과 장	趙義坤	2017.09.27.
사 건 과 장	尹炳鉉	2017.09.27.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 장	盧承權	2017.06.12.
제 1 차 장 검 사	金炯吉	2017.08.17.
제 2 차 장 검 사	崔兌源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金春洙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金厚均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李榮祥	2017.08.17.
형사제4부장검사	李昌洙	2017.08.17.
여성아동조사부장검사	劉賢貞	2017.08.17.
공 판 부 장 검 사	千寬英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徐聖昊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朴勝大	2017.08.17.
강력부장검사검사	禹南準	2017.08.17.
부 장 검 사	權桃郁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李在德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	沈在桂	2017.08.17.
〃	李善鳳	2017.08.17.
〃	金志憲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柳東昊	2016.01.13.
〃	崔智錫	2016.01.13.
〃	柳泰碩	2017.08.17.
검 사	金昇鎬	2015.02.25.
〃	金敏娥	2016.01.27.
〃	安東建	2017.02.20.
〃	崔娜瑛	2015.08.27.
〃	鄭明媛	2015.02.25.
〃	宋永仁	2017.02.20.
〃	李世喜	2013.02.28.
〃	鄭現妊	2017.08.17.
〃	金姬英	2016.01.27.
〃	金智淑	2016.01.27.
〃	金政煥	2015.02.25.
〃	鄭大熙	2016.08.31.
〃	黃珍娥	2017.02.20.
〃	金南秀	2013.02.28.
〃	金錫君	2017.02.20.
〃	李槿貞	2015.02.25.
〃	黃允載	2016.01.27.
〃	宋漢燮	2014.02.05.
〃	全榮雨	2014.02.05.
〃	李智慧	2015.02.25.
〃	吳昌洛	2016.01.27.
〃	許廷銀	2017.02.20.
〃	金瞳振	2017.02.20.
〃	李琪瑛	2016.01.27.
〃	金美榮	2016.01.27.
〃	李鎭熙	2017.02.20.
〃	白尙埈	2016.01.27.
〃	丁桐鉉	2016.01.27.
〃	黃壽熙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李姓淵	2016.01.27.
〃	徐知元	2016.01.27.
〃	洪敏裕	2017.02.20.
검 사	南炅佑	2017.02.20.
〃	劉在根	2017.02.20.
〃	李宗珉	2017.02.20.
〃	琴明媛	2017.02.20.
〃	張榮俊	2017.02.20.
〃	張埈赫	2017.02.20.
〃	金暎錫	2017.02.20.
〃	兪光善	2016.03.02.
〃	裵官成	2016.01.27.
〃	羅相敦	2017.02.20.
〃	孫精賢	2017.02.20.
〃	朴重華	2016.04.01.
〃	李宰沅	2016.04.01.
〃	李東勳	2017.04.01.
〃	裵韓鎭	2016.03.02.
〃	劉丞晉	2016.03.02.
〃	姜仁先	2016.02.01.
〃	朴宣河	2017.03.01.
〃	車昅炯	2017.03.01.
〃	韓斗鉉	2017.02.20.
〃	李相範	2017.04.27.
〃	金必守	2017.04.27.
사 무 국 장	朴天洪	2017.09.27.
총 무 과 장	申範秀	2017.09.27.
사 건 과 장	朴武善	2016.08.29.
집 행 과 장	尹榮右	2016.08.29.
수 사 과 장	金一東	2017.09.27.
조 사 과 장	朴元吉	2017.09.27.
공 판 과 장	朴文圭	2017.09.27.
검사직무대리	鄭義庭	2017.09.27.
검사직무대리	白鍾一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대구서부지청)		
지 청 장	曺宰涓	2017.08.17.
차 장 검 사	沈雨廷	2017.08.17.
부 장 검 사	金錫佑	2017.08.17.
부 장 검 사	李炯官	2017.08.17.
〃	李政峯	2017.08.17.
검 사	鄭日均	2017.02.20.
〃	白承周	2015.02.25.
〃	趙萬來	2017.02.20.
〃	皇甫炫希	2014.02.05.
〃	金銀河	2016.01.27.
〃	金知泳	2015.02.25.
〃	成秉奎	2016.01.27.
〃	文智碩	2016.01.27.
〃	羅永旭	2015.02.25.
〃	申美良	2015.02.25.
〃	李智娟	2016.08.31.
〃	金俊鎬	2017.02.20.
〃	申恩植	2015.02.25.
〃	崔成圭	2016.01.27.
〃	徐素喜	2017.02.20.
〃	南志旻	2017.02.20.
〃	楊瑾旭	2016.02.01.
〃	洪海淑	2017.02.20.
〃	林秀玟	2017.02.20.
〃	李喜星	2016.04.01.
〃	全伶卿	2016.01.27.
〃	朴大雄	2017.04.01.
〃	河彦旭	2017.08.01.
〃	張祐赫	2017.03.01.
〃	金昅珠	2017.02.20.
〃	安倉忍	2017.04.27.
사 무 국 장	金東錫	2016.08.29.
총 무 과 장	韓相壬	2017.09.27.
사 건 과 장	金在福	2017.01.16.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金明圭	2016.08.29.
수 사 과 장	李泰得	2016.08.29.
(안 동 지 청)		
지 청 장	朴起東	2017.08.17.
검 사	金昊炫	2015.02.25.
〃	朴宰勳	2016.01.27.
〃	宋泰沅	2017.02.20.
〃	申現悳	2017.02.20.
〃	呂才英	2017.02.20.
사 무 과 장	金允基	2017.09.27.
수 사 과 장	金在坤	2016.08.29.
(경 주 지 청)		
지 청 장	李喆熙	2017.08.17.
부 장 검 사	黃金千	2017.08.17.
검 사	柳朱泰	2016.01.27.
〃	李승기	2016.01.27.
〃	李鍾元	2017.02.20.
〃	李俊錫	2016.01.27.
〃	高麗珍	2017.02.20.
〃	趙智賢	2016.01.27.
〃	朴芝演	2017.02.20.
사 무 과 장	鞠泰洪	2017.09.27.
수 사 과 장	金鍾喆	2017.09.27.
(포 항 지 청)		
지 청 장	徐奉揆	2017.08.17.
부 장 검 사	尹喆玟	2017.08.17.
〃	許仁碩	2017.08.17.
검 사	朴相洙	2015.02.25.
〃	朴榮相	2015.02.25.
〃	韓周東	2016.01.27.
〃	崔誠埈	2016.01.27.
〃	羅소라	2014.02.05.
〃	韓丞鎭	2017.02.20.
〃	鄭正和	2016.01.27.
〃	孫有彬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金書永	2016.01.27.
〃	宋炫卓	2017.02.20.
〃	金承美	2017.02.20.
〃	金址樹	2017.02.20.
사 무 과 장	李二得	2017.09.27.
집 행 과 장	崔泳壽	2016.08.29.
수 사 과 장	金熙哲	2017.09.27.
(김 천 지 청)		
지 청 장	鄭承冕	2017.08.17.
부 장 검 사	南相寬	2017.08.17.
〃	林昌國	2017.08.17.
검 사	李壽珍	2015.02.25.
〃	金度亨	2017.02.20.
〃	朴在浩	2016.01.27.
〃	卓東完	2017.02.20.
〃	李京雅	2016.01.27.
〃	鄭素英	2016.01.27.
〃	朴晟玄	2016.01.27.
〃	金奸沿	2017.02.20.
〃	文東起	2017.02.20.
〃	金俊晟	2017.02.20.
〃	李안나	2017.02.20.
〃	尹智鉉	2017.02.20.
사 무 과 장	具英漢	2016.08.29..
수 사 과 장	金正昊	2017.01.16..
(상 주 지 청)		
지 청 장	朴贊祿	2017.08.17.
검 사	金한울	2017.02.20.
〃	崔珉俊	2016.01.27.
〃	金光洛	2016.01.27.
사 무 과 장	權宰暎	2017.09.27.
(의 성 지 청)		
지 청 장	田武坤	2017.08.17.
검 사	裵奭熙	2016.01.27.
〃	全亨埈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金宗基	2017.09.27.
(영 덕 지 청)		
지 청 장	金炯錄	2017.08.17.
검 사	申泳三	2016.01.27.
검 사	徐東寅	2017.02.20.
사 무 과 장	金宰弘	2017.09.27.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 장	朴正植	2017.08.01.
차 장 검 사	具本善	2017.08.01.
검 사	朴埈模	2017.08.17.
〃	河宗鐵	2017.08.17.
〃	孫淳爀	2017.08.17.
〃	李濟官	2016.01.13.
〃	柳源根	2016.01.13.
〃	朴贊日	2016.01.13.
〃	尹重棋	2016.01.13.
〃	盧相吉	2017.08.17.
〃	柳 爀	2017.08.17.
〃	朴在映	2016.01.13.
〃	沈學鎭	2017.08.17.
〃	禹勝倍	2016.08.31.
사 무 국 장	卜斗奎	2017.09.27.
총 무 과 장	李康允	2017.09.27.
사 건 과 장	鄭炳玉	2016.08.29.
(부산지방검찰청)		
제 1 차 장 검 사	金載勳	2017.08.17.
제 2 차 장 검 사	權純哲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李善旭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李明信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梁仁哲	2017.08.17.
여성아동범죄조사부	尹振容	2017.08.17.
공 판 부 장 검 사	金德坤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金周弼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金度均	2017.08.17.
강 력 부 장 검 사	張東喆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외 사 부 장 검 사	趙大豪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柳長萬	2013.04.23.
〃	李鍾具	2017.08.17.
〃	朴哲完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朴勝煥	2017.08.17.
〃	李準植	2017.08.17.
〃	李健領	2016.01.13.
〃	金祐奭	2017.08.17.
〃	任乘徹	2016.01.13.
〃	金公珠	2017.08.17.
〃	金亨柱	2017.08.17.
검 사	張少英	2015.02.25.
〃	白秀禛	2017.02.20.
〃	崔佑榮	2015.02.25.
〃	金泳喆	2013.02.28.
〃	河東雨	2016.01.27.
〃	韓基植	2015.02.25.
〃	金龍植	2017.02.20.
〃	金尙均	2016.01.27.
〃	朱慧珍	2017.02.20.
〃	申承熙	2016.01.27.
〃	金玲美	2015.02.25.
〃	金希映	2015.08.27.
〃	蘇昶範	2016.01.27.
〃	朴大煥	2014.02.05.
〃	金瑛俊	2016.01.27.
〃	鄭和俊	2016.01.27.
〃	金民九	2016.01.27.
〃	孫智惠	2014.08.29.
〃	南大主	2015.02.25.
〃	金宗煜	2015.02.25.
〃	吳珉載	2013.02.28.
〃	徐民錫	2017.02.20.
〃	張世眞	2017.02.20.
〃	李朱喜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李世鍾	2016.01.27.
〃	權寧必	2016.01.27.
〃	蘇在煥	2016.01.27.
〃	朴成眞	2017.02.20.
검 사	徐宰熙	2017.08.17.
〃	朴恩惠	2014.02.05.
〃	孫雅智	2016.01.27.
〃	李允煥	2017.02.20.
〃	姜明薰	2016.01.27.
〃	金珉奭	2015.02.25.
〃	林泓錫	2015.02.25.
〃	成耆釩	2015.02.25.
〃	權瑟起	2016.01.27.
〃	趙度俊	2016.01.27.
〃	李素娟	2016.01.27.
〃	金慧林	2016.01.27.
〃	金載雨	2016.01.27.
〃	金廷衍	2017.02.20.
〃	金熙東	2017.02.20.
〃	林相圭	2017.02.20.
〃	文旻泳	2015.02.25.
〃	金炅兌	2016.01.27.
〃	吳在埈	2016.02.01.
〃	洪炫埈	2017.02.20.
〃	朴珍燮	2016.04.01.
〃	朴光鎬	2016.04.01.
〃	洪錫湲	2017.04.01.
〃	崔憲旻	2016.03.02.
〃	鄭在娟	2016.03.02.
〃	朴아름	2016.02.01.
〃	金那英	2017.03.01.
〃	鄭仁惠	2017.03.01.
〃	金俊永	2017.02.20.
〃	朴祉香	2017.04.27.
〃	王恩珍	2017.04.2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金鎭宇	2017.01.16.
총 무 과 장	趙承來	2017.09.27.
사 건 과 장	劉東昊	2017.09.27.
집 행 과 장	金文坤	2017.01.16.
조 사 과 장	趙在和	2017.09.27.
수 사 과 장	姜正春	2016.08.29.
조직범죄수사과장	李相敏	2017.01.16.
마 약 수 사 과 장	林煥龍	2017.01.16.
공 판 과 장	崔煥卿	2017.09.27.
검 사 직 무 대 리	鄭永德	2016.02.22.
검 사 직 무 대 리	姜鈞日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張文燦	2017.09.27.
(부산동부지청)		
지 청 장	金炳炫	2017.08.17.
차 장 검 사	張基錫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崔盛椀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李知玧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卞弼建	2017.08.17.
(부부장)검사	崔龍圭	2017.08.17.
〃	全桂廣	2017.08.17.
〃	愼之祜	2017.08.17.
검 사	金鎭浩	2015.02.25.
〃	金炳文	2016.01.27.
〃	崔宇均	2016.01.27.
〃	朴城民	2016.01.27.
〃	李東炫	2017.02.20.
〃	李裕賢	2016.08.31.
〃	尹碩煥	2016.01.27.
〃	金眞英	2016.01.27.
〃	金琫暻	2015.02.25.
〃	趙玹逸	2016.01.27.
〃	李娜璟	2016.01.27.
〃	權炯煜	2016.01.27.
〃	李宣姈	2016.01.27.
〃	趙在鶴	2016.04.01.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炳仁	2017.04.01.
〃	李已明	2015.02.25.
〃	朴胤相	2016.03.02.
〃	李稿銀	2016.03.02.
검 사	鄭智熙	2017.03.01.
〃	梁世童	2017.02.20.
〃	崔鍾允	2017.04.27.
사 무 국 장	朴相郁	2017.09.27.
총 무 과 장	李喆守	2017.01.16.
사 건 과 장	崔正哲	2017.09.27.
집 행 과 장	李坪奇	2017.09.27.
수 사 과 장	金映辰	2017.09.27.
(부산서부지청)		
지 청 장	黃義守	2017.08.17.
차 장 검 사	金東柱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金成勳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李炳錫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李炳昊	2017.08.17.
(부부장)검사	權宰煥	2017.08.17.
〃	李星一	2017.08.17.
〃	金元湜	2017.08.17.
검 사	姜錫喆	2017.03.01.
〃	崔明奎	2017.03.01.
〃	李榮花	2017.03.01.
〃	鄭知所	2017.03.01.
〃	柳南敬	2017.03.01.
〃	徐榮培	2017.03.01.
〃	張熒洙	2017.03.01.
〃	鄭湲錫	2017.03.01.
〃	成斗慶	2017.03.01.
〃	鄭宇成	2017.03.01.
〃	秋螢澐	2017.03.01.
〃	金珉庭	2017.03.01.
〃	崔恩美	2017.03.01.
〃	權佳姬	2017.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鄭巨將	2017.03.01.
〃	張盛勛	2017.04.01.
〃	安帝洪	2017.08.01.
〃	姜志沅	2017.04.27.
사 무 과 장	辛鍾根	2017.03.01.
수 사 과 장	卞海根	2017.03.01.
집 행 과 장	宋蘭和	2017.03.01.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朴潤海	2017.08.01.
차 장 검 사	金翰秀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鄭喜元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申交任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丁元赫	2017.08.17.
공안부장검사	金晟柱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金炯奭	2017.08.17.
공판송무부장검사	尹卿元	2017.08.17.
(부부장)검사	朴弘奎	2017.08.17.
〃	卞秀良	2017.08.17.
〃	申大炅	2017.08.17.
〃	崔源錫	2017.08.17.
〃	金台運	2017.08.17.
검 사	姜百信	2016.01.27.
〃	李相旼	2016.08.31.
〃	張在完	2017.02.20.
〃	辛建澔	2015.08.27.
〃	朴星政	2016.01.27.
〃	尹國權	2015.02.25.
〃	金韶賢	2017.02.20.
〃	李한울	2016.01.27.
〃	李惠現	2016.01.27.
〃	朴庠勇	2017.02.20.
〃	文承泰	2017.02.20.
〃	宋새봄	2016.01.27.
〃	金美慧	2015.02.25.
〃	李周炫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黃根珠	2015.02.25.
〃	李宣和	2017.02.20.
〃	李昇雨	2017.02.20.
〃	宋正範	2017.02.20.
검 사	文載雄	2017.02.20.
〃	邊埈奭	2017.02.20.
〃	金大根	2017.02.20.
〃	宋玫株	2017.02.20.
〃	金甫徑	2017.02.20.
〃	林盛洙	2016.04.01.
〃	李平和	2016.01.27.
〃	文智圓	2016.01.27.
〃	許暢桓	2017.04.01.
〃	元敏榮	2016.03.02.
〃	朴昇均	2016.02.01.
〃	金正賢	2017.03.01.
〃	李在原	2017.02.20.
〃	許康寧	2017.04.27.
사 무 국 장	金成洙	2017.01.16..
총 무 과 장	許埈榮	2016.08.29.
사 건 과 장	李源台	2017.01.16.
집 행 과 장	金東輝	2017.09.27.
공 안 과 장	金斗吉	2017.09.27.
수 사 과 장	李振萬	2017.01.16.
검 사 직 무 대 리	李東熙	2017.09.27.
(창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榮大	2017.08.01.
차 장 검 사	金鴻昌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崔憲滿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金完圭	2017.08.17.
공 안 부 장 검 사	金星東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鄭熙道	2017.08.17.
공판송무부장검사	鄭光壹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朴賢濬	2016.01.13.
〃	金允姬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	潘宗郁	2017.08.17.
〃	柳道潤	2017.08.17.
검 사	金秀珉	2015.02.25.
〃	金京槿	2017.02.20.
검 사	崔倖寬	2017.02.20.
〃	辛昇祐	2017.02.20.
〃	朴晢鏞	2016.01.27.
〃	張日姬	2015.02.25.
〃	孫恩英	2017.02.20.
〃	千憲住	2016.01.27.
〃	洪貞蓮	2017.02.20.
〃	金禧英	2016.01.27.
〃	吳振姬	2016.01.27.
〃	金承禹	2016.01.27.
〃	曺美敬	2015.02.25.
〃	林洪主	2017.02.20.
〃	朴逸奎	2016.01.27.
〃	黃寶永	2017.02.20.
〃	文宣珠	2016.01.27.
〃	李虎宰	2017.02.20.
〃	李鍾光	2017.02.20.
〃	金京峸	2017.02.20.
〃	金銀吾	2017.02.20.
〃	李少玄	2017.02.20.
〃	朴勁南	2016.04.01.
〃	李鎔楨	2016.01.27.
〃	林成桓	2017.02.20.
〃	崔世允	2016.03.02.
〃	金仁仙	2016.02.01.
〃	金多賢	2017.03.01.
〃	尹 순	2017.04.27.
사 무 국 장	申鉉聖	2017.09.27.
총 무 과 장	林京眞	2017.09.27.
사 건 과 장	姜太壽	2017.09.27.
집 행 과 장	李院炯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조 사 과 장	金三述	2017.09.27.
수 사 과 장	李鍾賢	2017.01.16.
검사직무대리	黃聖植	2016.08.29.
(마 산 지 청)		
지 청 장	李泰承	2017.08.17.
부 장 검 사	黃聖然	2017.08.17.
〃	徐唱元	2017.08.17.
검 사	金美恩	2015.02.25.
〃	吳俊根	2016.01.27.
〃	林基雄	2017.02.20.
〃	閔恩植	2016.01.27.
〃	李恩雨	2015.02.25.
〃	朴哲良	2016.08.31.
〃	朴玟志	2016.01.27.
〃	朴振德	2017.02.20.
〃	鄭다은	2017.02.20.
사 무 과 장	安鵬翼	2017.01.16.
수 사 과 장	田英培	2016.08.29.
(진 주 지 청)		
지 청 장	金範起	2017.08.17.
부 장 검 사	趙勇漢	2017.08.17.
〃	李德珍	2017.08.17.
검 사	許成奎	2017.02.20.
〃	權憬浩	2016.01.27.
〃	尹 景	2017.02.20.
〃	成哉昊	2016.01.27.
〃	安相炫	2017.02.20.
〃	廉浩暎	2016.01.27.
〃	車大榮	2016.01.27.
〃	朴예珠	2016.01.27.
〃	許閏行	2016.01.27.
〃	高建永	2017.02.20.
〃	朱映宣	2017.02.20.
〃	金叡恩	2017.02.20.
사 무 과 장	金昊成	2017.09.27.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李承桓	2017.01.16.
수 사 과 장	鄭富永	2016.08.29.
(통 영 지 청)		
지 청 장	盧正煥	2017.08.17.
부 장 검 사	金志妍	2017.08.17.
〃	張城熏	2017.08.17.
검 사	徐志賢	2015.08.27.
〃	金해밝은	2016.01.27.
〃	金泰燁	2017.02.20.
〃	李韓宗	2017.02.20.
〃	金亨哲	2016.01.27.
〃	文太權	2016.01.27.
〃	鄭允晶	2016.01.27.
〃	金承妍	2017.02.20.
〃	柳秀憲	2017.02.20.
〃	權珉廷	2017.02.20.
〃	趙榮珠	2017.02.20.
사 무 과 장	奇宇田	2017.03.01.
수 사 과 장	鄭義坤	2017.01.16.
(밀 양 지 청)		
지 청 장	朴賢哲	2017.08.17.
검 사	趙範鎭	2017.02.20.
〃	金賢雄	2016.01.27.
〃	金正善	2017.02.20.
사 무 과 장	金千敎	2016.08.29.
(거 창 지 청)		
지 청 장	金度完	2017.08.17.
검 사	趙東勳	2016.01.27.
〃	宋甫炯	2017.02.20.
사 무 과 장	魯幸洙	2017.01.16.
(광주고등검찰청)		
검 사 장	金浩徹	2017.08.01.
차 장 검 사	吳仁瑞	2017.08.01.
검 사	鄭柄大	2016.01.13.
〃	李義景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	洪孝植	2013.04.23.
〃	李善勳	2017.08.17.
〃	鄭容秀	2016.01.13.
〃	李基宣	2017.08.17.
검 사	朴聖根	2017.08.17.
〃	申昊澈	2017.08.17.
〃	金大龍	2016.01.13.
〃	金澤均	2017.08.17.
사 무 국 장	李正範	2017.09.27..
총 무 과 장	魏亨良	2017.09.27.
사 건 과 장	高李柱	2017.01.16.
(광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楊富男	2017.08.01.
차 장 검 사	尹榮晙	2017.08.17.
형사제1부장검사	李定炫	2017.08.17.
형사제2부장검사	崔誠桓	2017.08.17.
형사제3부장검사	裵唱大	2017.08.1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金龍奎	2017.08.17.
공 안 부 장	金石潭	2017.08.17.
특별수사부장검사	朴철우	2017.08.17.
강 력 부 장 검 사	李桂漢	2017.08.17.
공 판 부 장 검 사	金鳳鉉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金鈺釪	2017.08.17.
〃	金 萑	2017.08.17.
〃	程軫基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都尙範	2017.08.17.
〃	具承模	2016.01.13.
〃	鄭在勳	2017.08.17.
〃	蔡洙亮	2017.08.17.
〃	林鍾弼	2017.08.17.
〃	金善文	2017.08.17.
〃	金池蓮	2017.08.17.
검 사	韓眞喜	2017.08.17.
〃	元炯文	2016.01.27.
〃	李長雨	2016.08.31.

직 위	성명	발령일
〃	林一秀	2016.01.27.
〃	柳陳承	2015.02.25.
〃	丁光洙	2017.02.20.
〃	崔馨元	2015.08.27.
검 사	宋明燮	2015.02.25.
〃	朴惠蘭	2016.01.27.
〃	丁英珠	2013.02.28.
〃	朴珉喆	2017.02.20.
〃	文夏卿	2016.01.27.
〃	辛相祐	2017.02.20.
〃	黃善玉	2017.02.20.
〃	具珍美	2014.02.05.
〃	李垠宙	2016.01.27.
〃	宣賢淑	2016.01.27.
〃	趙宰徹	2017.02.20.
〃	金東奎	2017.02.20.
〃	洪性基	2015.02.25.
〃	李珍順	2015.02.25.
〃	崔恩英	2017.02.20.
〃	申妃那	2015.02.25.
〃	安盛民	2016.01.27.
〃	黃載東	2016.01.27.
〃	姜侖辰	2016.01.27.
〃	禹在勳	2016.01.27.
〃	金大哲	2017.02.20.
〃	林讚美	2017.02.20.
〃	金惠敬	2017.02.20.
〃	郭重旭	2017.02.20.
〃	林眞徹	2016.04.01.
〃	金東稷	2016.04.01.
〃	張在貞	2015.02.25.
〃	徐아람	2016.01.27.
〃	高炳茂	2017.03.01.
〃	崔鏸允	2016.01.27.
〃	鄭成旭	2017.04.01.

직 위	성명	발령일
〃	朴禮眞	2015.02.25.
〃	朴星炫	2017.02.20.
〃	崔藝元	2016.03.02.
〃	都玧志	2016.02.01.
검 사	鄭智源	2017.03.01.
〃	金庭花	2017.04.27.
〃	金姝賢	2017.04.27.
사 무 국 장	鄭東晋	2017.09.27.
총 무 과 장	金熙坤	2017.01.16.
사 건 과 장	尹聖辰	2017.09.27.
집 행 과 장	金亨冠	2017.01.16.
조 사 과 장	文海植	2016.08.29.
수 사 과 장	孔承政	2017.09.27.
공 판 과 장	金永澣	2017.09.27.
검사직무대리	魯相來	2017.01.16.
(목 포 지 청)		
목포지청장	李喆熙	2017.08.17.
부 장 검 사	申炯湜	2017.08.17.
〃	金皓三	2017.08.17.
검 사	梁儁錫	2017.02.20.
〃	金智勳	2017.02.20.
〃	南在炫	2016.01.27.
〃	沈基乎	2016.01.27.
〃	金秀珉	2016.01.27.
〃	李昇勳	2016.01.27.
〃	元世貞	2017.02.20.
〃	元宣雅	2017.02.20.
〃	金嫦彝	2017.02.20.
〃	都龍民	2017.02.20.
〃	全有敬	2017.02.20.
사 무 과 장	申承休	2017.09.27.
수 사 과 장	朴成宰	2017.09.27.
(장 흥 지 청)		
지 청 장	朴洽鎭	2017.08.17.
검 사	李東祐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孫鎔道	2016.08.31.
사 무 과 장	鄭炳勳	2017.09.27.
(순 천 지 청)		
지 청 장	金廣洙	2017.08.17.
차 장 검 사	任寬爀	2017.08.17.
부 장 검 사	朴官洙	2017.08.17.
〃	李相吉	2017.08.17.
〃	朴仁羽	2017.08.17.
(부 부 장) 검 사	金世漢	2017.08.17.
검 사	梁東偶	2017.02.20.
〃	趙映贊	2017.02.20.
〃	崔美和	2017.02.20.
〃	金珍嬉	2016.01.27.
〃	千載仁	2016.01.27.
〃	李鍾赫	2016.01.27.
〃	金芝蓮	2017.02.20.
〃	李承珉	2016.01.27.
〃	申玲敏	2016.01.27.
〃	吳興世	2016.01.27.
〃	具丞基	2016.03.02.
〃	安智英	2017.02.20.
〃	金智慧	2016.01.27.
〃	林炳一	2016.03.02.
〃	吳世珍	2016.02.01.
〃	咸惠薰	2017.03.01.
〃	金信惠	2017.02.20.
〃	崔仁星	2017.02.20.
〃	朴祥熙	2017.04.27.
사 무 국 장	洪鉉基	2017.01.16.
총 무 과 장	朴巖	2017.09.27.
사 건 과 장	朴魯重	2017.09.27.
집 행 과 장	鄭燦先	2017.09.27.
수 사 과 장	朱起煥	2017.01.16.
(해 남 지 청)		
지 청 장	姜成龍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尹晟鎬	2016.01.27.
〃	朴英秀	2016.01.27.
〃	張智哲	2017.02.20.
사 무 과 장	吳昀垈	2016.08.29.
(전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宋寅澤	2017.08.01.
차 장 검 사	金漢洙	2017.08.17.
부 장 검 사	白尙烈	2017.08.17.
〃	金敬祐	2017.08.17.
〃	金明洙	2017.08.17.
(부부장)검사	姜南守	2016.01.13.
〃	宋持鏞	2017.08.17.
〃	朴庭儀	2017.08.17.
검 사	曺斗鉉	2016.01.27.
〃	黃正賢	2016.01.27.
〃	崔淳鎬	2016.08.31.
〃	安匡鉉	2016.01.27.
〃	尹素賢	2017.02.20.
〃	金宰成	2016.01.27.
〃	李承姬	2016.01.27.
〃	鄭芝泳	2017.02.20.
〃	崔宰賢	2017.02.20.
〃	朴宰平	2016.01.27.
〃	黃玲燮	2016.02.01.
〃	金鉉書	2016.01.27.
〃	李庚宣	2015.02.25.
〃	金賢智	2017.02.20.
〃	李載仁	2016.04.01.
〃	金荷英	2016.01.27.
〃	李炳來	2017.04.01.
〃	禹世鎬	2016.03.02.
〃	吳禎恩	2017.03.01.
〃	朴源碩	2017.02.20.
사 무 국 장	金正浩	2017.09.27.
총 무 과 장	朴貴元	2016.08.29.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건 과 장	朴俊映	2017.09.27.
집 행 과 장	韓在永	2017.01.16.
수 사 과 장	李殷默	2017.01.16.
검사직무대리	金漢永	2017.09.27.
(군산지청)		
지 청 장	全承秀	2017.08.17.
부 장 검 사	崔盛國	2017.08.17.
〃	陳哲珉	2017.08.17.
검 사	崔勝煥	2015.02.25.
〃	崔한얼	2016.01.27.
〃	文成根	2017.02.20.
〃	梁贊奎	2017.02.20.
〃	金俊燁	2017.02.20.
〃	鄭暻映	2015.02.25.
검 사	金벼리	2015.02.25.
〃	沈彊賢	2016.01.27.
〃	朴敏熙	2017.02.20.
〃	崔株源	2016.01.27.
〃	朴貞宣	2017.02.20.
〃	成仁旭	2017.02.20.
〃	金炫璟	2017.02.20.
사 무 과 장	鄭澤栗	2017.09.27.
집 행 과 장	鄭衡謨	2017.01.16.
수 사 과 장	西門潤	2016.08.29.
(정읍지청)		
지 청 장	梁東勳	2017.08.17.
검 사	張態亨	2015.02.25.
〃	李周炫	2016.01.27.
〃	申丙宇	2017.02.20.
〃	權寅杓	2016.01.27.
〃	朴珍娥	2017.02.20.
사 무 과 장	殷熙鋻	2017.01.16.
(남원지청)		
지 청 장	徐政湜	2017.08.17.
검 사	鄭勝元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	黃斗泙	2017.02.20.
사 무 과 장	梁憲奎	2016.02.22.
(제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尹雄傑	2017.08.01.
차 장 검 사	崔瓊奎	2017.08.17.
부 장 검 사	姜鍾憲	2017.08.17.
부 장 검 사	孫佑昌	2017.08.17.
(부부장)검사	張準熙	2017.08.17.
〃	李炫娅	2016.01.13.
검 사	李相賢	2016.01.27.
〃	陳惠媛	2015.08.27.
〃	金昌熙	2016.08.31.
〃	張恩希	2015.02.25.
〃	宋寅豪	2017.02.20.
〃	韓大雄	2016.01.27.
〃	徐東範	2016.01.27.
〃	成大雄	2017.02.20.
〃	鄭侊炳	2017.02.20.
〃	柳承辰	2017.02.20.
〃	高侑辰	2016.01.27.
〃	朴水晶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吳寶美	2016.01.27.
〃	李志倫	2017.02.20.
〃	李相厚	2017.03.01.
〃	朴鍾淏	2017.04.01.
〃	李善美	2015.02.25.
〃	崔再皓	2016.03.02.
〃	尹午然	2016.02.01.
〃	趙韓伊	2017.02.20.
사 무 국 장	權泰均	2017.01.16.
총 무 과 장	金相喆	2017.09.27.
사 건 과 장	徐昶洙	2016.08.29.
집 행 과 장	元容柱	2017.09.27.
수 사 과 장	李昌熙	2017.09.27.
(사법연수원)		
부 원 장	金基東	2017.08.01.
교 수	權起煥	2016.01.13.
〃	柳千烈	2017.08.17.
〃	鄭宇植	2016.01.13.
교 수	全倫慶	2017.08.17.
〃	金容子	2017.08.17.
〃	閔永炫	2017.08.17.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孫外哲	2017. 9. 18.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李亨燮	2017. 1. 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공 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朴在鳳	2016. 7. 18.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공 석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梁奉煥	2016. 1. 1.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金仁相	2017. 11. 13.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李又權	2016. 7. 18.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朴敎植	2017. 12. 4.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張載榮	2017. 1. 9.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姜鎬成 尹雄章 金正烈	2017. 10. 30. 2017. 7. 22. 2016. 7. 18.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洪丁源	2017. 7. 31.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鄭澤鉉	2016. 1. 1.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成雨濟 공 석 沈善玉	2016. 3. 7. 2016. 1. 1.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崔鐘哲	2016. 1. 1.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尹太英	2017. 1.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李炯再 공 석 공 석	2017. 1. 9.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韓相益	2017. 1. 9.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高永鐘 崔成鶴 安 洽	2016. 3. 7. 2016. 1. 1. 2016. 7. 18.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金蓍鍾	2016. 1. 1.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金幸錫	2017. 1. 9.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李政旻	2017. 1. 9.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李星七	2017. 1. 9.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李河聲	2017. 7. 31.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공 석 李銀漢 공 석	2016. 1. 1.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盧一錫	2016. 1. 1.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崔宇喆	2016. 7. 1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趙成珉	2016. 7. 18.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廉丁勳	2017. 1. 9.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權乙植	2017. 1 .9.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孫世憲	2016. 3. 7.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朴晙哉	2016. 7. 18.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李相運	2017. 7. 31.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원장	宋花淑	2016. 2. 15.	원장	金成坤	2016. 7. 18.
행정지원과장	金龍雲	2016. 8. 16.	안양소년원		
교무과장	金尙琢	2017. 1. 9.	원장	金正植	2017. 1. 9.
의무과장	趙泰旭	2012. 5. 16.	의무과장	全振杓	2009. 9. 14.
부산소년원			춘천소년원		
원장	吳然鎬	2017. 1. 9.	원장	黃啓淵	2017. 1. 9.
교무과장	金泰燮	2016. 7. 18.	의무과장	李熙元	2001. 11. 14.
분류보호과장	朴于春	2017. 1. 9.			
의무과장	柳棟然	2017. 12. 18.			
대구소년원			제주소년원		
원장	權奇漢	2017. 1. 9.	원장	柳秉澤	2016. 1. 1.
교무과장	鄭成守	2016. 1.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보호과장	李英美	2016. 1. 1.	원장	金仁相	2015. 11. 2.
의무과장	黃善進	2013. 1. 7.	교무과장	裵鍾相	2016. 7. 18.
			분류심사과장	金世訓	2016. 1. 1.
광주소년원			의무과장	朴廷桓	2011. 4. 8.
원장	李榮鎬	2016. 1. 1.	대전청소년비행예방		
교무과장	金良坤	2017. 1. 9.	센터	廉丁勳	2015. 8. 31.
분류보호과장	徐鎭男	2017. 1. 9.	센터장		
의무과장	鄭吉永	2001. 2. 28.			
전주소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		
원장	閔根基	2017. 1. 9.	센터	金澤守	2016. 1. 1.
교무과장	金一煥	2015. 8. 31.	센터장		
의무과장	蘇淳哲	2010. 8. 12.			
대전소년원			치료감호소		
원장	吳英熙	2016. 7. 18.	소장	崔鍾赫	2016. 1. 15.
교무과장	李相運	2016. 1. 1.	의료부장	柳米京	2017. 10. 30.
분류보호과장	朴鍾國	2016. 1. 1.	행정지원과장	李東煥	2016. 3. 7.
의무과장	張栽豪	2012. 11. 1.	감호과장	金容秀	2016. 7. 18.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崔 兌 源	2017. 8. 17.
검 사	林 吉 燮	2016. 10. 11.
검 사	洪 承 杓	2016. 10. 11.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 장	鄭有哲	2017. 2. 13.
총 무 과 장	金榮植	2017. 7. 31.
보 안 과 장	崔圭澈	2017. 7. 31.
사회복귀과장	徐 珉	2017. 7. 31.
분 류 센 터 장	崔瓚喜	2016. 9. 12.
대구지방교정청		
청 장	金明哲	2016. 9. 12.
총 무 과 장	鄭昌憲	2017. 2. 13.
보 안 과 장	閔賢基	2017. 2. 13.
사회복귀과장	李東熹	2017. 7. 31.
대전지방교정청		
청 장	崔康柱	2017. 2. 13.
총 무 과 장	金東允	2017. 2. 13
보 안 과 장	魯埇準	2017. 2. 13
사회복귀과장	河映薰	2017. 2. 13.
광주지방교정청		
청 장	洪南寔	2017. 2. 13.
총 무 과 장	金應分	2017. 7. 31.
보 안 과 장	崔國鎭	2017. 2. 13.
사회복귀과장	金載益	2017. 7. 31.
서 울 구 치 소		
소 장	李敬植	2017. 2. 13.
부 소 장	林善河	2017. 7. 31.
총 무 과 장	李禧廷	2017. 7. 31.
보 안 과 장	柳東秀	2017. 7. 31.
의 료 과 장	趙秀鉉	2001. 9. 17.
분류심사과장	金鶴奉	2017. 7. 31.
시 설 과 장	金周成	2015. 8.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 전 교 도 소		
소 장	金千洙	2016. 9. 12.
부 소 장	張宗善	2017. 7. 31.
총 무 과 장	白金汰	2017. 7. 31.
보 안 과 장	朴隆雨	2017. 7. 31.
의 료 과 장	李俊浩	2009. 2. 17.
분류심사과장	金珍奭	2017. 2. 13.
논 산 지 소 장	曹廣根	2017. 7. 31.
대 구 교 도 소		
소 장	朴號緖	2017. 7. 31.
부 소 장	蔡完植	2017. 7. 31.
총 무 과 장	朴源欽	2017. 2. 13.
보 안 과 장	朴鍾寬	2017. 7. 31.
의 료 과 장	金炅律	2014. 6. 5.
분류심사과장	李孝善	2017. 7. 31.
광 주 교 도 소		
소 장	李英姬	2017. 2. 13.
부 소 장	南相伍	2017. 7. 31.
총 무 과 장	韓成周	2016. 9. 12.
보 안 과 장	魯英吉	2017. 7. 31.
의 료 과 장	朴日雄	2006. 8. 16.
안 양 교 도 소		
소 장	權玟碩	2017. 2. 13.
부 소 장	白洪基	2017. 2. 13.
총 무 과 장	洪正基	2017. 7. 31.
보 안 과 장	朴鎭弘	2017. 7. 31.
의 료 과 장	崔光燮	2005. 11. 7.
부 산 구 치 소		
소 장	金貞善	2017. 07. 31.
부 소 장	金鐵珉	2017. 02. 13.
총 무 과 장	林采華	2017. 02. 13.
보 안 과 장	崔陳圭	2017. 02. 13.
의 료 과 장	李熙植	2013. 07. 0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 장	辛京又	2017. 2. 13.
부 소 장	徐秀原	2017. 2. 13.
총 무 과 장	梁東石	2017. 7. 31.
보 안 과 장	金永大	2017. 7. 31.
의 료 과 장	李學龍	2017. 8. 7.
평 택 지 소 장	李鉉哲	2017. 2. 13.
서울동부구치소		
소 장	愼鏞海	2017. 2. 1.
부 소 장	李承喆	2017. 2. 13.
총 무 과 장	金在述	2017. 7. 31.
보 안 과 장	李泓沇	2017. 7. 31.
의 료 과 장	金 勳	2005. 11. 7.
인천구치소		
소 장	朴炳龍	2017. 7. 31.
부 소 장	高成泰	2017. 7. 31.
총 무 과 장	金王武	2017. 7. 31.
보 안 과 장	宋庠基	2017. 7. 31.
의 료 과 장	閔亨植	2001. 7. 7.
서울남부구치소		
소 장	金鍾煜	2017. 7. 31.
부 소 장	韓泰煥	2017. 7. 31.
총 무 과 장	金南周	2017. 7. 31.
보 안 과 장	韓天龍	2017. 7. 31.
의 료 과 장	朴鍾民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 장	朴熹秀	2017. 7. 31.
의 료 과 장	張在球	2005.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金承萬	2017. 2. 13.
의 료 과 장	郭延禹	2016.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 장	鄭秉憲	2016. 1. 18.
부 소 장	李東熹	2016. 3. 14.
총 무 과 장	朱丁民	2017. 7. 31
보 안 과 장	車載晟	2016. 9. 12.
의 료 과 장	韓柱燮	2002. 1. 21.
시 설 과 장	鄭秉澤	2017. 9. 29
전주교도소		
소 장	具池書	2017. 2. 13.
총 무 과 장	尹順豊	2017. 7. 31.
보 안 과 장	孫容大	2017. 7. 31.
의 료 과 장	金學成	2006. 8. 16.
여주교도소		
소 장	申東潤	2017. 2. 13.
의 료 과 장	李瞰圭	2015. 8. 3.
부산교도소		
소 장	禹熙慶	2017. 7. 31.
의 료 과 장	尹鍾哲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 장	金東昡	2016. 9. 12.
의 료 과 장	朱宰虎	2001. 5. 21.
창원교도소		
소 장	柳琪鉉	2017. 2. 13.
의 료 과 장	李承基	2006. 8. 16.
순천교도소		
소 장	金春午	2017. 7. 31.
의 료 과 장	朴炅喆	1996. 9. 1.
서울남부교도소		
소 장	尹吉鉉	2017. 7. 31.
의 료 과 장	李鍾基	2014. 7. 1.
포항교도소		
소 장	成孟煥	2017. 7. 31.
의 료 과 장	徐輔均	2017. 8. 7.
진주교도소		
소 장	李炅雨	2017. 2. 13.
의 료 과 장	李進喆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 장	朴三才	2017. 2. 13.
의 료 과 장	姜 喆	1990. 6. 26.
대구구치소		
소 장	柳東白	2017. 7. 31.
의 료 과 장	李在洸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 장	黃仁培	2017. 2. 13.
의 료 과 장	張成龍	2006. 4. 17.
청주교도소		
소 장	金文泰	2017. 2. 13.
의 료 과 장	공 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안교도소		
소장	兪泰吾	2017. 7. 31.
의료과장	申俊植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金一煥	2017. 7. 31.
의료과장	崔昌鶴	2011. 1. 1.
춘천교도소		
소장	閔洛基	2017. 2. 13.
의료과장	李重九	2015. 1. 19.
원주교도소		
소장	金度亨	2017. 2. 13.
의료과장	金榮珍	2015. 4. 13.
안동교도소		
소장	洪性千	2017. 7. 31.
의료과장	李碩均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장	都在德	2017. 2. 13.
의료과장	桂英誦	2016. 7. 1.
청주여자교도소		
소장	周點淑	2017. 7. 31.
의료과장	공석	
김천소년교도소		
소장	全龍熙	2017. 7. 31.
의료과장	崔仁煥	2008. 1. 24.
공주교도소		
소장	鄭英珍	2017. 7. 31.
의료과장	宋惠貞	2011.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	金平根	2017. 2. 13.
의료과장	鄭萬鎭	2011. 12. 5.
울산구치소		
소장	鄭昌憲	2018. 1. 1.
의료과장	金鍾元	2009. 7. 20.
정읍교도소		
소장	姜燾秀	2017. 2. 13.
의료과장	金得鍾	2015. 8.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주교도소		
소장	朴修妍	2017. 2. 13.
의료과장	梁正元	2016. 12. 5.
홍성교도소		
소장	閔六基	2017. 2. 13.
의료과장	尹星老	1994. 11. 12.
서산지소장	姜基千	2017. 7. 31.
경주교도소		
소장	鄭在烈	2017. 2. 13.
의료과장	趙倫徹	2012. 1. 9.
통영구치소		
소장	鄭奉洙	2017. 7. 31.
의료과장	鄭元碩	2017. 2. 6.
밀양구치소		
소장	金泰洙	2017. 2. 13.
의료과장	全允湜	2014. 5. 12.
상주교도소		
소장	崔秉錄	2017 2. 13.
의료과장	朴淳錄	2017. 8. 21.
강릉교도소		
소장	姜郡五	2017. 2. 13.
의료과장	金日煥	2017. 1. 1.
영월교도소		
소장	徐顥榮	2017. 2. 13.
의료과장	金健道	2015. 6. 23.
장흥교도소		
소장	鄭炳煥	2017. 7. 31.
의료과장	金喆周	2010. 11. 8.
해남교도소		
소장	洪淳哲	2017. 2. 13.
의료과장	崔永琦	2017. 4. 10.
충주구치소		
소장	尹昌植	2017. 07. 31.
의료과장	尹椀重	2017. 05. 15.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孫弘基	2016. 7. 1.
지원국장	李相朗	2017. 1. 9.
심사국장	崔榮吉	2016. 7. 20.
총무과장	沈準燮	2017. 1. 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鐘敏	2016. 7. 13.
총무과장	千承祐	2017. 9. 1.
관리과장	高東基	2016. 7. 20.
이민특수조사대장	공 석	
출입국정보화센터장	金鍾協	2015. 8. 1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仁揆	2017. 12. 4.
관리과장	林炳秀	2017. 1. 9.
이민특수조사대장	李春龍	2017. 1. 9.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공 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東權	2017. 12. 4.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朴相勳	2016. 8. 20.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守男	2017. 1. 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炳列	2016. 7. 2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斗落	2016. 7. 2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禹鍾均	2016. 7. 20.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秀東	2015. 8. 10.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田達秀	2016. 7. 20.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裵祥業	2016. 2. 17.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黃澤煥	2015. 8. 10.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相鎭	2016. 2. 17.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点子	2015. 8. 1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玟洙	2015. 8. 10.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楊次順	2017. 1. 9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禹錫煥	2016. 2. 17.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金秉祚	2016. 7. 20.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兪炳吉	2016. 7. 2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金泰守	2017. 1. 9.

Ⅵ. 인 사

○ 총 괄

(2017. 1. ~ 12.)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3,700	3,661	7,810	1,571	658
검 사		1,412	61	1,142	114	95
일반직	소 계	12,288	3,600	6,668	1,457	563
	본 부 (연 수 원)	231 (33)	49 (2)	151 (28)	16 (2)	15 (1)
	검 찰 청	5,048	1,205	2,975	620	248
	보 호 기 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154	201	728	166	59
	지 방 교 정 청 (구치소, 교도소)	4,862	1,901	2,283	504	174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993	244	531	151	67

Ⅶ.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17. 1. ~ 12.)

기간 / 직급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394	57	21	316
검찰총장	1	-	-	1
검사	393	57	21	315

○ **일반직**

(2017. 1. ~ 12.)

기간 / 기관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915	12	36	867
본부	280	-	6	274
검찰청	280	5	3	272
교도소	131	1	6	124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64	2	7	55
출입국관리사무소	133	4	13	116
법무연수원	27	-	1	26

Ⅷ.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7. 1. 1~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2. 6.	이라크	주한 이라크 대사	와디 바티 한나 알마티 외 2명	이라크인 단기비자 변경 및 연장 관련 논의 및 출입국 관련 현황정보 공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6.	독일	법무부차관	Gerd Billen 외 7명	한-독 형사사법 협력 관계 증진	검찰국
2. 10.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	씽하뎃 추암낫 외 6명	태국인 입국거부 감소방안,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 요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6.	국제이주기구(IOM)	IOM 아태지역 사무소 대표	마리아 느네뜨 외 2인	이주글로벌컴팩트에 대한 협력과 관심 요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감사 및 지속적 협력 요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18.	이란	영사국장	알리 체지니 외 7명	양국 국민 단체관광 등 비자 면제 요청, 불법체류자 추방에 대한 제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12.	일본	법무성 국제과장	야마우치 요시미츠 외 3명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방안 논의	검찰국
6. 5.	캐나다	캐나다 대사	에릭 월쉬 외 2인	출입국 분야 협력 구축 및 국내체류 원어민 강사 관련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6. 20.	독일	연방경찰청 국제협력국장	하인리히 케텔레어 외 2명	불법이주 등 이민관련 현안 소개 및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한-독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논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6. 23.	일본	법무협력관	고이케 타다히로	일본 법무성 형사국장의 취임 축하 서신 전달	검찰국
7. 18.	태국	특별수사부 검사	T, Ajlanant 외 5명	한-태국 형사사법공조 사건 협업 방안 논의	검찰국
7. 21.	미국	버몬트주 연방검사	버몬트주 연방검사 및 FBI 등 관계자 3명	한-미 형사사법공조 사건 현안 논의	검찰국
9. 4.	카자흐스탄	법무부 정보화과장	아이바트 일리야소프 등 7명	전자정부 및 주요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인적교류	법무실
9. 12.	미국	주한미군 법무실장	유진 에드 보웬주니어 외 2명	양국 간 SOFA 운영 협력방안 논의	검찰국
9. 15.	일본	법무협력관	고이케 타다히로	일본 법무대신, 장관님의 취임축하 서신 전달	검찰국
9. 18.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사무총장	빈센트 느메힐레 외 9명	총회 참석 AfDB 사무국 임직원 및 회원국 대표단 입국과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9. 25.	콜롬비아	세계헌법학회 회장	마누엘 호세 세페다에스파노사 (Manuel José Cepeda-Espinosa)	2018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준비 경과 등 논의	법무실
9. 2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법무부장관 비서실장	고나 스테판 등 3명	중앙아프리카 방기에 교도소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교정시설 참관 등 협조요청	교정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0. 10.	베트남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 사무국장	전 테 권 등 11명	한국의 사법제도 현황 및 사법개혁활동 경험 등 공유	법무실
10. 18.	싱가폴	공공후견인 관청 청장	레지나 창 이 린 (Regina Chang Yee Lin) 등 3명	'지속적 대리권' 등록 업무 등 싱가폴 공공후견인 관청 업무 설명, 후견업무 관련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관계 증진	법무실
10. 20.	스리랑카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서기관	서산가 니카피티야	한-스리랑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협의 등	검찰국
11. 2.	조지아	주한 조지아 대사	오타르 베르드제나쉬빌리 외 2명	조지아 독립기념일 초청장 전달, 사증면제협정 체결 희망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1. 20.	베트남	수석부총리	쯔엉 화 빙 등 11명	한국의 사법제도 현황, 사법개혁활동 및 반부패 제도 등 경험 공유	법무실
11. 21.	국제난민기구 (UNHCR)	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 외 5인	한국 난민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재정착 난민 수용, UNHCR 본부에 출입국 직원 파견 관련 논의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2. 6.	베트남	법무부 호적·국적국장	응우옌 콩 칸 외 6명	한-베트남 법무부 국적담당 당국과의 업무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2. 12.	일본	법무성 검사	나카무라 요시오 등 3명	치매, 고령 수용자 관리 방안 등 업무협의	교정본부
12. 18.	몽골	법무부 국장	사인 조리그 등 6명	한국의 법무 정책 및 재범방지 정책 등 논의	법무실
12. 28.	일본	법무성 부대신	하나시 야스히로 등 8명	국제중재 진흥,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출입국 정책, 재범방지 정책 및 인적교류 등 논의	법무실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17. 1. 1~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9. ~ 1. 12.	중국	한·중·일 FTA 회의	박병건 출입국관리 주사보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2. 11. ~ 2. 16.	인도	제2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2. 12. ~ 2. 16.	태국 (방콕)	아시아 지재 범죄 단속 네트워크 (IPCEN) 회의 참석	여경진 대전지검 검사 외 1명	검찰국
2. 17. ~2. 21.	베트남 (나트랑)	2017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참석	정대희 대구지검 검사	검찰국
2. 17. ~ 2. 22.	베트남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 (BMG)	박병건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 1명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2. 19. ~2 . 25.	프랑스 (파리)	제28기 제2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석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1명	검찰국
3. 2. ~ 3. 4.	일본	제17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3. 13. ~ 3. 18.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작업반 '17년도 제1차 전체회의 참가	김형원 검사	검찰국
3. 21. ~ 3. 25.	태국 (방콕)	아세안 내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UNODC 지역회의 참석	박준영 서울동부지검 검사	검찰국
3. 27. ~ 4. 1.	키르키즈스탄 (비슈케크)	국제교정포럼	박병일 직업훈련과장 외 2	교정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4. 1. ~ 4. 9.	미국 (뉴욕 등)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회의 참석	김영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외 2명	검찰국
4. 2. ~ 4. 9.	영국 (런던)	IMO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회의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4. 5. ~ 4. 9.	스위스	IGC 워킹그룹 회의	김재남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4. 5. ~ 4. 9.	인도네시아 (스마랑)	ARF 대테러 및 초국가범죄에 관한 회의 참석	권방문 수원지검 검사	검찰국
4. 8. ~ 4. 15.	브라질 (브라질리아)	G20 반부패회의 실무그룹 회의 참석	안병수 광주지검 검사 외 1명	검찰국
4. 10. ~ 4. 12.	일본	제12차 한·중·일 FTA 협상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4. 23. ~ 4. 27.	오스트리아 (비엔나)	UNTOC 점검 매커니즘 기능의 절차 및 원칙 정립 회의 참석	김남수 검사	검찰국
4. 24. ~ 4. 28.	미국 (뉴욕)	제55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위원회 회의	검사 신동환, 교수 고학수· 최경진	법무실
4. 30. ~ 5. 6.	스위스	UN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3.4.5차 심의회의	구병모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5. 1. ~ 5. 9.	미국 (뉴욕)	제28차 UNCITRAL 중소기업 실무위원회 회의	검사 김상현, 교수 노혁준	법무실
5. 7. ~ 5. 15.	독일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	강지운 위원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 8. ~ 5. 10.	홍콩	홍콩 염정공서 반부패 세미나 참석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1명	검찰국
5. 8. ~ 5. 14.	포르투갈	2017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 참석	국법과장, 검사 소정수	법무실
5. 15. ~5. 17.	체코 (프라하)	범죄예방·교정 분야 디지털 기술 학술회의 참석	노일석 서기관 외 2명	범정국
5. 21. ~ 5. 25.	프랑스 (스트리스브르)	제72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PC-OC) 참가	김형원 검사	검찰국
5. 21. ~ 5. 27.	오스트리아 (비엔나)	UN CCPCJ(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 회의 참석	김남수 검사	검찰국
5. 22. ~ 5. 26.	인도네시아 (발리)	인신매매 관련 불법자금 추척에 관한 발리 프로세스 정책지침 검토 워크샵 참석	허수진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국
6. 5. ~ 6. 10.	캐나다 (오타와)	인터폴 범죄수익환수 국제네트워크(GFPP) 연례총회 참석	김지영 대검찰청 검사 외 2명	검찰국
6. 5. ~6. 13.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럽보호관찰협회(CEP) 주관 학술회의 참석	안병경 서기관 외 2명	범정국
6. 11. ~ 6. 17.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참석	김형원 검사	검찰국
6. 13. ~ 6. 17.	프랑스 (파리)	OECD 작업반 회의	김민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6. 17. ~ 6. 23.	스페인 (발렌시아)	제28기 제3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석	신도욱 검사	검찰국
6. 28. ~ 7. 2.	독일	제10차 GFMD 회의	유성오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7. 3. ~ 7. 21.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50차 UNCITRAL 본회의	검사 신동환, 교수 이재민	법무실
7. 10. ~ 7. 14.	홍콩	ICAO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세미나	최영길 서기관 외 2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7. 15. ~ 7. 22.	호주 (시드니)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점검 현장실사 참석	문지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국
7. 18. ~ 7. 22.	홍콩	2017 교정혁신 컨퍼런스	박진열 심리치료과장 외 2	교정본부
7. 24. ~ 7. 30.	미국 (워싱턴DC)	한·미·일 형사사법협력회의 FBI 및 월드뱅크와의 협력 회의 참석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3명	검찰국
7. 25. ~ 7. 29.	인도	제19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이취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8. 17. ~ 8. 22.	베트남 (하노이)	APEC 반부패 실무회의 참석	김남수 검사	검찰국
8. 21. ~ 8. 25.	베트남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박병건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 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8. 23. ~ 8. 26.	싱가폴 (퍼스)	발리 프로세스 비즈니스 포럼 참석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외 1명	검찰국
8. 30. ~ 9. 3.	네덜란드 (헤이그)	제4회 지역별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회의 참석	김지영 대검찰청 검사 외 1명	검찰국
9. 4. ~ 9. 6.	스위스	WIPO 제12차 집행자문위원회	사무관 최초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9. 8. ~ 9. 15.	중국 (북경 등)	제22회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 참석	황철규 대구고검 검사장 외2명	검찰국
9. 11. ~ 9. 13.	대만	WICT 총회 및 국제정보화상 시상식	이덕룡 서기관 외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9. 12. ~9. 20.	영국 (런던)	유럽범죄학회(ESC) 국제학술회의 참석	박상현 보호사무관 외 3명	범정국
9. 13. ~9. 16.	영국 (웨일즈 카디프)	유럽범죄학회(ESC) 참가	보호사무관 박상현 외 3	범정국
9. 18. ~ 9. 23.	스위스 (제네바)	제62차 UN 사회권위원회 심의	장인종 감찰관 외 6	감찰관실 인권국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9. 18. ~ 9. 24.	솔로몬 (호니아라)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이행 점검 실무회의 참석	임일수 광주지검 검사 외 1명	검찰국
9. 21. ~ 9. 26.	미국 (LA)	한인검사협회 연례행사 참석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외1명	검찰국
9. 24. ~ 9. 27.	캄보디아	ASEM 이민국장회의	장세근 출입국정책 단장 외 2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9. 26. ~ 10. 2.	미국 (뉴욕)	인신매매철폐 고위급 회의 참석	서정민 국제형사과장 외 1명	검찰국
10. 9. ~ 10. 13.	네덜란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제7차 특별위원회	조민경 위원	법무실
10. 16. ~ 10. 20.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9차 UNCITRAL 중소기업 실무위원회 회의	검사 소정수, 교수 노혁준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18. ~ 10 22.	일본 (도쿄)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남대주 검사 외 2	법무실
10. 21. ~ 10. 29.	영국 (런던)	제19차 국제교정협회 연례회의	유병철 교정정책단장 외 3	교정본부
10. 25. ~10. 28.	미국 (캔자스시티)	성폭력범죄자 치료학회(ATSA) 학술회의 참석	허정일 보호사무관 외 2명	범정국
10. 28. ~ 11. 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29기 제1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석	신도욱 검사 외 1명	검찰국
11. 2.. ~11. 10.	아일랜드 (더블린)	유럽보호관찰연합(CEP) 업무협약 추진	최종필 검사 외 4명	범정국
11. 3. ~ 11. 10.	피지 (난디)	제36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	김학성 교정본부장 외 5	교정본부
11 3. ~ 11. 10	미국 (시카고)	제41회 전미교정의료학술회의	이승기 기술서기관 외 3	교정본부
11. 4. ~ 11. 11.	오스트리아 (비엔나)	UNCAC(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당사자 총회 참석	서정민 국제형사과장 외 1명	검찰국
11. 6. ~ 11. 10.	폴란드	제23회 FRONTEX 회의	박송배 출입국관리 주사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1. 7. ~ 11. 11.	캄보디아	제5회 ANDEX 회의	최희주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인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1. 12. ~ 11. 19.	독일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강지운 위원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19. ~ 11. 25.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스리랑카 (콜롬보)	제73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참가	김형원 검사	검찰국
11. 20. ~ 11. 26.	러시아 (랴잔)	제3회 러시아 국제교정포럼	홍남식 광주지방교정청장 외 3	교정본부
11. 21. ~11. 29.	스위스 (프리부르)	스위스 보호관찰·사회복지협회(PROSAJ) 연례 세미나 참가	장택용 보호사무관 외 3명	범정국
11. 27. ~ 12. 2.	스위스	제108차 IOM 총회	반재열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12. 2. ~ 12. 10.	미국 (뉴욕)	ICC(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참석	김남수 검사	검찰국
12. 3. ~ 12. 10.	독일 (베를린)	독일 형사사법공조 실무회의 참석	서정민 국제형사과장 외 3명	검찰국
12 . 4. ~ 12. 12.	호주 (캔버라)	호주·뉴질랜드 범죄학회(ANZOC) 연례 학술회의 참가	박성경 보호주사 외 3명	범정국
12. 6. ~ 12. 14.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독일 형사사법공조 실무회의 및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참석	김형원 검사	검찰국
12. 10. ~ 12. 16.	미국	교정시설 건축설계와 인력운영 컨퍼런스	금용명 서기관 외 2	교정본부
12. 11. ~ 12. 14.	스위스	WIPO 제27차 특허법상설위원회	검사 이재표 외 1	법무실
12. 19. ~ 12. 21.	중국 (베이징)	국제형사협력 양자협회 참석	신도욱 검사 외 2명	검찰국

Ⅸ. 상 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17. 1. ~ 12.)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11	-	80	11	10	44	103	412	679	155	17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3	-	3	-	-	-	-	-	-	-	-
홍조근정훈장	23	-	6	9	8	-	-	-	-	-	-
녹조근정훈장	79	-	-	-	-	28	51	-	-	-	-
옥조근정훈장	205	-	-	-	-	-	-	146	59		-
근 정 포 장	16	-	3	1	1	2	2	4	3	-	-
대 통 령 표 창	32	-	2	-	1	4	9	9	7	-	-
국무총리표창	29	-	1	1	-	-	13	7	7	-	-
모 범 공 무 원	171	-	-	-	-	-	-	145	25	1	-
법무부장관표창	953	-	65	-	-	10	28	101	578	154	17
유관기관표창											

○ 기 관

(2017. 1. ~ 12.)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 호 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 무 소
법무부장관표창	57	4	16	16	4	9	8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7. 1. ~ 12.)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대검찰청	고등검사장	김주현	2017. 4.25.	법의날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박정식	2017.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한찬식	2017.12.27.	〃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장영수	2017. 4.25.	법의날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이두봉	〃	〃
	법무부	검사	이노공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세윤	2017.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정현태	〃	〃
	대구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원	〃	〃
	광주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철	〃	〃
	대전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진웅	〃	〃
	부산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규종	〃	〃
	창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정주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고석진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고석홍	2017.12.27.	검찰업무수행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채원	〃	〃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승만	2017.10.27.	교정의날유공
	부산교도소	부이사관	문병일	2017.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이사관	이명수	〃	〃
	부산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배종궐	〃	〃
	광주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상환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국희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평화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해근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부이사관	김동용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영근	〃	〃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유재호	2017.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오봉석	〃	〃
	청주외국인보호소	서기관	강병춘	〃	〃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장영채	〃	〃
	울산구치소	교정관	양종석	〃	〃
	통영구치소	서기관	박민호	〃	〃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기관	강위복	〃	〃
	홍성교도소	교정관	이영기	〃	〃
	대전지방교정청	서기관	류재인	〃	〃
	목포교도소	서기관	강달성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군산교도소	서기관	박광래	〃	〃
	대전교도소	교정관	김윤식	〃	〃
	광주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 가군	박오수	〃	〃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성배	〃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조규상	〃	〃
	홍성교도소	교정관	이정옥	〃	〃
	장흥교도소	교정관	구제광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권중양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황춘기	〃	〃
	안양교도소	교정관	권오문	〃	〃
	춘천교도소	교정관	박건표	〃	〃
	춘천교도소	교정관	이정하	〃	〃
	원주교도소	교정관	김종만	〃	〃
	강릉교도소	서기관	임봉기	〃	〃
	성동구치소	교정관	고영규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 가군	최영수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덕순	〃	〃
	상주교도소	교정관	장영수	〃	〃
	의정부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최시정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한용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기장서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오섬택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광열	〃	〃
	울산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김진만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서광윤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염인열	〃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임연우	2017.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보호사무관	안종백	〃	〃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보호사무관	김명득	〃	〃
	대구구치소	서기관	이우용	〃	〃
	포항교도소	서기관	정운선	〃	〃
	김천소년교도소	서기관	한상호	〃	〃
	청주여자교도소	서기관	박태원	〃	〃
	해남교도소	교정관	장홍석	〃	〃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근용	〃	〃
	대구교도소	교정관	최종근	〃	〃
	광주교도소	교정관	정병권	〃	〃
	청주교도소	교정관	송경수	〃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이병철	〃	〃
	순천교도소	교정관	김동영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순천교도소	교정관	백종오	〃	〃
	공주교도소	교정관	추명애	〃	〃
	경주교도소	교정관	정하봉	〃	〃
	수원구치소	교정관	황영호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남석진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홍성득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허창구	〃	〃
	안양교도소	교정관	오만영	〃	〃
	인천구치소	교정관	정명식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민영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정범희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도영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박병도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만현	〃	〃
	창원교도소	교정관	고태영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윤병순	〃	〃
	대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박종선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배경환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임환용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강정춘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백강수	〃	〃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윤치호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배수범	〃	〃
	대검찰청	기술서기관	변홍구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정식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오종희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최송의	〃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서기관	김시종	2017.12.29.	우수공무원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귀원	〃	〃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사무운영주사보	최미숙	2017.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치료감호소	의료기술주사	지성구	〃	〃
	치료감호소	간호주사	정화순	〃	〃
	부산교도소	교감	권정식	〃	〃
	부산교도소	교감	김철주	〃	〃
	부산교도소	교위	임영식	〃	〃
	대구구치소	교감	김동진	〃	〃
	대구구치소	교감	이봉찬	〃	〃
	부산구치소	교감	여태문	〃	〃
	부산구치소	교위	정연두	〃	〃
	부산구치소	운전주사보	김남출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통영구치소	교감	권화섭	〃	〃
	통영구치소	교감	홍석곤	〃	〃
	前 통영구치소	교감	故 최영호	〃	〃
	포항교도소	교감	손호익	〃	〃
	홍성교도소	교감	이계철	〃	〃
	홍성교도소	교감	이진곤	〃	〃
	홍성교도소	교감	심순섭	〃	〃
	홍성교도소	교위	추현국	〃	〃
	목포교도소	교감	임삼택	〃	〃
	군산교도소	교감	이재구	〃	〃
	군산교도소	교감	김용환	〃	〃
	대구교도소	교감	김영재	〃	〃
	대구교도소	교감	윤기철	〃	〃
	대구교도소	교감	박운수	〃	〃
	대구교도소	교위	오상국	〃	〃
	대구교도소	교감	김갑식	〃	〃
	대구교도소	교감	강재순	〃	〃
	대구교도소	교감	김국연	〃	〃
	대전교도소	교감	왕귀진	〃	〃
	대전교도소	교감	박희중	〃	〃
	대전교도소	교감	홍기찬	〃	〃
	대전교도소	교감	지명학	〃	〃
	대전교도소	교감	손종균	〃	〃
	광주교도소	교감	안종희	〃	〃
	광주교도소	교감	조순구	〃	〃
	전주교도소	교감	박원식	〃	〃
	전주교도소	교감	신점섭	〃	〃
	전주교도소	교위	이희관	〃	〃
	청주교도소	교감	천영석	〃	〃
	청주교도소	교감	임적순	〃	〃
	청주교도소	교감	이홍열	〃	〃
	청주교도소	교위	정만영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양승복	〃	〃
	순천교도소	교위	박천석	〃	〃
	안동교도소	교감	천명봉	〃	〃
	안동교도소	교감	임을빈	〃	〃
	안동교도소	교감	김종철	〃	〃
	안동교도소	교감	박동대	〃	〃
	안동교도소	교위	조대석	〃	〃
	안동교도소	교위	설관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안동교도소	교위	정세걸	〃	〃
	공주교도소	교감	윤형노	〃	〃
	공주교도소	교감	김시각	〃	〃
	공주교도소	기계운영주사보	김용석	〃	〃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이현성	〃	〃
	경주교도소	교감	이기학	〃	〃
	경주교도소	교위	박상식	〃	〃
	장흥교도소	교위	송용석	〃	〃
	평택지소	교감	김영일	〃	〃
	수원구치소	교감	배봉규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박종태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주사보	조형준	〃	〃
	안양교도소	교감	방학열	〃	〃
	안양교도소	교감	박인우	〃	〃
	안양교도소	교위	김만승	〃	〃
	안양교도소	교위	이용태	〃	〃
	원주교도소	교감	황원엽	〃	〃
	원주교도소	기계운영주사	신명선	〃	〃
	강릉교도소	교감	김진호	〃	〃
	강릉교도소	교위	박선균	〃	〃
	성동구치소	교감	김영진	〃	〃
	성동구치소	교위	신환규	〃	〃
	여주교도소	교감	송경옥	〃	〃
	충주구치소	교감	이한견	〃	〃
	영월교도소	교감	김귀선	〃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김일주	〃	〃
	천안교도소	교감	조영직	〃	〃
	천안교도소	교위	김진석	〃	〃
	천안교도소	교위	정만곤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이재홍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정태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오헌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갑주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임호진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함승훈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이오근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유심하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조삼현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조규원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박호석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임완규	〃	〃
	부산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하의도	〃	〃
	광주지방검찰청	운전주사	이승원	〃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이향순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열관리운영주사보	송동기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이경자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이종천	2017.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나영철	〃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전제형	〃	〃
	부산교도소	교감	배재효	〃	〃
	대구구치소	교감	권혁경	〃	〃
	대구구치소	교위	김상철	〃	〃
	울산구치소	교감	최병식	〃	〃
	통영구치소	교감	이을호	〃	〃
	포항교도소	교감	우동현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엄태근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위	김호겸	〃	〃
	군산교도소	교감	김명식	〃	〃
	군산교도소	교감	김구중	〃	〃
	대구교도소	교감	조병철	〃	〃
	대구교도소	교감	조형제	〃	〃
	대구교도소	교위	표윤수	〃	〃
	대구교도소	교감	문종창	〃	〃
	대전교도소	교감	서태석	〃	〃
	대전교도소	교감	한기희	〃	〃
	대전교도소	교감	유병국	〃	〃
	대전교도소	교감	고종용	〃	〃
	광주교도소	교위	민종규	〃	〃
	전주교도소	교감	이만호	〃	〃
	전주교도소	교감	이정인	〃	〃
	전주교도소	교위	김선태	〃	〃
	전주교도소	교위	은기태	〃	〃
	전주교도소	기계운영주사	안영택	〃	〃
	청주교도소	교감	이원경	〃	〃
	청주교도소	교위	이용래	〃	〃
	청주교도소	교위	권혁섭	〃	〃
	목포교도소	교감	김정만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황의찬	〃	〃
	천안개방교도소	교위	전동주	〃	〃
	천안개방교도소	교위	권상호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순천교도소	교감	김형기	〃	〃
	안동교도소	교감	이재기	〃	〃
	안동교도소	교감	윤희국	〃	〃
	공주교도소	교감	김기훈	〃	〃
	공주교도소	교감	권태응	〃	〃
	공주교도소	교위	김형기	〃	〃
	공주교도소	교감	강환규	〃	〃
	경주교도소	교감	전지홍	〃	〃
	경주교도소	교감	김주도	〃	〃
	경주교도소	교감	김학종	〃	〃
	경주교도소	교감	이석종	〃	〃
	홍성교도소	교위	안병구	〃	〃
	서울구치소	교감	김순성	〃	〃
	서울구치소	교감	박종일	〃	〃
	서울구치소	교감	이송우	〃	〃
	서울구치소	교감	최창복	〃	〃
	서울구치소	교감	양승우	〃	〃
	서울구치소	교감	한진월	〃	〃
	서울구치소	교감	최경만	〃	〃
	부산구치소	교감	송인재	〃	〃
	부산구치소	교감	최덕문	〃	〃
	부산구치소	교위	배종경	〃	〃
	안양교도소	교감	강근우	〃	〃
	안양교도소	교감	김범열	〃	〃
	안양교도소	교감	송채하	〃	〃
	의정부교도소	교감	김학두	〃	〃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영찬	〃	〃
	의정부교도소	교감	이인철	〃	〃
	원주교도소	교위	김종덕	〃	〃
	강릉교도소	교감	김윤선	〃	〃
	강릉교도소	교감	권성조	〃	〃
	인천구치소	교감	김장기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박노연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최영미	〃	〃
	여주교도소	교감	김창규	〃	〃
	여주교도소	교감	박태만	〃	〃
	충주구치소	교감	지한규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임정회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안승용	〃	〃
	영월교도소	교감	김종해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천안교도소	교감	박종성	〃	〃
	천안교도소	교감	정만희	〃	〃
	천안교도소	교위	강성호	〃	〃
	천안교도소	교위	손태호	〃	〃
	천안교도소	교위	황상석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조천희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김종학	〃	〃
	창원교도소	교감	윤종환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박성인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조규만	〃	〃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고광복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김규현	〃	〃
	상주교도소	교감	남명희	〃	〃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김종한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주정섭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태욱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정용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김성원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김원제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이건혁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박서현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권기열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이정하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종봉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박환근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업주사보	장기환	〃	〃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강양숙	〃	〃
	광주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전영복	〃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주사	임동빈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열관리운영주사보	윤동배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주사	최영원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주사	김인한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무운영주사	민태숙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방호주사보	배이근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17. 1. ~ 12.)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강용현	2017. 4.25.	법의날유공
국민훈장모란장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부회장	조남길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국민훈장동백장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우찬호	2017. 4.25.	법의날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위원	구진화	2017.10.27.	교정의날유공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회장	김춘식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국민훈장목련장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지구대표	정찬호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보호위원	진성기	2017.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국민훈장석류장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부회장	정태경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황조근정훈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완진	2017. 4.25.	법의날유공
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태승	2017. 4.25.	법의날유공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김동윤	김동윤	2017. 4.25.	법의날유공
	강릉교도소	교정위원	김정자	2017.10.27.	교정의날유공
	경주교도소	교정위원	박서영	〃	〃
	군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정익	〃	〃
	법사랑위원 고양지역연합회	부회장	이봉구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감사	강대경	〃	〃
	법사랑위원 김천지역연합회	고문	이건우	〃	〃
	(사)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박미화	2017.11.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보호위원	박광구	2017.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석훈	2017. 4.25.	법의날유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재한베트남 공동체	대표	원옥금	2017. 6.14.	세계인의 날 유공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장인실	〃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	〃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정하웅	2017.10.27.	교정의날유공
	여주교도소	교정위원	전성수	〃	〃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김현성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한병호	〃	〃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고문	김성태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군산지역연합회	부회장	김근섭	〃	〃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위원	전준규	〃	〃
	법사랑위원 영월지역연합회	회장	김기수	〃	〃
	법사랑위원 밀양지역연합회	위원	조명재	〃	〃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김진곤	〃	〃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지구대표	이근해	〃	〃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연합회	명예회장	한기영	〃	〃
	(사)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원요	2017.11.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정성필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위원	김금례	2017.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	변동석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손동필	2017.12.20.	법질서유공
	전라남도 광양시			〃	〃
	경기도 안성시			〃	〃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	하재성	2017. 6.14.	세계인의날유공
	목원대학교	－	이성순	〃	〃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은해	〃	〃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사원	원지혜	〃	〃
	인하대학교			〃	〃
	강릉문화원			〃	〃
	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위원	김태자	2017.10.27.	교정의날유공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장영각	〃	〃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박영자	〃	〃
	원주교도소	교정위원	김길선	〃	〃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나일도	〃	〃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위원	손광진	2017. 8.3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부회장	김소열	〃	〃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위원	배회숙	〃	〃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위원	최병길	〃	〃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위원	소재철	〃	〃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김호규	〃	〃
	법사랑위원 부산동부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김종호	〃	〃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운영위원	박기태	〃	〃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연합회	위원	이근찬	〃	〃
	(사)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고광록	2017.11.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사	김환철	〃	〃
	(사)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	안대종	〃	〃
	(사)마산합포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윤태석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보호위원	오상대	2017.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보호위원	김숙	〃	〃
	인하대학교	부교수	정상우	2017.12.20.	법질서유공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
	청주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	〃
	재단법인 선플재단			〃	〃
	충청남도			〃	〃

X.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17. 12. 현재)

소 관 별	계	장관실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교 정 본 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인권국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57	3	15	7	11	3	1	7	1	5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 건축협의위,중앙급식 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84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김혜숙 (교수)	16명	정책 기획단	장관실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 (법무부훈령 제1114호) 제1조 및 제2조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	한인섭 (교수)	15명	법무 검찰 개혁단	
3	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규정 (법무부훈령 제1127호)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후속조치 권고	김갑배 (변호사)	9명		
4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2명	비상 안전	기획조정실
5	법무부 예산집행심의 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870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법무부훈령 1095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조정실장	16명	혁신행정	기획조정실
7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9명		
8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9	법무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10	법무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장관이 임명	4~6명		
11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2	법무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3	법무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4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839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기획조정실장, 최정진(변호사)	4명	행복민원	
15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이선우(교수)	11명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6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노명선 (교수)	24명	정책성과	기획조정실
17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4명		
18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의4	법무정보화 업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8명	정보화	
19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윤진수 (교수)	14명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0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차관	9명		
21	법무부변호사징계 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의	법무부장관	8명	법무과	
22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6명		
23	외국법자문사징계 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장관	15명	국제법무과	
24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차관	6명	국가송무과	
25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차관	14명	법조인력과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26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6명	검찰과	검찰국
27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28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29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30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 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국장	4명	형사기획과	
31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32	국가보안유공자심사 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국장	6명	공안기획과	
33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34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0명		
3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4명		
36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사무 운영 규정(법무부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국장	4명	국제형사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7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검사	각 8명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38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재황 (교수)	14명	법질서선진화과	
39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8명	보호법제과	
40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박영립 (변호사)	10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41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7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42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890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공석	25명		
4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7명	인권구조과	
4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 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45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46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이재연 (명예교수)	12명	여성아동인권과	
47	법무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 지침(법무부훈령 제931호) 제12조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권국장이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인권국장	4명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8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법무부 차관	8명	분 류 심사과	교정본부
49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896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 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0	법무부이민정책 자문위원회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1068호) 제1조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정인섭 (교수)	14명	외국인 정책과	
51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20명	국적과	
5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10명	이민 통합과	
53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과	
54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법무부훈령 제1021호) 제3조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8명	운영 지원과	운영지원과
55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산자부 고시 제2015-195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 차관	5명		
56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 지침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 조정 실장	5명		
57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 조정 실장	10명		
58	법무정책홍보전략 협의회	법무정책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989호)	주요홍보 현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법무부 차관	10명	대변인실	대변인실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17.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63개 기관	32,070
법 무 부	2실 3국 2본부	668
검 찰 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10,519
법 무 연 수 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1	13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30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8, 위치추적관제센터 2	1,544
치 료 감 호 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16
소 년 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	822
교 정 기 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15,732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외국인보호소 2, 출장소 24, 센터 1	2,19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17.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4개 단체	1,089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0, 지소 72, 법문화교육센터 1	7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7, 지소 7, 센터 1, 교육원 1	222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4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 1	16

부 록

◈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연감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검 사 장	강 남 일

□ 편집위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김 상 권
법무실	검 사	신 재 홍
검찰국	검 사	김 수 홍
범죄예방정책국	검 사	강 성 기
감찰관실	검 사	이 진 용
인권국	부이사관	오 유 진
교정본부	부이사관	최 제 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이 재 유
장관정책보좌관	검 사	이 종 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 정 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유 지 중
법무연수원	검 사	박 기 동

□ 편집실무위원

기획조정실	사 무 관	이 현 정
법무실	사 무 관	손 주 근
검찰국	사 무 관	이 동 영
범죄예방정책국	사 무 관	강 신 원
감찰관실	사 무 관	조 민 호
인권국	사 무 관	박 광 수
교정본부	교 정 관	이 정 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 무 관	박 제 성
대변인실	사 무 관	고 영 석
운영지원과	서 기 관	김 진 섭
법무연수원	사 무 관	차 유 진

法務手鑑

발 행 일 ▌ 2018년 9월

발행기관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092, 3093
FAX : (02) 2110-0314

인 쇄 ▌ 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TEL : (063) 714-3967

<비매품>